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

2007.12

산 업 연 구 원

제 출 문

통계청 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오 상 봉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산 업 연 구 원	연 구 위 원	이 진 면
-----------	---------	-------

<연구 수행자>

산 업 연 구 원	부 연구위원	이 상 연
	부 연구위원	최 용 재
	부 연구위원	이 원 복
	부 연구위원	변 창 욱
	전문연구원	이 상 호

<목 차>

제1장 경제센서스의 도입배경	1
1. 산업통계 관련 환경변화	1
2. 산업구조통계의 중요성과 문제	5
3. 경제센서스 도입의 필요성	8
4. 경제센서스의 개념과 운용방안	10
제2장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현황과 평가	14
1. 산업구조통계의 현황과 검토기준	14
2.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20
3.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29
4.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36
5. 산업구조통계 조사결과의 활용 :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48
제3장 주요국의 경제센서스 실시 현황	61
1.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유형과 국제적 흐름	61
2. 미국의 경제센서스	62
3. 중국의 경제센서스	83
4. 일본의 경제센서스	98
5. 통합적 표본조사의 사례: 캐나다, 호주	116
6.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121
제4장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 설정방안	123
1. 조사범위의 현황과 문제	123
2. 조사범위의 해외사례	129
3. 조사범위 설정의 기본방향	138
4.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 설정 방안	139
제5장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 설정방안	145
1. 산업구조 통계의 조사방법 현황	145
2. 주요국의 조사방법 현황	155
3.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 실시방안	163
제6장 경제센서스 조사내용 설정방안	168
1. 기존 산업구조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168
2. 조사내용의 해외사례	188
3. 국내외 공통항목 설정 현황	212
4. 공통항목의 설정기준과 방안	214
5. 추가항목 발굴 및 후보군 설정	224

제7장 기타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226
1. 산업구조통계의 통폐합 및 시계열 유지방안	226
2. 경제센서스의 효율적 실시 방안	233
3. 경제센서스 실시의 기대효과	241
제8장 결론: 경제센서스의 실시방안	244
1. 통계법 상의 위치와 명칭	244
2. 조사의 단위와 범위	244
3. 조사방법	245
4. 조사내용	246
5. 기존 통계의 통폐합 방안	247
6. 연도별 추진계획	248
<참고문헌>	249
<부 록>	251

<표 목 차>

<표 2- 1>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 비중	15
<표 2- 2>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 현황	16
<표 2- 3> 산업구조통계 현황(2007년 7월 현재) (1)	16
<표 2- 3> 산업구조통계 현황(2007년 7월 현재) (2)	17
<표 2- 4> 산업구조통계의 포괄범위	22
<표 2- 5> 산업구조통계의 주기별 조사방식 비교	31
<표 2- 6>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별 비교	34
<표 2- 7> 사업체기초통계조사·산업총조사·서비스업총조사의 공통항목 비교	37
<표 2- 8>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1)	38
<표 2- 9>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2)	40
<표 2-10>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3)	44
<표 2-11> 국민계정의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이용현황	50
<표 2-12> 산업연관표 작성시 산업구조통계 이용 현황	52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1)	53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2)	54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3)	55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4)	56
<표 2-14>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1)	57
<표 2-14> 산업연관표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2)	58
<표 2-15>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통계간 관련성	59
<표 3-1> 미국 경제센서스의 예산규모	70
<표 3-2> 미국 사업자명부 구축에 활용되는 행정자료	75
<표 3-3> 중국 주요 센서스통계의 개편내용	87
<표 3-4> 일본의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 구성	100
<표 3-5> 일본의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 개최 현황	101
<표 3-6> 일본의 경제센서스 기획회의 개최 현황	102
<표 3-7> 일본의 경제센서스 추진조직 및 주요업무	114
<표 4-1> 기존 산업관련 통계의 조사범위(1)	126
<표 4-1> 기존 산업관련 통계의 조사범위(2)	127
<표 4-2> 미국의 산업분류와 경제센서스 대상	130

<표 4-3> 지역분류별 경제센서스 범위	132
<표 4-4> 일본의 표준산업분류(JSIC, 2002년)	133
<표 4-5> 시험조사 실시계획의 조사범위 사례	135
<표 4-6> 중국 경제센서스의 산업범위(조례 10조)	136
<표 4-7> 경제센서스의 산업적 포괄범위(안)	140
<표 5-1> 조사방법상의 주요 내용	145
<표 5-2> 개별 통계 조사의 조사대상 기간 및 기준 시점	147
<표 5-3> 통계청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	151
<표 5-4> 기타 통계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1)	152
<표 5-4> 기타 통계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2)	153
<표 5-5>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155
<표 5-6> 미국의 산업별 조사방법 (1)	156
<표 5-6> 미국의 산업별 조사방법 (2)	157
<표 5-7> 중국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158
<표 5-8> 일본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163
<표 5-9> 경제센서스 조사방법 실시방안	165
<표 6- 1> 종사자와 연간급여액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169
<표 6- 2> 생산액과 생산비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172
<표 6- 3>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174
<표 6- 4>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개념의 불일치	176
<표 6- 5> 타 승인기관 산업구조통계 비교	179
<표 6- 6> 통계별 부가가치 계산방법	181
<표 6- 7> 국민계정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이용현황	184
<표 6- 8> 산업연관표에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활용 현황	185
<표 6- 9>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표	189
<표 6-10> 약식조사표의 종류와 조사대상	190
<표 6-11> 미국 센서스의 질문 번호별 세부 내용(1)	193
<표 6-12> 미국 센서스의 질문 번호별 세부 내용(2)	194
<표 6-13>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질문 항목 비교 1	195
<표 6-14>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질문 항목 비교 2	196
<표 6-15> 미국 국민계정의 경제센서스 자료 활용 현황	200
<표 6-16> 미국 산업연관표의 경제센서스 자료 활용 현황	201

<표 6-17> 사업체단위에서의 매출액 조사 여부 (일본 표준산업분류 기준)	206
<표 6-18> 법인기업 추가 조사항목	206
<표 6-19> 사업체에 있어 종사자수의 조사사항	208
<표 6-20> 산업별 매출액의 개념·용어	209
<표 6-21> 「2007년 시험조사」의 조사표 구분	210
<표 6-22> 2007년 시험조사의 조사표 항목	210
<표 6-23> OECD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211
<표 6-24> 국내 산업구조통계조사의 공통 조사항목 내용	212
<표 6-25> 각 국별 공통조사항목	213
<표 6-26> 공통 조사항목의 선정(案)	217
<표 6-27> 공통조사항목의 정의	218
<표 7-1> 산업구조통계의 경제센서스 충족조건 비교표	228
<표 7-2> 산업구조통계의 통폐합 방안	230
<표 7-3>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	235
<표 7-4> 조사명칭의 변경사례	237
<표 7-5> 표현가능한 조사명칭	238
<표 8-1> 조사범위의 국제비교	245
<표 8-2> 조사방법의 국제비교	246
<표 8-3> 조사내용의 국제비교	247

<그 립 목 차>

<그림 2-1>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단위별 분포	28
<그림 2-2>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단위별 분포	28
<그림 2-3>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49
<그림 3- 1> 미국 경제센서스의 시대별 산업포괄범위	64
<그림 3- 2> 미국 경제센서스의 추진단계	67
<그림 3- 3> 미국 경제센서스의 연도별 추진활동	67
<그림 3- 4> 미국 경제센서스의 추진 조직	68
<그림 3- 5> 미국 사업자명부의 구축체계	72
<그림 3- 6> 2002년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표체계	78
<그림 3- 7> 중국통계기구도	90
<그림 3- 8> 중국 제1차 경제센서스 조직도	92
<그림 3- 9> 일본의 경제센서스 실시를 위한 검토체제	113
<그림 3-10> 캐나다 통합기업체통계조사(UES)의 표본추출 체계	117
<그림 3-11> 호주의 사업자명부 구축 체계	120
<그림 5-1> 기초행정단위의 조사프로세스	160
<그림 5-2> 지구행정단위(군)의 조사 프로세스	160
<그림 5-3> 성단위(도)의 조사 프로세스	160
<그림 5-4> 국가단위의 조사 프로세스	161
<그림 6-1> 음식숙박업의 조사표 구조	199
<그림 6-2> 경제의 순환구조	214
<그림 7-1> 산업구조통계의 통합조건	227
<그림 7-2> 경제센서스 준비TF팀(가칭) 구성(안)	240
<그림 7-3> 경제센서스 실시조직 구성(안)	241

제1장 경제센서스의 도입배경

1. 산업통계 관련 환경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가속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 개인주의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
 - 핵가족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 세대간 소비패턴의 상이, 개인의 가치와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발전 등으로 인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구조가 다양화, 고급화되는 추세
- 기술혁신의 가속과 기술의 융합화 등으로 새로운 제품 및 신산업의 출현
 - IT·NT·BT·CT·ET 등 주요 신기술의 발달 및 융합의 본격화로 '삶의 질', 부품·소재, 제조공정,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적인 발전 및 신기술 융합에 기초한 새로운 패러다임 출현
 - 신기술의 상승적 결합(synergistic combination)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개념의 제품군과 산업의 창출, 생산요소와 산업혁신자원의 구성 및 역할 변화 등 가치사슬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산업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기업의 사업다각화, 산업간 연관관계의 복잡화 등도 산업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기술혁신의 가속과 융합화로 인한 기술주기의 단축, 상품생명주기의 단축,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사업다각화와 기업간 협력 및 제휴관계 증대, 산업간 연관관계의 복잡화 등을 유발
-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국민소득의 증가 등에 의한 문화, 관광, 레저스포츠 등 소비자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제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법률·회계, 마케팅, 광고 등 생산자서비스업도 급속하게 성장

2) 산업정책의 변환

-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에서 기업활동 전과정에서 혁신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전환
 - 산업정책이 특정산업을 육성하거나 진흥하는 정책에서 가치사슬의 단계별 혁신을 강조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
 - 연구 및 기술개발 등 R&D정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 협력 등 관련 분야의 구성원들간 정보 및 지식의 교류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
 - 특히 이러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각되면서 지역별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음.
- 경제전반에 있어서 고용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제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정책이 중요하게 부각
 -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산업의 빠른 성장은 자칫 경제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그 중요성이 부가되고 있음.
 - 또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므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음.

3) 산업통계수요의 질적 양적 증대

- IT기술의 발전, 지식·정보화시대로의 급속한 이행 등으로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진보가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행됨에 따라 산업관련 통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IT기술, 인터넷의 발전으로 통계를 포함한 정보의 창출, 유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통계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
 -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이행으로 정보자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인식되면서 객관성이 확보된 신뢰성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경제활동의 세계화, 개방화 및 첨단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복잡화되고 있는 추세
- 경제활동의 세계화와 개방화의 가속으로 산업환경이 세계적 경쟁체제 (mega competition)로 돌입하면서 기업, 산업계, 정책당국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및 산업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자본자유화 등 국내외 자금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투자대상으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통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
 - IT, BT, NT, CT 등 신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출현하면서 기존 통계분류체계로 조사에 한계가 있는 통계수요가 증가
- 주요 산업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산업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정책의 투명한 집행과 더불어 객관적인 성과측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정책은 공평한 집행과 더불어 성과측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지방자치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정책의 수립에 기초가 되는 지역 및 지역의 산업관련 통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

- 지방자치제로의 이행으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 확대,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수립 등으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지역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지역간 비교가 중요해지면서 작은 지역에 대한 통계수요가 커지고 있음.

4) 산업통계의 생산환경 변환

- 응답자(respondent)의 정보관리 강화, 응답부담의 증가 등 통계조사에 대한 환경이 점차 악화
 - 기업 혹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인 기업이나 개인들이 조사에 대한 비협조 혹은 응답거부 등이 증가하는 추세
 - 통계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조사자체의 증가로 기업 혹은 개인의 응답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통계생산 환경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업활동의 다양화와 복잡화 등으로 통계작성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 기업이 단순한 생산조직에서 기술혁신, 생산, 마케팅 등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또한 다국적화가 가속되면서 기업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작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조사방법의 측면에서 통계생산환경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조사 등 다양한 조사수단의 개발, 조사표의 작성 및 배포에 있어서 전자 및 통신매체의 활용, 조사결과의 검안·집계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활용 등은 통계생산의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

2. 산업구조통계의 중요성과 문제

1) 경제통계의 핵심적 위치

- 산업구조통계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산출(생산, 판매 등)과 투입(노동, 자본 등) 측면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단위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총칭한다고 볼 수 있음.
 - 국제연합(UN) 통계국에서는 산업통계(Industry Statistics)를 상품생산통계(Commodity Production Statistics), 산업생산지수(Indices of Industrial Production), 일반산업통계(General Industrial Statistics)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상품생산통계는 UN의 상품분류에 입각하여 주요 산업의 상품생산을 물리적인 양으로 조사하는 것임.
 - 산업생산지수는 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업에 대하여 산업생산을 파악하여 이를 월별, 분기별, 년별로 지수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산업동태 조사에 해당함.
 - 일반산업통계는 사업체(establishment), 기업체(enterprise), 산업활동단위(kind-or-activity unit) 혹은 지역단위(local unit) 등의 통계단위로 표준산업분류에 입각하여 산업별 임금, 노동시간, 고정자본형성, 생산(output), 부가가치 등을 화폐단위로 파악하는 것임.
 - 이러한 산업관련 통계조사의 분류에 입각할 경우 산업구조통계는 일반산업통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산업구조통계는 경제통계의 기초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계로서 국가 산업발전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적인 성격을 지님.
 - 산업구조통계는 기본적으로 개별 산업이나 산업그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그 자체로서의 활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경제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 등 국가 주요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 또한 산업구조통계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명부는 개별 통계생산기관에서 특수목적에 의해 작성되는 개별통계의 모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
- 따라서 산업구조통계의 개선은 국가 경제통계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며, 경제 및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산업경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경제 및 산업정책의 수립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합리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 및 경쟁력 강화,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기초적인 정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

2) 산업구조통계의 문제

- 국내의 산업구조통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
- 우선 산업관련 조사 중 조사주기가 1년 이상이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는 57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함.
- 산업의 포괄범위 측면에서 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볼 때 통계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산업은 대부분 포괄하여 조사하여 있음.
- 개별 산업구조통계조사들의 기본적인 조사항목이 UN의 권고안을 포괄하면서도 대부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외에도 통계작성의 절차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산업구조통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개별기관의 특성과 통계작성의 목적에 따라 작성되는 관계로 인하여 조사시기, 조사주기, 조사단위나 조사범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
- 산업범위를 달리하는 산업구조통계가 상이한 주기로 실시되고 있어 동일시점에서 국가전체의 산업통계를 얻을 수 없고, 조사범위, 조사개념 등에

서도 서로 상이하여 상호비교분석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통계청의 사업체 대상 대규모 조사통계의 경우 산업별 분리조사, 통계조사별 조사시기, 조사기준 등이 상이하여 통계조사간의 비교성과 시너지 효과도 미흡한 실정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을 대상으로 산업총조사,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총조사, 농림어업법인체 및 농가, 어가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이들 조사는 모두 5년 주기이지만, 산업총조사는 3, 8차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도 6월에, 서비스총조사는 0, 5차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도 2월에,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는 0, 5차 연도를 기준으로 익년도 2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당 조사에 포함되는 산업그룹에 대한 시점별 및 시점간 비교는 가능하나 이들 조사간 동일시점에서 상호비교가 불가능함.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년도에 실시함에 따라 상당수 업체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되는 사례(제조업체→서비스업체, 서비스업체→제조업체)도 발생하고 있음.

- 다양한 종류의 산업구조통계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더불어 조사지원기관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

- 통계청의 통계응답자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체당 연간평균 응답횟수는 1999년에 20회, 2002년에 25회, 2005년에 32회수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대규모 산업구조통계의 분산실시로 인하여 조사관련 인건비의 이중적 지출과 더불어 조사지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지원조직의 업무가중을 경감함과 동시에 조사관련 인건비의 절감 측면에서 대규모 조사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실시하자

는 의견이 통계청 내부에서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급변하는 산업구조관련 환경에 따른 다양한 통계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한 측면도 있음.
 - 신산업의 출현, 기업의 다국적화, 산업정책의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복잡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
 - 통계생산기관의 자체적 한계성, 통계생산을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개선, 통계작성 환경의 열악 등으로 인하여 통계수요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부족

3. 경제센서스 도입의 필요성

- 산업통계 관련 환경의 변화, 산업구조통계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산업구조통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
 - 특히, 통계조사별 기준연도 및 조사시점의 상이, 조사항목의 비표준화와 개념의 상이 등은 산업별 발전정도에 대한 비교분석, 구조변화의 상호비교 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산업구조통계를 활용하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통계 등 국가핵심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산업구조통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개선이 요구됨.
 - 산업구조통계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통계의 작성시 생산측면에서 산업별 생산과 부가가치를 산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산업구조통계의 품질이 이들 통계의 품질과 직결됨.
 - 그러나 기존연구¹⁾에 의하면 통계청의 기초통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질적인 통계의 혼용으로 사용되는 통계간 정합성·일관성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1) 이궁희 외(2004),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작성환경 개선 방안-국민소득통계와 관련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 특히, 서비스업 관련 기초통계가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서비스업의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정확성 및 신뢰성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도 산업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구조통계를 하나의 통일된 조사시스템으로 통합화하는 추세
 -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은 모집단명부의 확보에 집중하면서 표본조사를 통해 통일된 조사방법으로 동일시점에서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소위 통합적 조사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일본(예정)은 확보된 모집단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방법으로 전수조사에 입각한 특정산업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소위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국제통계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통계국은 2006년부터 산업통계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고, 통합적 경제통계시스템(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system) 개발에 유용한 산업통계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 for Industrial Statistics)²⁾을 마련 중에 있음.
- 따라서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으로서 경제센서스의 도입이 필요함.
 - 복잡 다양화, 세부화되어가는 산업통계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산업구조 관련 통계의 일관성, 정합성, 비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일된 틀을 마련하는 조사방법체계의 도입이 필요.
 - 특히, 경제구조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사업체나 기업체의 생멸이 극심하

2) 산업통계권고안은 1953년에 처음 공표된 이후 1960년, 1968년, 1983년 등 3번에 걸친 수정안이 공표되었고, 현재 준비 중인 권고안은 제5차 안으로서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로 국민계정의 추계방식 전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개정(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Rev.4)과 연계되면서 산업생산의 세계화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확대 등 산업활동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 통계국 홈페이지에 수록된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for Industrial Statistics Provisional Draft 5 November 2007을 참조.

며, 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통계조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사업체나 기업체 명부의 확보가 실제 조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일된 조사방법에 입각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제센서스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음.

4. 경제센서스의 개념과 운용방안

1) 경제센서스의 일반적 의미

- 라틴어인 'censere'에서 유래된 센서스(census)는 원래 징세나 징병을 위한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인구조사에만 한하지 않고 '일정의 사회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의 전수조사'를 의미하고 있음.
 - UN에서는 '특정시기에 한 나라 또는 일정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한 인구학적·경제적·사회적 자료를 조사·편집·공표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센서스를 인구총조사,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산업총조사 등과 같이 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를 전수조사하여 해당집단의 크기, 구조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경제센서스는 상기와 같은 센서스의 의미에 기초한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소득이나 부의 분배 등 경제 분야에 관련된 모든 개별적인 행동인 경제활동(economic action)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를 의미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는 1810년 미국의 3번째 센서스조사에서 경제부문이 제조업의 생산을 중심으로 포함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산업의 조사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개념이 산업 전반에 대한 대규모 전수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
 - 즉,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미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체 산업에 대해

서 가능한 한 통일된 기준과 동일시기에 조사하는 '통합센서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로서 산업총조사, 서비스총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업의 포괄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산업총조사나 서비스총조사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전수조사라는 점에서는 경제센서스와 유사하지만, 일부 산업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경제센서스와 차이가 있음.
- 이에 경제센서스가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관련 총조사들을 모두 포괄하여 총칭하는 '산업구조통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전반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관련 조사들 종합해야 하며, 이때 산업관련 통계조사들을 묶어서 통상 '산업구조통계'라고 부르고 있음.

2) 경제센서스의 개념

- 경제센서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 경제센서스의 실시목적 및 내용에 기초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은 통계의 범위로서 국민경제를 파악하는 통계 중 특히 산업의 생산 및 투입에 관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는 점.
 - 두 번째는 조사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대규모 전수조사에 기초한다는 점
 - 세 번째는 포함된 조사대상의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과 조사방법에 기초하여 산업구조에 관한 **원천데이터**(raw data)를 제공한다는 점.
- 상기의 고려사항에 기초할 때 경제센서스의 개념은 국민경제 중 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입각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통해 산업의 생산구조에 대한 원천적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통계조사시스템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3) 경제센서스의 기능과 역할

- 경제센서스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통계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정부와 기업, 연구자 등에게 경제 및 산업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적 기초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함.
 - 다양한 산업관련 조사에 대한 표준적인 조사체계의 틀과 더불어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 등 가공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경제센서스의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뿐 만 아니라 특수한 조사항목은 기타 통계조사의 표본 틀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성격의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모집단명부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
 - 경제센서스는 다수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나, 새로운 기업의 식별, 조업중단, 합병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4) 경제센서스 도입의 검토방향

- 경제센서스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실시목적에 따른 기대효과의 극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실시목적은 현재 산업구조통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동시에 해외사례의 장점 중 국내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정될 필요도 있음.
- 국내통계의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첫째는 산업별 조사결과의 정합성 및 비교성을 제고하여 시너지효과를 유발하도록 함.
 - 둘째는 조사시기의 통일을 통해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및 조사관련 인건비 절감하도록 함.
 - 셋째는 조사표 및 조사항목 표준화로 동일항목 중복조사 방지 및 통일된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함.
- 이러한 실시목적에 따른 주요한 검토 사항은 조사범위, 조사의 주기와 시기 그리고 조사항목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조사범위는 산업의 포괄범위로서 가능한 한 전산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통합 범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주기는 국내외 통계의 기준연도 설정현황을, 조사시기는 국내외 회계연도 현황을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은 경제분석에서 기초가 되는 산출과 투입 측면 및 국내외 다양한 분석지표의 활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항목과 기타 세부항목으로 구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제2장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현황과 평가

1. 산업구조통계의 현황과 검토기준

1) 승인통계내 산업구조통계의 구분

- 통계청 승인통계 중 산업구조통계는 통계의 조사요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음.
 - 조사의 목적 및 범위를 기준할 때 목적이 산업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지역적 범위가 전국을 포함하는 통계조사
 - 조사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한 모집단이 사업체임을 고려하여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통계를 대상으로 하되, 조사항목별로 기업체 단위가 혼용되고 있어 기업체단위 조사도 포괄
 - 또한 사업체 및 기업체 이외에도 조사의 특성상 가구 및 자영업자를 포함해야 할 경우 동 조사단위를 산업구조통계의 조사기준으로 포함
 - 조사주기와 관련해서는 산업의 단기적 경기변동을 파악하는 조사와는 기본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이상 통계를 비교대상에 포함
 - 조사방식과 관련해서는 특수목적이나 기타목적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를 제외한 조사통계로 한정하며, 여기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모두 포괄함.
 -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로서의 조사내용은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액, 부가가치액, 고용 등 기초 공통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함.

2) 산업구조통계의 현황

- 2007년 7월 현재 통계청 승인통계는 일반승인통계와 지정승인통계를 모두 합쳐 987종이며, 이중 산업구조통계로서 구분될 수 있는 승인통계는 전체대비 5.8%인 총 57종임(<표 2-1> 참조).

- 조사주기가 1년 이상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보고 및 가공통계를 제외한 조사통계이고, 조사단위가 사업체(기업체) 또는 가구인 산업구조통계를 추출함.

<표 2-1>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 비중

통계구분	전체 승인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제외	기업체 사업체 대상통계	전국 대상통계	조사주기 1년이상 통계	
						산업구조통계
종	987	346	180	153	105	57
비중	100.0%	35.1%	18.2%	15.5%	10.6%	5.8%

주 : 2007년 7월 현재 기준.

- 산업구조통계로 분류된 총 57종 통계중 조사단위가 가구인 산업구조통계는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임.
 - 가공통계와 보고통계를 모두 제외하였으나, 한국전력통계와 상수도통계가 보고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구조통계에 포함함.
- 승인통계에서 분류된 산업구조통계를 작성기관별로 살펴보면, 통계청이 총 57종 중 15종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의 통계작성종수는 총 32종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기관 통계작성 종수는 총 25종으로 나타남.
 - 조사주기별로는 1년, 2년, 3년, 5년 등 4개의 주기로 이루어진 가운데 1년 주기 통계가 총 44종으로 가장 많고, 2년주기가 6종, 3년주기가 2종, 5년 주기가 5종이며, 5년주기 통계는 통계청에 의해서만 작성되고 있음.
- 통계종류별로 살펴보면, 지정승인통계가 총 17종이며, 일반승인통계는 총 40종으로 나타남.
 - 지정승인통계 총 17종 중 15종이 통계청 작성통계이며, 일반통계 총 40종 중 25종이 정부기관외 기타기관 작성통계임.

<표 2-2>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 현황

단위 : 종

작성기관	계(종)	조사주기				통계종류	
		1년	2년	3년	5년	지정	일반
정부 기관	통계청	15	10		5	15	
	과학기술부	1	1				1
	환경부	2	2				2
	문화관광부	2	2				2
	산업자원부	4	3	1		1	3
	정보통신부	3	3				3
	산림청	1	1				1
	중소기업청	4	2	1	1	1	3
정부기관 계	32	24	1	2	5	17	15
기타기관 계	25	20	5				25
총 계	57	44	6	2	5	17	40

자료 : 통계청.

<표 2-3> 산업구조통계 현황(2007년 7월 현재) (1)

승인 번호	기관명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방법	승인일자	작성 주기	조사 대상지역	조사수단
10105	통계청	산업총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20601	5년	전국	면접조사
10108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70529	5년	전국	면접조사
10109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80418	1년	전국	면접조사
10114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741113	1년	전국	면접조사
10119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771214	1년	전국	기타
10126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880705	1년	전국	면접조사
10127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880805	1년	전국	면접조사
10137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951222	1년	전국	면접조사
10141	통계청	농업총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20601	5년	전국	면접조사
10145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80418	1년	전국	면접조사
10146	통계청	어업총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90407	5년	전국	면접조사
10148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710709	1년	전국	면접조사
10155	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20000329	1년	전국	면접조사
10163	통계청	입업총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20040227	5년	전국	면접조사
10166	통계청	기업활동실태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20060612	1년	전국	면접조사
10506	과학기술부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0913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10616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0201	1년	전국	면접조사
11308	문화관광부	문화산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41016	1년	전국	면접조사
11309	문화관광부	광고산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50818	1년	전국	면접조사
11510	산업자원부	미시산업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20121	1년	전국	기타
11513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산업 경기전망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21112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주 : 순서는 통계청 승인번호 순임.

<표 2-3> 산업구조통계 현황(2007년 7월 현재) (2)

승인 번호	기관명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방법	승인일자	작성 주기	조사 대상지역	조사수단
11514	산업자원부	중소유통업실태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20030211	3년	전국	면접조사
11515	산업자원부	국내생물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31030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12007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31202	1년	전국	면접조사
12016	정보통신부	국내s/w기업수출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1028	1년	전국	면접조사
12018	정보통신부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1109	1년	전국	기타
13622	산림청	임업경영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01114	1년	시군구	면접조사
1420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19670829	1년	시도	면접조사
14203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91025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14212	중소기업청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70509	3년	전국	면접조사
14214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70615	2년	전국	면접조사
16401	방송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0411	1년	전국	기타
30203	한국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19710430	1년	전국	배포(유치)
30701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700223	1년	전국	배포(유치)
30902	시장경영 지원센터	재래시장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51214	2년	전국	면접조사
30904	시장경영 지원센터	점포경영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1002	2년	전국	면접조사
33603	한국노동 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0418	1년	전국	기타
34402	한국생산성 본부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19790919	1년	전국	기타
36006	한국무역협회	수출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30731	1년	전국	기타
36501	대한 건설협회	건설업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19760714	1년	전국	배포(유치)
36502	대한 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19890210	1년	전국	배포(유치)
36601	대한전문 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880521	1년	전국	배포(유치)
36901	대한설비 건설협회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31229	1년	전국	집합조사
37001	한국전기 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40302	1년	전국	배포(유치)
37002	한국전기 공사협회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90417	1년	전국	기타
37101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40416	1년	전국	배포(유치)
37102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10413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37202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1221	1년	전국	우편 (모사전송)
37302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로봇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60906	1년	전국	면접조사
37401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19960508	1년	전국	기타
38501	한국전자거래 진흥원	국내e-비즈니스현황과 전망에대한통계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10921	1년	전국	면접조사
38801	한국전력 거래소	상용자가발전업체 조사분석	일반통계	조사통계	19660620	1년	전국	배포(유치)
38903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50519	2년	전국	면접조사
39301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여성기업실태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30513	2년	전국	면접조사
39905	한국 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입주 기업체현황조사	일반통계	조사통계	20070321	2년	전국	면접조사

주 : 순서는 통계청 승인번호 순임.

3) 산업구조통계의 검토기준

- 산업구조통계의 검토사항은 통계품질의 일반적인 검토기준인 정확성, 적합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성, 서비스성 및 효율성 등 7개의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 정확성(accuracy)은 통계정보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통계의 오류가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뢰성(credibility)과 연관이 있음.
 - 적합성 또는 관련성(relevance)은 통계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반영 여부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기관은 제한된 자원하에서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하여야 함.
 - 시의성 또는 정시성(timeliness or punctuality)는 통상적으로 조사시점(혹은 조사완료시점)과 자료이용시점(혹은 공표시점) 사이의 시간의 길이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정확성과 상충(trade-off)되며, 적합성 또는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접근성(accessibility) 또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은 통계이용자의 자료획득 용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통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료제공 매체의 적절성 여부, 이용자의 자료접근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평가기준임.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또는 일관성(coherence)의 경우 통계에 대한 분석적 목적하에서 다른 통계적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의미하며, 이는 시간 또는 공간이 서로 다를지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을 근거로 집계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동일한 기준하에 통계간 비교분석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정합성(coordination)과도 관련이 있음.
 - 서비스성(serviceability) 또는 신뢰성(credibility)은 통계자료가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분석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요소로 접근가능성과 더불어 비교가능성 또는 일관성 및 정합성 등과 연관이 있음.

- 효율성(efficiency)은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수반된 비용과 비교하여 통계자료가 효율적으로 생산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차원임.
- 그러나, 이러한 품질평가의 기준들 중에는 단일 통계조사의 평가기준과 다수의 통계조사를 상호 비교 평가하는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산업구조통계조사를 비교 검토함에 있어 적합한 기준인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및 정합성(coordination)을 중심으로 검토함.
- 한편, 산업구조통계조사들간 조사방법론 상 상호비교는 ①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② 조사방법, ③ 조사내용, ④조사결과의 활용 등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검토함³⁾.
- 산업의 포괄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내에서 산업구조통계가 전체 또는 일정범위의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임.
- 조사단위는 사업체, 기업체 혹은 가구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산업구조통계에 있어서 조사단위의 설정 현황과 이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함.
-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주기, 조사방식, 조사실시기간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산업구조통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

3) ‘조사방법’이라는 용어는 통계청 메타DB나 기존연구 등에서 기술하는 목적에 따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조사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함.

조사관련 용어정리

통계청 메타DB 용어		본 연구	
조사방법	자계식, 타계식	기업방식	조사방법
	전수, 표본	조사방식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조사수단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체계	
조사주기	조사주기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기준시점	조사기준시점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기간	
	조사실시기간	조사실시기간	

- 특히, 조사실시기간은 산업구조통계조사별 특성에 따라 조사준비기간과 기업의 회계결산시기, 조사공표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계 조사간 비교·검토함.
-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산업구조통계별 공통항목의 포괄정도, 특정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 산업구조통계 조사결과의 활용은 조사통계의 부차적인 목적인 가공통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구조통계가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작성시 기초통계로서 활용정도를 살펴봄.

2.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범위 및 조사단위

1)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범위 현황 및 검토사항

□ 조사범위 현황

- 산업구조통계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내에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는 총 57종중 통계청 작성 통계가 14종, 기타기관 작성 통계가 13종 등 총 27종임.
 - 산업포괄 산업구조통계를 제외한 나머지 30종의 산업구조통계는 특수목적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체계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체계내에서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기업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임.
-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총 27종 산업구조통계중 통계청 작성 통계 14종에서 산업포괄범위가 가장 큰 통계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 KSIC 산업대분류중 S. 가사서비스업과 T.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음(<표 2-4> 참조).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단위인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

- 총조사 중 산업총조사의 경우 KSIC 산업대분류중 C. 광업, D. 제조업,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 조사단위인 사업체별로는 조사실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종사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모두 포괄하나, 12월 31일 현재 설립중에 있거나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국군 및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공공 직업보도소 교도소의 작업장,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의 사업체는 제외
- 서비스업총조사는 KSIC 산업대분류중 G. 도매 및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서비스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괄함.
 - 그러나 소분류에서 살펴보면 G. 도매 및 소매업 중 고정설비가 없는 행상과 이동차량 판매업자(KSIC 52820, 52899)와 H.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이동음식점업(KSIC 55223), O. 교육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을 제외함.
-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의 경우 A. 농림 및 임업, B. 어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대상에서 해당산업내 제외되고 있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가구를 포함함.
 - 이들 3가지 총조사는 조사단위가 기본적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포함하고 있는 회사, 조합 등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음.
 - 한편,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서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에 한하여 A. 농림 및 임업, B. 어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체를 포함함.

<표 2-4> 산업구조통계의 포괄범위

표준산업대분류	산업구조통계					
	산업포괄통계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 (13종)	특수산업포괄통계 (30종)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 (14종)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A. 농업 및 임업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입업경영실태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환경산업통계조사/ 부품소재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점밀실태조사/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기업재무분석/ 재래시장실태조사/ 점포경영실태조사/ 사업체매달조사/ 상장기업의무가치분석/ 수출산업실태조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체현황조사	
B. 어업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업경영조사		
C. 광업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로봇산업실태조사/ 국내생물산업실태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D. 제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한국전력통계/ 상수도통계/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원자력산업실태조사
F. 건설업		건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전기공사업통계조사/		
G.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중소유통업실태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H.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통계조사				
I. 운수업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J.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국내생물산업실태조사/ 국내s/w기업수출통계조사/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광고산업통계조사/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주 : 1) 음영부문은 통계조사가 해당 표준산업분류 대분류기준 산업을 모두 포괄함을 의미함.

- 총조사에 포괄하고 있지 못한 산업은 KSIC 산업대분류상 F. 건설업과 I. 운수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임.
- 이중 F. 건설업과 I. 운수업은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가 이들 산업군을 포괄함.
 - 건설업통계조사는 KSIC 산업대분류중 F. 건설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사단위별로는 건설관련업종을 등록한 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운수업통계조사의 경우 KSIC 산업대분류중 I. 운수업을 포괄하고, 조사단위별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및 기업체를 포함함.
- 이외에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 중 KSIC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1개의 산업군 이상을 포괄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가 있음.
 - 농업기본통계조사와 어업기본통계조사는 각각 A. 농업 및 임업중 농업과 B. 어업을 포괄하고 있는 조사통계로 조사대상은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의 조사대상이 같음.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산업총조사가 포괄하고 있는 산업대분류 가운데 E.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한 C. 광업, D. 제조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서비스업통계조사는 KSIC 산업대분류상에서 L. 부동산 및 임대업, M. 사업서비스업, O.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사업서비스업의 연구 및 개발업(KSIC 73)과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회원단체(KSIC 91)이 제외되고, 교육서비스업은 기타교육기관(KSIC 809)만 포괄함.
-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 이외에도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가 포괄하고 있는 대분류 산업군은 A. 농업 및 임업 중 임업과 B. 어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등이 있음.

- 임업을 포괄하고 있는 통계는 임업경영실태조사가 있으며, 어업의 경우 어업경영조사가 있음.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한국전력통계와 상수도통계, 상용자가발전업체 조사분석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승인통계중 한국수자원공사의 통계연보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통계,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도시가스업체편람,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열병합발전협회의 웹사이트 자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통계연보를 통해 동 산업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건설업은 건설업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사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사업통계조사,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기공사사업경영분석, 전기공사사업통계조사를 통해 포괄되고 있으나, 조사단위상의 기업체중 소방 및 오수업체와 난방사업공체가 제외됨.
- KSIC내 산업포괄 산업구조통계로 분류된 총 27종 통계이외에 특수산업포괄 산업구조통계로 분류되고 있는 총 30종의 산업구조통계는 KSIC의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포괄하거나 기타 특수산업 정의에 따른 산업을 포괄하고 있음.
- 또한 세분류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통계 이외에도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으나 특정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통계임.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와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의 경우 통신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통신업내 우편 및 소포송달업(KSIC 641)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조사의 분류체계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아닌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부문 상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음.
 - 로봇산업실태조사와 국내생물산업실태조사, 문화산업통계조사,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등이 제조업내에 포함되나, 제조업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 환경산업통계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등은 전산업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나, 특정 사업체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통계로 분류됨.

□ 조사범위에 대한 검토사항

-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포괄범위 상의 문제는 현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포괄범위가 전산업을 포괄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S. 가사서비스업과 T. 국제 및 외국기관 이외에도 A. 농업 및 임업, B. 어업내 가구단위의 사업체를 포괄하지 못함으로써 전산업을 포괄하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외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의 경우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하지 못하며, A. 농업과 임업내 임업법인사업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함.
-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산업구조통계에서 산업의 포괄범위가 작을수록 통계의 정합성을 보증하기 어려움.
 - 현재와 같은 산업의 포괄범위에 입각할 경우 개별 산업구조통계가 포괄하는 산업군에서 특정산업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산업에서 특정산업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이러한 관계로 전산업을 기준으로 개별 산업의 산출액이나 부가가치액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공통계인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 혹은 지역생산계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산업구조통계의 산업포괄범위와 관련한 검토사항 중 기타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조사와 통계청 조사 간에는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통계별로 조사목적이 다를 경우에는 산업의 포괄범위가 중복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사내용까지 중복될 경우에는 자원의 낭비가 초래됨.
- 통계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산업구조통계간의 산업포괄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특정통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산업총조사가 포괄하고 있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은 별도의 전수 조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한국전력통계와 상수도통계,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과 기타 비승인통계 및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00% 활용가능함 (<Box 1> 참조4).

<Box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공표항목 분석

구분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수도사업	
		행정자료 활용가능		행정자료 활용가능		행정자료 활용가능		행정자료 활용가능
사업체수	○	○	○	○	○	○	○	○
종사자수	○	○	○	○	○	○	○	○
급여액	○	○	○	○	○	○	○	○
매출(수입, 판매)액	○	○	○	○	○	○	○	○
주요생산비	○	○	○	○	○	○	○	○
부가가치	○	○	○	○	○	○	○	○
유형자산	○	○	○	○	○	○	○	○
발전설비용량	○	○	-	-	-	-	-	-
총생산(발전)량	○	○	-	-	○	○	○	○
판매(공급)량	○	○	○	○	○	○	○	○
구경별 배관시설	-	-	○	○	-	-	-	-

○ 2003년 기준 산업총조사에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 전기업의 사업체 수는 432개로 전기업에 관한 자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간하는 「한국전력통계(연간)」 보고서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발간하는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연간)」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로 100% 활용 가능
-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의 사업체 수는 44개로 한국가스공사(10개업체)에서 발간하는 「경영통계(연간)」 보고서와 한국도시가스협회(34개업체)에서 발간하는 「도시가스업체편람(연간)」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로 100% 활용 가능
-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사업체 수는 46개로 한국지역난방공사(11개 업체)와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로 활용 가능
- 수도사업의 사업체 수는 910개로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상수도통계(연간)」 보고서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간하는 「통계연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로 100% 활용 가능

4)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경제센서스 추진계획(안)”에서 인용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통계조사와 더불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내 통계조사 등을 통해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단위 현황 및 검토사항

□ 조사단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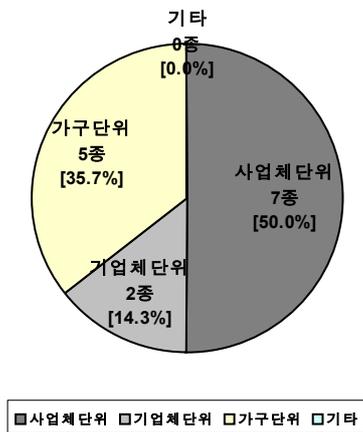
- 산업구조통계조사별 조사단위는 사업체, 기업체 혹은 사업체와 기업체의 혼용, 가구단위 그리고 조사단위가 불분명한 경우 4가지로 구분됨.
 - 특수산업포괄통계를 제외한 KSIC 내에서 산업을 포괄하는 27종 사업체 단위 통계는 9종, 기업체단위와 가구단위가 각각 5종, 그리고 조사단위가 불분명한 통계는 2종임.
 - 사업체와 기업체 단위를 혼용하는 경우는 표면상으로 사업체단위 통계이나 자본금,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유무형자산 등과 같이 기업체 본사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한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기업체단위로 조사하고 있음.
- 작성기관별로 구분하여 조사단위를 살펴보면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경우 총 14종 가운데 사업체 조사단위가 7종, 기업체가 2종 및 가구단위가 5종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 조사단위는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어업법인체통계조사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조사항목에 따라 기업체 조사단위를 혼용하고 있음.
 - 기업체단위 산업구조통계는 산업의 특성상 사업장별 통계취합이 어렵거나 사업장 이동이 큰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로 나타남.
 - 가구단위는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임업총조사 등 농림어업 관련 통계임.

○ 통계청 이외 기타기관이 작성하는 산업구조통계 13종 가운데 9종이 기업체단위이며, 2종이 사업체단위이고 나머지 2종은 단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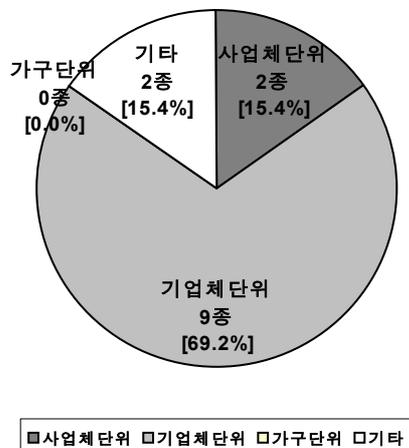
- 기업체단위 통계는 건설업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등임.

- 사업체단위는 어업경영조사, 한국전력통계 등이며, 임업경영실태조사, 상수도통계 등은 조사단위가 불분명함.

<그림 2-1>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단위별 분포



<그림 2-2>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단위별 분포



□ 조사단위에 대한 검토사항

- 조사단위는 조사통계에서 명시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혼용되면, 통계의 정확성이나 비교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사단위의 혼용이 불가피한 경우 하나의 조사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는 각 조사단위에 대한 모집단명부에 기초해야 할 것임.
 - 산업통계의 특성과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사업체단위 조사에서 조사항목별로 기업체단위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체별 최적의 배분방법을 고려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 모집단명부를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기업체 모집단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의 「법인등록번호」, 「본사현황」을 활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⁵⁾가 제시되고 있음.
 - 또한 가구단위의 조사가 혼용될 경우에도 가구에 대한 모집단명부의 확보가 필요할 것임.

3.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1)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주기·조사방식 현황 및 검토사항

□ 조사주기·조사방식 현황

- 산업의 포괄범위라는 측면에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주기와 조사기준시점, 조사방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산업구조통계의 정합성과 비교성을 평가함.
 - 산업구조통계 57종 중 특수산업포괄통계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제외한 26종을 대상으로 조사시점별 조사방식(전수조사와 표본조사)별 산업의 포괄정도를 분석함.

5) 예상해(2006),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통합실시 방법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SIC 대분류 산업을 기준으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주기 및 조사기준시점 별 산업의 포괄정도를 살펴보면, 0, 5자년이 산업의 포괄정도가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남.
- KSIC 대분류 산업 20개 범위 중 산업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해는 0, 5자년으로 전수조사에 의해서 17개 산업이 포괄되며, 이중 2개의 산업은 중복적으로 표본조사에 의해서도 포괄됨.
- 즉,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의한 모집단명부가 작성되는 18개 산업 (S. 가사서비스업과 T. 국제 및 외국기관 2개 산업을 제외) 중 N.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과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중 일부⁶⁾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이 전수조사에 의해서 포괄되며, A. 농업 및 임업, B. 어업 중 일부가 표본조사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포괄됨.
- 다음으로 산업의 포괄정도가 넓은 해로는 3, 8자년으로 13개 산업이 포괄되며, 이중 전수조사로는 7개, 표본조사로는 8개 산업이 포괄됨.
- 나머지 연도는 3, 8자년과 포괄산업의 수는 같으나, 단지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중 일부⁷⁾와 광업과 제조업에서 4인 이하 사업체가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포괄정도가 다소 협소함.
- 이렇게 0, 5자년에 산업의 포괄범위가 넓은 것은 5년주기 전수조사가 집중됨과 동시에 산업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서비스업총조사가 실시되는 데 기인함.
- 0, 5자년에 서비스업총조사와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등 4개의 5년 주기 전수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며, 3, 8자년에 산업총조사만 전수조사로 시행되고 있음.
- 또한 서비스총조사가 연간 표본조사인 서비스업통계조사에 비해 서비스업내에서 산업의 포괄범위가 광범위함.

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중 포함되지 않는 범위는 <box 1>을 참조.

7) 주 6)과 동일

<표 2-5> 산업구조통계의 주기별 조사방식 비교

산업분류	0자년		1자년		2자년		3자년		4자년		5자년		6자년		7자년		8자년		9자년		10자년	
	전수	표본	전수	표본																		
A. 농업 및 임업	●	○	●	○	●	○	●	○	●	○	●	○	●	○	●	○	●	○	●	○	●	○
B. 어업	●	○	●	○	●	○	●	○	●	○	●	○	●	○	●	○	●	○	●	○	●	○
C. 광업	●		●		●		●		●		●		●		●		●		●		●	
D. 제조업	●		●		●		●		●		●		●		●		●		●		●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		●		●		●		●		●		●		●		●	
F. 건설업	●		●		●		●		●		●		●		●		●		●		●	
G. 도매 및 소매업	●		○		○		○		○		○		○		○		○		○		○	
H. 숙박 및 음식점업	●		○		○		○		○		○		○		○		○		○		○	
I. 운수업	●		●		●		●		●		●		●		●		●		●		●	
J. 통신업	●										●										●	
K. 금융 및 보험업	●										●										●	
L. 부동산 및 임대업	●		○		○		○		○		○		○		○		○		○		○	
M. 사업서비스업	●		○		○		○		○		○		○		○		○		○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										●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		○		○		○		○		○		○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		○		○		○		○		○		○		○		○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		○		○		○		○		○		○		○		○	
S. 가사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기관																						
포괄산업 총계(20)	17	2	7	8	7	8	7	8	7	8	17	2	7	8	7	8	7	8	7	8	17	2
	17		13		13		13		13		17		13		13		13		13		17	

주 : 1) ●는 전수조사, ○는 표본조사이며, ● 5년주기 통계조사, 나머지는 1년주기 통계조사임.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제외하였으며, 총계는 한 산업에 두개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1개로 처리하여 합산

□ 조사주기·조사방식에 대한 검토사항

- 산업구조통계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인 총조사의 조사주기와 조사기준시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조사주기와 조사기준시점을 일치시킴에 따라 산업별 조사결과의 정합성과 비교성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전산업에 걸쳐 전수조사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연도가 0, 5자년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업간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3, 8자년에 실시되고 있는 산업총조사를 0, 5자년에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매년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총조사의 조사주기 변경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이나 물가통계, 경기지수 등 대부분의 가공통계의 기준연도가 0, 5자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방식의 경우 0, 5자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의 전수조사는 통계 응답 부담 및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로의 전환이나 행정자료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부문에 해당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표본조사도 요구되나, 조사의 어려움,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 현황 및 검토사항

□ 조사실시기간 현황

-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은 포괄산업의 특성에 따라 통계조사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상반기로 설정되어 있음.<표 2-6> 참조)

- 조사실시기간이 상반기 이전에 집중되는 것은 조사단위의 회계연도가 대부분 상반기로 설정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에서 총조사는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가 같은 조사실시기간중 동시에 실시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총조사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같은 조사기간에 동시에 실시됨.
-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는 2.14~2.28 기간중 조사가 실시되며, 농업총조사는 임업총조사와 더불어 통합조사표에 의해 실시됨.
- 서비스업총조사는 4.8~4.27 기간중 조사가 실시되며,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도 동일한 기간에 병행 조사되고 있음.
- 반면, 산업총조사는 다른 총조사와 조사실시기간보다 늦은 6월중에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로 시행되고 있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도 6월이후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기간 비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농업, 임업, 어업총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는 4월~6월 중으로 조사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임.
-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도 4월 또는 5월이후 조사기간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업기본통계조사와 어업기본통계조사는 조사대상연도의 당해 연도에 조사기간이 설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작성 산업구조통계중 한국전력통계도 조사대상연도 당해년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별 비교

승인번호	통계명	조사대상연도		익년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통계청 작성통계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임업총조사												
기타기관 작성통계	임업경영실태조사												
	어업경영조사												
	건설업통계												
	건설업경영분석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통계조사												
	전기공사업경영분석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한국전력통계												
	상수도통계												

□ 조사실시기간에 대한 검토사항

-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결산자료에 기초하여 조사되어야 하므로 기업의 회계결산 시기를 고려해야 하며, 법인세 신고기한이 3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을 동시에 감안하여 적어도 3월이후 조사실시기간이 설정되어야 함.
 - 단, 건설업, 금융업의 경우 조사실시기간이 익년도 4월 이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산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대분류기준 동일산업내 유사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 분포가 중복되어 있거나, 동일산업내 다른 성격의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실시기간이 분산되어 있어 통계응답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농림어업의 경우 농업, 임업, 어업총조사의 조사실시기간이 2월중인 반면, 임업경영실태조사가 6월, 어업경영조사가 5월~7월중으로 응답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통계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건설업통계조사, 전문건설업통계조사,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의 조사실시기간이 중복됨.
- 농업기본통계조사와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경우는 조사실시기간이 다른 통계와는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비교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산업구조통계는 조사실시기간이 조사대상년도의 익년기간 중에 설정되어 있으나,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는 조사대상년도 내에 설정되어 있음.
 - 특히, 통계조사의 성격이 유사한 농림어업총조사의 경우도 조사실시기간이 조사대상년도의 익년도로 있어 통계간 비교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의 조사실시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1) 조사내용의 현황

- 산업구조통계의 구성단위 중 조사내용은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주요 단위로 주요 조사내용 및 공통항목의 검토를 통해 산업간 비교 및 분석 가능성과 활용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사내용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우선 산업구조통계 중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 제공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의 누락여부 및 중복여부를 살펴봄.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총 23개 항목으로 분류함(<표 2-7> 참조).
 - 이중 공통조사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사항목은 6개 항목으로 1. 사업체 및 소재지/대표자명, 3. 본사명 및 소재지, 5. 경영조직/조직형태, 8. 자본금 및 출자금, 10.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1. 연간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임.⁸⁾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공통항목은 총 11개 항목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포함한 6개 공통조사항목이외에도 9. 부지 및 건물연면적,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14.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5. 유무형 고정자산 등 5개 항목이 공통항목으로 분류됨.
 - 이러한 5개의 공통항목 중 산업총조사는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를 조사대상 중 5인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영업손익은 조사하고 있으나, 내국소비세는 조사하고 있지 않음.

8) 조사항목 앞의 번호는 <표 2-7>의 공동항목 비교표에서 구분한 번호를 의미함.

**<표 2-7>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산업총조사 · 서비스업총조사의
공통항목 비교**

구분	조사항목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공통 항목	총조사 공통 항목
			5인이상	4인이하			
1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	●	●	●	●	●	●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				
3	본사명 및 소재지	●	●	●	●	●	●
4	사업장변동	●			●		
5	경영조직/조직형태	●	●		●	●	●
6	사업의종류	●			●		
7	사업체구분	●			●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	●	●
9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	●		●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	●	●	●	●
11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	●	●	●	●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	●		●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		●
14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		●		●
15	유·무형고정자산		●	●	●		●
16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			
17	주요 생산공정		●	●			
18	연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			
19	재고액		●				
20	연간수원별용수량		●				
21	연간 에너지사용량		●				
22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				
23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		

주 : ●표시는 조사항목이나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공란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통계메타DB

<표 2-8>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1)

구분	조사항목	농업 총조사	농업 기본 통계조사	임업 총조사	어업 총조사	어업 기본 통계조사	농어업 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1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	●	●	●	●	●	●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3	본사명 및 소재지	●	●	●	●	●	
4	사업장변동						
5	경영조직/조직형태						●
6	사업의종류						
7	사업체구분						●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
9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	●	●	●	●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	●	●	●	●
11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	●	●	●	●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14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5	유·무형고정자산	●	●	●	●	●	●
16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17	주요 생산공정						
18	연간 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9	재고액						
20	연간수원별용수량						
21	연간 에너지사용량						
22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23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	●	●	●	●	

주 : ●표시는 조사항목이나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공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통계메타DB

- KSIC 산업대분류중 A. 농업과 임업, B. 어업을 포괄하고 있는 통계조사에 대한 조사항목의 누락 및 중복여부를 살펴본 결과, 총 공통항목은 23개 항목중 7개 항목으로 조사됨(<표 2-8>).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 3. 본사명 및 소재지, 9. 부지 및 건물 연면적,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11.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15. 유·무형고정자산, 23.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중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의 경우 농업 및 임업, 어업총조사의 경우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와 달리 조사단위가 사업체가 아닌 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소재지 및 경영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명 및 소재지는 다른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1번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 조사항목중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과 11.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은 가구원수나 판매금액 범위, 재배면적을 통해 추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동 조사항목을 통한 기초자료로서의 한계가 존재함.
 - 부지 및 건물연면적은 경지면적 또는 양식업에서의 양식면적만 포함되며,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중 급여액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유·무형고정자산은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가축 및 가금류수와 농기계보유대수(농업), 자동차 보유대수(임업), 보유어선척수(어업) 등에 의해 포함되고 있음.
- KSIC 산업대분류중 A. 농림 및 임업, B. 수산업을 제외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산업구조통계별 조사항목의 누락 및 중복여부가 다르게 나타남.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총 12개 조사항목이 공통 조사항목으로 분류되는 반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항목인 사업장변동과 사업체구분, 사업의 종류가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산업총조사와 달리 부지면적과 연간수원별용수량, 연간에너지사용량,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건설업통계조사는 총 12개 조사항목이 공통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단위가 기업체단위로서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와 사업장변동, 사업체구분의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본금 및 출자금 등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반면,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16. 연간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실적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2-9>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2)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건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1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	●	●	●	●	●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				
3	본사명 및 소재지	●	●			●
4	사업장변동					
5	경영조직/조직형태	●	●	●	●	●
6	사업의종류		●	●	●	●
7	사업체구분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
9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	●	●	●
11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	●	●	●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	●	●	●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	●	●	●
14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5	유·무형고정자산	●	●			●
16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			
17	주요 생산공정	●				
18	연간 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				
19	재고액	●	●			
20	연간수원별용수량					
21	연간 에너지사용량					
22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23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	●	

주 : ●표시는 조사항목이나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공란은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통계메타DB

- 서비스업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는 공통조사항목이 총 9개로서 서비스업총조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운수업통계조사는 조사단위가 기업체로서 같은 조사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건설업통계조사와 조사항목이 유사하나, 산업 특성상 제품출하 및 재고 내역과 재고액 파악이 어려움으로 총 공통조사항목수가 건설업통계조사의 공통조사항목수보다 적은 총 10개로 나타남.
- 기타작성기관의 산업포괄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건설업부분의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이 건설업통계와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영분석 통계를 제외한 정보통신공사업, 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통계조사 등이 건설업통계의 조사항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임업부문의 임업경영실태조사 조사항목은 임업총조사와 비교하여 12.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13. 영업손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업부문의 어업경영조사 조사항목은 사업체를 조사단위 기준으로 하는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서 8. 자본금 및 출자금, 9. 부지 및 건물연면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조사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 전반적으로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구조통계에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전수조사일 경우 조사항목이 많아지고, 전수 및 표본조사 또는 표본조사일 경우 조사항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총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주요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업태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며,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많은 조사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9)

- 둘째, 농업 및 임업, 어업총조사와 농업기본통계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의 경우 주요 공통항목을 통해 산업구조를 파악하거나 국민계정과 투입산출표 등의 원자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현재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를 작성함에 있어 농업 및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가 농림어업부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통계의 서비스성 제고가 요구됨.
- 셋째, 건설업부문의 기타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이 통계청 작성 건설업통계조사의 조사항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동일한 산업군이 유사한 조사항목을 통해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통계조사간 통폐합 조정작업은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넷째, 주요 공통조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통계간 정합성 문제로 통계간 비교 및 단일 통계내 시계열 비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주요 공통항목인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산업구조통계의 정합성 여부를 살펴보면, 전수조사로 시행되는 산업총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간의 종사자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Box 2-1> 참조).
 - 총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간 차이는 총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조사대상년도 한해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통계작성의 목적상 통계 모집단을 확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최근의 사업장 변동까지 고려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표본조사인 연간 산업구조통계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를 보정함에 따라 같은 산업을 포괄하는

9) 통계청서비스통계과(2007),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평가결과 보고서 요약”에 의하면 서비스업의 경우 개인사업체 86.7%, 종사자수 4인 이하 사업체가 85.8%로 영세한 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조사하기가 곤란하다는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총조사와 연간 산업구조통계 조사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Box 2-2> 참조).

- 건설업 부분의 경우 건설업통계조사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간의 종사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양 통계간 동 조사항목에 대한 보정작업이 요구됨 (<Box 2-3> 참조).

○ 다섯째, 주요 공통항목의 개념과 정의는 산업구조통계간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주요 조사항목이 공통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사항목의 개념이 다를 경우 통계의 비교성과 서비스성이 저하될 수 있어 항목개념의 표준화가 요구됨.

- 또한 항목개념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은 통계응답자로 하여금 통계응답 부담으로 작용하여 통계응답자로부터 일관성이 있는 정확한 응답을 유도할 수 없음.

<표 2-10>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비교(3)

조사항목	건설업								임업·어업		전기·수도		
	건설업 통계	건설업 경영분석	정보통신 공사업 통계조사	정보통신 공사업 경영분석	전문 건설업 통계조사	설비 건설업 통계조사	전기 공사업 통계조사	전기 공사업 경영분석	임업경영 실태조사	어업경영 조사	한국전력 통계	상수도 통계	상용자가 발전업체 조사분석
1	사업체명 및 소재지/대표자명	●	●		●	●	●	●	●		●		●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3	본사명 및 소재지									●			
4	사업장변동												
5	경영조직/조직형태		●		●	●	●						
6	사업의종류		●		●	●	●	●	●				
7	사업체구분												
8	자본금 또는 출자금		●		●	●	●			●			
9	부지 및 건물 연면적								●				
10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		●	●	●	●	●	●	●	●	
11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	●		●	●	●		●	●	●	●	●
12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	●	●	●	●	
13	영업손익·내국소비세	●	●	●	●	●	●	●	●	●	●	●	
14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5	유·무형고정자산	●	●	●	●	●	●	●	●	●	●		
16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	●		●	●	●						
17	주요 생산공정								●				
18	연간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19	재고액												
20	연간수원별용수량												
21	연간 에너지사용량												
22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23	정보기술기반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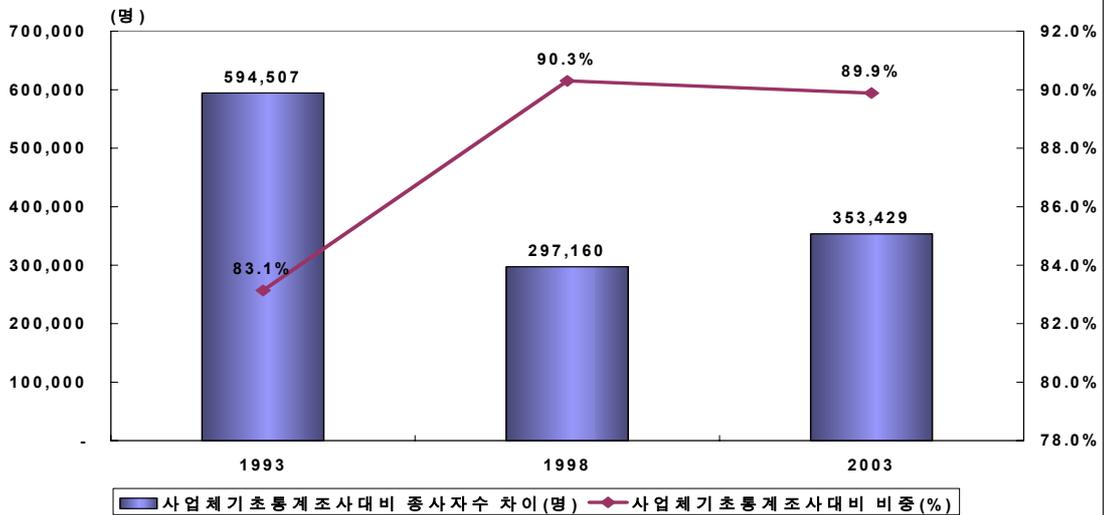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통계정책시스템

<Box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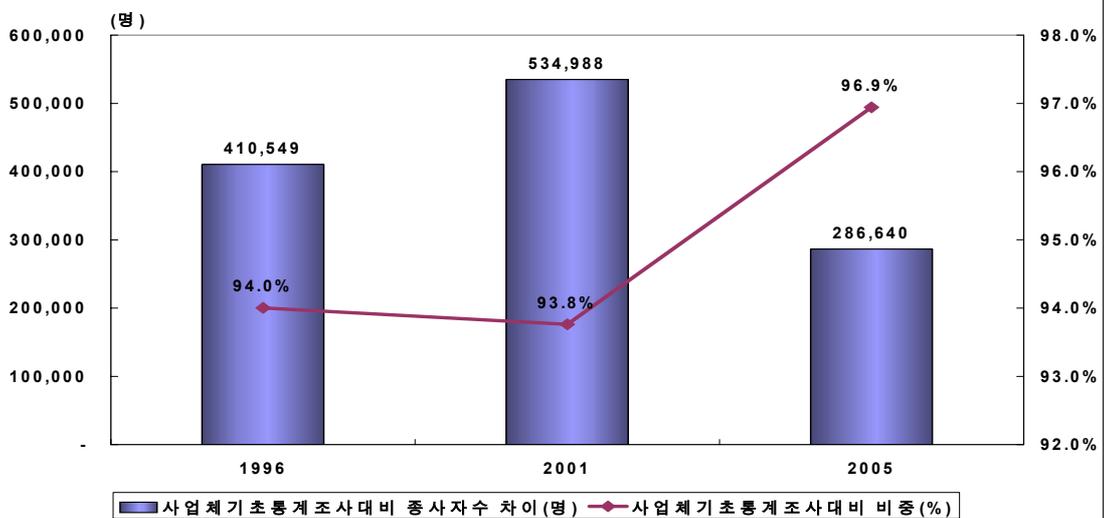
○ 주요 공통조사항목인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총조사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비교해 본 결과, 2003년 현재 산업총조사의 종사자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 대비 89.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총조사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의 종사자수는 서비스업총조사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같이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종사자수 대비 96.9% 수준으로 조사됨.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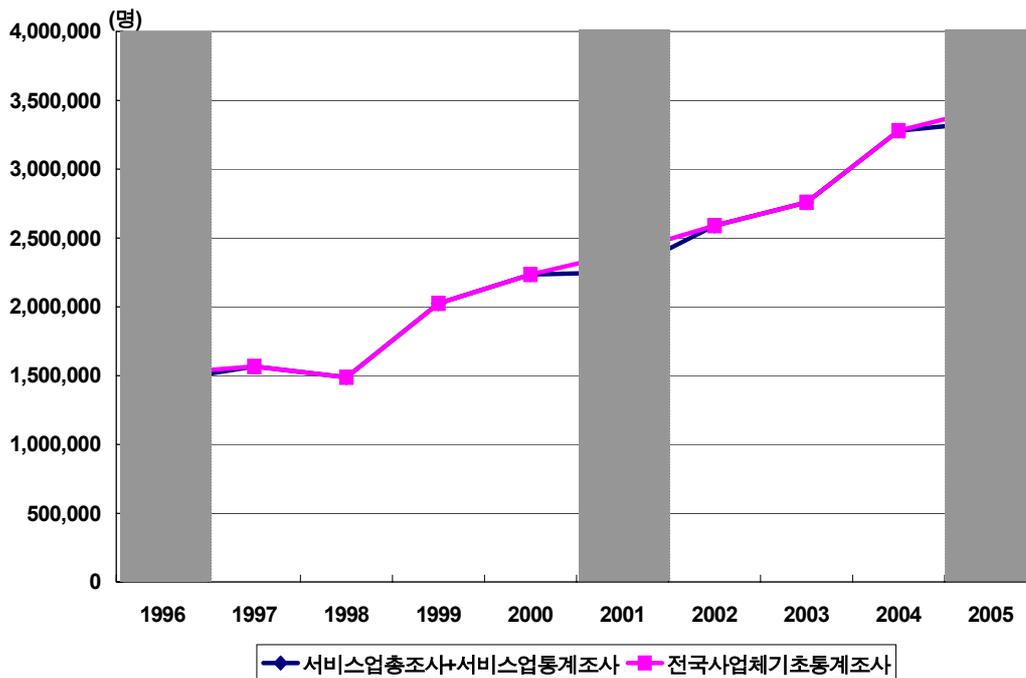


<Box 2-2>

○ 동일한 산업포괄범위내에서 시계열간 비교성을 검토해 보면, 서비스업 부문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총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간 종사자수 시계열 추이는 총조사 대상기간(1996년, 2001년, 2005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수 추이와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총조사가 실시된 1996년과 2001년, 2005년 연도에만 종사자수 추이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서비스업부문 산업구조통계의 종사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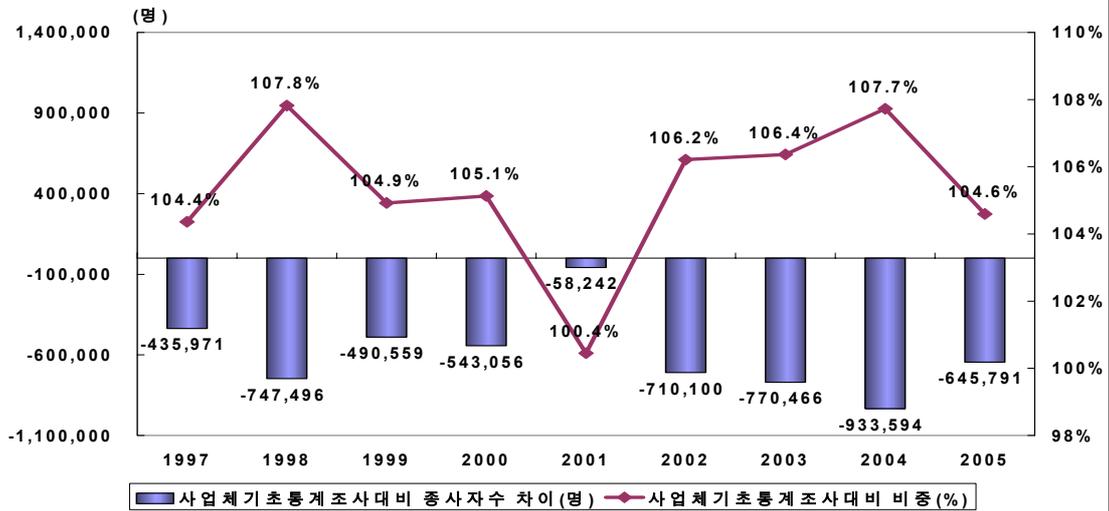


<Box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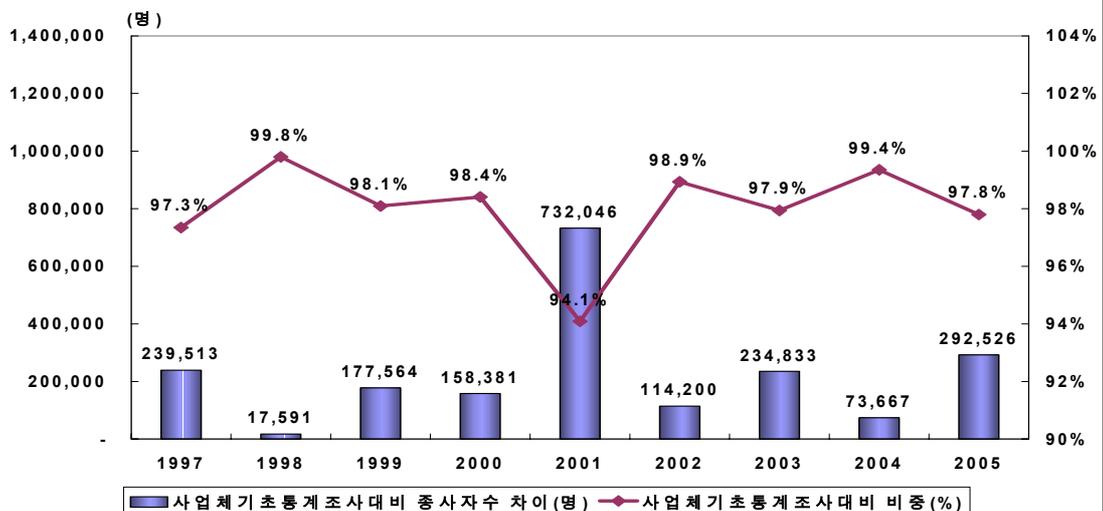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의 산업포괄범위와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산업포괄범위를 맞춘후 종사자수를 비교한 결과,

- 개별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총 종사자수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을 제외할 경우 개별 통계조사의 총 종사자수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건설업통계조사에 의해 종사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함을 보여줌.

서비스업부문의 사업체기초통계와 개별통계의 총 종사자수 비교(건설업포함)



서비스업부문의 사업체기초통계와 개별통계의 총 종사자수 비교(건설업제외)



5. 산업구조통계 조사결과의 활용 :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1) 조사결과의 활용 현황

- 산업구조통계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공통계의 작성시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는 점임.
 - 산업구조통계의 활용은 크게 산업구조통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양한 분석이나 지표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와 가공통계 작성시 기초자료로서의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
 - 이중 직접적인 통계이용은 통계이용자의 다양하고, 이용목적에 따라 활용범위나 빈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현황파악에 기본적인 제약이 있음.
 - 반면에 가공통계에 있어서 활용현황은 가공통계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개별 가공통계의 작성지침 등에 산업구조통계의 활용 목적이나 정도가 기술되어 있어 활용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이에 본 소절에서는 산업구조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가공통계 가운데 국가적 핵심통계이면서 비교적 산업구조통계의 활용범위가 넓은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우선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은 일정기간(보통 1년) 중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활동 결과와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¹⁰⁾에 따라 작성하는 국민경제의 종합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음.¹¹⁾
 -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은 5개의 표(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금융거래, 국외거래)로 이루어진 통합계정과 3개(소득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의 제도부문별계정, 그리고 19개의 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0) 국민계정의 국제기준은 UN에서 마련하여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의 국제기준은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임.

11)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p.3-4 참조

<그림 2-3> 국민계정의 구조와 분류체계



자료 : 한국은행(2005),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p. 92.

- 국민계정의 작성주기는 분기속보, 분기잠정은 분기별로, 연간잠정 및 연간확정은 연도별로 작성되어 공표되고 있고, 각 항목의 추계방법은 기초자료의 성격 및 품질에 따라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또한 국민계정은 0, 5자년의 5년 주기로 기준연도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모든 추계된 항목의 통계치가 변경된 기준연도에 입각하여 재계상됨.
- 국민계정의 작성시 활용되는 산업구조통계는 7개정도이며, 주로 생산계정의 추계시 활용되고, 부분적으로 소득계정을 추계할 때에도 사용됨.
- 국민계정의 추계시 이용되는 통계는 총 70개이며, 이중 산업구조통계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 6개의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경영분석이 활용되고 있음.
- 국민계정의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활용도는 전반적으로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있어서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산업별로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산업구조통계가 활용되고 있으나, 농림어업, 금융보험업, 공공국방행

정 및 사회보장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통계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총조사의 활용범위가 연간조사인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협소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국한됨.

<표 2-11> 국민계정의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이용현황

산업구조통계	작성기관	산업범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통계청	광업, 제조업
건설업통계조사	통계청	건설업
건설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일부(일반건설업)
운수업통계조사	통계청	운수업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통계조사	통계청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오락문화서비스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청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주: 산업범위는 국민계정 편제시 산업분류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 특히, 도소매업의 국내총생산(GDP) 추계시 기초통계인 도소매통계조사, 서비스총조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직영판매의 처리, 명확한 산업분류의 미적용, 마진율의 불안정성, 통계조사표양식의 변경에 따른 일관성 결여 등의 현실적 적용상 문제로 인하여 산업연관표의 마진율, 누락율, 상품화율 등을 이용하고 있음.¹²⁾
- 직영판매의 처리 문제는 제조업 제품을 제조업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에서 도소매업의 생산액이나 매출액으로 계상할 가능성에 대한 것임.
- 명확한 산업분류의 미적용은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체의 경우 산업활동별로 분류하지 않고, 매출액의 비중이 큰 산업부터 2개를 조사하여 하나의 주된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임.

12) 이궁희 외(2004),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작성환경 개선 방안-국민소득통계와 관련 기초통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p.74 참조.

- 마진율의 불안정성 문제는 도소매업의 산출액을 나타내는 마진액은 도소매업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하여 산출할 수 있는데, 마진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인 마진율에 대한 도소매업통계조사의 결과가 여타의 관련 통계에 비해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통계조사표양식의 변경에 따른 일관성 결여문제는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표양식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통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임.
- 한편,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형식의 종합적인 통계표임.¹³⁾
- 산업연관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투입되었는가(투입구조)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부문에 중간수요 혹은 최종수요의 형태로 판매되었는가(배분구조)와 같이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됨.
 - 산업연관표의 작성주기는 실측표의 경우에는 0, 5자년을 기준으로 5년 주기로 작성되어 공표되며, 연장표는 작성주기가 부정기적이나 대체로 실측표 작성주기의 중간연도인 3, 8자년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산업연관표 작성시 활용되는 통계는 총 110개이며, 이중 산업구조통계는 7개종으로 전체의 6.4%수준임.
-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 중 산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5종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이 활용되고 있음.
- 산업연관표의 작성시 활용되는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범위는 국민계정에

13) 한국은행(2004), 『산업연관분석 해설』, p.9 참조.

비해 협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연관표 작성시 산업구조통계 활용의 산업포괄범위는 광업, 제조업, 전력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협의의 기타서비스업 등의 수준임.
- 농림어업, 건설업, 가스·열공급·수도업, 금융보험업, 방송통신업, 교육·연구·의료·보건업 등에는 산업구조통계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도 국민계정에서 활용되는 범위보다 협소하며, 서비스업총조사의 활용은 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 한정되고 있음.

<표 2-12> 산업연관표 작성시 산업구조통계 이용 현황

산업구조통계	작성기관	산업범위
산업총조사	통계청	광업, 제조업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산업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서비스업통계조사	통계청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청	부동산사업서비스업,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부동산사업서비스업, (협의)기타서비스업

주: 산업범위는 산업연관표 작성시 산업대분류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

- 한편, 산업구조통계 총 57종중 특수산업포괄통계 30종은 특수산업과 특수 목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또한 특수산업포괄통계의 대부분이 실태조사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수정 및 보완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1)

산업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농림어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작물통계조사	농림부
	농협조사월보	농협중앙회
	농축산물소득자료	농촌진흥청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비료판매자료	농협중앙회
	농약연보	한국농약공업협회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가축통계조사	농림부
	도축검사실적	농림부
	초지조성면적, 초지조성단비	농림부
	임산물생산통계	산림청
	어업생산통계조사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통계연보	한국원양어업협회
	농림어업서비스관련 결산서	농·수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추곡 및 하곡수매량, 수매단가	농림부
	우유생산실적	농림부
	축잡, 추잡 생산량 및 수매액, 수매단가	농림부
	화훼작물생산실적	농림부
	수삼생산량, 정부수매량, 정부수매액, 정부수매단가	한국인삼공사
	인삼 신규 식재면적, 인삼생산량, 생산액, 수매단가, 금산도매시장 수삼가격	농협중앙회
	수렵생산량	환경부
	농림어업서비스 관련 인원 현황 및 인건비 지급액	농·수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조립투자실적	산림청
	옹재, 죽재 생산실적 및 입목 벌채허가량	산림청
	축산물생산비조사	농림부
	입담배 (예상)생산량 및 수매단가	KT&G
	특용작물생산실적	농림부
오리알, 봉밀 등 기타 가축통계	농림부	
일반사슴농장분양가격, 녹용생산량 및 가격	한국양록협회	
광업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염생산량	대한염업조합
	석탄생산량	대한석탄협회
	골재수급현황	건설교통부
제조업	광공업통계조사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정곡검사실적	국립농수산물검사소
전기가스수도업	정곡생산량	농림부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결산서(전력업)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전력판매속보	한국전력공사
	핵연료도입단가	한국수력원자력
	결산서(가스업)	한국가스공사
	가스판매실적	한국가스공사, 32개 도시가스사
	LNG도입실적	한국가스공사
	열공급판매실적	28개 집단에너지사업자
	급수수익실적	70여개 지방자치단체
	수도판매실적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수도업)	한국수자원공사	
상용자가발전실적	전력거래소	
집단지너지사업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행정자치부	

주 : 음영부문은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2)

산업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건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건설업통계조사	통계청
	월별 건설기성액	통계청
	건설수주통계	통계청
	건설업체 공종별 공사실적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통계청
	건축착공면적	건설교통부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
	지방세정액	행정자치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행정자치부
	건설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공사실적 자료	각 조사대상기관
	매월노동통계(임금)	노동부
건설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도소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국세청 외형거래액	국세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수출액 및 수입액	관세청
	비료판매량 및 판매액	농협중앙회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총조사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국세청외형거래액	국세청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운수, 창고, 통신업	호텔사업실적	표본 호텔
	음식업체 수	한국음식업중앙회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운수업통계조사	통계청
	건설교통통계연보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결산서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관련 결산서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단 등 지하철공사
	한국도로공사 결산서	한국도로공사
	항공사 결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공항공사 결산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운연보	한국선주협회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정보통신부
	택배업체 결산서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유선통신업체 결산서	KT, 데이콤 등
	무선통신업체 결산서	SKT, KTF, LGT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산업생산지수	통계청
	차량등록대수	건설교통부
	전세 및 관광버스수송 및 수입 실적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택시등록 및 면허대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유료도로 요금수입, 이용차량대수	한국도로공사
	정기여객선수송실적 및 운임수입실적	한국해운조합
	여객선 수송실적 및 화물선 수송실적, 항만선박입출항 현황	해양수산부
	외항해운수송실적 및 운임수입실적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보관량 및 보관료 수입실적	롯데냉동, 대한통운 등
	지하철여객수송실적 및 영업수입실적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단 등 지하철공사
	철도여객 및 화물 수송, 수입실적	한국철도공사
	항만하역취급실적 및 요금수입실적	한국항만물류협회
	항공여객 및 화물수송 수입실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기착륙료 및 공항 이용료수입 실적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선통신사별 영업 수입실적	KT, 데이콤 등
무선통신사별 영업 수입실적	SKT, KTF, LGT	
우편취급실적 및 요금수입실적	우정사업본부	
택배업체별 택배취급 및 수입실적	한진택배, 현대택배 등	
유무선통신 가입자현황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월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보험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금융기관 결산서	금융감독원 및 개별 금융기관
	자금순환표	한국은행

주 : 음영부분은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3)

산업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부동산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가구수통계	행정자치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서비스업	중앙정부예산	기획예산처
	중앙정부결산	재정경제부
	기금운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기획예산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재정경제부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재정경제부
	기금결산보고서	재정경제부
	자치단체예산개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중앙·지방예산서(세입·세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교육비지출액누계	해당 교육청
	보험진료비 청구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인원수	국방부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사회보장기구 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서비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연도별 출원건수	특허청
	특허권수익	한국은행
	연구소통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통신수입액(표본조사)	연합뉴스
	방송사별 수입현황(표본조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매체별 수입현황(표본조사)	제일기획
	서비스업통계조사(표본조사)	국내 연구기관
	광고연감	제일기획
	중앙·지방예산서(세입·세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서비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지방예산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교육비지출액누계	해당 교육청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요양기관종별 총진료비,설립구분별 총진료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서비스업통계조사표	해당 업체
	사회복지현황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서비스업통계조사	통계청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국세청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중앙·지방예산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보험진료비 청구금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사회보장기구인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 음영부문은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표 2-13> 국민계정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4)

산업구분	자료명	작성기관
오락문화서비스업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영상물등급통계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관람객수 및 상영수입	영화진흥위원회
	도소매업판매액지수	통계청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대한축구협회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한국야구위원회
	관람객수 및 입장수입	대한농구협회
	복권수입 및 환급액	복권위원회
	도박장 매출액	각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매출액 및 환급액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본부·경륜본부
	골프장 입장인원수	한국골프장협회
	서비스업통계조사표	해당 업체
	노래방, PC방, 오락장 현황	문화관광부
	서비스업통계조사	통계청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국세청
	중앙·지방예산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활동지수	통계청
	도소매업판매액지수	통계청
	자동차 등록대수	건설교통부
	자동차 정비업체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골프장 입장인원수	한국골프장협회
	음식업, 숙박업, 이미용, 목욕업, 골프장업 실질 산출액 증감률	한국은행(해당부문 산업 담당자)
	가사보조인 알선건수 및 단가	중앙고용정보원
	서비스업통계조사표(표본조사)	해당 업체
	보육통계	여성가족부
	정당별 지출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원수	한국노총, 민주노총
	서비스업 통계조사	통계청
	법인 및 개인의 재무재표	국세청
	중앙·지방예산서(세입·세출)	각 부처, 도·시·군·구
	중앙정부세출	재정경제부
	지방정부지출액누계	해당 도·시·군
	공무원정원 총괄표	행정자치부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현재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 음영부문은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표 2-14>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1)

산업구분	발간물명	발간기관	
1.농림어업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해양수산물통계연보	해양수산부	
	임업통계연보	산림청	
	임산물 생산통계	산림청	
	작물통계	농림부	
	가축통계	농림부	
	기타가축통계	농림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농림부	
	농협조사원보	농협중앙회	
2.광업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축협중앙회	
	광산물수급현황	한국지진자원연구소	
	산업총조사	통계청	
3.제조업	각종 협회자료		
	음식료품	산업총조사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통계청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양청자료	농림부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농림부
	섬유 및 가죽제품	회원(조합)관리	대한니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면방직통계표(원보)	대한방직협회
		잡업, 누에생산 및 판매 현황	대한잡사회
		회원사(면방공장)정보	한국면방공업협동조합
		염색가공업현황(연보)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별 기본실태조사(연보)	한국타원공업협동조합
		정기실태조사(연보)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수출입통계(연, 월별)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화섬편람	한국화섬협회
		제사수출입통계(연보)	한국생시수출조합
		섬유산업통계원보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의류소비실태조사보고서(분기)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섬유연감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물중분석	한국섬유산업연합회(KOFOTI)
		월별수출입통계	한국리류산업연합회
	월간소모방(현, 격월)	한국소모방협회	
	섬유직물(분기, 수출입통계)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폴리에스테르(PE) 직물수출승인실적(월)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화학섬유산업보고서	하나경제연구소	
	관련 연구 자료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련업체의 사업보고서		
	목재 및 종이제품	산업총조사	통계청
		합판 및 보드통계	한국합판보드협회
펄프지류통계월보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산업생산연보		통계청	
인쇄, 출판 및 복제	산업총조사	통계청	
	광고연감	제일기획	
	산업생산연보	통계청	
석유 석탄제품	협회의 생산통계		
	산업총조사	통계청	
	석유류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생산액자료	POSCO	
가구 및 기타 제조업품	정유회사(SK, LG-Caltex, 인천정유, 현대정유, S-oil)자료		
	한국전력공사의 자료		
4.전력, 도시가스, 열공급업 및 수도	산업총조사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통계청	
	전력	주요 전력통계 속보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상용차기발전업체조사분석	한국전력거래소
		도시가스사업편람	한국도시가스협회
	연공급업	한국가스공사결산서	한국가스공사
		각 도시가스회사 결산서	각 도시가스회사
	수도	한국지역난방공사 결산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업체 결산서	각 집단에너지 업체별 결산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수도	지방제정연감	내무부
지방공기업 결산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결산서		한국수자원공사	

<표 2-14> 산업연관표 작성관련 주요 이용자료 현황(2)

산업구분	발간물명	발간기관	
5.도소매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도소매업총조사(현재 서비스업총조사로 개편)	통계청	
	국세청 과표자료	국세청	
	농산물유통실태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서비스업	양곡관리특별회계 결산서	농림부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음식점 숙박	관광호텔 운영실적	관광호텔협회
		콘도업체별 객실수	한국휴양콘도협회
		회원사 연속박객수	한국유스호스텔연맹
	금융보험	신용보증재단 현황	신용보증재단연합회
		각 기관 결산서	각 기관
		경제통계월보	한국은행
		금융통계월보	금융감독원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뮤추얼펀드 현황	한국은행
		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사금융업자현황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산업별 대출금 현황	한국은행
		생명보험사 손익계산서	생명보험협회
		은행경영통계	금융감독원
		자금순환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증권에탁통계	증권예탁원
		증권통계	증권거래소
	통화금융(월보)	한국은행	
	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각 방송사 P/L자료	각 방송사
		통신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정보통신부
		국내 택배업체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부동산 사업서비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기술거래실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광고연감	제일기획
		농업기분통계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농림부
		교육 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연구 의료 보건	각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개발원 자료	교육개발원
		노동백서	노동부
		사교육비 실태 조사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결산서	대한적십자사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훈연감		국가보훈처	
2003 전국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환경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통계		환경부	
폐수중말처리시설 운영현황		환경부	
한국경제연감		한국경제인연합회	
연합연감		연합뉴스	
기타서비스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인구 및 주택총조사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결혼정보회사 업계현황 및 실태	(주) 선우	

주 : 1) 산출액 추계를 위해서는 주요 이용자료이외 각 부문별 결산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이용함.

2) 음영부문은 승인통계중 산업구조통계를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내부자료

2) 조사결과의 활용에 대한 검토사항

- 국민소득계정과 산업연관표 등 가공통계 작성시 이용되는 기초통계로서의 산업구조통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서비스업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임.
 - 통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됨.
- 그러나, 서비스업 부문은 새로운 경제활동의 생성과 더불어 지하생산, 비공식부문 생산 등 비관측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크며, 5인이하 영세사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부문
- 이에 많은 조사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확성 또는 통계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유사통계간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건설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통계간 관련성

조사명	통계명	증가율 ²⁾	수준 ³⁾
도소매업 동태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판매액지수 매출액	10.13	4.37
도소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동태조사	도소매업 부가가치 도소매업 활동지수	27.62	12.50
서비스업 통계조사 서비스업 동태조사	음식숙박업 부가가치 음식숙박업 경상지수	29.98	17.13
광업제조업 동태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제조업 산업생산지수(명목) 제조업 부가가치	5.22	4.05
건설업 건설통계조사 건설업 건설기성조사	기성액 기성액	1.85	1.57

주: 1) 「국가통계의 품질 개선과 작성환경 개선방안」(이궁희, 이재형외, 2004)에서 재인용.

2) 2000년을 100으로 지수화한 후 증가율 차이를 평균함.

3) 2000년을 100으로 지수화한 후 지표차이를 평균함.

4) 분석기간은 1999년~2002년

- 산업구조통계가 기초통계로서 가공통계에서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조 및 행정통계의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음.
- 통계조사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원인 행정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 특히, 국세청 납세 자료 등 행정자료를 통해 산업구조통계를 보완할 경우 통계의 정확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정책목적에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이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통계법상의 법적 보완이 필요함.
- 한편, 산업구조통계상의 조사항목과 가공통계의 조사항목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을 일치시키거나 가공통계에서 요구되는 통계를 유추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조정하는 것도 기초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3장 주요국의 경제센서스 실시 현황

1.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유형과 국제적 흐름

- 국제적으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유형은 경제센서스, 통합적 표본조사 및 혼합형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센서스(Economic census)는 모집단명부 확보와 동시에 통일된 조사 방법에 의해서 일정한 주기(주로 5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형태
 - 산업구조를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별 산업조사에 대한 설계와 모집단명부의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며,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오랜 동안 발전해왔고,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 통합적 표본조사(Integrated Economic Survey)는 행정자료 등을 통해 수시로 모집단명부를 확보·관리하며, 포괄적인 산업범위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
 - 통계수집의 시의성과 대규모 전수조사의 단점인 비표본오차와 응답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현재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표본조사만으로도 국민계정과 같은 가공통계나 기타 경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음.
- 혼합형은 개별국의 특성에 맞춰 센서스형과 표본조사형의 조사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주로 산업의 포괄범위나 조사주기별로 양자의 조사를 병행하는 형태
 - 우리나라, 일본 및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태로서 각국의 산업구조 변화 및 통계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님.

- 산업구조통계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 흐름은 경제센서스형과 통합적 표본조사형으로 2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초기에는 경제센서스를 실시하였으나 영국은 1972년 이후, 호주는 1994년 이후 그리고 캐나다는 1997년부터 자체적으로 개발된 통합적 표본조사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혼합형에서 2004년(조사기준시점)¹⁴조사부터 경제센서스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일본 또한 지금까지의 혼합형에서 2010년(조사기준시점)조사부터 경제센서스로 전환할 예정임.

2. 미국의 경제센서스

1) 경제센서스의 도입과 실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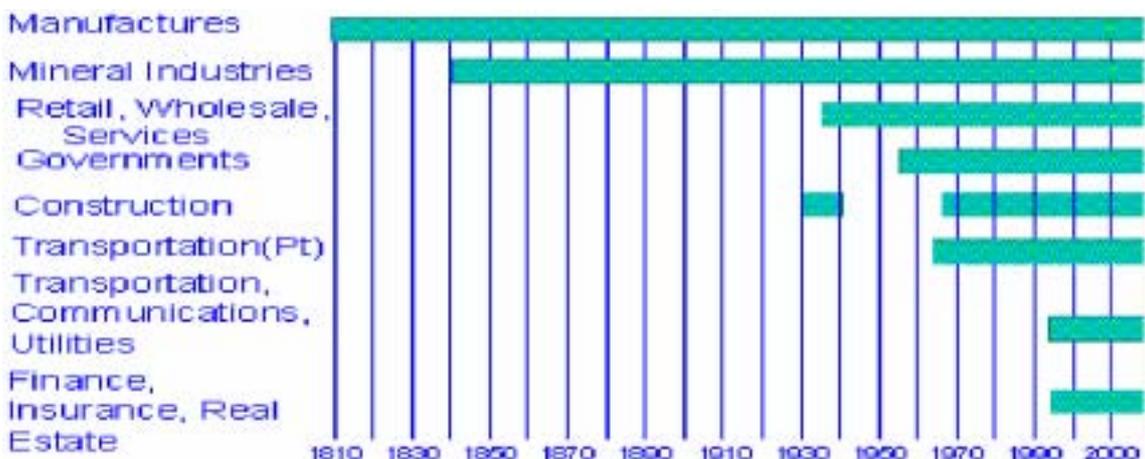
- 미국에서 경제센서스가 도입된 것은 1810년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1800년대에는 독립적인 경제조사라기 보다는 국가전체의 센서스에 부속된 제조업에 대한 조사라고 볼 수 있음.
- 1810년에 10년 주기로 행해지던 미국 센서스에 제조업 생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면서 경제센서스가 처음 도입되었고, 1820년에 제조업의 원자재, 고용, 설비 등 조사항목이 확대됨.
- 1840년 센서스에서는 제조업을 제품의 성격에 따라 30개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을 광업과 어업으로 확대함.
- 1880년 센서스에서는 산업별로 29개의 공통항목과 2000여개의 차별화된 세부 조사항목을 설계하여 조사하였고, 1890년과 1900년에는 지역별 산업별 세부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항목의 과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1900년-1945년(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조사주기의 단축과 산업 범위의 확대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경제센서스가 독립적인 센서스로 발전하지는 못함.

14) 주요국의 경제센서스 관련 연도표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조사기준시점을 의미함.

- 1905년부터 제조업에 대한 조사주기가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로 명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편조사를 실시
 - 1917년과 1918년에는 전쟁 및 군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1920년대에는 제조업에 대해 격년주기, 즉 1921년, 1923년, 1925년, 1927년, 1929년에 조사가 실시됨.
 - 1930년에는 제조업이외에 광업, 건설업, 유통산업, 숙박업이 포함된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1935년에는 조사 산업을 광고, 라디오 방송, 은행, 보험까지 확대하였으나, 1937년부터는 다시 조사대상을 제조업만으로 축소하여 1940년 조사까지 실시되었고, 이후 1943년과 1945년에는 전쟁 관련으로 경제 센서스가 실시되지 않음.
-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표준산업분류의 발전과 컴퓨터기술의 응용 등에 의해 경제센서스가 하나의 독립적인 센서스로 정착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 1947년에 실시된 제조업에 대한 경제센서스에는 새로운 표준산업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IC)가 활용되었고, 사업자명부작성을 위한 사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약식조사표가 사용됨.
 - 1948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 조사주기가 5년으로 변경되었고, 조사대상 산업도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그리고 일부서비스업으로 확대됨.
 - 1953년에는 센서스에 대한 예산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센서스가 중단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정부, 학계, 경제계 등의 비판제기로 경제센서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쳐 실시하였고, 이때부터 센서스국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조세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함.
 - 1967년부터는 인구센서스와 경제센서스의 자료처리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 년도를 2와 7로 끝나는 해로 결정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센서스로 분리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70년대부터 경제센서스는 산업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산업범위의 확대와 세분화, 조사항목의 세분화 등을 통해 통계수요를 충족하고 있음.

- 1972년에는 새롭게 작성된 표준산업분류(SIC)에 따라 센서스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소수민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조사(Survey of Minority-owned business enterprises)도 실시됨.
- 1977년 조사에는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서비스, 건설, 광업 등 조사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국민총생산(GDP) 조사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가 기획되었고, 표준통계사업체 명부(Standard Statistical Establishment List)작성과 연간 실시되는 기업체 조직 조사(Company Organization Survey), 산업 이외에 소수민족 및 여성소유의 기업조사(Survey of Women-owned business enterprises)를 특별조사로 추가하여 실시함.
- 1982년 및 198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였고, 1992년 조사에는 금융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사실상 민간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됨.
- 1997년 조사부터는 산업분류체제를 SIC 대신 북미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를 채택하였고,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 및 정보 활용을 시도함.
- 2002년 조사에서는 2002년 NAICS을 따르되 도매업(전자상 도매,중개 및 대리인업), 통신업(인터넷 출판 및 방송업, 인터넷서비스, 웹서치포털 및 자료처리서비스업)에 일부산업을 추가하였고 건설업은 3개의 중분류 산업으로 재분류하고 주거용건물 수리업을 새로 추가함.

<그림 3-1> 미국 경제센서스의 시대별 산업포괄범위



자료: John Medina and Paul Zeisset(2005), The Economic Census and You.

2) 경제센서스의 일반사항

□ 조사방법의 개요

-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현재 2, 7자년을 기준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음.
 - 조사주기는 연방법 13조(Title 13) 131, 191, 224항(Section)에 의거하여 매5년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우편조사에 의하며, 불성실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음.
 - 경제센서스의 통계적 기본단위인 사업체(Establishment)는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로 정의하며, 기업(Company)은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로 정의하고 있음.
 - 2002년 조사기준으로 약2천6백만개의 사업체가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으로 포함됨.
- 미국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50개 주 전지역과 NAICS의 대분류 20개 산업을 조상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조사임.
 - 지역구분은 50개 주(State), 973개 대도시(Metro areas), 3,140개 군(County), 1,000 개이상의 마을(Place)(2,500명이상의 거주자), 30,000 개의 우편번호(ZIP code)로 구분되어짐.
 - 산업분류는 1997년 센서스부터 NAICS에 기초하는데, 대분류는 20개, 3단위의 중분류는 96개 그리고 4단위 소분류는 313종류이며, 6단위의 세세분류는 1,170개 산업에 이르고 있음.
- 미국 경제센서스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혼용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표에 의한 조사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경우로 구분됨.
 - 조사표에 의한 조사는 ①대규모 기업(다수의 사업체를 가진 모든 기업과 일정기준 이상의 급여액을 지출하는 모든 기업), ② 소규모 사업체의 표

본(일정기준 미만의 급여액을 가지고 있는 단일 사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됨.

-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경우는 ①소규모 사업체의 일부(일정기준 미만의 급여액을 가진 단일 사업체), ②유급종사자가 없는 모든 자영업은 다른 연방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급여액의 임계치가 업종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종사자가 10명이하의 사업체들로서, 경제센서스에서 포괄하는 사업체 전체 매출액의 10%미만을 차지함.
- 자영업 또한 경제센서스가 포괄하는 모든 사업체 판매액의 10%미만을 차지하는데, 천달러 혹은 그 이상의 판매액을 보고하는 자영업주만을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에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경제센서스에서 공표되지 않고, 연간자영업자통계(Annual Nonemployee Statistics)에서 발표됨.
- 2002년 경제센서스에서는 약 5백만개의 조사표(약식조사표 포함)가 대규모사업체와 소규모사업체의 표본에 대해 발송됨.
 - 정규조사표는 500종 이상으로 산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인쇄물과 온라인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나누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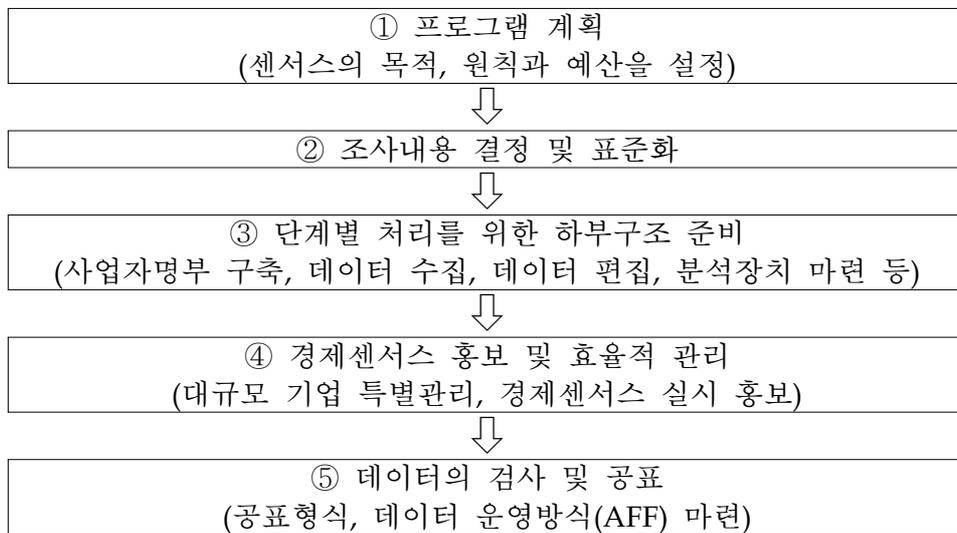
□ 추진단계 및 활동

- 미국 경제센서스의 추진은 크게 ①프로그램 계획, ②조사내용의 결정 및 표준화, ③단계별 처리를 위한 하부구조의 준비, ④경제센서스 홍보 및 효율적 관리, ⑤데이터의 검사 및 공표 등 5단계로 실시되고 있음.
- 추진단계 중 사업자명부의 구축,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편집, 분석장치의 마련 등이 행해지는 단계별 처리를 위한 하부구조의 준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제조사와 관련된 조사와 후속권고가 순차적으로 행해짐.
 - 우선 조사표조사와 행정자료대체조사의 대상을 구분하고, 사업자명부의

보완을 위한 조사로서 산업분류표발송(Classification mailouts)이 행해짐.

- 두 번째는 조직관련 조사를 포함하는 정규조사표에 의한 실제조사인 센서스조사표발송(Census mailouts)이 행해짐.
- 세 번째는 응답율과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응답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하는 조사대상에 대하여 후속권고(Follow-up)를 행하는 과정임.

<그림 3-2> 미국 경제센서스의 추진단계



- 이러한 경제센서스의 실시활동은 8년의 기간동안에 순환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약4년에 걸쳐서 프로그램의 계획과 조사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3> 미국 경제센서스의 연도별 추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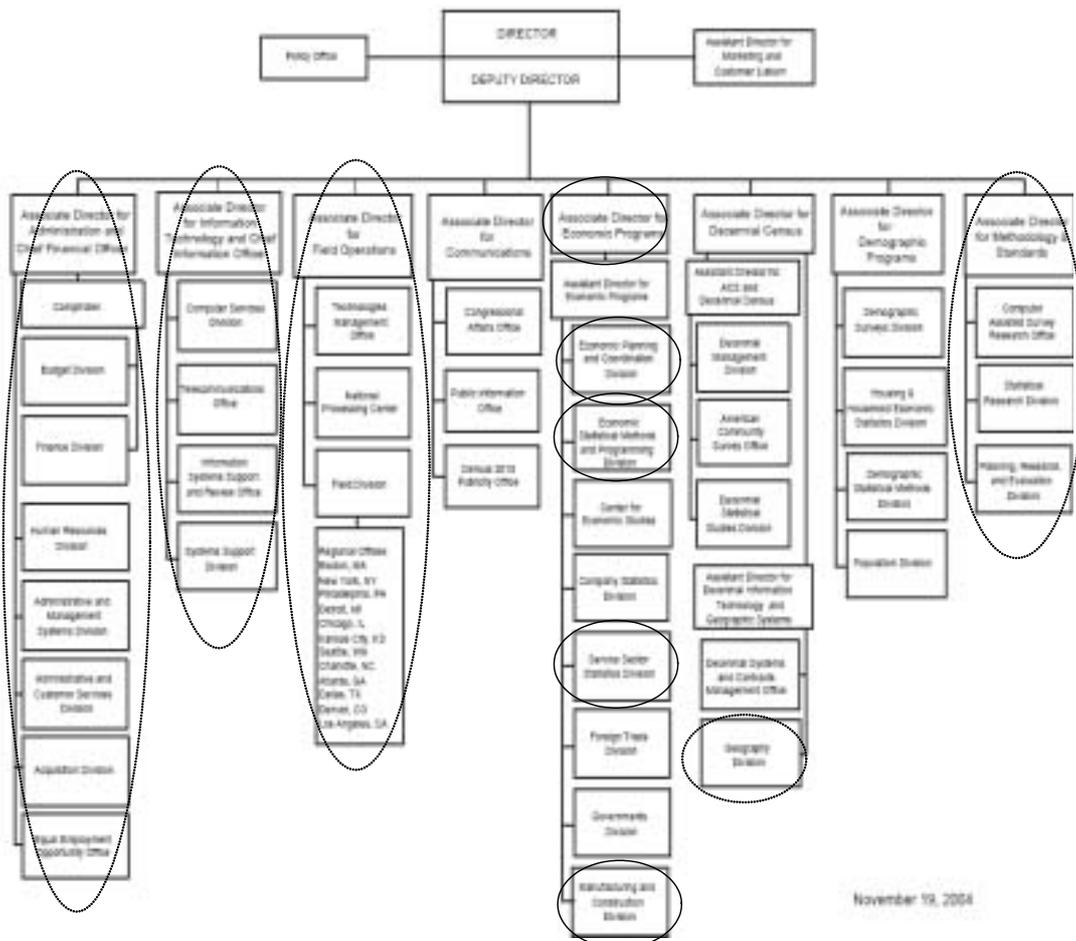
자료: Shirin A. Ahmed(2007), Economic Census Overview.(미국센서스국 방문시 설명 자료)

□ 추진 조직과 역할

○ 미국 경제센서스는 센서스국 국장(Director)의 책임하에 경제계획 부국장(Associate Director of Economic Programs)이 실무책임을 지고 5개과가 직접 관여하여 실시함.

- 경제계획·협력과(Economic Planning and Coordination Division; EPCD): 경제센서스 운용 전반을 담당하며 특히, 사업자명부의 구축 및 유지, 행정자료의 확보와 처리, 우편발송목록 작성, 조사표 발송을 담당하며 그 밖에도 자료처리와 관련된 업무 및 결과의 공표 및 홍보를 담당

<그림 3-4> 미국 경제센서스의 추진 조직



주: ○는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직접 추진하는 조직이며, ◌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함.

- 제조·건설업과(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Division; MCD):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 전범위에 대해 조사내용 기획, 자료의 공표를 위한 분석, 목록 작성 및 정리를 담당
 - 서비스업통계과(Service Sector Statistics Division; SVSD): 도소매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 운수, 수도가스전기 및 기타 서비스업 전범위에 대해 조사내용 기획, 자료의 공표를 위한 분석, 목록 작성 및 정리를 담당
 - 기업통계과(Company Statistics Division; CSD): 미국 본토 이외의 지역, 여성 또는 소수인종 소유의 사업체 및 기업소유에 대해 조사내용 기획, 자료의 공표를 위한 분석, 목록 작성 및 정리를 담당
 - 경제통계방법·프로그래밍과(Economic Statistical Methods and Programming Division; ESMPD): 경제센서스에 필요한 시스템의 설계 및 프로그래밍을 담당
- 이외에도 경제센서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조직을 센서스국 내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자료처리과(Data Preparation Division; DPD): 미국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위치한 센서스국의 자료처리센터로서 조사표 라벨링, 우편 조사표 취합, 컴퓨터에 자료입력과 같은 업무를 담당
 - 지역과(Geography Division; GD): 10년주기센서스 부국장(Associate Director of Decennial Census)의 감독하에 지역코딩시스템 개발, 개별 사업체에 대해 지역 코드의 배정 등을 담당.
 - 센서스 자료를 홍보하는 자료정보실(Public Information Office), 센서스와 관련한 입법을 모니터링하는 의회협력실(Congressional Affairs Office), 자료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고객홍보실(Customer Liaison Office)을 커뮤니케이션 부국장(Associate Director for Communication)의 감독 하에 운영하고 있음.
 - 현지운영부국장(Associate Director of Field Operation)의 감독하에 12개

의 지역사무소는 경제센서스 자료를 출판 및 배포하는 업무를 담당

- 정보기술 부국장(Associate Director for Information Technology)의 감독 하에 동 부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운영,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 다양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
- 행정부국장(Associate Director of Administration)의 감독 하에 동 부서는 예산의 집행, 출판 준비를 담당
- 방법론 및 표준화 부국장(Associate Director of Methodology and Standards)의 감독 하에 경제센서스에 수반하는 적절한 통계 방법론과 기법을 개발

□ 예산규모

- 경제센서스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회계연도기준으로 1억2,800만달러 규모로 미국 센서스국 전체예산의 8.4%, 주기센서스프로그램 예산의 12.5% 수준임.
- 연도별로는 2002년도 조사가 실시된 2003년의 8,640만달러로 센서스국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후 2007년에 6,610만달러(6.1%)로 작아짐.

<표 3-1> 미국 경제센서스의 예산규모

(단위: 백만달러)

	2003 (실적)	2004 (실적)	2005 (실적)	2006 (실적)	2007 (배정액)	2008 (추정치)
경제센서스	86.4 (10.2) [20.6]	72.8 (7.8) [15.7]	67.2 (6.6) [12.2]	66.1 (6.1) [10.8]	66.1 (6.1) [10.8]	128.0 (8.4) [12.5]
주기센서스 프로그램	420.3 (49.6) [100.0]	465.0 (50.0) [100.0]	549.7 (54.2) [100.0]	610.1 (56.5) [100.0]	611.1 (56.5) [100.0]	1027.4 (67.8) [100.0]
센서스국 전체	846.9 (100.0)	930.1 (100.0)	1013.6 (100.0)	1078.9 (100.0)	1080.7 (100.0)	1516.3 (100.0)

주: 회계연도기준임.

자료: U.S. Census Bureau(2007), U.S. Census Bureau' Budget Estimates As Presented to Congress February 2007.

□ 조사결과의 제공수단

- 경제센서스의 조사결과는 인쇄책자, 인터넷, CD 또는 DVD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제공됨.
 - 전통적인 방식인 인쇄책자는 최근 들어 소수로 제한하는 대신에 CD-ROM이나 DVD-ROM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함.
 -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드릴다운 표(Drill-down tables)와 더불어 DB자체의 운용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3) 경제센서스의 특징과 활용

□ 행정자료 중심의 사업자명부 구축

- 경제센서스의 특징으로는 우선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결과들을 통해 사업자명부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보유하는 사업자명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경제센서스의 조사결과와도 상호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경제센서스 조사에 기초가 되는 사업자명부(Business Register; BR)의 구축에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행정자료(Administrative Records; AR)와 기업조직조사(Company Organization Survey; COS)나 신규분류조사(Birth Classification Survey; BCS) 등의 조사결과 및 경제센서스의 조사결과도 이용되고 있음.
- 행정자료들 가운데 가장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IRS 데이터로서 매월 갱신되는 사업자마스터파일, 매주 갱신되는 연방세 관련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자명부의 갱신이 수시로 이루어짐.
 - IRS가 보유한 사업자마스터파일(Business Master File; BMF)은 고용자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의 수집시 기업서식인 FORM SS-4를 기초로 각 생산주체의 EIN·명칭·주소·조직형태 등의 정보를 입

수하여 갱신되는데, 매년 5월에 갱신되는 BMF-Complete와 5월을 제외하고 매월 갱신되는 BMF-Supplement 2가지 형태로 최신정보가 센서스국에 제출되어 사업자명부가 갱신되며, 이에 의해 신규가입자도 파악됨.

- 연방세(Federal Tax) 관련 데이터는 4/4분기에 접수되는 급여세환급(Payroll Tax Return)¹⁵⁾, 개인기업소득세환급(Sole Proprietorships' Business Income Tax Return)¹⁶⁾, 기타기업소득세환급(Other Business Income Tax Return)¹⁷⁾에 관한 신고서류에 포함되는 정보가 매주 센서스국에 제출되고 이를 통해 사업자명부가 최신정보로 갱신되고 있음.

<그림 3-5> 미국 사업자명부의 구축체계



- 15) 급여세환급과 관련된 서류는 비농업부문에 이용되는 IRS Form 941와 농업부문에 이용되는 IRS Form 943이 있으며, Form 941에 의해서는 EIN의 급여지불액이나 고용자수 등과 관련된 4/4분기 데이터가 입수됨
- 16) 개인기업소득세환급과 관련된 서류는 Form 1040, Schedule C가 적용됨.
- 17) 기타기업소득세환급과 관련된 신고서류는 합명회사에 대해서는 Form 1065,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Form 1120, 면세조직에 대해서는 Form 990이 적용되는데, 주식회사의 소득세환급 서류인 Form 1120으로는 주로 EIN의 수입(매출액), 자산, 산업코드(NAICS 6단위분류), 수입, 재고 등의 데이터가 입수되어 센서스국에 제출됨.

<Box 3-1> 미국의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TIN)

-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TIN)는 국세청(IRS)에 의해 납세업무에 사용되는 식별번호로서 다음의 5종으로 분류되며 이 중에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는 사회보장청(SSA)에 의해 부여되며 나머지는 국세청에 의해 부여됨.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 개인소득세 환급 시 신청서에 사회보장청에서 부여하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며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가 사회보장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기입
 - 고용자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연방세식별번호(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불리며 기업체(business entity)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
 - 개인납세자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외국인, 외국인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세금 처리를 위한 번호(tax processing number)
 - 미국인을 입양 처리 중에 있는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 Pending U.S. Adoptions: ATIN): 미국 시민 또는 아동을 합법적으로 입양하려고 서류처리 중인 개인을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임시 번호
 - 준비자납세식별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 과거에 세금을 납부했으면서 사회보장번호가 노출되지 않기 원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번호이며 세금환급을 원하는 기업의 고용자식별번호를 대신 준비자납세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 SSA 및 BLS로부터는 주로 산업분류코드(NAICS 6단위분류)에 대한 정보가 센서스국에 제출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정보제공주체인 IRS, SSA, BLS의 3기관으로부터 동시에 각 주체의 산업분류코드에 관계되는 정보가 제출되어지는 점임.
 - SSA는 매월, BLS는 매분기로 센서스국에 제출되는데, 이들에 의해 산업분류코드는 동일주체에 대해 최대 3종류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산업분류코드의 체크가 행해짐.
 - 만일 동일주체에 대해 3종류의 산업코드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는 BLS의 데이터를 최우선시하고, 다음에는 SSA나 IRS의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주체에 대해 적절한 산업분류코드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과거 10년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분류와의 비교작업도 행해지고 있음.
- 한편, 이러한 행정자료 이외에 복수사업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조직조사(COS)와 새로운 EIN을 획득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분류조사(BCS)에 의해서도 사업자명부가 갱신됨.
 - 앞에서 언급한 고용자식별번호(EIN)은 기업의 형태가 단일사업체를 보유하는 기업인지 아니면 복수사업체를 보유기업인지에 관계없이 납세주체에 따라 수집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체나 기업이라는 단위와 일대일 대응된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이에 경제센서스가 실시되지 않는 년도의 복수사업체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조사인 COS에 의해 기업과 사업체 및 EIN의 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EIN을 단위로 하는 행정자료를 기업 혹은 사업체를 단위로 데이터를 재편성하게 됨.
 - 또한 새로운 EIN을 획득한 주체는 IRS의 BMF에 등록되고, 그 정보를 기초하여 BCS가 행해지는데, BCS에서는 새로운 EIN을 획득하는 주체에 대한 소유권(ownership)이나 주소, NAICS코드, 매출액 또는 수입액 등이 조사됨.

- 이처럼 COS나 BCS를 실시하는 때에 모집단명부가 사용되며, 이들의 조사결과가 다시 사업자명부에 피드백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업자명부의 구축에는 행정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동시에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산업분류코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체크함으로써 산업분류조정 실수나 기입누락의 방지 등에 의해 사전 정비된 행정자료가 사업자명부에 반영되어 여러 가지의 통계조사가 실시되어지고 있음.
- 여러 가지 행정자료이나 통계조사를 기초로 정비되어진 사업자명부에 기초하여 경제센서스가 실시되며, 경제센서스의 조사결과 또한 사업자명부의 갱신에 피드백되고 있음.
- 사업자명부의 구축에 활용되는 자료 중 국세청(IRS)의 납세환급 관련 자료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세금관련 행정자료가 전체의 행정자료 이용(102.3백만 레코드) 중 56%(57레코드=25+22+10)를 차지하고, 국세청(IRS)의 세금자료는 46%(47레코드=25+22)를 차지함.

<표 3-2> 미국 사업자명부 구축에 활용되는 행정자료

자료의 원천 (source)	갱신빈도 (frequency)	연간규모 (records수 백만)
Business Master File(Complete)	매년 5월	24
Business Master File(Supplement)	5월 제외 매월	18
Payroll Tax Return(IRS Form 941 & 943)	매주	25
Sole Proprietorships' Business Income Tax Return(IRS Form 1040, Schedule C)	매주	22
Other Business Income Tax Return(IRS Forms 990, 1065, 1120)	매주	10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ndustry Codes(Forms SS-4)	매월	1.8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dustry Codes	매분기	1.5
Total	-	102.3

자료: Eddie Salyer(2007), The Business Register: Introduction and Overview.(미국센서스국 방문시 설명자료)

□ 산업분류의 명확화와 NAICS분류 이용

- 기업의 생산활동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업분류 코드가 변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경제통계조사에 있어서 각 생산주체에 대한 최신의 정확한 산업분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특히,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산업별 특성에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로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표를 적절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도 사업자명부의 구축단계에서 각 생산주체의 산업분류를 상세한 단위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센서스이외에 표본조사에서도 층화의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주체의 산업분류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명확한 산업분류는 경제통계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임.
- 이에 미국 센서스국은 경제센서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에 의한 사업자명부의 항시적 갱신과 더불어 경제센서스의 결과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02년의 경제센서스에서는 NAICS 3단위 또는 4단위 산업분류수준에서 다른 조사표가 사용되었으며, 경제센서스에 의해 파악된 각 주체의 산업분류 등에 대한 정보는 다시 사업자명부에 피드백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각 주체의 산업분류코드는 행정자료의 정보와 통합되어 동일주체에 대해 최대 4가지 종류(경제센서스, BLS, SSA, IRS)가 존재할 수 있으며, 산업분류가 달라진 경우에는 경제센서스의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자명부의 정비는 미국경제센서스의 실시 목적 중 하나임.
 - 동일주체에 대해 산업분류코드를 동시에 4가지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다는 것은 통계조사에 있어서 산업분류코드가 더없이 중요한 정보임을 의미하고 있음.
- 일관된 공급측면의 분류개념에 기초하는 NAICS의 특성도 사업체의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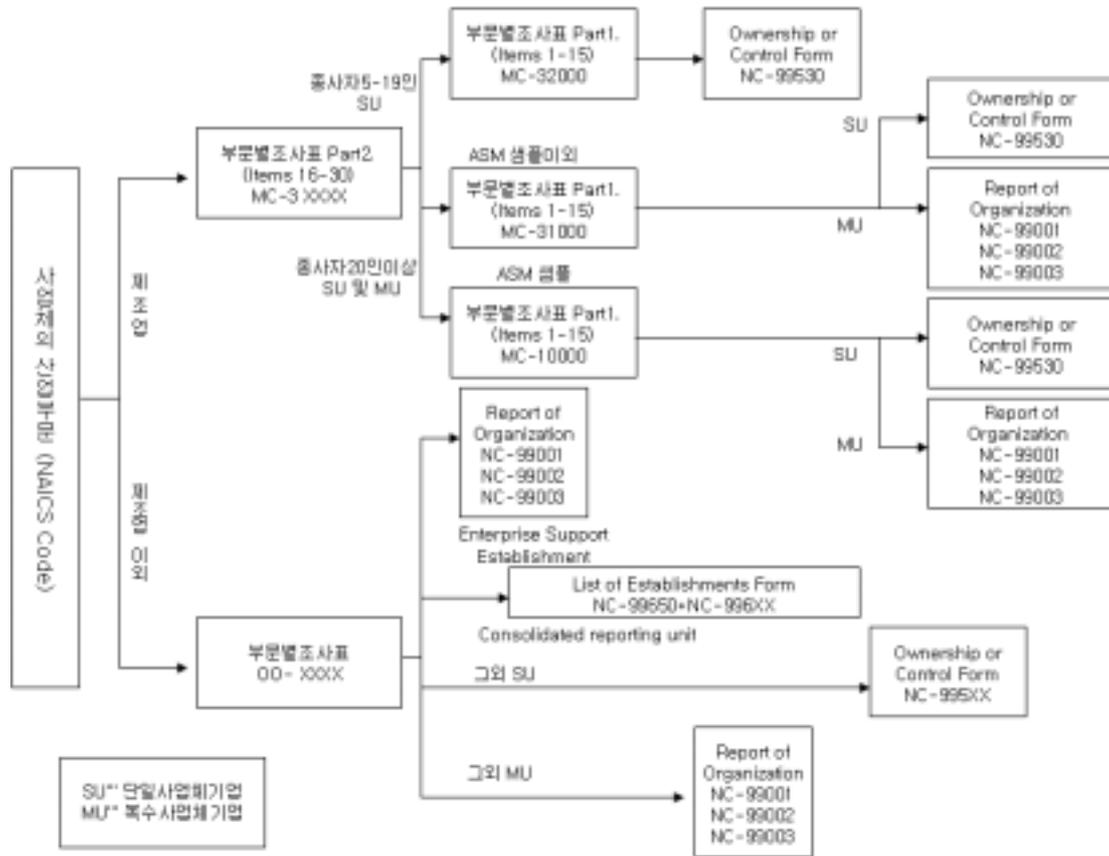
분류에 대한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복수상품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유사한 생산기술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생산기술의 유사성을 기초로 구축되어진 생산측면의 분류체계라면 이들 전부의 상품이 동일 산업부문에 등급이 매겨지기 위해서 각 상품의 생산비율이 변화해도 해당 사업체의 산업등급이 변화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수요측면의 분류개념에 기초한 산업분류는 기술의 유사성과 관계없이 산업부문이 결정되기 때문에 복수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많은 경우 복수의 산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품목별 생산비율의 미세한 변화에도 사업체의 산업분류가 빈번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한 안정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급측면의 분류개념인 NAICS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상세한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별 다양한 조사표의 활용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제센서스에서는 사업자명부의 단계에 각 생산주체의 상세한 산업분류(NAICS코드)의 파악을 위해 산업별로 다른 조사표를 배부하며, 2002년의 경제센서스에서는 실제로 약 500 여종의 산업별 조사표가 사용됨.
- 조사표가 배부되는 사업체에는 NAICS분류에 의해 산업부문의 등급이 매겨지고, 이에 의해 산업별 조사표가 배부되며, 각 조사표의 내용은 일부의 기업정보에 관한 질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공통이지만, 그 외의 내용은 조사표마다 크게 차이가 있음.
- 조사표는 1개의 사업체인 기업인 '단일사업체기업(Single Unit)'인지 아니면 복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인 '복수사업체기업(Multiple Unit)' 혹은 기업지원사업체(Enterprise Support Establishment)인지 아니면 결합보고단위(Consolidated reporting unit)인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사자규모별로 혹은 연간제조업조사의 표본여부 등에 따라서도 다른 조사표가 배부되고 있음.

<그림 3-6> 2002년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표체계



○ 우선 조사표의 명칭은 최초의 2글자가 NAICS에 따른 산업부문의 첫글자 (initial)이며, 다음으로 연속해서 5단위의 숫자가 첨부되는데, 이 중 앞의 3자리는 해당산업부문의 NAICS 3단위 코드를 의미하며, 뒤의 2단위는 3단위 산업내의 조사표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임.

- 예를 들면, MC-33101은 제조업부문 MC (Manufacturing) 중에서 NAICS 코드 「331. Primary Metal Manufacturing」 부문의 등급을 매기는 사업체에 적용되는 01번의 조사표라는 의미임.

○ 제조업부문에 관해서는 부문별 조사표가 Part1 (Items 1-15)와 Part2 (Items 16-30)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Part 2는 대분류 산업구분을 위한 것이며, Part 1은 제조업 내에서 3종류로 구분됨.

- Part 1 조사표 가운데 MA-10000 조사표는 일반적인 제조업부문 가운데

(Annual Survey of Manufacturers; ASM)의 표본으로 추출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표에는 전년 (2001년)의 데이터가 사전에 프린트 되어 있고, 응답자는 이를 참고하여 2002년의 데이터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며, 비ASM표본사업체에 대해서는 31000이라는 코드가 붙여진 조사표가 배부됨.

- 또한 제조업 및 광업에 관계해서는 종사자수가 5-19인의 단일사업체기업에는 단축형(short form)과 종사자수가 20인 이상의 단일사업체기업 및 전체의 복수사업체기업에는 완성형(long form) 조사표가 보내지며,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의 단일사업체소기업에 대해서는 센서스조사표는 보내지지 않고 행정자료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됨
- 축약형(short form)이 적용되는 사업체의 Part 1 (Items 1-15)에 해당되는 부분의 조사표는 32000이라는 코드가 붙여져 있는데, 이는 MA-10000이나 31000에 비해 조사내용이 간단함.
- 한편, 단일사업체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와 지배에 관한 조사표 (Ownership or Control Form)로 NC-995××가 있음.
 - 이 조사표에는 해당기업(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이나 그 기업이 보유한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산업별로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업에는 NC-99523, 제조업에는 NC-99530 등 총 14종류의 소유와 지배에 관한 조사표가 존재하나, 설명문의 일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조사내용은 대부분 같음.
- 복수사업체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에 관한 보고(Report of Organization)를 의무화하고 있음.
 - 조직에 관한 보고에는 NC-99001, NC-99002, NC-99003의 3종류가 있는데, 전체의 부문에 대해서 이들 3종의 조사표가 적용됨.
 - 이 중 NC-99001은 국내 및 해외의 소유와 지배의 내용과 해외자회사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며, NC-99002는 해당기업이 보유한 사업체 가운데, 이미 경제센서스코드에 의해 파악된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표로, 응답자는 사전에 기입한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만 수정하면 됨.

- NC-99003은 해당기업이 보유한 사업체 가운데 새롭게 첨가된 사업소, 즉, NC-99002에 프린트 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
- 특수한 경우로 기업지원사업체(Enterprise Support Establishment)와 결합 보고단위(Consolidated reporting unit)가 있음.
- ‘기업지원사업체’란 주로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대해 경영, 감독, 일반 관리기능을 가진 사업체 및 보조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익을 얻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들 가운데 기업의 타사업체에 대한 관리, 관찰 및 운영을 주 활동으로 행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사표로 「MN-55102 Corporate, Subsidiary, and Regional Managing Offices」가 적용됨
 - 이외에 기업 내의 타사업체 대상의 정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나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활동의 유사성에 의한 산업등급제를 실시하는 NAICS의 기본개념에 따라 동일 생산활동으로 인식함.
 - 예를 들면, 2002년의 경제센서스에서는 정보처리서비스를 타기업이 제공하는 통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부문별조사표 「IN-5180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와 동시에 정보처리서비스를 기업내의 타사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IN-51059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Enterprise Support)」라는 부문별조사표를 배부함.
 - 이에 의해 기업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체와 같은 생산활동을 소상히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
- 한편, ‘결합보고단위’는 선택적 보고단위(Alternative Reporting Unit ;

ARU)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단일사업체에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 않는 네트워크산업에 적용되는 조사단위임.

- 예를 들면, 은행업에 의해서 고객이 어느 은행의 지점을 거쳐 주택대출을 신청한 경우, 이 대출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지점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주택대출 부문의 수익으로 할당됨.
- 이처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면 정의되는 산업의 수익은 사업체 수준이 아닌 기업 수준에서만 수집하며, 이러한 '결합보고단위'를 위한 조사표를 설계하여 해당기업 전체의 생산활동을 일괄해서 파악함.
- 2002년 경제센세스에서는 「22.공익사업」에 의한 전기·가스·수도업, 「51.정보산업」에 의한 영화제작업, 레코드제작업, 통신업, 케이블TV업, 「52.금융·보험업」에 의한 은행업, 보험업 등에 대해 '결합보고단위' 조사표가 배부됨.
- 이러한 '결합보고단위'에 대해서는 부문별 조사표 이외에 사업체조사표목록(List of Establishments Form)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기업(Consolidated reporting unit)에 속한 복수의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표이며, 이미 경제센서스레코드에 의해 파악되어진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NC-99650과 새롭게 첨가된 사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표 (NC-99623, NC-99651, NC-99653, NC-99655 등)가 있음.
- 전자인 NC-99650에서는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사업체의 정보를 기입한 조사표가 배부되어 응답자는 그 내용을 확인·수정함.
- 또한 후자의 NC-99623 등에서는 응답자는 NC-99650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사업체명이나 주소, 영업개시 연월일 및 종사자수, 임금지금액, 주 활동 등을 기입함.
- 이상과 같이 개별 사업체의 활동별로 조사표와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구별하여 배부하고 있는 점이 미국경제센서스의 특징임.

- 상세한 질문항목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응답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각 생산활동의 특화된 질문항목을 설정함으로써 광범위한 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질문사항을 설정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응답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
 - 즉, 광범위한 생산활동 전부를 포괄하는 조사표의 경우 수입이나 지출에 관련된 질문사항이 상세하지 못한 관계로 인하여 응답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항목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는 자체 회계시스템에서 어떤 수치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집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에 특정 생산활동에 특화된 조사표의 경우는 상세한 질문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질문사항이 해당부문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개념과 일치한다면 응답자는 자체 회계시스템 상의 정확한 수치로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항목수가 증가해도 응답시간은 단축될 수 있음.
- 그러나 각 산업부문에 대해서 특정 생산활동이 특화된 다양한 조사표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명부의 구축단계에서 각 사업체에 대한 상세한 산업분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생산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체의 생산활동에 관한 내용이 해당산업부문의 조사표에 의한 질문항목과 정합적이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조사표체계의 배경에 있는 산업분류체계가 산업활동의 종류를 기초로 한 분류개념에 입각해야 하며, 이것이 미국의 경제센서스가 공급측면의 분류개념에 기초한 NAICS체계를 도입한 이유임.

□ 조사결과의 광범위한 활용

- 조사범위, 정확성, 구체성,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광범위한 활용범위를 가지고 있음.

- 연방 정부는 센서스결과를 이용하여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생산 및 물가 지수 등 보다 단기간의 경제 상황을 측정하는 통계지표 작성에 활용
- 정책 입안 및 수행 기관에서 경제 활동 상황을 파악하거나 조세 및 산업 개발정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대학,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서 강의자료, 장기 경제 추세에 대한 연구, 보도용 자료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3. 중국의 경제센서스

1) 경제센서스의 도입배경

-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성과를 평가하는 산업구조통계의 필요성과 이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었음.
 -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이 발표된 이후, 중국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의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도의 역할도 사전에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사후적으로 시장의 성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변화함.
 - 시장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실태를 반영하는 기초통계, 특히 '개혁·개방'이후 경제성장을 유지해온 산업구조에 대한 기초통계의 정비가 필수적임.
- 개별 산업에 대한 센서스의 도입 및 실시를 통해서 시장경제에 적합한 통계조사제도의 체계 형성과 통계조사방법의 정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 중국의 대표적인 산업구조통계로는 「농업센서스」, 「공업센서스」, 「기본단위센서스」, 「건설업센서스」, 「서비스업센서스」 등을 들 수 있음.
 - 중국 산업구조통계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센서스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농업센서스 1회(1996년), 공업센서스는 2회(1985년, 1995년), 서비스업센서스는 1회(1993년), 기본단위센서스는 2회(1996년, 2001년)가 각각 실시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센서스는 조사기준년도나 조사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성과를 정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존재함.

- 시장경제가 더욱 널리 확산되면서 정합성이 보장된 시장성과에 대한 경제 정보를 정책입안자나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제구조의 최적화나 생산자원의 적정배분 등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산업구조통계의 정합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종래의 통계조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의 조사대상으로 2005년 상반기에 제1차 경제센서스를 실시함.

2) 경제센서스의 실시목적

- 우선은 경제센서스를 통해서 중국경제의 제2차 산업은 물론, 당시까지 정비되지 않았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기업법인단위」, 「사업법인단위」, 개인업주의 사업체에 대한 모집단명부를 정비하는 것임.
- 중국에서는 제2차 산업의 생산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공업센서스를 포함한 '공업통계조사'로서,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업기업이 '규모이상'과 '규모이하'의 두 계층으로 분리되어 있음,
- '규모이상'의 공업기업에는 국유기업 전체와 연간 생산액 5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기업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반면, '규모이하'에 분류되는 공업기업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함.
- 규모는 적어도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이하' 즉, 중소기업들에 대한 표본조사는 기본적으로 모집단정보에 적합한 상세한 사업체명부에 기초해서 행할 필요가 있었음.
- 한편, 중국통계에는 사회주의에서 사용하는 GMP(Gross Material Product)의 개념 등 물질적 생산분야를 중시하고, 비물질적 생산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제3차 산업에 대한 통계지표체계나 통계조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음.
- 근래에 들어 상해, 북경 등 연안도시에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동반한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나 생산규모가 확대되고, 진입과 퇴출의 건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시장경제의 확대에 의해 중국은 1990년대에 초부터 제3차 산업통계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왔음.
- 그러나 경제구조의 복잡화와 경제의 대규모성으로 인해 제3차 산업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이러한 표본조사로 제3차산업의 기본적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사업체명부의 작성이 필수불가결한 것임.
-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사업체 모집단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시까지 중국은 「기본단위센서스」(중국어: 全國基本單位普查)를 1996년12월31일과 2001년12월31일 기준으로 2회 실시함.
 - 중국의 「기본단위센서스」는 우리나라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본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와 유사하지만, 조사대상에 개인사업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범위가 우리나라나 일본과 매우 다름.
 - 이것은 중국에서는 개인의 사업체나 기업을 「기업단위」로 봐오지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시까지 「기업단위센서스」에 의해서 작성된 사업체명부에는 개인사업체가 포함되지 않았음.
 - 이러한 '조사누락'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산업의 '규모이하'의 사업체 및 제3차 산업의 사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는 모집단명부에 기초해서 행하는 것이 어려웠음.
 - 상세한 사업체명부의 작성이 제1차 경제센서스의 성과이며, 이에 기초할 경우 2008년에 실시할 예정인 제2차 경제센서스에서는 '규모이하'의 비국유기업 및 제3차 산업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조사누락'을 감소시켜 조사의 정밀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센서스 실시의 두 번째 목적은 조사대상의 조사부담을 경감하고 중국경제의 산업구조를 총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임.
-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산업구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통계조사활동이 부활·신설되면서 많은 통계조사와 이들간 조사기준연도의 상이성 등으로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문제로 대두됨.

- 1966년 이후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중국의 통계조사활동은 사실상 10년 동안 정지되었고, 1978년에 헌법이 성립하여 정부기구가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통계조사활동도 부활하게 됨.
 - 1978년 이후 중국의 통계조사활동은 구소련의 MPS(Material Product System)통계체계에서 구미형의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통계체계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에 주력함.
 - 특히,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통계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는데, 「공업센서스」와 「인구센서스」 등 일련의 통계조사활동이 신속하게 부활되었고, 「농업센서스」, 「서비스업센서스」, 「기본단위센서스」 등 일부의 통계조사제도도 신설됨.
 - 1980년 이후 1990년대까지 센서스만 8회, 1990년-2000년 기간동안에는 각종 센서스가 5종에 6회가 실시되었고, 센서스이외에도 투입산출조사, 공업통계조사 등 다양한 통계조사가 실시될 정도로 통계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또한 각종 센서스의 기준연도는 공업센서스는 '5자년', 인구센서스는 '0', 농업센서스는 '7자년', 기본단위센서스는 '1자년'과 '6자년', 서비스업센서스는 '3자년' 등 다양하게 채택되어 왔음.
 - 그러나 이러한 많은 통계조사활동과 다양한 조사기준연도의 채택은 한편으로, 응답자에 커다란 응답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응답부담을 경감하는 일환으로 「농업센서스」와 「인구센서스」이외에 센서스를 일원화한 것이 제1차 경제센서스로서 '3자년'과 '8자년'을 기준연도로 채택하고, 인구센서스와 농업센서스는 각각 '0자년'과 '6자년'으로 실시하는 것을 결정함.
- 경제센서스에는 당시까지 조사하지 않았던 건설업이 처음으로 포함됨.
- 이것은 1990년 전반까지 '기본건설투자'와 '갱신개조투자'로 분류한 고정자본형성이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었으므로 재정예산자료만으로 통계작성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임.

- 그러나 근래에 들어 외자기업의 급증이나 민간주도형 부동산투자의 증가로 재정예산자료만으로는 투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경제센서스에 포함함.

<표 3-3> 중국 주요 센서스통계의 개편내용

개편이전		개편이후	
센서스명	기준연도	센서스명	기준연도
인구센서스	0자년	인구센서스	0자년
농업센서스	7자년	농업센서스	6자년
기본단위센서스	1, 6자년	경제센서스로 통합 (건설업 센서스 신설)	3, 8자년
공업센서스	5자년		
서비스센서스	3자년		

- 한편, 많은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들간에 기준연도이외에 조사항목에서도 통일성이 부족하여 정책입안자나 시장참가자에 정합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 또한 중국의 통계조직은 중앙에서는 집중형이지만, 지방에서는 분산형을 채택하고 있음.
- 즉, 중앙에서는 중앙성청의 각종정부통계를 대부분 「중국국가통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편집 발표하는 반면, 지방의 정부통계는 「중국국가통계국」의 업무지도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통계기구가 지방정부의 강한 행정적 보호를 받아 상당히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작성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통계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음.
- 이에 경제센서스를 실시하여 「중국국가통계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차원의 통계조사에 관한 지도력이 지방에 확대되어 조사결과에 입각한 기DB가 지역별, 산업별로 통일된 틀에 기초하여 구축되도록 함.
- 세번째 목적은 기초통계인 경제센서스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GDP통계 등 2차 가공통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중국에서는 1993년부터 MPS체계와 SNA체계가 공존하면서 SNA체계가 발전해왔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기초통계의 조사범위 협소, 서비스업의 조사누락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 GDP통계의 정확도에 많은 논란이 제기됨.
- 이에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통해 건설업 등 그동안 제외된 산업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업체 모집단명부의 확충 등을 통해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3) 중국 경제센서스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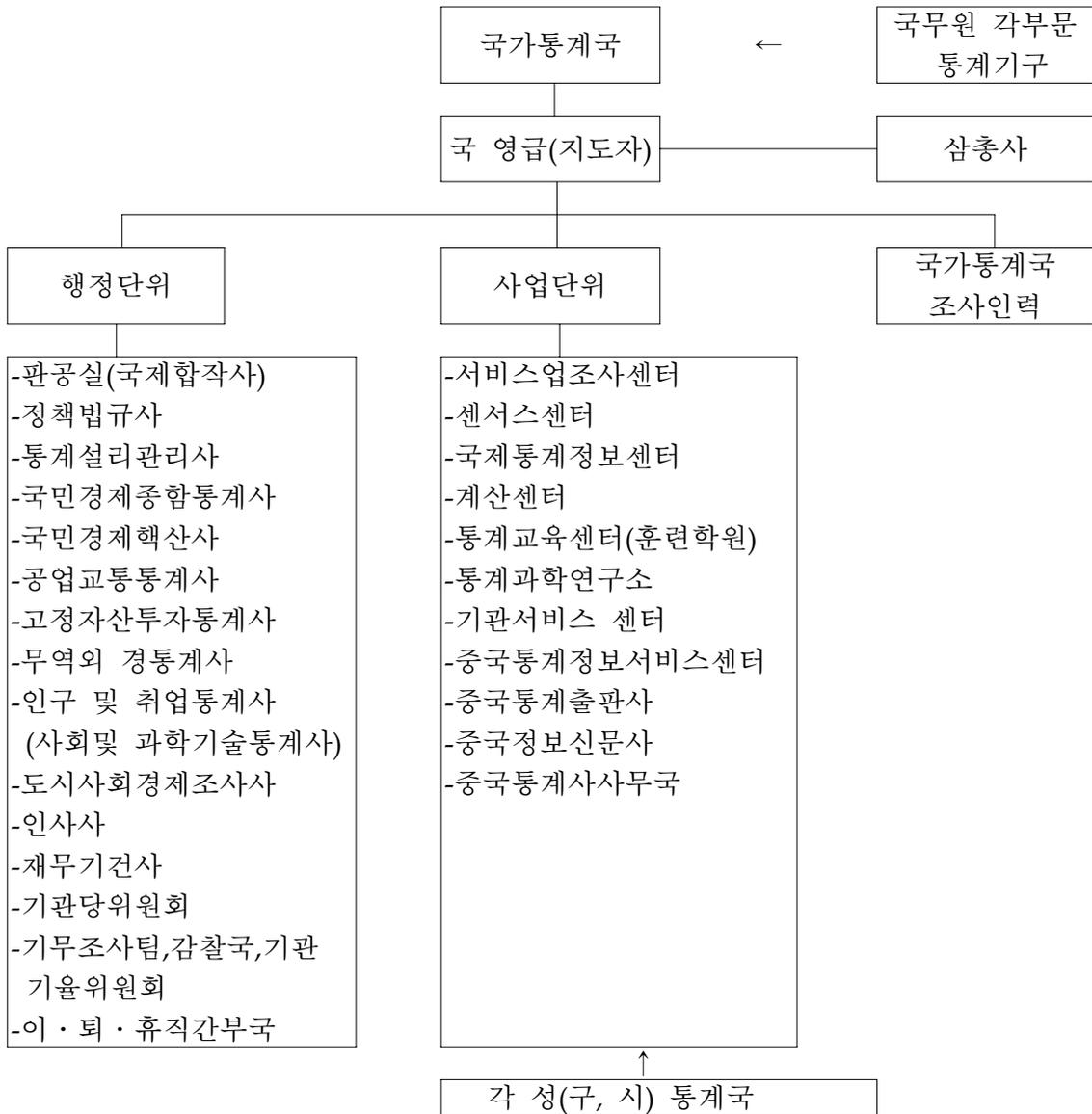
- 중국의 제1차 경제센서스는 「기본단위센서스」, 「공업센서스」, 「서비스업센서스」, 「건설업센서스」로 구성되며, 국민경제총량의 85%이상을 포괄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임.
 - 건설업센서스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연해지역에서는 포괄범위가 90%이상으로 광범위한 조사였음.
 -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은 법인기구 500만여, 「산업활동단위」 700만 이상, 사영업자 4,000만여 등 총 5200만여 조직이었음.
 - 조사에는 통계관계종사자와 대학생을 포함하여 약1,000만명의 조사원이 동원됨.
- 2004년 12월 31일을 조사시점으로 한 제1차 경제센서스는 2005년 상반기에 조속한 데이터의 수집과 재평가 단계에 들어감.
 - 데이터의 집계와 관련해서는 '성'차원의 집계와 '지구'차원의 집계가 2005년 3월말까지 60%가 완료됨.
 - 데이터의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2005년 6월에 '중국국가통계국'과 지방통계국이 합동으로 31개 팀을 결성하여 31개 성과 직할시, 자치구에서 표본주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수집결과를 점검하고, 2005년 말에 경제센서스의 결과를 공표함.

- 또한 신문, 광고,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센서스의 사회적인 홍보와 인력동원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센서스를 추진함에 있어 소요되는 조사 경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부 경제센서스 대상의 조사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지지 부족, 비협력 등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회홍보 및 동원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
 - 이와관련 홍보 부문은 신문, 잡지 등 간행물과 라디오, TV, 인터넷 및 실외광고 등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센서스의 사회홍보·동원 작업을 함으로써, 경제센서스 업무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 경제센서스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과 각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간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지출되도록 함.
 - 경제센서스 비용은 반드시 통일되게 관리하고, 특별비용으로 전문 사용해야 하며,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함.

4) 중국 경제센서스의 실시조직과 법적 조치

- 경제센서스조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초단체, 산업계 등에 실시조직이 구성하여 실시함.
 - 경제센서스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대하는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상에 어려움이 크므로 사회전체의 이해, 협력, 지지가 필요
 -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제3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단위, 기타단체 및 개인사업자의 경제센서스 참여 및 협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함.
 - 국가기관, 사회기업, 영리·비영리기업, 기타조직과 자영업체는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경제센서스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센서스 작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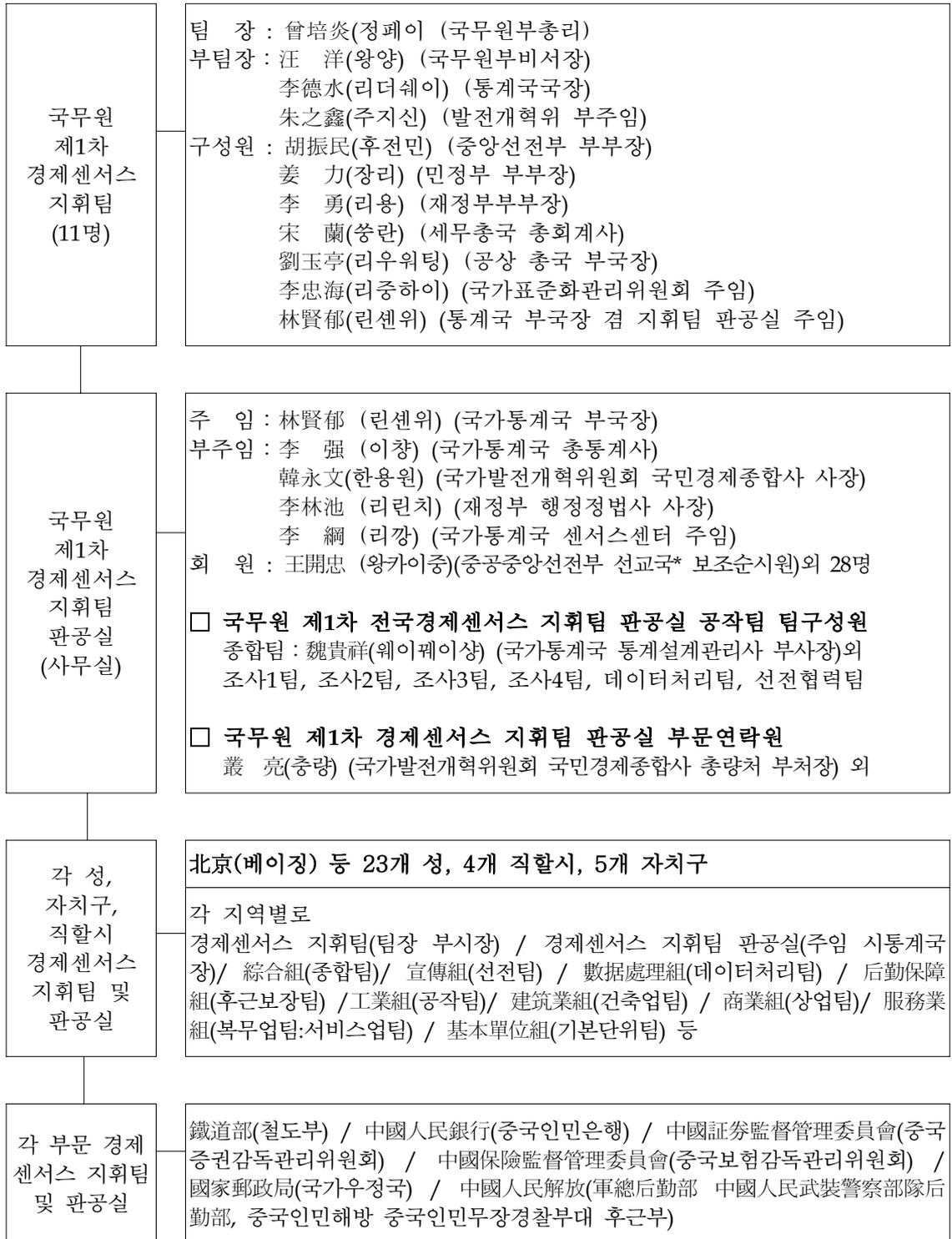
<그림 3-7> 중국통계기구도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 경제센서스의 조직 및 실시기구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일과 지도, 지방정부에 의한 분담과 실시, 각 산업계에 의한 협력의 원칙하에 설립됨.
 - 국가차원에서 국무원에 의해 경제센서스의 일상업무를 지도하고, 관련부서의 협력과 협조를 도모하는 '경제센서스지도팀'과 사무국에 해당하는 '경제센서스지도공보실'이 설치됨.
 - '경제센서스지도공보실'은 국가통계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센서스의 일상적인 조직과 협조를 책임짐.
 - 지방에서는 지방정부에 의해 '경제센서스지도팀'과 '경제센서스지도공보실'이 설치되어 해당지역의 경제센서스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대형국유기업의 내부에도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해당기업에 대한 경제센서스를 담당함.
- 전국 경제센서스 업무 지휘의 집중성과 통일성 강화를 위해, 국무원은 주관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센서스지휘팀을 구성하여, 경제센서스의 주요 문제를 연구 결정하고, 전국적인 경제센서스 업무를 조직하고 지휘하도록 함.
 - 경제센서스지휘팀은 국가통계국, 중앙선전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사무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관련 부서들의 책임자들로 이루어진 경제센서스지휘팀을 구성됨.
 - 국무원 경제센서스 지휘팀 사무실은 국가통계국에 설립되어 경제센서스의 일상 조직과 협조를 책임짐.
 - 중앙정부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 역시 국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각각의 직책을 주관하고 담당해야 하며, 공동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함. 어떠한 기관이나 단위도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음.
- 국무원 경제센서스지도팀 및 지도홍보사무국의 통일된 규정과 요구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센서스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함.

<그림 3-8> 중국 제1차 경제센서스 조직도



자료 : 중국경제센서스

- 街道(도시의 '區' 아래의 소 행정단위)사무소 촌민위원회는 인력과 조직사회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경제센서스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지방의 분담책임원칙에 따라, 지방에 대한 경제센서스 구축과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경제센서스 지휘팀 및 사무실을 설립하여, 국가의 통일된 규정 및 요구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센서스 작업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함.
 - 지휘팀 팀장은 정부의 주요 지도자 혹은 주관 지도자가 맡으며, 구성원은 관련 직능부문의 책임자로 구성함. 경제센서스 실시 중 발생하는 각종 난점과 문제에 대해, 지휘팀은 적시에 조치를 취해, 이를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도록 함.
 - 가도(街道) 사무소 및 주민위원회, 향진(鄉鎮) 정부 및 촌민위원회는 경제센서스의 각 기초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며, 광범위한 인력 동원과 사회적 역량의 집결을 통해, 경제센서스에 적극 참여하며, 긴밀히 협조하도록 함.
-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은 경제센서스 기구를 설립하고, 국무원과 해당 급 지역 인민정부의 경제센서스 지도팀 사무실이 정한 경제센서스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함.
- 부문별 분담 및 협력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문 경제센서스에 대한 조직 및 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 관련부문 또한 경제센서스 기구를 설립함.
 - 특히 요구 및 규정에 따라 경제센서스 임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문 혹은 시스템에 대해, 위에서 아래로 경제센서스 기구를 설립함.
 - 제1차 전국경제센서스 실시 중, 철로, 은행, 증권, 보험, 우편행정 부문 및 군경찰 시스템은 본 규정에 따라 경제센서스 기구를 설립하여, 국무원 및 본급 지방인민정부 경제센서스 지휘팀 사무실에서 지정한 경제센서스 임무 완성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 대기업은 경제센서스 기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며, 본 기업의 경제센서

스 표를 작성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며, 기타 각종 법인기업은 인원을 배치하여 본 기업의 경제센서스 표를 작성하는 책임을 가지도록 함.

-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에 따라 기업은 통계임무의 수요에 따라 통계기구를 설립하거나 관련 조직에 통계인력을 배치하여 통계책임자로 정해야 함.

○ 지방 각급의 경제센서스 기구는 작업요구에 근거하여 인원을 초빙하거나 관련 기업에서 협상을 거쳐 조사 감독과 조사원으로 인사 이동함.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추천하여 조사 감독과 조사원의 임무를 맡겨야 함.

-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채용'은 지방 각급경제센서스 기구가 당해 지역의 경제센서스 업무 수요에 따라 조사 지휘자 및 조사요원을 사회에 공개 모집하는 것임.

- '협상인사이동'은 협의를 통해 국가 기관, 기업단위에서 조사 지휘자 및 조사요원을 전용(轉用)하는 것을 의미함.

- 각 관련 단위는 당해 지역 경제센서스 기구에 임무 조건에 부합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조사 지휘자 및 조사요원은 모두 신체 건강하고, 책임감 강하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함.

○ 초빙 인원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경제센서스 기구에서 노동보수를 지불하며, 협상을 거쳐 인사 이동한 인원의 임금은 원래 기업에서 지불하며, 기타 복리대우는 변하지 않도록 유지함.

- 경제센서스 실시 인력들을 안정시키고, 조사요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센서스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 경제센서스 기관은 반드시 당해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 인력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동 보수를 지불해야 함.

- 협상이동 인력의 임금·복리 및 기타 대우는 모두 원(原)단위에서 지불하며 승진, 임금 인상, 직무평가 상향조정 등 부분에서 원(原) 단위의 타 업무인력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

- 지방의 각급 경제센서스 기구는 조사 감독과 조사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업무 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심사합격 후 조사 감독증과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함. 조사 감독과 조사원은 경제센서스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증서를 먼저 제시해야 함.
 - 조사원은 경제센서스 대상이 경제센서스 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책임이 있으며, 조사 감독은 조사원의 작업을 지도하고 검사하는 책임을 가짐.
- 업무훈련은 경제센서스의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업무로 각급 경제센서스 기관은 반드시 이를 중시하여, 단계별 훈련을 통해 모든 조사요원들이 경제센서스의 각종 통계분류표준 및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조사방문의 기술과 기교를 능숙하게 운용하고 데이터 처리 및 품질제어의 기본 요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 심사를 통해 경제센서스의 지휘요원증과 조사요원증을 발급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다른 센서스의 실시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 발생한 조사요원의 명의 도용, 거짓으로 응답자의 신뢰 획득, 부당이익의 도모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휘요원 및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업무인계시 해당 증빙서류를 요구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센서스 지휘요원 및 조사요원은 경제센서스 임무의 시행 시, 반드시 자발적으로 증명서를 제시하여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조사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대상의 신뢰와 안전감을 증대하여, 조사대상으로부터 협조 및 지지를 얻는데 유리함.
- 조사 감독과 조사원은 법인기업, 산업활동 기업, 자영업체와 경제센서스 관련 재무회계, 통계, 업무채산 등과 관련된 원본 자료 및 관련 증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경제센서스대상에게 경제센서스 표 중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고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 '요구할 권리'는 센서스 지휘요원과 조사요원이 경제센서스 업무 수행 시 가지는 권력을 가리키며, 직위직책을 이행하고 업무를 완성하는 주요 수단임.

- 센서스 지휘요원과 조사요원이 직책을 수행할 때의 직권은 경제센서스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함.
 - 경제센서스 지휘요원 및 조사요원이 조사대상자 및 경제센서스 관련 재무회계, 통계, 업무정사 등 각종 원시자료 및 관련 경영 증명서를 열람할 권한이 있으며, 경제센서스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조사하고 경제센서스 표의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음.
 - 만약 조사지휘자와 조사요원이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사대상자가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추궁하게 됨.
- 각급의 경제센서스 조직은 경제센서스 준비단계에서 기업을 자세히 조사하고, 경제센서스표의 종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함.
- 경제센서스 등록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단위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각 단위의 수, 규모, 경영활동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조사대상의 편중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표 발송대상 및 종류를 확정하는 전제임.
 - 각급 편제, 민정부, 세무총국, 공상총국 등은 경제센서스 기구에서 제공한 심사비준 혹은 등록단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단위조사의 인증업무에 협력하여야 함.
 - 단위 명부의 구체적 내용에는 단위 명칭, 조직기구코드, 등기등록번호, 단위 상세주소, 연락처, 비준 성립시기 및 주요 업무 활동 등이 포함됨.
- 각급의 편제, 민정, 세무, 공상, 품질검사 및 단위설립의 심의·허가와 등록기능을 가진 부문은 같은 급의 경제센서스 기구에 심의·허가 혹은 등록에 관한 기업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며, 단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작업을 함께 진행해야 함.
- 경제센서스 표는 센서스 대상의 유형에 따라 법인단위 조사표, 산업활동 단위조사표 및 개인영업체 조사표를 마련하며, 그중 법인단위 조사표는 산업별, 규모별로 표식을 마련함.

- 경제센서스 기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단위명부에 의거하여 경제센서스 표의 발송 업무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수집, 심사, 입력 및 보고 과정 중 단계마다 책임제를 도입하여, 모든 경제센서스 표에 대해 엄격한 검사, 심사, 검수를 시행하여 원시데이터와 입력단계에서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함.
- 법인단위는 그것이 속한 산업활동단위에 대한 관리 직능을 가지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법인단위가 법인단위조사표를 작성보고하며, 부속 산업활동단위를 조직하여 산업활동단위 조사표를 작성보고하는 것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누락, 중복을 방지하여 산업활동단위 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함.
- 단, 활동범위가 타 지역까지 미치는 산업활동단위는 그 법인단위에 산업활동단위 조사표를 보고·발송하는 동시에 그 소재지의 요구에 의거하여 당해지역의 경제센서스 기구에 산업활동단위 조사표를 보고·발송함.
- 경제센서스 기구는 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명부를 기초로 관련 부문이 제공하는 기업의 자료를 결합하여 경제센서스 소지역에 따라 하나하나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여 경제센서스 기업의 명부를 형성함.
- 경제센서스 기구는 자세히 조사하여 만든 기업 명부에 근거하여, 경제센서스표의 배포, 수집, 심의, 입력, 보고하는 작업을 잘 처리해야 함.
- 법인기업은 법인기업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하위 산업활동 기업은 산업활동 기업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함.
- 각급의 경제센서스 기구와 경제센서스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보고, 감독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기업과 개인도 간섭할 수 없음.
- 각 지방, 부문, 기업의 지도자는 경제센서스 기구와 경제센서스 인원에게 법에 의거하여 제공한 경제센서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경제센서스 기구와 경제센서스 인원에게 경제센서스 자료를 고치고, 허위수치를 조작하도록 강제로 명령하거나 시킬 수 없음.

- 경제센서스 기구, 경제센서스 조사요원은 아래의 3가지 권한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음.
 - ‘조사권’은 센서스기관, 조사요원이 경제센서스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조사관련 회의를 소집하며, 센서스대상 및 경제센서스 관련 각종 원시 증빙 및 기록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임.
 - ‘보고권’은 센서스기관, 조사요원이 경제센서스 자료 및 상황을 정리, 분석하여 상급기관 및 관련부서에 보고할 권한
 - ‘감독권’은 센서스기관, 조사요원이 조사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경제 발전현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경제센서스 과정에서의 각종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권한
- 또한 경제센서스 데이터의 객관성,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의 지도자는 경제센서스 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날조할 수 없고, 경제센서스 기구, 경제센서스 조사요원에게 경제센서스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날조하도록 강제하거나 지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지게 됨.

4. 일본의 경제센서스

1) 경제센서스 도입의 배경과 추진과정

□ 도입배경

- 일본경제센서스의 도입은 산업구조통계간의 통일성과 국민계정 통계의 보다 정확한 작성을 위한 학자들 간의 논의와 컨센서스의 형성에서 비롯됨.
 - 일본의 산업통계는 산업별로 관련 정부부처가 작성하는 분산형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산업별 조사의 시점이나 주기가 다르고,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정의가 상이하거나 정합성이 충분치 않아 전산업의 경제활동을 동일시점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사업소나 기업의 생성이나 폐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경제활동의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1차적 산업통계의 불완전성은 단순한 통계치의 사용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의 수립이나 중요한 정책결정의 판단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추계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대규모조사통계를 통폐합하거나 간소화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전산업분야 전체의 사업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회계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센서스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시됨.
- 경제센서스의 도입을 통해서 사업체와 기업의 모집단명부가 정비될 수 있고, 현재 통계의 정비가 불충분한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조사의 설계 및 정밀도의 향상 등에 커다란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경제센서스는 산업구조통계를 기준으로, 사업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벤치마크가 되는 동시에 사업체·기업의 모집단명부를 정비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에는 매우 작은 사무실 혹은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소위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등 조사원의 눈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사업체나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법인의 명칭이나 소재지 등에 관한 기초적인 법인정보를 제고하고 있는 등기정보 등의 행정기록을 활용하는 등 조사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음.

□ 추진과정

- 일본은 경제센서스의 도입을 위해서 「통계 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각부처 통계주관 부국장 등 회의 합의) 및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5」(閣議 결정)에 근거하여 「경제센서스(가칭)의 창설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검토를 실시함.
- 「통계 행정의 새로운 전개방향」에서는 원칙적으로 전산업의 모든 사업체·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를 2009년 조사(2008년 기준시점) 실시를 목표로 구체적인 검토를 추진할 것을 결정함.

- 이 합의에서는 통계조사를 위해 총무성(통계기준부)은 2003년에 관계부처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관계자를 구성하고, 그 구체화를 위한 검토의 장을 마련하여 2005년 중에 구조 및 이와 관련된 대규모 통계조사 등의 통폐합, 간소화·합리화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결정함.
- 또한, 경제센서스가 최초 실시되는 2009년 조사(2008년 기준시점)는 통계주기로 볼 때 2004년 조사(2003년 기준시점)와 같이 '사업체·기업통계조사(간이조사)', '서비스업기본조사', '전국소비실태조사', '상업통계조사(간이조사)' 및 '농림업센서스' 5개의 대규모 주기 통계조사가 폭주하는 문제가 발생
- 이를 위해 2009년에 실시 예정인 2008년 조사기준시점의 대규모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되는 검토회에서 통폐합이나 간소화·합리화의 검토결과를 감안하여 실시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여러 과제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등의 협력을 얻어 2004년 1월에 「경제센서스(가칭)의 창설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고, 2006년 3월말까지 21회의 검토회의를 실시함.
- 경제센서스의 창설에 관한 검토회는 3명의 외부전문가를 좌장으로 하고, 정부부처의 통계담당부서장 10명, 통계생산 정부기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담당 부서장 3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됨.

<표 3-4> 일본의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 구성

구분	구성원
좌 장(3명)	清水雅彦 慶應義塾大学経済学部教授 舟岡史雄 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 椎橋建夫 株式会社日立製作所 그룹戦略本部経営企画室部長
정부부처 통계담당부서(10)	内閣府经济社会総合研究所国民経済計算部企画調査課長 総務省統計局統計調査部経済統計課長 総務省政策統括官付統計審査官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調査統計部調査統計課長 文部科学省生涯学習政策局調査企画課長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企画課統計企画調整室長 農林水産省大臣官房統計部統計企画課長 経済産業省経済産業政策局調査統計部統計企画室長 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情報管理部情報企画課企画調整室長 環境省大臣官房総務課環境情報室長
통계생산 정부기관(1명)	日本銀行調査統計局統計企画担当総括企画役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부서(2명)	東京都総務局統計部経済統計課長 大阪府企画調整部統計課長

자료: 經濟センサス (仮称) の創設に關する検討會(2006), 經濟センサスの枠組みについて

<표 3-5> 일본의 경제센서스 실시에 관한 검토회 개최 현황

회의	개최일	주요 의제
1회	2004년 1월 9일	·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의 설치 · 경제센서스 검토회의 검토사항 및 일정 · 경제센서스의 목적, 필요성
2회	2004년 3월 8일	· 경제센서스의 목적, 필요성 · 경제센서스의 조사사항에
3회	2004년 4월 26일	· 경제센서스의 조사사항
4회	2004년 6월 4일	· 미국의 경제센서스
5회	2004년 7월 22일	· 향후 검토 진행방법(구조작성을 위한)
6회	2004년 10월 7일	· 향후 검토 진행방법(구조작성을 위한)
7회	2004년 11월 25일	· 향후 검토 방법(조사이미지의 논점정리, 종사자수, 경리사항 등의 검토)
8회	2004년 12월 16일	· 경제센서스에 있어서 조사사항 등
9회	2005년 1월 24일	· 경제센서스에 있어서 조사사항 등 · 2004년 3개 조사 동시실시에 관한 사항 · 경제센서스와 관련한 기존대규모통계조사와의 관계
10회	2005년 2월 28일	· 경제센서스에 있어서 조사사항 등 · 경제센서스와 관련한 기존대규모통계조사와의 관계
11회	2005년 3월 25일	· 2004년 말까지 얻어진 결론 등
12회	2005년 4월 25일	· 향후 검토사항(2005년 검토사항)
13회	2005년 6월 30일	· 행정기록의 이용을 위한 검토
14회	2005년 7월 28일	· 당면 검토사항 · 「2009년 예비조사」 ¹⁾ (2008년 기준시점) 일정 ·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의견조회의 결과
15회	2005년 8월 25일	· 경제센서스의 창설에 관한 의견에 대한 대응 · 기존통계조사와 경제센서스의 관계정리
16회	2005년 9월 27일	· 경제센서스의 창설에 관한 의견에 대한 대응 · 업무기록 등의 이용에 의한 응답자 부담경감책에 대한 조회결과
17회	2005년 11월 11일	· 모집단정보의 정비와 경제센서스의 관계 · 업무기록 등의 이용에 의한 응답자 부담경감책 · 「2011년 본조사」 ¹⁾ (2010년 기준시점)의 회계 대상기간
18회	2005년 12월 22일	· 업무기록 등의 이용에 의한 응답자 부담경감책 · 「2011년 본조사」(2010년 기준시점)의 회계 대상기간 · 경제센서스의 실시시기 등
19회	2006년 1월 30일	· 「2011년 본조사」(2010년 기준시점)의 회계 대상기간 · 경제센서스의 실시시기 등 · 2006년 실시(2005년 기준시점) 사업체기업통계조사의 시험조사 결과
20회	2006년 3월 1일	· 2005년도 결정사항의 정리
21회	2006년 3월 31일	· 경제센서스의 구조

주 1) 2009년에는 모집단명부의 확보 차원에서 예비적 성격의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에 2010년 기준시점으로 경제센서스 성격의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편의상 「2009년 예비조사」와 「2011년 본조사」로 기술함.

자료: 일본통계국(2004), 經濟センサス(仮称)の創設に関する検討會設置要領

○ 한편, 이러한 검토회를 통해 검토된 과제에 대해서 정부부처간 조정을 포함하여 합의가 형성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각 부처 등의 협력을 얻어 총무성(정책총괄관)에 경제센서스에 관한 기획·조정을 위한 검토의 장으로서 「경제센서스 기획회의」가 2006년4월에 구성되어 2007년 7월 까지 4회에 걸쳐 개최됨.

- 경제센서스 기획회의는 4명의 외부전문가와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의 구성원인 정부부처의 통계담당부서장 10명, 통계생산 정부기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담당 부서장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됨.

<표 3-6> 일본의 경제센서스 기획회의 개최 현황

회의	개최일	주요 의제
1회	2006년 5월 19일	· 경제센서스 기획 회의의 설치 건 · 경제센서스의 검토 경위 건 · 「2011년 본조사」 계획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건 · 그 외
2회	2006년 9월 29일	· 「2011년 본조사」 계획을 위한 워킹그룹의 검토사항 · 「2011년 본조사」 계획의 검토사항 · 모집단 정보정비 워킹그룹의 설치 건 · 그 외
3회	2007년 3월 1일	· 2009년 조사(2008년 기준시점)의 검토상황 건(중간보고) · 워킹그룹의 검토상황 건(보고) · 그 외
4회	2007년 5월 10일	· 2009년(2008년 기준시점) 경제센서스시험조사 건

자료: <http://www.stat.go.jp/info/kenkyu/e-census/kaigi.htm>

2) 일본 경제센서스의 실시계획

□ 실시개요

- 경제센서스는 통계법으로 규정되는 지정 통계조사로서 실시하고,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소 및 법인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은 시구읍면 계통의 조사원 조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본사 등 일괄 조사, 우송·온라인 조사의 도입을 모색함.
- 경제센서스는 행정기록 등을 이용해 사업체 및 법인기업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선 2009년에

2008년 기준시점으로 모집단명부의 확보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에 2010년 기준시점으로 본격적인 경제센서스를 실시함.

- 2009년(平成21年)에 실시하는 조사는 행정기록 등의 법인기업의 명칭·소재지 등의 정보를 이용해 사업체·법인기업의 파악에 중점을 둔 조사로서,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등의 기초 항목, 복수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산하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함.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2011년(平成23年)에 경리 항목의 파악에 중점을 둔 조사로서,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명칭, 소재지, 종업원 수 등의 기본항목, 매출액과 그 내역 및 필요경비 등을 파악함.
- 매출액은 산업에 따라 조사단위를 구분하여 매출액의 개념이나 그 내역을 산업별로 설정하여 조사하고, 필요경비 등은 법인기업 단위로 조사할 예정임.
- 이처럼 일본의 경우 경제센서스를 2009년에 2008년 기준시점으로 모집단명부의 확보 차원에서 예비적 조사의 성격으로 실시하고, 2011년에 2010년 기준시점으로 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각각 「平成21年調査」와 「平成23年調査」로 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2009년 예비조사」와 「2011년 본조사」로 기술함.
- 「2009년 예비조사」는 총무성(통계조사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며, 「2011년 본조사」는 총무성(통계조사부)과 경제산업성(조사통계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함.
- 조사주기는 「2011년 본조사」를 기점으로 5년으로 하며, 「2011년 본조사」의 실시 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의 중간에 경제센서스의 틀 내에서 모집단정보의 정비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함.

□ 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설정

- 경제센서스는 시구정촌계통의 조사원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의 조사사무가 원활하게 행해지도록 이들 기관에 대한 국가의 조사사무체계의 일원화,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예상집행의 일원화는 엄격한 하나의 조직을 두어 지방공공단체의 위탁비를 일원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또한, 「2011년 본조사」의 실시시기에는 지방공공단체의 본래 업무에 경제센서스의 준비업무가 추가되어 업무의 과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구의 설정 등 준비업무와 관련해서는 실제 조사를 행하는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체제를 고려하면서 지방공공단체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행함.

□ 조사결과표의 설계와 모집단정비

- 조사결과표의 설계는 「2009년 예비조사」와 「2011년 본조사」의 실시목적에 다르므로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2009년 예비조사」는 「2011년 본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집단명부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복수의 조사표, 사전인쇄(Pre-Print), 일괄조사 등을 고려하여 조사결과표를 설계하도록 함.
- 복수의 조사표 설계와 관련해서는 「2011년 본조사」는 대규모 주기 조사의 통폐합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양식을 통일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응답자에 따라 다양한 조사표를 배부하기 위해 산업분류에 대한 정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사전인쇄와 관련해서는 「2011년 본조사」시 응답부담 경감, 이해하기 쉬운 조사사항의 설정, 조사결과 입력·심사·집계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
- 즉, 조사 담당기관에서는 「2011년 본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2009년 예비조사」의 실시계획 수립까지 「2011년 본조사」에 사전인쇄할 정보가 무엇인가를 검토하여 해당 정보를 정비
- 「2011년 본조사」에서는 본사 등 일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사항인 '산하사업체의 명칭·소재지'의 결과에 의해 일괄조사의 대상되는 기업의 본사·지사 명부를 정비

- 그리고 복수의 조사표와 프리프린터에 필요한 산업분류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의 정비는 「2009년 예비조사」의 결과 이외에 2008년에 실시될 공업통계조사와 2007년에 실시되는 상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모집단정보와 관련해서는 통계조사 등의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의해 「2009년 예비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체·기업 DB를 갱신할 계획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정보를 포함한 「2009년 예비조사」의 결과를 사업체·기업 DB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 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2009년 예비조사」에서 사업체의 조사사항에 의해 파악되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종업원 수, 자본금 등으로,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가능한 상세한 분류로, 그리고 사업체의 복수의 활동내용은 대분류 정도로 제공
 - 법인기업에 대한 정보는 「2009년 예비조사」에서 법인기업의 조사사항에 의해 파악되는 본사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 등으로, 법인기업의 산업분류는 중분류 정도, 그리고 법인기업의 복수활동 산업은 대분류 정도를 제공하며, 단독 사업체 법인기업의 산업분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이용하도록 함.
 - 이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산업분류 및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의 정비는 2008년에 실시될 공업통계조사와 2007년에 실시되는 상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집계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사항(사업체수, 기업수, 경영조직, 개설시기, 종업원 수, 자본금, 경제활동의 내용 등)에 대한 통계표를 산업별로 작성함과 동시에 지역별로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하 사업체의 파악에 의한 사업체단위의 활동내용을 법인기업으로 집약시킴으로써 정비되는 법인기업의 통계, 사업체에 있어서 복수의 활동내용을 파악하게 되는 사업체의 통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정리한 뒤에 정비를 도모함.
- 「2011년 본조사」에서 모집단정보에 대한 정비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정보를 사업체·기업 DB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

가 필요함.

- 사업체에 대한 정보는 「2011년 본조사」에서 사업체의 기본사항에 의해 파악되는 명칭, 소재지, 연락처, 종업원수, 자본금 등과 더불어 존속사업체, 신설사업체의 산업분류에 대한 정보와 사업체의 복수 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법인기업에 대한 정보는 법인기업의 조사항목에 의해 파악되는 본사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 자본금등과 함께 이하의 법인기업의 산업분류와 복수활동내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2011년 본조사」 집계표는 우선 1차 집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함.
 - 사업체의 기본조사 항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사업체수, 법인기업수, 종업원수)은 전산업 공통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산업별 집계를 실시하며, 더불어 사업체단위로 매출액과 그 내역을 파악하는 것 중에서 대분류 단위로 그 매출액의 내역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산업별 집계를 실시
 - 사업체 단위로 매출액과 그 내역(대분류내의 상세한 정보)을 파악한 것을 포함한 집계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집계를 실시하며, 이 때 지역집계도 행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 사업체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
 - 법인기업 단위로 매출액과 그 내역을 파악한 것을 포함한 집계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집계를 실시하며, 이때 지역집계는 본사사업체의 소재지로 실시하며, 신설 법인기업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
 - 법인기업 단위로 파악한 매출액 및 필요경비 등은 일부의 특수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별 집계를 실시하며, 이 때 지역집계는 본사 사업체의 소재지로 실시
 - 매출액과 그 내역 및 필요경비 등은 회계 대상기간을 2010년 1월~12월의 결과로 간주해 집계

- 「2011년 본조사」의 2차 집계는 본사·지사 관계의 보정을 실시한 후, 법인기업 단위로 추계한 총부가가치(매출액, 필요경비 등으로부터 계산)에 대해 신설 사업체도 포함한 산하 사업체의 종업원수 등으로 안배하고, 근사적인 사업체 기준의 총부가가치 통계를 산업별로 작성할 구체적인 방법을 「2011년 본조사」의 실시계획 수립시까지 충분한 검토를 행하여 실시함.
- 「2011년 본조사」의 업무기록 등에 대해서 경제센서스에서 각 사업체·기업으로부터 입수되는 것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결과를 집계하도록 함.
 - 회계항목의 집계에 따라 관련된 조사사항, 업무기록 등, 참고정보에 의한 심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추계 등의 방법에 의해 보완

□ 응답부담의 경감조치 관련 사항

- 경제센서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업무기록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 「2011년 본조사」시 조사사항 중 회계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업무기록의 이용을 통해 응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1년 본조사」의 준비조사명부를 작성하기 전에 업무기록 등을 입수한 기업이나 사업체의 명칭, 소지재, 즉 전년도에 제출한 명칭과 소재지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보와 「2011년 본조사」의 준비조사명부를 대조하고, 「2011년 본조사」의 조사표에서 회계항목 중 업무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은 제외함.
 - 「2011년 본조사」에서 얻어진 정보, 즉 조사표에서 파악된 정보와 업무기록에 의해서 얻어진 정보를 비교한 후 그 결과를 집계하여 공표함.
- 이외에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업무자료들이 경제센서스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조치를 취하고

있음.

- 첫째는 현시점에서 경제센서스에의 활용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해당기관에서 자료의 제공도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은 업무자료로는 '국립대학법인손익계산서'와 '선박운항사업자(내항여객선)' 으로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2011년 본조사」를 위해 조사실시부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함.
- 둘째는 현시점에서 경제센서스에의 활용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에서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회답을 얻은 못한 '은행', '신탁회사', '신용금고', '신용조합', '증권회사', '투자신탁업자',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사학사업단자료', '인재파견업'에 대해서는 경제센서스의 기획조정을 위한 검토의 장에서 계속 이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셋째는 현시점에서 전산화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대상범위, 게재정보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경제센서스에 자료제공이 가능하다고 회답한 '철도사업자', '궤도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외항운항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향후 전산화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함.

3) 기존 통계의 통합 계획

□ 사업체·기업통계조사

- 사업체·기업통계조사는 전국의 사업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와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항목을 조사하여 정책의 기초자료 및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모집단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전수조사로서 우리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성격이 거의 흡사하나, 조사주기는 2-3년으로 부정기적인 것이 상이함.
- 이러한 사업체·기업통계조사는 경제센서스의 도입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경제센서스로 통합할 예정임.
- 현재의 사업체·기업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사항 중 산업 전체에 대한 기본구조의 파악이나 각종 통계조사의 실시를 위한 모집단정보

의 제공에 필요한 조사사항(사업체·기업의 종업원 수, 산업 분류에 필요한 사항 등)은 사업체·기업통계조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기능을 근거로 「2009년 예비조사」 및 「2011년 본조사」에서 모든 사업체·기업에 대하여 산업별로 계속해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

□ 서비스업기본조사

- 서비스업기본조사는 서비스업 관련 사업활동을 행하는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업무실태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임.
 - 서비스업 관련 산업 중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공공국방행정 등의 산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을 조사범위로 하고 있으며, 5년 주기(3, 8자년)의 전수조사로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총조사와 유사함.
- 서비스업기본조사도 경제센서스의 도입과 동시에 폐지하고, 경제센서스로 통합할 예정임.
 - 즉, 2009년에 실시될 예정인 2008년 기준시점의 「서비스업기본조사」는 폐지하고, 현재 서비스업기본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각종 정책상 필요한 조사항목(수입액, 거래선별 수입의 비율 등)은 「2011년 본조사」에서 계속 조사할 계획임.

□ 상업통계조사

- 상업통계조사는 전국의 사업체 중 상업(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상품판매액 등을 파악하여 상업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전수조사로서 본조사는 5년(1, 6자년)을 주기로 실시되며, 본조사의 2년 후에 간이조사가 실시로서 우리의 도소매업총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조사임.
- 이 상업통계조사도 주요 조사항목은 경제센서스에 조사하고, 향후에는 표본조사로의 개편 및 조사항목의 조정을 도모할 예정임.

- 2009년에 실시할 예정인 2008년 기준시점의 「상업통계조사(간이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정책상 필요한 조사항목(판매액, 매장면적 등)에 대해서는 변화가 극심한 상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는 관점에서 「2011년 본조사」에서 계속 조사
- 「2011년 본조사」 실시 2년 후에 상업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상업통계조사를 실시하며, 이 때 표본조사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사항의 재검토를 도모할 예정

□ 공업통계조사

- 공업통계조사는 공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의 공업관련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음.
 - 전국의 공업 관련 사업체에 대하여 0, 3, 5 및 8자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외의 연도에는 종사자 4인이상의 사업체에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우리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통계조사임.
- 이러한 공업통계조사는 2010년에 실시할 예정인 2009년 기준시점의 조사만은 실시하지 않고, 이후에는 매년 전수조사로 실시하던 것을 표본조사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며, 조사항목의 간소화를 도모함.
 - 2009년에 실시할 예정인 2008년 기준시점의 공업통계조사는 「2009년 예비조사」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문제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실시
 - 2010년에 실시할 예정인 2009년 기준시점의 공업통계조사로 파악하는 사항은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2011년 본조사」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하며, 2010년이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도임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공업통계조사의 모든 조사사항을 답습하는 형태로 조사함.
 - 「2011년 본조사」 실시 후 공업통계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본조사의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사사항의 간소화를 도모

□ 농림업센서스와 어업센서스

- 농림업센서스는 농림업의 생산구조나 생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농림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 5년 주기(0, 5자년)의 전수조사로서, 2000년 기준시점의 조사까지는 농가, 임가나 농림서비스사업체 등의 가구나 법인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5년 기준시점의 조사부터는 농림업경영체¹⁸⁾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음.
 - 우리의 농업총조사와 임업총조사를 통합한 것과 유사한 성격의 조사임.
- 이러한 농림업센서스는 현행대로 실시하며, 경제센서스와의 중복조사에 대한 시정조치도 실시하지 않을 계획임.
 - 즉, 농림업센서스와 「2009년 예비조사」 및 「2011년 본조사」와의 동시 실시, 그리고 농림업센서스의 매출액으로 조사하고 있는 회계항목 등을 「2011년 본조사」로부터 제외하는 등의 중복에 대한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
 - 단, 농림업센서스의 매출액 조사결과를 「2011년 본조사」에서 활용하는 것은 향후 검토할 예정
- 어업센서스 또한 농림업센서스와 마찬가지로 「2009년 예비조사」 및 「2011년 본조사」와의 동시실시로 인한 중복조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계획

4) 향후 추진과제와 검토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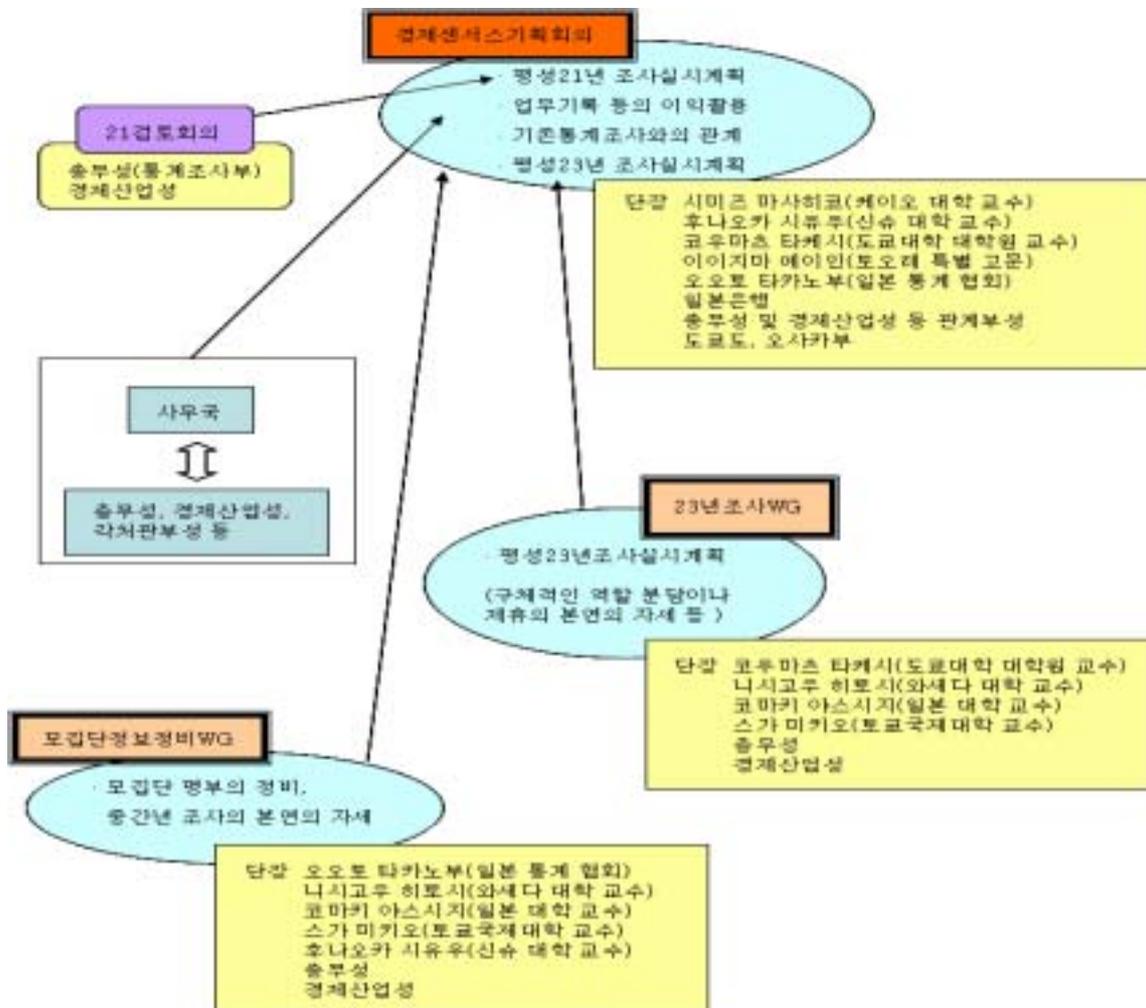
- 경제센서스는 정부 전체와 관계되는 대규모 통계조사이므로 조사의 실시 계획에 대한 정부내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그 기획·입안 작업을 진행시킬 필요성을 인식

18) 농림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위탁받아 농림업의 작업을 행하고, 생산이나 작업에 관계된 면적 및 두수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농림업생산활동을 행하는 자(조직의 경우는 대표자)를 의미함. (일본의 농림업센서스 홈페이지 <http://www.maff.go.jp/census/2005/index.html> 참조)

- 또한 지금까지 검토회에서 검토되어 왔지만 더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업무기록의 활용에 의한 응답자의 부담경감 방안, 경제센서스와 관련한 기존 통계조사와의 관계의 정리, 중간년도 조사에 의한 모집단정보의 정비방안 등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내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2006년 4월 이후, 각 부처의 협력을 얻어 총무성(정책총괄관)에서 신속하게 경제 센서스에 관한 기획 조정을 위한 검토의 장를 마련하고, 정부내 조정을 포함한 합의형성을 추진하고 있음.
 - 총무성(통계조사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2009년 예비조사」의 구체적인 기획·입안 작업은 「2009년 예비조사」와 「2011년 본조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4월부터 총무성(통계조사부) 및 경제산업성(조사통계부)이 정기적으로 검토회의를 통해 합의형성을 도모함
 - 총무성(통계조사부)과 경제산업성(조사 통계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2011년 본조사」의 구체적인 기획·입안 작업은 양 부처의 역할분담이나 협력을 「경제센서스 기획회의」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정리할 계획
 - 또한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국가의 조사사무계통의 일원화,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명확히 할 예정
- 이외에도 5년주기의 조사기간 내에서 실시하는 모집단정보의 정비를 위한 조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
 - 「2011년 본조사」 실시 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센서스의 사이에 모집단정보의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경제센서스와의 관계 등을 「경제센서스 기획회의」를 통해 계속 검토
 - 모집단정보의 정비에 기초하여 표본설계를 재검토하는 조사나 경제센서스의 정비에 기초하여 간소화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경제센서스의 조사 실시 계획의 기획·입안 작업의 진척상황 및 모집단정보의 정비를 근거로 재차 검토하며, 구체적인 검토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제센서스 기획회의」에서 정리해서 제시

- 이외 경제센서스와 기존 통계조사의 관계, 업무기록의 활용을 통한 응답자의 부담경감 방안도 「경제센서스 기획회의」에서 심층적으로 계속 검토를 수행함.
- 경제센서스의 상기와 같은 실시계획 및 향후 정부부처간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구체적인 기획·입안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제센서스의 기획회의가 중심이 되는 검토체제를 구축함.

<그림 3-9> 일본의 경제센서스 실시를 위한 검토체제



자료: <http://www.stat.go.jp/info/kenkyu/e-census/kaigi.htm>

- 또한 총무성 통계국에서는 경제기본구조통계과로 하여금 경제센서스 관

런 추진계획과 검토회의의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함.

- 경제기본구조통계과는 과장급을 포함하여 29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요임무는 '경제센서스 창설에 관한 검토회'에 합의된 경제센서스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2006년과 2007년에 검토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표 3-7> 일본의 경제센서스 추진조직 및 주요업무

담당	직원 (명)	주요업무	2006년과 2007년 검토 사항
기획계	7	기획·실시·사무	▶매년 경제센서스 관련 실무검토회의 개최(지자체 실무자 참가)
지도계	4	지방공공단체의 지도	
조정계	3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연구분석계	2	조사방법의 연구·결과분석	▶2006년 검토사항 · 조사대상, 조사체계 등 검토 · 우편조사도입 관련 업무검토 · 조사구 설정관련 업무검토
정보기획계	2	모집단정보에 관한 기획·관리	▶2007년 검토사항 · 심사관련 사무 · 지자체와 조사협력관계 검토 · 비협조 사업체 대응방안 검토 · 시험조사 실시
심사발표계	6	조사결과의 심사·발표	
조사구계	3	조사구의 설정·관리	
통계전문직	2	전문적 사항의 기획·입안	

자료: 통계개발원(2006),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

5) 일본 경제센서스 실시의 의의와 기대효과

- 경제센서스 실시의 가장 큰 의의는 분산형으로 비표준화된 산업구조통계의 정비와 함께 통계의 질적인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집단 명부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임.
- 전산업 분야의 산업 횡단면적인 사업체·기업의 공통 모집단명부의 정비는 사업체·기업을 조사객체로 하는 기존의 산업 분야별 통계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사업형태의 출현이나 정보 통신 기술의 진전과 더불어 소상공인(SOHO) 등 외관상 포착이 곤란한 사업체·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등 통계조사원에 의한 조사만으로는 사업체·기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

- 이에 행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및 기업의 정확한 파악에 노력을 경주
- 경제센서스 실시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모집단명부의 정비, 국가 및 지역 차원의 2차 통계에 대한 품질 제고, 서비스산업통계의 정비, 행정시책 실시를 위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통계조사의 표본 추출을 위한 추출 조건, 표본 조사의 모집단 복원을 위한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에 대해 그 모집단 정보의 정비를 도모
- 산업연관표나 국민경제계산(SNA 통계)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였을 때, 원칙으로서 전산업을 아우르는 1차 통계정보의 정비를 도모
-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3차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통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업을 커버할 수 있는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통해 제3차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의 정비를 도모
- 개별 산업별 통계로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의 실태밖에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차 사업체·기업의 경제활동이 다각화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제활동의 다각화에 대응한 통계 및 모집단 정보의 정비를 도모함.
- 지역산업연관표나 지역(현·시)경제계산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 이외에 지역의 실정에 따라 치밀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지역의 경제활동에 관한 1차통계의 정비를 도모
- 지방소비세의 청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보조금 배분 등의 행정시책을 위한 기초정보의 정비를 도모

5. 통합적 표본조사의 사례: 캐나다,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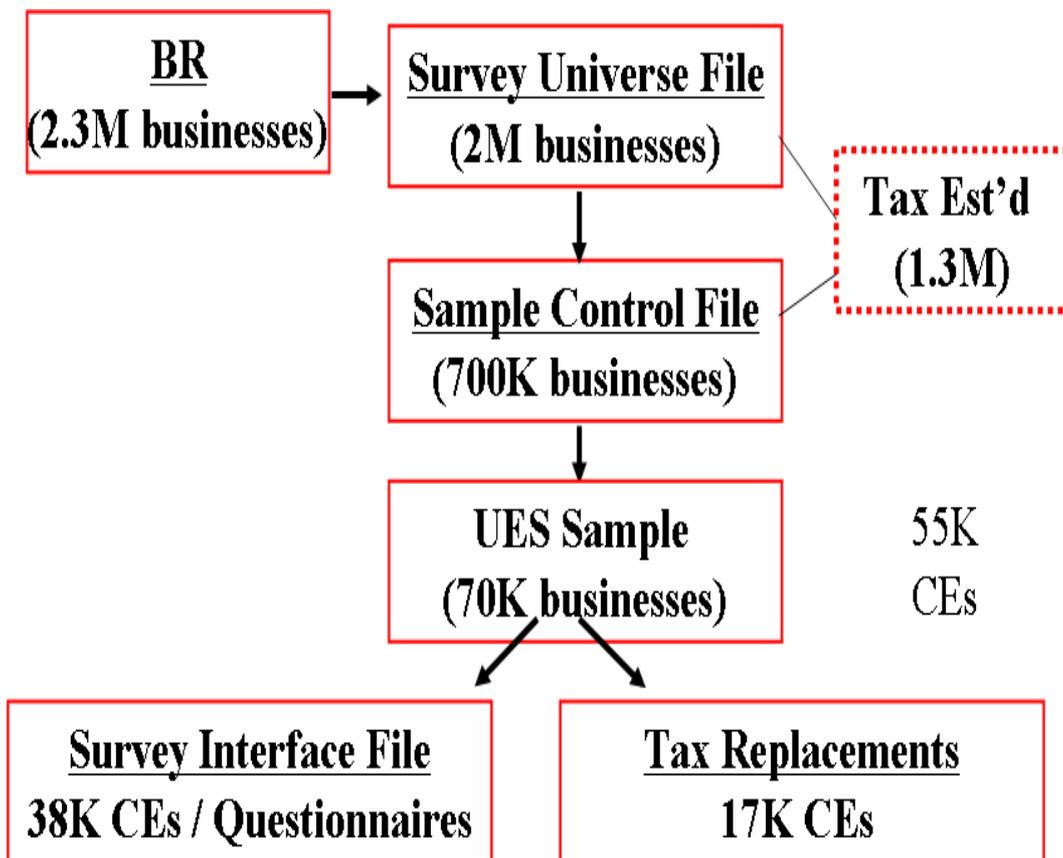
1) 캐나다의 통합기업체통계조사

- 캐나다의 산업구조통계는 국민계정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 1996년 지역경제통계(Provincial Economic Statistic)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시스템 개발을 시작
 - 1998년에 연간 산업구조통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체구조를 재조정하면서 1997년을 기준년으로 시범(pilot)조사를 실시
- 통합시스템은 「통합기업체통계조사」(Unified Enterprise Survey: UES)라고 불리는 데, 연간 산업구조통계조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운영하며 단일통계조사시스템, 단일표본의 틀, 조사항목의 통일, 적절한 행정자료의 사용, 일관된 자료수집 등을 포함하고 있음.
 - UES는 하나의 틀을 사용하여 표본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모든 사업체가 중복조사 되지 않도록 기업체 중심의 접근방식을 취함.
 - 표본설계시 다수 품목을 생산하며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복합기업체(complex enterprise)에 초점을 맞추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고 산업별, 지역별 자료를 얻기 위해 적절한 표본을 구성
 - 또한 조사항목의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정교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
- UES의 기반은 90종이 넘는 통계조사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업자명부로서 통계조사 응답과 피드백을 통하거나 세금과 같은 행정자료를 이용해 구축되고 있음.
 - 사업자명부의 구조는 사업체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기업체는 산업분류가

상이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수 사업체로 구성되는 복합기업체와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사업체를 보유한 단일기업체(single enterprise)로 구분

- 사업자명부는 직접연락, 행정자료, 통계조사 실시 등에 의해 연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음.

<그림3-10> 캐나다 통합기업체통계조사(UES)의 표본추출 체계



주: BR은 사업자명부(Business Register), Questionnaires는 조사항목, CE는 복수 사업체에서 복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체(Complex Enterprise)를 의미

자료: Marie Brodeur et al., "Integrated Approach to Economic Surveys", International Workshop on Economic Census, Beijing, July 2005.

- UES의 조사범위는 전지역, 전산업을 포괄하며, 조사수단은 우편조사를 이용함.
 - 사업자명부 구축을 통해 표본들을 구축한 후 표본에 의한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등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
 - 우편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후속권고 등을 통해 조사에 응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조사주기는 연간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분기별 국민계정 작성을 위한 통계조사 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도 실시
 - 조사시점은 기준년의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조사시기는 기준년이 끝나는 해부터 시작해 약 12-15개월 안에 공표까지 마침
 - 조사단위는 사업체(establishment)와 기업체(enterprise)를 대상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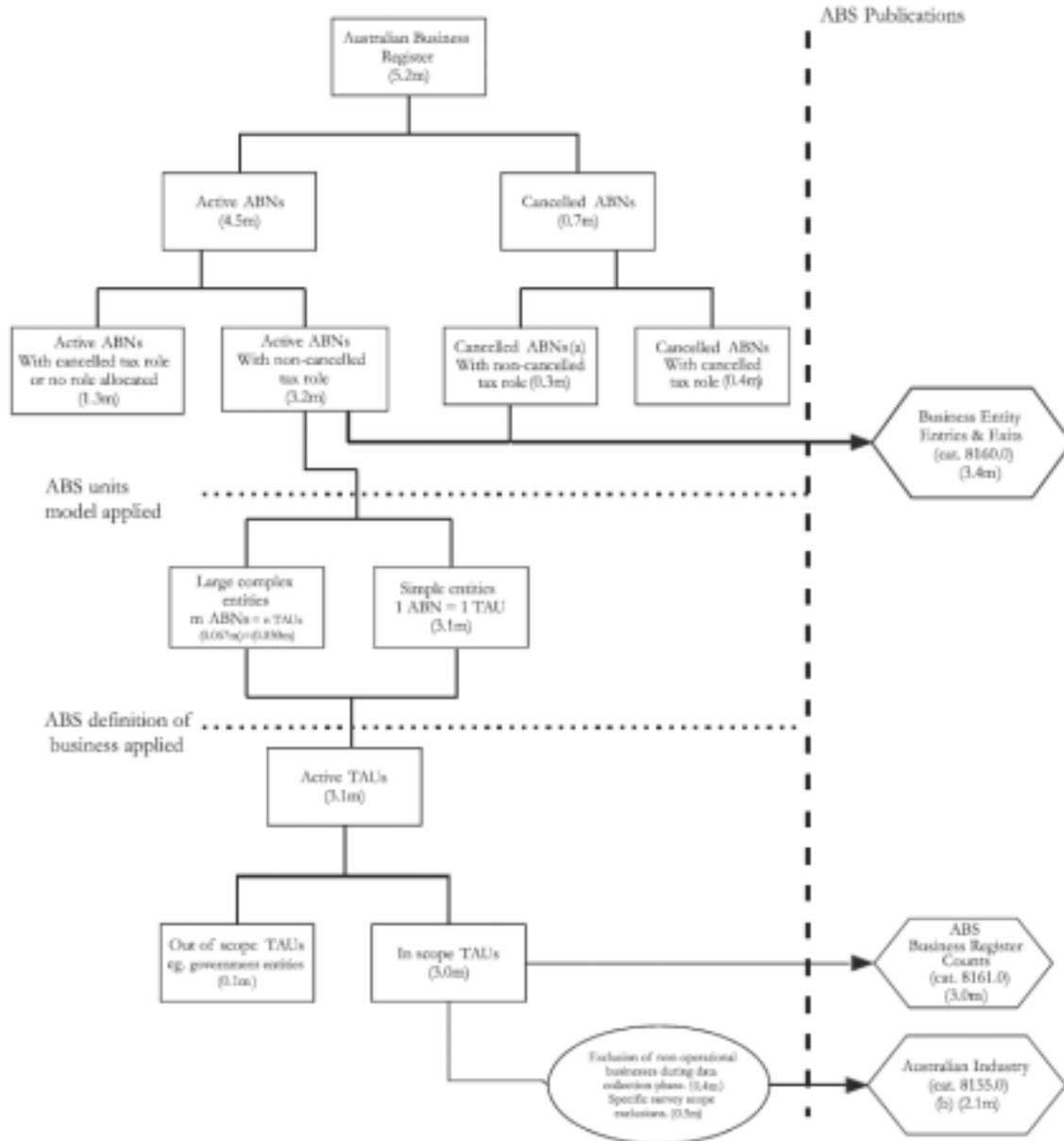
2) 호주의 산업구조통계 조사

- 호주의 산업구조 통계는 세금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명부를 구축한 후 표본조사에 의해 연간 산업구조통계를 작성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1969년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시하였던 경제센서스를 종료하고, 1994년 이후부터 행정자료에 기반을 둔 대체표본조사방식으로 산업통계를 조사하기 시작
 - 2000년 이후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세체계를 바꾸면서 사업자명부를 새로운 조세체계에 맞추어 사업자명부를 재구축한 후, 호주국세청으로부터 사업체활동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 행정자료에 기초한 표본조사를 실시함
 - 현재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통계조사로는 연간주기로 실시되는 경

제활동조사, 제조업통계조사, 광업설비조사, 특정서비스산업통계조사가 있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보통신기술통계조사와 더불어 6-7년 주기로 실시되는 건설업통계조사, 소매업통계조사, 도매업통계조사가 있음.

- 호주 산업구조통계시스템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계수요, 특히 국민계정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 하나는 산업전체의 연간자료를 수집하는 핵심(core)프로그램과 다른 하나는 연간 이상의 산업별 상세한 자료를 핵심프로그램과 연동(rolling)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료의 수집은 「연간통합자료수집」(Annual Integrated Collection: AIC)라 불리는 통합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호주통계청의 사업체명부는 두 개의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는 호주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복합 모집단이며 다른 하나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단순 모집단임
 - 국세청의 행정자료 외에도 공공, 금융, 농업부문에 대한 자료는 일부 행정자료를 이용해 사업자명부를 구축
 - 지난 몇 년간 호주통계청은 자료수집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주무부서인 사업체통계센터는 자료의 수집 뿐 만아니라 자료를 처리하고 품질체크를 병행
- 경제부문과 회계개념의 연계작업을 통하여 수요자 만족을 최대화하는 조사표를 작성하고, 표본설계는 산업*부문*지역*규모별로 층화하여 신뢰구간을 설정하며, 조사항목은 부가가치, 급여, 영업이익, 총고정자본 등을 포함.
- 호주통계청은 통합 환경의 기반을 구축해왔고, 그 주요 구성요소로는 입력자료 보관(Warehouse), 지능형 scan 설비, 자료 수집 및 편집을 위한 시스템(Blaise), 표준화된 추정 및 가공(Imputation)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보관을 위한 중앙 보관소, 메타자료보관소 등이 구축됨.

<그림3-11> 호주의 사업자명부 구축 체계



주: ABS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N은 사업체 수(Australian Business Number), TAU는 활동하고 있는 단위의 유형(Type of Active Unit)을 의미함.
 자료: 호주통계청, "A Statistical View of Counts of Businesses in Australia, Information paper No. 8162.0, 2005"

6.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 새로운 통계조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준비를 철저히해야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센서스 혹은 통합적 표본조사형태를 도입하던 주요국들은 프로그램의 목표설정 및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음.
 - 특히, 우리와 같이 경제센서스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16명으로 구성된 경제센서스 도입을 위한 검토회를 2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센서스의 도입 방안과 기존 대규모 통계조사 등의 통폐합이나 간소화 및 합리화 방안을 모색함.
- 조사체계의 준비 및 실제조사단계에 있어서 자문기구나 운영조직을 구성하며, 여기에는 중앙 및 지역의 지원조직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제센서스 실시는 센서스국내에 8개의 부국장급 부서 중 하나인 경제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8개과(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도 국무원내 경제센서스 지휘팀(11명) 및 판공실(주임급 5명, 회원 29명 및 7팀과 부문연락원 등으로 구성)의 2개 조직이외에 지방(23개 성, 4개 직할시, 5개자치구)의 지휘팀 및 판공실과 각 부문별 지휘팀과 판공실을 조직하여 운영함.
 - 일본의 경우는 사전준비단계에서 검토회의와 기획회의를 운영하였고, 검토회의와 기획회의 결과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무성 통계국 내에 29명으로 구성된 경제센서스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시기별 검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모집단명부의 확보는 산업통계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며,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구조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시적인 갱신이 가능한 모집단명부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모집단명부의 확보는 국가별로 다양한 원천과 통계단위로 이루어지나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정부의 조세관련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구조통계체계에서는 모집단명부의 확보와 유지·관리와 더불어 수집된 통계의 상호 비교 및 조사부담의 경감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조사방법의 표준화와 통합화가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센서스는 모집단의 확보 및 표준화된 통합적 조사체계에 의해 광범위하고, 세부산업단위까지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조정된 활동장소가 없는 기업체나 사업체의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음.

- 통합적 표본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비교성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통계를 수집할 수 있으나, 모집단명부의 사전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제로 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이에 행정자료나 기타 방법으로 모집단명부의 확보가 용이한 국가들은 통합적 표본조사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직접조사이외의 방법으로는 모집단명부의 확보가 어려운 국가들은 경제센서스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예산지출관련 원칙의 마련도 필요함.

- 미국, 중국은 경제센서스의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실시할 예정임.

-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동부담하나 관리는 일원화하고 있고, 일본도 국가가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책임지도록 할 예정

제4장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 설정방안

1. 조사범위의 현황과 문제

-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범위는 지역적 범위와 산업적 범위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 제2장에서 언급한 산업구조통계 가운데 표준산업분류체계를 포괄하고 있는 27종(통계청 조사통계 14종, 기타기관의 통계 13종)을 대상으로 지역적 범위는 전국 및 시군구의 구분 여부, 산업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 우선 산업구조통계의 지역적 범위는 검토대상 27종 모두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통계청의 통계 중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은 전국을 포괄하면서 시군구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표되고 있음.
 - 특히,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 등은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구분이 가능함.
 - 이외의 도소매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등은 전국을 포괄하면서 시도별까지의 구분이 가능하고, 시군구나 읍면동의 세세분류 행정단위까지는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기타작성기관의 통계 13종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구분이 명확치 않고, 대부분 표본조사로 실시되는 관계로 전수조사를 지향하는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그리 중요하게 고려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산업구조통계의 산업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볼 때 산업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일수록 포괄범위가 광범위함.

- 농림어업은 전수조사인 농업총조사와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포괄이 가능하고, 연간조사로서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에 의해서도 포괄되고 있으며, 이외 법인사업체는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 의해서 포괄되고 있음.
 - 광업, 제조업 및 전기수도가스업은 기본적으로 전수조사인 산업총조사에 의해서 포괄되며, 광업제조업통계와 한국전력통계, 상수도통계 등의 연간조사에 의해서도 포괄되고 있음.
 - 건설업과 운수업은 건설통계조사와 운수통계조사로, 기타 서비스업은 서비스총조사에 의해 포괄되며, 도소매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 연간조사에 의해서도 커버되고 있음.
- 주요 개별 통계조사별로 조사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전산업을 포괄범위로 하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임.
- 그러나,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판매상 등은 통계수요의 부족 및 조사의 어려움으로 제외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A.농업 및 임업, B.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통계로는 해당 업종의 법인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가 있음.
-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작물재배업 축산업(애완 및 실험용 동물사육업, 부화업 제외),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 등이, 어업법인의 경우는 어로어업, 양식어업(어업관련서비스업제외) 등의 업종에 국한됨.
- 2차산업에 대한 조사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C.광업, D.제조업,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산업총조사」와 광업, 제조업 내 종사자수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있음.

- 이들 조사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산업세세분류까지 포괄하여 조사되고 있으며,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조사년도 내에 최소한 월 1주일이상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는 조사대상에 포함됨.
 - 그러나, 생산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이상의 산업부문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조사시점에서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공공 직업보도소 교도소의 작업장,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상 F.건설업과 관련된 통계조사는 매년 건설관련업종에 등록된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통계조사」가 대표적인 통계임.
- 산업세분류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으며, 본 통계의 조사대상인 사업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업체와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업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산업대분류 상 I.운수업과 관련된 통계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는 「운수업통계조사」가 있으며, 본 통계는 관심업종에 따라서는 산업세세분류까지 조사하고 있음.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통계는 3차 산업 가운데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한 광의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통계로서, 대표적인 통계로는 「서비스업총조사」가 있음.
- 본 통계는 산업대분류중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세세분류까지 5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음.
 - 그러나 본 통계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 중 해당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사대상 중 고정설비가 없는 행상, 이동차량 판매업자(KSIC 52820,

52899, 그외 무점포 판매업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이동음식점업 (KSIC 55223), 교육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서비스업 등 조사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보안상 자료의 공표가 어려운 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4-1> 기존 산업관련 통계의 조사범위(1)

통계 조사명	포괄산업부문 (대분류기준)	조사범위 또는 대상	조사제외	비고
전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전산업	-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 사업체대상연간조사 - 산업세세분류까지 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 통계조사	- A.농업및임업 - B.어업	- 현재 조사범위내 산업(농업,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영농(013),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01421)이, 어업은 어로어업(051), 양식어업(0521) 등을 조사	-	- 사업체대상연간조사 - 주요업종만을 조사
산업 총조사	- C.광업 - D.제조업 - E.전기, 가스 및 수도업	- 산업대분류 C.광업, D.제조업,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현재 종사자수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 - 계절적인 사유 등으로 휴업중인 사업체라도 해당년도 조업한 달이 1개월 이상인 사업체	- 조사시점 현재 설립중에 있거나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소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 사업체 대상 5년단위 조사 - 산업세세분류까지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C.광업 - D.제조업	- 산업대분류 C.광업, D.제조업을 조사범위로 하며, 조사년도 현재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이거나,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	- 조사시점 현재 설립 중에 있거나 또는 신설공사중인 사업체 - 국군, UN군이 직영하는 사업체 -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장 -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 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등	- 사업체 대상연간 조사 - 산업세세분류까지 조사

<표 4-1> 기존 산업관련 통계의 조사범위(2)

통계 조사명	포괄산업부문 (대분류기준)	조사범위 또는 대상	조사제외	비고
건설업 통계조사	- F.건설업	- 산업분류 대분류 F.건설업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건설 관련업종에 등록된 전국의 업체를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등록업체(중합, 전문, 설비, 전기공사업, 소방, 오수, 난방)와 정보통신부장관 등록업체(정보통신공사업)이 조사대상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영 공사 및 무면허공사업자에 의한 공사(주로 주택 및 직영공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기업체 대상연간 조사 - 산업세분류까지 조사
운수업 통계조사	- I.운수업	- 산업분류의 대분류 I.운수업의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운송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사업체	-	- 기업체 대상연간 조사 - 관심업종에 따라 산업세분류까지 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 G.도매 및 소매업 - H.숙박 및 음식점업 - J.통신업(J) - K.금융 및 보험업 - L.부동산 및 임대업 - M.사업서비스업 - O.교육서비스업 -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오락,문화 및 운동서비스업 - R.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중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J.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개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도매 및 소매업 중 고정설비가 없는 행사, 이동차량 판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528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 55223 이동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중 군사학교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군병원	- 사업체 대상5년 단위 조사 - 산업세분류까지 조사
도소매업 통계조사	- G.도매및소매업 - H.숙박및음식점업	- 산업대분류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업종의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사업체	-	- 사업체 대상연간조사 - 산업소분류를 중심으로 관심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세분류까지 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 L.부동산 및 임대업 - M.사업서비스업 - O.교육서비스업 -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오락, 문화 및 운동서비스업 - R.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산업대분류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R.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의 사업체	-	- 사업체 대상연간조사 - 산업소분류까지 조사

- 이상과 같은 산업구조통계들의 산업적 범위를 살펴본 결과 우선 표준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의 불투명, 보완성의 이유 등으로 인해 산업분류로서는 존재하지만 통계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음.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은 조사대상의 불투명성, 경제활동으로서 무의미 혹은 국가적인 실리차원에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모집단명부를 작성하는 사업체기초통계에서 조차 제외됨.
 - 사업장 없는 사업체(프리랜서, 무점포소매업 등), 일부 다국적기업 등도 모집단 명부에서 제외됨.
- 또한 농림어업의 경우 관련 산업구조통계들간 조사단위의 상이성, 즉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사업체단위로 조사되지만, 이외의 통계들은 가구단위로 조사되고 있어 동일한 조사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는 산업의 포괄범위에 문제가 있음.
 -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는 각각 회사, 조합 등 법인체를 제외한 농가, 임가, 어가 등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고, 농업기본통계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도 각각 농가와 어가를 조사단위로 표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 농업과 어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법인격이 있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함.
- 따라서 산업구조통계의 산업별 포괄범위는 전산업을 포괄하고 있지 않고 있어 통계의 정합성 및 포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러한 원천데이터를 제공하는 산업구조통계에서 산업의 포괄범위가 전산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산업구조통계가 포괄하는 산업군에서는 특정산업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전산업에서 그 특정산업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와 기타기관 작성 통계간에 중복되고 있

어 산업구조통계별로 조사목적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조사내용이 중복될 경우는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통계조사간 조정이나 특정통계로의 대체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산업구조통계의 산업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이고 정합적인 산업구조의 파악을 위하여 경제센서스의 도입이 필요함.
- 일정시점이나 동일시점에서 전산업의 크기나 발전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어느 한 산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산업업적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함.

2. 조사범위의 해외사례

1) 미국

□ 산업적 범위

-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사업체 기준으로 경제활동의 97%를 포괄하는 약 2천 6백만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2002년 경제센서스는 추가로 북미상품분류에 따라 다음의 산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품목별로 조사범위를 설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07년 경제센서스에는 일부 서비스품목을 추가할 예정임.
- 즉, 정보(Information), 금융 및 보험(Finance & Insurance), 전문과학기술 서비스(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Services), 행정, 지원, 폐기물관리(Administrative & Support & Waste Management & Remediation Services) 등을 2007년 경제센서스 실시시 추가를 계획하고 있음.
-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농림어업 및 공공행정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가 엄격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이용이 용이하여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일부 산업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체단위로는 조사의 한계가 있는 농업(Agriculture), 임업(Forestry), 낚시(Fishing), 사냥(Hunting) (NAICS 11)은 농업센서스에서 부분적으로 포함
- 정부규제가 엄격한 우편서비스(Postal Service), 인증된 항공승객수송(Large certificated passenger air transportation), 모든 철도수송(all rail transportation) (수송과 창고산업(NAICS 48-49)의 일부), 펀드(Fund)와 트러스트(Trust) (금융 및 보험(NAICS 52)의 일부)
-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초, 중, 고, 대학교 및 전문학교(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olleges and professional schools) (교육서비스(NAICS 61)의 일부), 노동, 정치, 종교단체(Labor, political, religious organization)와 가사(Private households) (공공행정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NAICS 81)의 일부)는 정부기관의 행정자료로,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NAICS 92, 정부센서스에 포함)은 정부센서스로 대체

<표 4-2> 미국의 산업분류와 경제센서스 대상

NAICS 분류기호	Economic Census Coverage	NAICS 산업명
72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숙박, 요식업(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56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관리(Administrative & Support & Waste Management & Remediation Service)
11	** 별도의 센서스 진행	농림어업(Agriculture, Forestry, Fishing & Hunting)
71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Arts, Entertainment & Recreation)
23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건설업(Construction)
61	* NAICS 산업분류에서 초중고, 전문대학, 대학 제외	교육(Educational Services)
52	* NAICS 산업분류에서 특수금융활동 제외	금융, 보험(Finance & Insurance)
62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의료, 사회복지(Health Care & Social Assistance)
51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정보(Information)
55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기업경영(Management of Company & Enterprises)
31-33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제조업(Manufacturing)
21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광업(Mining)
81	* NAICS 산업분류에서 종교, 노동, 정치, 가사활동 제외	공공부문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Other Service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54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Professional, Scientific & Technical Services)
92	** 별도의 센서스 진행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53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부동산, 임대, 리스(Real Estate & Rental & Leasing)
44-45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소매(Retail Trade)
48-49	* NAICS 산업분류에서 철도, 우편서비스 제외	교통, 창고(Transportation & Warehousing)
22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공공설비 (Utilities)
42	NAICS 산업분류와 동일	도매 (Wholesale Trade)

□ 지역적 범위

- 경제센서스의 지역적 범위는 미국 본토와 해외 부속도서를 포함함.
 - 50개의 주(states), 워싱턴 D.C.(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Guam,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the Virgin Islands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Samoa.
 - 그러나 개별기업의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소단위 지역에 한해서는 일부 산업에 한정해 자료 공표(<표 4-3> 참조)
- 경제센서스의 통계구역(지역)은 주(State), 군(County), 면(Place) 등으로 구분되며, 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주(State)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부 단위이고 워싱턴 D.C.(the District of Columbia)는 하나의 주(State)로 취급됨.
 - 군(County)은 각 주(State)의 주요 정치적, 행정적 단위
 - 면(Places)은 거주자가 2,500명 이상을 초과하는 군(County)의 하부단위로써 Place는 Incorporated municipalities(cities, towns, villages, borough)와 Incorporated municipalities에 포함되지 않는 town, township 같은 Selected Town and Township으로 나누어짐.
- 또한 인구의 규모와 인접관계에 의해서 Metropolitan and Micropolitan Area(MA)은 다음과 같이도 구분됨.
 - 적어도 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와 사회적, 경제적으로 통합의 정도가 높은 인접지역인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 적어도 1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하가 거주하는 도시와 인접한 지역인 Micropolitan
 - 2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인 Metropolitan Divisions

- Metropolitan과 Micropolitan에 인접한 Combined Statistical Area로 구분

○ 특수목적의 지역분류는 다음과 같음.

- 광업부문에 석유와 천연가스산업에 대해서는 대서양, 멕시코만, 태평양, 모든 국외(Offshore)에 대해 별도의 자료공표

- 건설업에 대해서만 4개의 지역(Northeast, Midwest, South, West)으로 별도 구분하여 공표하며 이 지역은 2개 혹은 이상의 하부단위로 나뉘어져 공표

<표 4-3> 지역분류별 경제센서스 범위

NAICS 코드	산업(SECTOR)	주 (State)	대도시 (MAS)	군 (Counties)	Place 2500+	우편번호 (ZIP codes)
21	광업(Mining)	X				
22	공공 설비(Uilities)	X	X			
23	건설(Construction)	X				
31-33	제조업 (Manufacturing)	X	X	X	X	X
42	도매 (Wholesale Trade)	X	X	X	X	
44-45	소매 (Retail Trade)	X	X	X	X	X
48-49	교통, 창고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X	X			
51	정보 (Information)	X	X	X	X	
52	금융, 보험 (Finance and Insurance)	X	X			
53	부동산, 임대, 리스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X	X	X	X	
54	과학 기술 서비스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X	X	X	X	X
55	기업 경영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X				
56	관리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X	X	X	X	X
61	교육 (Education Services)	X	X	X	X	X
62	의료 사회복지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X	X	X	X	X
71	예술, 연예, 레크리에이션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X	X	X	X	X
72	숙박, 요식업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X	X	X	X	X
81	공공부문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X	X	X	X	X

2) 일본

□ 산업적·지역적 범위

- 조사범위에 있어서 산업은 전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으로도 일본내 전 지역을 포함하고, 기업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일본 내 다국적기업의 지사도 조사범위에 포함함.
- 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2006년 사업체·기업통계조사시의 분류를 기준으로 일본표준산업분류(JSIC) 3단위를 기준분류로 적용하고, 산업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4단위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 미결정 사항임.

<표 4-4> 일본의 표준산업분류(JSIC, 2002년)

大 分 類	中 分 類	小 分 類	細 分 類
A 農 業	1	4	20
B 林 業	1	5	9
C 漁 業	2	4	17
D 鉱 業	1	6	30
E 建 設 業	3	20	49
F 製 造 業	24	150	563
G 電氣·가스·熱供給·水道業	4	6	12
H 情 報 通 信 業	5	15	29
I 運 輸 業	7	24	46
J 卸 売 · 小 売 業	12	44	150
K 金 融 · 保 險 業	7	19	68
L 不 動 産 業	2	6	10
M 飲 食 店 , 宿 泊 業	3	12	18
N 医 療 , 福 祉	3	15	37
O 教 育, 学 習 支 援 業	2	12	33
P 複 合 サ ー ビ ス 事 業	2	4	8
Q サービス業(他に分類されないもの)	15	68	164
R 公 務 (他に分類されないもの)	2	5	5
S 分 類 不 能 の 産 業	1	1	1
(計) 19	97	420	1,269

- 한편, 일본의 경제센서스에서 사업체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본표준산업분류의 사업체 정의에 따르며, 사업체의 산업분류부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본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일본의 최근 산업분류의 개정은 2002년 이루어졌으며, 대분류(1단위) 19개, 중분류(2단위) 97개, 소분류(3단위) 420개, 세분류(4단위) 1,269개로 이루어져 있음.
- 조사시점별로 살펴보면, 「2009년 예비조사」는 「2011년 본조사」의 조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DB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산업분류를 적용할 예정임.
 - 사업체의 기본 정보는 가능한 상세한 분류를 통해 제공하며, 사업체가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사업내용은 대분류(1단위) 정도에서 제공할 예정
 - 법인기업 기본 정보는 중분류(2단위)를 기준으로 제공하며, 단독사업체인 법인기업의 산업분류부여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이용함.
- 「2011년 본조사」에서는 「2009년 예비조사」 이후 존속 또는 신생 여부에 따라 다른 산업분류를 적용할 예정임.
 - 존속 사업체의 경우 즉, 「2009년 예비조사」 시 및 그 후의 갱신에 의해 사전에 보유한 산업분류에 대하여 대분류를 바꾸는 사업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분류 내에서 가능한 한 세밀한 산업분류(세분류)를 조사결과에 의해 정량적으로 부여한 것을 제공할 예정임.
 - 그러나, 존속한 기업일지라도 「2009년 예비조사」 시 및 그 후의 갱신에 의해 사전에 부여한 산업분류에 대하여 대분류 수준에서 사업전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대분류를 적용하며, 이후 대분류 수준 이상의 자세한 부여가 가능한지는 「2011년 본조사」의 실시계획을 작성할때까지 조사를 실시하는 부서에서 검토함.
 - 「2009년 예비조사」의 결과에 의해 산업분류의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종전의 부여된 정보를 보완하여 제공함.

- 한편, 신규 사업체의 경우, 가능한 한 자세히 산업분류를 부여하여 명부 정보로서 제공함.
- 법인기업의 산업분류는 중분류 정도를 제공하며, 단독사업체 기업의 산업분류 부여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를 이용하는 것으로 함.
- 한편, 2007년에는 「2009년 예비조사」를 위한 시험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때의 지역적 조사범위는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고 있음.

<표 45> 시험조사 실시계획의 조사범위 사례

(1) 조사의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은 시·구로 함.
 (2) 조사대상은 (1)의 지역 가운데 총무성이 지정한 조사구 내에 소재하는 민영사업소 및 이에 속하는 산하의 사업체로 함.

<총무성이 지정하는 조사구수 및 기업수>

조사지역		조사구수	기업수	기업수의 내역		
도도부현	시·구			조사원	시·구 직할 조사 등	
홋카이도	삿포로시 (추오구, 시로이시구)	8	600	560	4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4	300	280	20	
도쿄도	신주쿠구	4	300	280	20	10 (※)
	스미다구	4	300	280	20	
	키타구	4	300	280	20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나카구)	8	600	560	40	
오사카부	오사카시 (키타구, 추오구)	8	600	560	40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	4	300	280	20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추오구)	8	600	560	40	
합 계		52	3,910	3,640	270	

※ 도쿄도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수

3) 중국

□ 산업적 범위

- 중국 경제센서스 조례중 제10조는 경제센서스의 산업적 범위를 설정해 놓고 있음.
- <표 4-6>의 산업적 포괄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국민경제산업 분류」 (GB/T4754-2002) 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이 '표준'에서는 국민경제 산업분류의 기본원칙, 산업분류의 기본단위 및 산업코드의 부여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국제 기준과도 비교할 수 있음.
- 3차산업 분류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 (1)~(4)항은 2차산업, (5)~(18)항은 3차산업에 속함.

<표 4-6> 중국 경제센서스의 산업범위(조례 10조)

經濟普查的行業範圍包括：	경제센서스의 산업적 범위
(一) 采礦業；	광산채굴업
(二) 製造業；	제조업
(三) 電力、燃氣及水的生產和供應業；	전력, 천연가스, 수자원 생산과 공급업
(四) 建築業；	건축업
(五) 交通運輸、倉儲和郵政業；	교통운수, 저장, 우정업
(六) 信息傳輸、計算機服務和軟件業；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업
(七) 批發和零售業；	도매업
(八) 住宿和餐飲業；	숙박 및 요식업
(九) 金融業；	금융업
(十) 房地產業；	부동산업
(十一) 租賃和商務服務業；	임대 및 상무서비스업
(十二) 科學研究、技術服務和地質勘査業；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및 지질탐사업
(十三) 水利、環境和公共設施管理業；	수리, 환경 및 공공설비 관리업
(十四) 居民服務和其他服務業；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
(十五) 教育；	교육
(十六) 衛生、社會保障和社會福利業；	위생,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
(十七) 文化、體育和娛樂業；	문화, 체육 및 레저업
(十八) 公共管理和社會組織等。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 등

- 중국은 제2차 및 제3차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기업, 산업활동기업, 자영업체를 포괄하여 경제센서스의 산업적 범위로 설정함.
- 특히, 중국은 군부대, 경찰조직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 및 준공공기관도 조사범위에 포함함.
- 예를 들면, 군직속과 무장경찰(국경경비대, 소방부대,公安부대, 경호부대를 제외)직속의 '사업법인단위'도 경제센서스의 대상으로 해방군총장비부와 무장경찰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지역적 범위 및 대상

- 중국 경제센서스의 지역적 대상은 경제센서스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제8조: “경제센서스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제2차산업, 제3차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기업, 산업활동기업, 자영업체를 포함한다.”
- 이 조례에서 지칭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내'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을 포함하지 않음.
- 국제적 통용 방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등기·등록한 외상투자기업 및 홍콩·마카오·대만의 투자 기업, 사무기구 등은 모두 전국경제센서스의 대상에 포함됨.
-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법인기업'은 법인자격을 지닌 기업, 사업단위, 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키며, 법인자격은 없지만 법인 대우를 해야 하는 단위도 포함함.
- 법인단위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함.
- 법에 의거하여 성립되며, 자신의 명칭, 조직기구, 장소를 가지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 독립적으로 자산을 소유 및 사용(혹은 사용권한 수입)하며, 부채를 지며, 기타 단위와 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회계정산이 독립되어 있으며,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수 있음.
-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산업활동기업'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구비한 단위를 가리킴.
 - 한 장소에서 한 가지 혹은 주로 한 가지의 사회경제활동에 종사
 - 생산경영 혹은 업무활동을 독립적으로 구성
 - 수입지출 등 업무정산자료를 주관할 수 있어야 함.
- 본 조례에서 지칭하는 '자영업체'는 농가를 제외한, 생산자료가 노동자 개인 소유로서 개체노동을 단위로 하고, 노동성과가 노동자 개인에 의해 점유, 지배되는 경영자를 가리킴.

3. 조사범위 설정의 기본방향

-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산업과 이들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센서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부 조사범위를 제외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산업관련 통계들이 각기 다른 조사방법, 조사시점,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국가전체의 시각에서 일목요연하게 산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해소해야 함.
 - 개별산업의 통계간에 통계적 개념이 다르거나 산출방식이 상이할 경우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설명하는 대표적 통계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할 것임.
- 가능한 한 전산업,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일관성 있는 방법론 및 개념을 통해 조사되는 경제센서스가 되어야만 주요 가공통계의 작성에도 활용도가 큰 것임.

- 대표적인 가공통계인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경우 전산업을 포괄하여 작성, 공표되고 있으나, 산업구조통계가 갖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 통계의 작성과정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 수많은 개별산업의 통계를 이용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경제센서스는 기존 산업구조통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의 보완과 포괄된 산업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 설정 방안

-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조사범위는 이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앞의 기본방향에 언급한 것처럼 가장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고품질의 통계수집이 가능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응답자의 환경 열악이나 조사기준 통일의 어려움, 조사의 비효율성 등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거나 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과 더불어 현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조사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범위에 대한 검토내용, 주요국의 사례 및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다음과 같은 조사범위를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먼저 경제센서스의 지역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매우 영세한 극소수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조사의 효율성 차원에서 조사범위에는 포함시키되, 실제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적 조사범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모두 포괄

하도록 하나, 단기적으로는 모집단명부의 확보정도, 조사기준의 통일정도, 응답자의 응답환경 열악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산업을 제외하는 단계적 설정방식을 제안함.

- 단기적 조사범위: 모집단명부의 확보와 조사기준의 통일성 유지가 어려운 어려운 'A.농업 및 임업' 과 'B.어업'의 일부, 표준산업분류에는 존재하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의 파악이 아직은 어려운 'S.가사서비스업'과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운 'T.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대분류상의 모든 산업을 포함함.
- 장기적 조사범위: 단기적 조사범위에서 제외된 산업부문 중 향후 모집단 명부의 확보와 조사기준의 통일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A.농업 및 임업' 과 'B.어업' 및 'S.가사서비스업'를 조사범위에 포함.

<표 4-7> 경제센서스의 산업적 포괄범위(안)

산업분류	조사범위	
	단기적 조사범위	장기적 조사범위
A. 농업 및 임업	△	○
B. 어업	△	○
C. 광업	○	○
D. 제조업	○	○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
F. 건설업	○	○
G. 도매 및 소매업	○	○
H. 숙박 및 음식점업	○	○
I. 운수업	○	○
J. 통신업	○	○
K. 금융 및 보험업	○	○
L. 부동산 및 임대업	○	○
M. 사업서비스업	○	○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O. 교육서비스업	○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
R.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S. 가사서비스업	×	○
T. 국제 및 외국기관	×	×

- 이러한 단계적인 산업적 조사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향후 전개될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우선 농업 및 임업, 어업은 현재 가구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센서스의 모집단명부로 활용될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의 조사단위와 상이하고, 또한 별도의 모집단명부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조사범위에 포함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함.
- 이에 현재 전국사업체통계조사나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에 의해서 파악이 가능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경제센서스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이거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어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예정인 농가등록제를 농림어가등록제로 확대·재편하여 농가 뿐만 아니라 임가와 어가도 정부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파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 간병인, 가정부, 유모 등 가사서비스업은 현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하나의 경영체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하여 별도의 통계작성을 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인 조사범위에서 제외함.
- 가사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장소적 개념이 없이 개인이 부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파악이 곤란하여 현재 통계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가사서비스업은 향후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범위에 포함할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임.
-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를 통해 자유제 또는 등록제(예: 현재 주차장업은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음)를 실시하여 DB화를 추진하도록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모집단명부와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BOX> 농가등록제

-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경영규모와 소득수준에 맞춰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체로서의 농가에 대한 일종의 사업자등록이라 할 수 있음.
- * 맞춤형 농업정책: 영세농에 기초생활 보장, 중소농에 복지·소득정책 강화, 준전업농에 교육·규모화 지원, 전업농에 컨설팅·마케팅 지원 등
-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있음.
- 부차적으로는 농가의 경영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에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함.
- 농가등록제 시범사업은 2007년 7월부터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연말까지 전국단위의 사업준비단계를 거쳐,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 농가등록제를 농지원부 시스템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다만, 농지원부는 농가등록제를 운영함에 있어 등록된 실제 경작지의 정보를 검증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함.
- * 농지원부: 행정기관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농지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 농가등록을 농지원부 시스템에서 출발하면, 농가등록제는 도입과 함께 상당한 많은 데이터와 전산시스템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장점
- 농지원부에 등록된 약 170만 농가를 등록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
- 또한 농지원부제도 쪽에는 농지정보화사업으로 농지관련 DB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농촌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산시스템 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금융·보험업은 감독기관에 관련 통계들이 잘 정비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함.
 -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 자체를 경제센서스 실시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실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임.
 - 즉, 학교 등 공공기관, 국공립 의료기관, 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표를 만들어 감독기관을 통해 조사함.
 - 일본의 「사업체·기업통계조사」의 경우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을” 조사표(“갑” 조사표는 민간 사업체)를 사용하며, 행정기관을 통한 별도의 조사 채널을 갖고 있음.

- 기업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도 경제센서스의 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및 네덜란드 등 5개국의 통계청과 OECD, Eurostat, UNECE 및 UNCTAD 등 4개의 국제기구에서는 공동으로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조사표의 개발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다국적기업을 포함할 예정이며, 미국, 중국에서도 조사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병행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통계조사(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관할)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다국적 기업을 에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실태조사이나 외국인투자 관련 통계조사(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관할)의 조사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장이 없는 사업체(프리랜서, 무점포소매업 등)의 경우는 국세청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군부대, 대사관, 영사관 등은 산업구조통계의 기본요소인 종사자수, 산업 분류, 매출액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생산활동의 의미가 미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제5장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 설정방안

1. 산업구조 통계의 조사방법 현황

1) 개관

- 산업통계 작성과 관련한 조사방법은 크게 조사기준시점, 조사주기, 조사 실시기간, 조사단위, 조사수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조사기준시점 및 주기 : 조사할 표본 집단에 대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관련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가를 결정
 - 조사실시기간 : 통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언제부터 조사하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 조사단위 : 통계자료의 목적 또는 활용성 측면에서 개별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가구 단위 등 조사대상 단위에 대한 부분
 - 조사수단 : 통계조사표 기입방식에 따른 직접방문조사, 우편조사, 인터넷 조사 등에 대한 부분¹⁹⁾

<표 5-1> 조사방법상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 주기	- 연말기준시점, 분기기준시점 - 단기 : 월, 분기, 년 - 장기 : 5년, 10년 - 부정기적으로 관련 주제에 따라 실시(사회통계)
조사 실시기간	- 15~30일 내외
조사 단위	- 대부분 사업체를 기준, 산업특성상 기업체 또는 가구
조사 수단	- 자계식, 타계식, 인터넷 - 직접방문조사여부
조사 방식	- 대부분 전수조사를 기본, 산업특성상 표본조사 추가

19) 사회통계적 측면에서 조사방법에 대한 여러 개념이 있음. 본고에서는 주로 산업 구조통계와 관련하여, 조사주기, 조사실시기간, 조사단위, 조사수단 등을 논의함.

2) 유형별 조사방법

(1) 조사주기 및 조사시기

□ 조사주기

- 조사주기는 대부분 월주기, 분기주기, 매년주기, 5년 주기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일부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연속적이 아닌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통계조사시 조사주기의 해당 기간이 짧으면 자료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해당 산업의 실시간 주기 파악 가능 등의 장점이 있으나 매회 조사시 조사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
- 한편 조사주기가 5년,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사회 전체적인 측면 다양한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²⁰⁾.
- 월별, 연도별 등의 조사주기와 달리 5년 이상의 조사주기에 있어서는 기준년도가 어느 해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
- 특히, 5년 이상의 통계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각각의 시작년도가 불일치 할 경우, 공식통계로서의 정합성, 신뢰성 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사실시기간

- 조사실시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15~30일 내외의 조사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조사실시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인력, 시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조사하려는 유인이 높음.
- 유사한 조사항목간의 조사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빈번한 통계작성으로 인해 통계작성 업체의 업무가 과중함.

20) 조사주기가 5년으로 되어있는 통계는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산업연관표 등임.

-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 통계조사의 조사시기가 1년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구조통계의 성격을 갖는 통계조사는 상반기에 조사하며, 기업체에 대한 동향이나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음.

<표 5-2> 개별 통계 조사의 조사대상 기간 및 기준 시점

통계작성기관명	통계조사명	조사대상기간	조사기준시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6.1-6.30	-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6.1-6.30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	-	9.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9.1-9.30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	6월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수준평가	-	6.1

자료 : 사업체대상통계조사의 통합실시방안 연구, 예상해(2006)

- 조사실시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사준비기간, 기업의 회계결산시기, 기타 선거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조사준비기간은 개별통계조사의 조사준비 기간 보다 더 길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5년 주기의 경제센서스의 조사준비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회계의 결산시기는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의 법인(법인의 약 97%)은 12월말로 설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센서스의 조사실시기간은 3월 이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시기에 대규모 통계조사가 실시될 경우 조사요원의 확보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조사원의 채용, 교육, 본조사 기간을 정하고 있음.

- 또한 개별조사의 특성, 조사결과의 공표시기, 조사대상기간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조사실시기간을 결정할 필요도 있음.
- 대부분의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은 전년도 1개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개별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당해연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음.
- 조사결과의 공표시기는 통계수요자의 입장에서 통계의 정확성 외에도 통계조사결과의 발표시점도 중요하므로 해당년도의 조사결과는 익년도 말까지 공표되도록 하며, 이를 고려하여 조사실시기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조사단위

- 조사단위는 조사목적별로 사업체, 기업체, 가구 등으로 구분됨.
- 사업체 단위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말하며 대부분 산업통계에서 사업체단위로 조사단위를 설정하고 있음.
- 기업체 단위로 조사단위를 설정하는 경우는 지역간 경계여부가 운수산업 등과 같이 해당산업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됨²¹⁾.
- 가구 단위로 조사단위를 설정하는 경우, 농어의 경우와 같이 사업체등록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 즉 일반 기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설비, 인력 등이 매우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가계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²²⁾.
- 대부분의 산업구조통계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 대해 기업체 단위로 조사하고 있음.
- 광공업 관련 통계조사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설정하여

21) 예를 들면, 운수업 등은 여러지역에 걸쳐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음 이
러한 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체 단위로 조사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해당산업의 특
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음.

22) 농가, 어가 등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매출규모 등을 파악함에 있어
사업체로 보기에 적절치 않음. 따라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통계조사시 농가, 어
가 등 가계를 조사단위로 설정함.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한 기업이 2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체 조사만으로는 지역별 통계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구조통계에서는 사업체를 기본적인 조사단위로 설정하고 있음.

(3) 조사방식 · 기입방식 · 조사수단

- 조사방식은 크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나누어지며, 원자료(raw data) 수집시 통계조사표의 기입방식에 따라서는 자계식과 타계식, 조사수단은 방문조사형태에 따라 직접방문조사와 간접방문조사로 구분됨.
 - 전수조사는 최종적 조사단위까지 전부 조사하는 방식이며, 표본조사는 일정한 표본의 추출과 표본의 지식을 이용한 모수를 측정하는 방식임.
 -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① 오차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② 모집단의 규모가 작고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야하는 경우, ③ 조사결과의 다양한 이용이 필요한 경우, ④ 조사시 조사연구원의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되는 경우, ⑤ 조사의 특성상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임²³⁾.
 - 표본조사는 전수조사에 비하여 조사, 정리, 집계 등에 대한 비용(시간, 인원 등)이 적게 소요되며,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으며, 전수조사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음²⁴⁾.
- 한편 기입방식 중 타계식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조사표의 설문에 따라 피조사자(기업체, 사업체, 가계)에게 문의하여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식임.

23) 산업구조통계의 경우, 모집단의 규모가 대부분 크며, 조사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조사결과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행하는 경우가 많음.

24) 조사결과가 전수조사 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는 조사규모가 작고, 조사원간의 연락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쉽고, 숙련된 조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조사원의 오차, 오기, 개념규정상의 오류 등에 대한 비표본오차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음. 이러한 연유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는 비용절감, 통계의 신뢰도 확보 등의 장점에 따라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 자계식 조사방법은 피조사자가 조사표의 설문에 대해 직접 그 답을 조사표에 기입하는 조사방식임.
- 타계식 조사방법은 대부분의 우편조사가 이에 해당하며, 피조사자가 조사표를 작성후 이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임. 최근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를 이용한 자계식조사, 인터넷 조사²⁵⁾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조사수단은 통계조사원의 방문여부에 따른 직접방문조사와 전화 등을 통한 간접방문조사 등이 있으며, 조사수단을 설정함에 있어 혼용되기도 함.²⁶⁾

3) 조사방법상의 산업구조통계

(1)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

- 통계청 산업구조 통계의 조사주기는 총조사의 경우 모두 5년으로 주기가 동일하나, 산업총조사의 조사기준시점(또는 조사기준년도)이 3, 8자년이며, 서비스업총조사는 0, 5자년으로 조사기준시점의 시차가 존재함.
- 조사실시기간을 살펴보면,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조사실시기간이 익년도 6월~7월로 유사하나, 조사기준시점이 동일한 서비스업총조사와 농·임·어업총조사의 조사실시기간은 각각 익년도 6월~7월, 익년도 2월에 조사되고 있음.
- 매년 조사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비롯한 통계청 작성 산업구조통계조사도 각 산업의 특성 등으로 인해 조사실시기간이 각각 상이함.
- 조사단위의 경우 대부분의 통계청작성 산업구조통계조사는 사업체를 기준단위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상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는 조사단위가 기업체이며, 농·임·어업총조사는 조사단위가 가구임.

25) 미국의 통계조사의 경우 2002년부터 인터넷 조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한 조사시간, 조사비용 등 조사비용 절감이 기대됨. 사후 통계의 성실기입여부에 대한 부분은 표본조사를 통해 엄격한 벌칙조항을 채택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성실기입을 유도.

26) 예를 들면, 직접방문조사하여 자계식 기입방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방문조사하여 타계식 기입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간접방문조사는 우편설문, 인터넷 설문후 전화, 팩드, 이메일 등을 통한 통계작성을 권유하는 방식 등 실제로는 여러 형태로 혼합되어 운용됨.

○ 기입방식은 크게 조사표기입방법에 따라 자계식과 타계식으로 나뉘어지며, 조사수단은 방문조사 형태에 따라 직접방문조사와 간접방문조사 등으로 나뉘어지나, 산업구조통계별 특성에 따라 대부분 병행함.

-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직접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우편과 인터넷 등 간접방문조사와 배포조사후 회수 등 자계식의 방식을 병행

<표 5-3> 통계청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

통계명	조사시점 (1년/5년)	조사시기 (기간)	단위	조사방법	조사 체계
농업총조사	12/1(0,5년)	익년 2월	농가	전수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산업총조사	12/31(3,8년)	익년 6월	사업체	전수	사업체→조사원→구시군→시도→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12/31(0,5년)	익년 6-7월	사업체	전수	조사원(지도원)→시군구→시도→통계청
어업총조사	12/1(0,5년)	익년 2월	가구	전수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임업총조사	12/1(0,5년)	익년 2월	임가	전수	조사원→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건설업 통계조사	12/31(매년)	익년 1-4월	기업체	전수/표본	종합,전문,설비 전기:기업체→시도지회 →협회본부→통계청 소방,오수,난방시공: 기업체→통계사무소→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12/31(매년)	익년 6-7월	사업체	전수	사업체→조사원→구시군→시도→통계청
농어업법인사업체 총조사	12/31(매년)	익년	사업체	전수	조사원→지방통계청→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매년)	익년	가구	확률표본/ 면접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12/31(매년)	익년 5-6월	사업체	전수/표본	사업체→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
서비스업 통계조사	12/31(매년)	익년 5-6월	사업체	표본	사업체→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12/31(매년)	익년 4-5월	기업체	표본	기업체→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 기업체→각 시도 조합→지방통계사무소→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 계조사	12/31(매년)	익년 2-4월	사업체	전수	사업체→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

- 산업총조사는 방문조사의 형식을 취하는 가운데 자계식과 타계식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총조사는 직접방문조사와 인터넷 등 간접방문조사를 병행

- 한편, 농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어업총조사의 경우 조사원 면접조사에 의한 타계식으로 조사되고 있음.

(2) 기타 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

- 통계청 외의 기타 기관에서 작성한 산업구조 통계의 조사주기는 대부분 1년으로 되어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 2-3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음.
- 조사실시기간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작성 통계가 상반기에 조사되고 있는 반면, 하반기에 조사실시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통계도 있음.
- 조사단위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체를 기준단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어업경영조사, 국내e비즈니스현황과 전망에대한 통계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등에서는 기업체 단위로 조사됨.
- 조사수단은 크게 조사표기입방법에 따라 자계식과 타계식이 혼용되고 있고, 조사방식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조사수단은 우편과 방문조사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조사대상 산업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됨.

<표 5-4> 기타 통계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1)

통계명	조사 주기	조사단위	조사방법	조사 체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전수-우편 (모사전송)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한국과학재단→과학기술부
환경산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환경부(계획수립) →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 및 사업소(조사실시) → 환경부(결과공표)
문화산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면접원 → 실사책임자 → 조사책임자 → 문화콘텐츠진흥원 → 문화관광부
광고산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조사원(면접원) → 실사책임자 → 조사책임자→ 한국방송광고공사 → 문화관광부
미시산업통계	1년	사업체	유의표본-기타	회원기업 → 업종별협회 → 산업연구원 → 산자부
부품소재산업경기 전망조사	1년	사업체	확률표본-우편 (모사전송)	조사대상사업체→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8개 공동조사기관→한국기계산업진흥회(주관기관)→산업자원부
중소유통업실태조사	3년	사업체	확률표본-면접	전문조사기관→대한상공회의소→산업자원부
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1년	기업체	전수-우편 (모사전송)	조사원→한국바이오산업협회→산업연구원→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	1년	사업체	기타-면접	-정보통신기기제조업/정보통신공사업/정보통신기기유통업 사업체→통계청→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서비스업/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사업체→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정보통신부

<표 5-4> 기타 통계기관 작성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방법 개요(2)

통계명	조사 주기	조사단위	조사방법	조사 체계
국내s/w기업수출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정보통신부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1년	사업체	전수-기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 정보통신부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3년	사업체	확률표본-면접	한국갤럽-중소기업연구원-소상공인진흥원-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년	사업체	전수면접	사업체(조사원) → 리서치사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청
방송산업실태조사	1년	기업체	전수-기타	방송사업자→방송위원회
기업재무분석	1년	사업체	기타-배포유치	사업체→당행지점조사원,한국기업평가(주),조사원→한국산업은행
어업경영조사	1년	기타	확률표본-배포(유치)	표본체 → 조합 → 수협 중앙회
재래시장실태조사	2년	사업체	전수-면접	조사원 → 조사전문대행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점포경영실태조사	2년	사업체	확률표본-면접	조사원 → 조사전문대행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업체패널조사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조사(인사,노무담당자 응답용/근로자대표 응답용)와 근로자조사로 구분되며, CAPI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
상장기업의 부가가치분석	1년	사업체	기타-기타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한 결산자료를 보완하여 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사업체→코리아리서치→한국무역협회
건설업통계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건설업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시·도지회→통계청지방사무소→통계청
설비건설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집합조사	설비공사면허업체→대한설비공사협회시·도지회→대한설비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전국전기공사업체→각 지부→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통신공사면허업체→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산하 10개 시·도지회→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통계청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사업체	전수-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공사업체→시·도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전수-우편(모사전송)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회계법인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통계청
로봇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로봇생산업체 → 리서치사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전수-기타	조사원,기업체→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국내e-비즈니스현황과전망에대한통계조사	1년	사업체현황 가계(매출)	유의표본-면접	조사원→지방도시관리자→중앙실사책임자→중앙조사책임자→한국전자거래진흥원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지점→지사→한국전력공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년	기업체	기타-면접(사업체,근로자추기)	조사원 → 조사업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성기업실태조사	2년	사업체	유의표본-면접	사업체(조사원)→리서치사→한국여성경제인협회

통계명	조사주기	조사단위	조사방법	조사 체계
재래시장실태조사	2년	사업체	전수-면접	조사원 → 조사전문대행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점포경영실태조사	2년	사업체	확률표본-면접	조사원 → 조사전문대행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사업체패널조사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조사(인사,노무담당자 응답용/근로자대표 응답용)와 근로자조사로 구분되며, CAPI를 활용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함.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1년	사업체	기타-기타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조사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한 결산자료를 보완하여 조사
수출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사업체 → 코리아리서치 → 한국무역협회
건설업통계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건설업체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 → 시·도지회 → 통계청지방사무소 → 통계청
설비건설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집합조사	설비공사면허업체 → 대한설비공사협회 시·도지회 → 대한설비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확률표본-기타	전국전기공사업체 → 각 지부 →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통신공사면허업체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산하 10개 시·도지회 →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 통계청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전수-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공사업체 → 시·도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1년	사업체	전수-우편(모사전송)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회계법인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통계청
로봇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전수-면접	로봇생산업체 → 리서치사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1년	사업체	전수-기타	조사원,기업체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국내e-비즈니스현황과전망에대한통계조사	1년	사업체(현황) 기업체(매출)	유의표본-면접	조사원 → 지방도시관리자 → 중앙실사책임자 → 중앙조사책임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1년	사업체	전수-배포유치	사업체 → 지점 → 지사 → 한국전력공사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2년	기업체 (사업체,근로자추가)	기타-면접	조사원 → 조사업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성기업실태조사	2년	사업체	유의표본-면접	사업체(조사원) → 리서치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조사	2년	기타 (입주기업체)	전수-면접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외부전문조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현황조사	2년	기타(입주기업체)	전수-면접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 외부전문조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2년	사업체	전수면접	사업체(조사원) → 리서치사 →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청
방송산업실태조사	1년	기업체	전수-기타	방송사업자 → 방송위원회
기업재무분석	1년	사업체	기타-배포유치	사업체 → 당행지점조사원, 한국기업평가(주), 조사원 → 한국산업은행
어업경영조사	1년	기타	확률표본-배포(유치)	표본체 → 조합 → 수협 중앙회

2. 주요국의 조사방법 현황

1) 미국의 경제센서스 조사방법

- 미국 경제센서스는 1954년과 1958년, 1963년 3개년에 걸쳐 예비조사를 거친후 1967년부터 5년 주기로 경제센서스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시점은 12월 31일임.
- 조사기준년도는 2, 7자년도이며, 각 해당년도 12월에 Census form 발송한 후, 2003년 2월 12일까지 조사를 마감함.
- 조사단위는 모두 사업체(establishment)이며, 조사방법은 자계식을 기본으로 정기 우편조사, 표본조사(디스켓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가능: 2002년 신설)를 병행함.

<표 5-5>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내 용
조사 주기	매 5년(2년, 7년) 12월 31일
조사 시기	해당년도 12월에 조사표 발송 익년 2월 12일 마감
조사 단위	사업체 기준
조사 수단(방법)	자계식을 기본(정기 우편조사, 표본조사, 인터넷조사 병행)
조사 방식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

- 산업별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사업체의 크기와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조사 대상 여부에 따라 조사방식(전수 또는 표본조사)과 조사표(약식조사표 또는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을 결정함.
 - 종업원 수가 5인에서 19인 사이에 있으면서 ASM 샘플인 사업체와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게 정규조사표를 발송
 - 종업원 수가 5인에서 19인 사이에 있는 사업체 중에서 ASM 샘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약식조사표로 경제센서스를 대체
- 건설업의 경우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하거나 단일 사업체 중에서 종업원 수가 대규모인 경우에 해당됨.

- 종업원 수가 소중규모인 사업체는 표본조사 대상임.
- 사업자등록만 있는 사업체는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분류카드가 발송되며 경제센서스에 포함함.

<표 5-6> 미국의 산업별 조사방법 (1)

산 업 ¹⁾	표본조사 대상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
제조업	- 5인-19인 사업체	- 5인-19인 사업체 일부(ASM 샘플) ²⁾ - 20인 이상 사업체
건설업	- 단일 사업체로 종업원 수가 소중규모인 경우	- 다수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체 - 단일 사업체로 종업원 수가 대규모인 경우
광업		- 5인 이상 사업체
운수창고, 소매, 정보, 금융보험	- 10인 이하 사업체	- 10인 이상 사업체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
도매		- 전 사업체

주 : 1) 종사자수가 없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2)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31-33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조사

- 광업의 경우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에 포함되며 소규모 사업체는 약식조사표 발송 대상에 포함함.
- 운수창고, 소매, 정보, 금융보험의 경우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와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이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에 포함되며 10인 이하의 사업체는 표본조사 대상임.
- 도매의 경우 모든 사업체가 정규조사표 발송 대상에 포함함.
- 산업별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우편에 의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조사 대상은 사업체의 크기와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s)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

- 건설업은 1997년 기준 약 65만개 업체중 정규 우편 센서스의 대상은 13만개 사업체이며 정규조사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됨.
- 정규 우편조사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약 12,000개 기업들로 구성됨.
- 정규 우편조사에 포함되는 않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만 있는 사업체로 일반분류카드 발송되며, 센서스조사에 포함. 단, 유급종사자가 없는 자영업주는 연간자영업자통계에 포함

<표 5-6> 미국의 산업별 조사방법 (2)

산업별	조사 방법	주요 내용
제조업	ASM/비ASM샘플	대·중규모 : 정규센서스 소규모 : 정규/약식
건설업	우편/일반분류	2개 이상지역 사업체 : 우편 사업자등록만된 사업체 : 일반분류카드
광업	정규우편/약식우편	중대규모 : 우편 소규모 : 약식우편조사 5인이하 사업체: 정규우편조사 제외
서비스업	정규우편/약식조사표	단일사업체 선정 조사표 발송 산업분류 미정업체 : 약식조사표
운수창고,소매,금융,보험,부동산등	정규우편/일부표본	대중규모 및 다수의 사업체 기업 : 우편 소규모 : 일부 표본
도매 판매업	우편	전 업체 해당

주 : 1) ASM(Annual Survey of Manufacture) :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북미표준산업분류(NAICS) 31-33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조사
2) 종사자수가 없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광업의 경우 총 25,000개의 사업체 규모를 중심으로 조사방법을 분류하고 있음.
- 대·중규모 사업체는 우편조사(정규), 소규모 사업체는 약식우편조사를 실시하고 5인이하 사업체는 정규우편조사에서 제외함.
- 서비스산업은 규모를 중심으로 2002년 585,000개의 단일 사업체를 확실(certainty) 사업체로 선정하여 정식 조사함.
- 128,000개의 단일 사업체는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되어 조사표 발송대상에 포함, NAICS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397,000개의 사업체는 약식조사표를 발송

- 운수 창고업, 소매업, 정보산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임대업은 대중규모 사업장과 한 기업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정규 우편조사를 실시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연방 기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일부만 표본으로 추출
 - 우편 조사대상 제외는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포함되며 산업 전체의 수입에서 약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정
 - 센서스조사대상 제외는 유급종사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사업체임.
- 도매 판매업의 경우 모든 사업장이 정규 우편 조사의 대상에 포함됨.
- 이와 같은 조사방법의 기준과 더불어 법적규제장치(Title 13 of the United States Code(section 131, 191, and 224)에 의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특정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

2) 중국의 경제센서스 조사방법

- 2004년 제1차가 실시된 중국경제센서스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2005년 상반기중 조사가 실시되었음.
 - 조사주기는 5년으로 '3자년'과 '8자년'에 실시하며, 전년도 9-12월에 준비조사, 익년도 1-5월에 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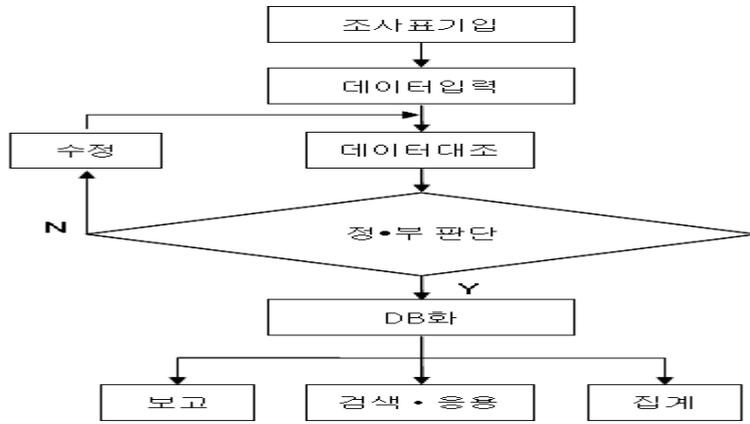
<표 5-7> 중국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내 용
조사 주기	매 5년(3년, 8년) 12월 31일
조사 시기	준비조사(경제센서스 전년도 9-12월) 본조사(경제센서스 익년 1-5월)
조사 단위	사업체 기준
조사 수단(방법)	자계식과 타계식을 혼용, 조사원조사와 우편조사 혼용
조사 방식	전수조사(서비스업은 전수 및 표본조사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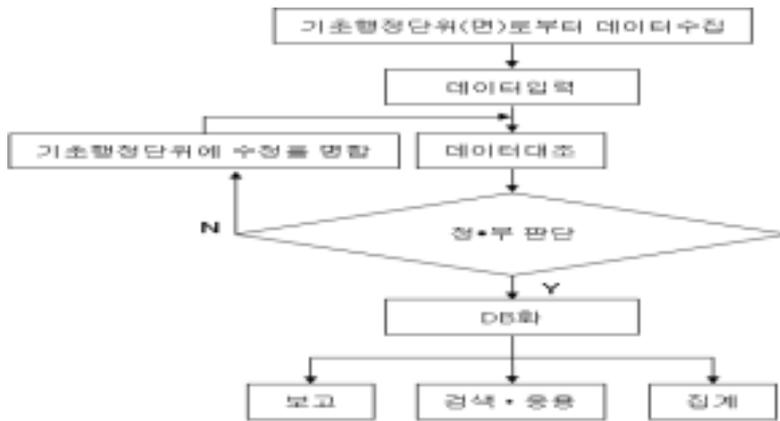
- 국무원은 본래 2003년으로 정해진 '제2차 전국 3차 산업 센서스'를 연기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 시행하기로 계획한 '제4차 전국공업센서스' 및 2006년 시행 '제3차 전국기본단위센서스'와 통합함.

- 조사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 제2차 산업의 경우 '규모이상'의 비국유기업과 모든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표배포에 의한 조사, '규모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원 방문에 의한 조사방법을 취하여, 제2차 산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됨.
 - 서비스업의 경우는 개인업주에 대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하였음.
 - 예를 들면 개인업주 사업체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적용하였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행해짐.
 - 즉, 종업원수의 모집단분포가 매출액의 모집단분포라고 가정하고, 종업원 1인당 노동생산성도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매출액을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것임.
- 한편,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의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는 군직속과 무장경찰(국경경비대, 소방부대, 공안부대, 경호부대를 제외)직속의 '사업법인단위'도 경제센서스의 대상으로 해방군총장비부와 무장경찰사령부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결과는 국무원의 '경제센서스지도팀'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해방군의 경우 '기업법인단위' 나 '산업활동단위' 관한 기본조사표의 기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방군총장비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국경경비대, 소방부대, 공안부대, 경호부대는 주둔지의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음.
- 조사결과의 점검과 집계는 경제센서스의 실시조직이 계층적으로 수행함.
 - '縣(우리의 면단위)' 행정단위 → '지구(우리의 군단위)' 행정단위 → '성(우리의 도단위)' 행정단위 → 국가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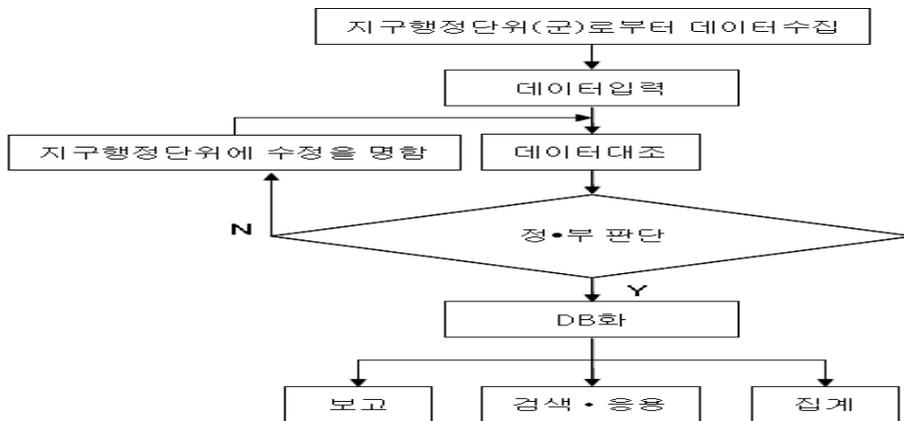
<그림 5-1> 기초행정단위의 조사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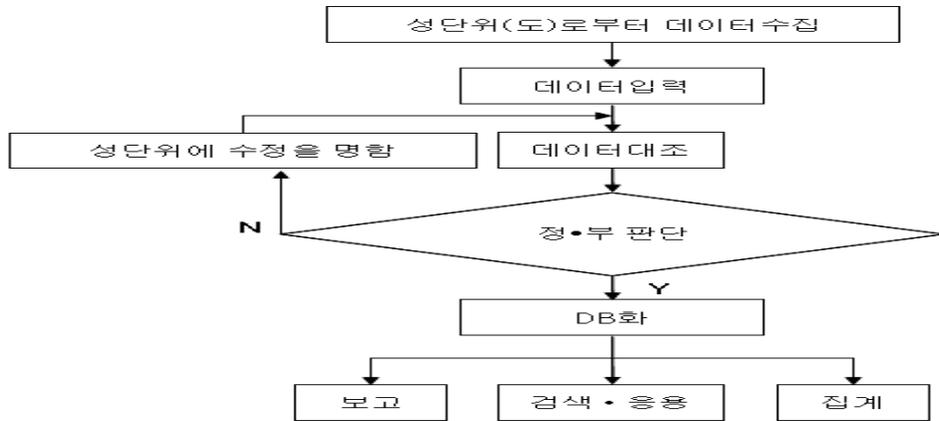
<그림 5-2> 지구행정단위(군)의 조사 프로세스



<그림 5-3> 성단위(도)의 조사 프로세스



<그림 5-4> 국가단위의 조사 프로세스



3) 일본의 경제센서스 조사방법

- 일본의 경우 조사기준년도 「2009년 예비조사」는 2008년, 「2011년 본조사」는 2010년으로 할 예정이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및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의 시구읍면계통의 조사원 직접조사를 기본으로 할 계획임
- 현행 조사원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산하 사업체의 정보를 본사 등에서 일괄 기입하는 방법(본사 등 일괄 조사), 우편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 등을 고려 중에 있음.
- 경제센서스의 실시에 있어서는 조사원에 의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대해 조사표를 동일시기에 배포하고, 동일시기에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함.
- 「2009년 예비조사」는 기존 통계조사의 결과 등에 추가하여, 2005년 6월말에 검토회가 정리한 '행정 기록(법인의 명칭·소재지 등)의 이용을 향한 검토'의 결론에 근거하여, 행정 기록 등의 법인기업의 명칭·소재지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준비 조사명부를 작성, 해당 준비 조사 명부 등에 근거해 조사표의 배포·수집을 실시할 계획임.
- 「2011년 본조사」는 「2009년 예비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표의 배포·수집을 실시예정

- 구체적으로는 「2009년 예비조사」 등에 의해 정비된 모집단명부의 정보에 근거하여 조사객체에 대해 「2011년 본조사」를 위한 조사표의 배부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2010년 예비조사」의 준비 조사명부에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신설 사업체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산업을 횡단면적으로 파악 가능한 정보(사업체의 종업원 수, 사업체의 산업 분류, 법인기업의 매출액, 필요경비)등에 대해서만 조사
- 조사실시시기는 「2009년 예비조사」의 경우 현재의 대규모 통계조사 등의 조사시점을 감안해 2009년 6~7월중 하루를 조사기일로 설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조사 실시 계획의 기획·입안 작업을 통해 준비업무의 추진방법, 조사일 등을 검토하고,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실시계획의 책정시점까지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2011년 본조사」의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조사결과 조기제공, 회계대상기간의 종료 후부터 공표까지의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여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한편으로는 6월까지 기업의 결산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배려가 필요가 있으며,
 - 2011년 4월에 통일지방선거와 준비업무의 폭주, 2010년 국세조사의 심사업무와 준비업무의 폭주, 인사이동에 의한 신입직원의 학습기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조사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는 시기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11년 본조사」는 2011년 6~7월 중 하루를 조사기일로 정하고, 조사 실시 계획의 기획·입안 작업에서 전술한 사항들을 감안하면서 조사원조사의 기본방법을 포함한 실사의 구체적인 방법, 준비업무의 진행방식, 조사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

<표 5-8> 일본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상 주요 내용

	내 용
조사 주기	매 5년(0년, 5년) 12월 31일
조사시기	예비조사(6-7월 중) 본조사(6-7월 중)
조사단위	사업체 및 기업체
조사수단(방법)	자계식(조사원조사)
조사방식	전수조사

3. 경제센서스의 조사방법 실시방안

1) 조사기준년도 및 조사시점

- 조사 기준년도는 기초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간의 정합성,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0, 5자년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기준연도가 필요한 국내의 관련 통계는 모두 0, 5자 연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물가, 지역내총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의 기준년도가 0, 5자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경제센서스의 기준년도를 상이하게 설정할 경우 다른 통계들의 기준년도를 변경하거나 현재와 같이 다양한 개별 통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며, 경제센서스의 도입효과가 절감될 수 있음.
 - 따라서 0자, 5자 연도를 조사 시점으로 정하는 것은 실제 통계 수요기관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고 각 통계간의 정합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 주요 국가간 비교에 있어서 0자, 5자 연도를 조사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간 통계 비교분석에도 유용함.
 -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행하는 국가간 제정통계(IF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의 GDP 계정에서 GDP 디플레이터지수, GDP 규모지수, 상품가격지수 등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IFS의 권역별 통계는 선진국, 개도국, 아시아, 중동, 서구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권역별 국가별 지수도 2000년 기준으로 각 지수를 상호 비교가능함.
- UN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에서 발행되는 산업통계중 산업생산지수(Indicse of Industrial Production)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연간 및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UN회원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국민계정(SNA)에서도 국별 비교를 위해 단위를 US 달러로 일치하고, 1990년을 기준 년도로 정하고 있음.
- OECD에서 발행되는 국민계정에서도 각국별 자료의 상호비교를 위해 연간 및 월별 데이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1995년을 기준으로 계절 조정을 통해 국별 비교를 하고 있음
- OECD의 주요 경제지표로는 생산, 판매, 소비자물가, 노동, 무역, 통화 재정, 국민계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의 국별비교를 위해 기준년도를 설정하여 조정함(1995=100).
- 조사기준시점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의 회계 연도가 12월말이므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사실시기간은 기업들의 결산회계 마감일이 완료되는 익년도 5~6월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 조사시점을 12월말로 하였을 경우라도 기업회계상의 매출 등이 실제 거래완료되는 시기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장부상의 회계부문과 실제 재화 거래와의 일치를 위해 조정기간이 필요함.
-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동시기에 이어서 기업들은 회계업무 조정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기간이 완료된 4월 이후에 정확한 통계작성이 가능함.
- 기존 통계들이 대부분 상반기내에 조사완료를 하고 있어 실제 조사기간은 5-6월 중에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통계자료의 취합 및 정리하여 12월말까지 완료, 발간함을 목표로 함으로써 통계활용의 시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음.
- 통계자료의 적시발간은 통계수요자들로 하여금 경제센서스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음.

<표 5-9> 경제센서스 조사방법 실시방안

항목	주요내용
조사시점	- 0자, 5자 년도, 12월31일 - 국내통계인 국민계정, 투입산출표, 지역산업연관표 등의 기준년도와 일치 - OECD IO분석 등도 0자, 5자년도 기준, 국가간 분석에 있어서도 비교가능 - 2010년 경제센서스 조사에 앞서 2008년 예비조사 실시
조사실시 기간	- 익년 5-6월 - 기업회계 종료시점 이후, 상반기내에 조사완료, 통계취합 및 분석 - 12월말까지 자료발간, 시의적절한 통계자료 제공
조사단위	- 사업체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업종의 경우, 기업체 단위 도입 - 일부 지역 및 소규모업체에 대해 행정자료 활용방안 고려 - 농어가 등록제 실시와 관련 등록업체에 대해 사업체단위로 조사 가능고려
조사수단	- 직접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우편/인터넷 조사를 고려 - 우편/인터넷조사(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조사비용절감) - 관련 프로그램 및 성실기업 유도를 위한 유인방안 고려

2) 조사단위 및 조사방식 · 조사수단

○ 조사단위는 사업체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체 단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함.

- 사업체는 개개의 공장, 작업장 등이 일정한 장소내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하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제단위임.
- 사업체단위를 기본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별 통계현황 등의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중국 뿐만 아니라 실시 예정인 일본도 사업체를 기본단위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항목에 따라서는 본사 등의 기업체단위로만 응답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체 단위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또한 운수업이나 건설업과 같이 여러 지역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의 확충 등으로 인해 비용부담의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체단위의 조사가 산업적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업체단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 등 사업체 및 기업단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하거나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조사단위의 상이성이나 모집단명부의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경제센서스의 조사범위에서 농림어업부문을 제외하고 있음.
- 조사방식은 조사원 조사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수단은 인터넷 등을 통한 조사를 병행하도록 함.
- 그러나 영세 사업체의 경우는 회계장부의 부존, 조사에 대한 거부감,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정확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산업별로 특성에 적합한 임계치를 판매액이나 종업원 수 등을 기준하여 설정하고, 표본조사방식의 추진을 심도있게 검토.
 - 조사수단별로 볼 때 통계의 정확성은 조사원에 의한 직접조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경제센서스에 대한 홍보 등이 미흡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직접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 조사비용을 고려하여 회계장부의 정비상태가 양호한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우편조사나 인터넷 조사 등에 의한 타계식에 의한 조사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통계조사 초기부터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정보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조사의 실시를 고려중
 - 일본의 경우 조사원 교육을 통한 직접조사를 실시할 예정
 - 중국은 정보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일정 표본에 대한 직접전수조사를 실시, 각 부처별 경제센서스 통계담당부서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가적차원에서 조사
 - 영세규모의 사업체 또는 지역적으로 산간오지 지역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 활용하는 방안 고려
 -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법령제정 등을 통해 관련 부서와 통계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센서스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흡한 데다가 통계회수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조사원 교육에 의한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됨.
 - 부가적으로 인터넷조사방법을 도입할 경우, 정확한 통계기입여부에 대한 점검 및 확인(모니터링)에 대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관련 통계 패키지의 개발, 보급 및 작성안내 등에 대한 비용부담 증대예상
- 경제센서스 조사는 임시조사원에 의한 사업체방문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고 조사원에 대한 조사지침 교육은 통계청과 통계담당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조사업무 계통의 일원화, 예산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해야함.
- 조사 실시 전에 통계청 및 통계담당부서에서는 조사대상 사업체 명부를 출력하고 조사대상 조사표를 사전인쇄하여 조사담당자에게 제공
 -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또는 본사 일괄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기업체 명부도 함께 출력하여 제공, 인터넷 조사를 위해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여러 가지 통계조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2010년 기준 경제센서스 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비조사 실시방안을 고려
 - 통계수요자의 입장에서 예비조사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 수정함으로써 2010년 기준 경제센서스 본조사의 효율성 도모

제6장 경제센서스 조사내용 설정방안

1. 기존 산업구조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

1) 통계청 산업구조통계별 조사항목²⁷⁾

(1) 조사항목 분류의 비교

□ 고용

- 종사자의 산업구조통계 별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분류체계가 상이하어 총합계를 비교할 수는 있으나 구성항목별로 비교를 할 수 없음.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종사자는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등 고용계약, 사업체 소유, 임금 수령여부에 따라 5대 분류로 되어 있음.
 - 반면, 산업총조사(5인이상)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등 사업체 소유, 임금수령여부에 따라 3대 분류로 되어 있음.
 - 그 외에도 서비스업통계조사, 도매업통계조사는 4대분류, 건설업통계조사는 3대분류, 운수업통계조사는 운수업 세부업종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가 되어있어 있는 실정임.
 - 산업통계별로 종사자의 구분과 분류체계가 상이하거나 일부가 통합되어 있어 통계 간 비교가 불가능 하여 고용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에 대단히 어려움.
 - 한편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파견근로자 수를 별도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최근 변화하는 고용계약 형태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파견형태의 근로가 빈번한 서비스업과 관련된 통계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어 조사내용의 불일치가 발생

27) 통계청 산업구조통계별 조사내용의 일반현황은 제2장 주요 산업구조통계조사의 평가 중 4.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을 참조.

<표 6-1> 종사자와 연간급여액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종사자 분류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		- 5대 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월평균 종사자 수	미조사
산업총조사(1998)	5인이상	- 3대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로 나누어 기입)	12월말 현재 종사자수와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수	종사자 구분에 따른 연간급여액
	4인이하	- 3대 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유급종사자	상 동	유급종사자 (월평균급여* 조업개월수)
	본점용	- 3대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로 나누어 기입)	상 동	종사자 구분에 따른 연간급여액
	전기가스수도증기 및 온수공급업	-2대분류 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	상 동	상 동
광업제조업통계조사(2005)		- 3대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자(생산직, 사무직 및 기타로 나누어 기입) * 파견받은 종사자 별도 기입	상 동	상 동
서비스업총조사(2005)		- 5대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조업기간 중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	인건비(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서비스업통계조사(2004)		- 4대 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월평균 종사자 수	종사자 구분에 따른 연간급여액
도소매업통계조사(2004)		- 4대분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일용종사자, 무급종사자	월평균 종사자 수	상 동
운수업통계조사(2004)	육상운송	차량관계종사자, 기타종사자, 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	12월 31일 현재 종사자 수	상 동
	수상	선내근무종사자, 육상근무종사자, 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	상 동	상 동
	항공	항공기관계종사자, 기타종사자	상 동	상 동
	운송관련서비스	장비관계종사자, 기타종사자	상 동	상 동
	철도,지하철,송유관	열차,장비관계종사자, 기타종사자	상 동	상 동
	유료도로	차량관계종사자, 기타종사자	상 동	상 동
건설업통계조사(2005)		-3대분류 상용종사자(사무직 기타 종업원, 기술자 및 기술공, 기능공), 임시종사자(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자), 사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조업기간 중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	상 동

주 : 1) 모든 통계조사의 종사자 수는 남녀로 구분하여 기입

2) 각 통계조사의 년도는 해당년도의 조사표가 이용되었음을 의미함.

- 그리고 제조업 관련 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에서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나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에서는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생산활동과 관련된 종사자를 파악하기에 어려움
- 연간급여액의 조사내용은 종사자 분류에 따르기 때문에 이 역시 산업구조통계별로 상이하여 비교가 불가능함.
- 대부분의 산업구조통계가 종사자 구분에 따라 연간급여액을 조사하고 있어 어느 정도 통일성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 구분이 서로 상이하여 종사자 분류에 다른 연간급여액 비교가 불가능
- 특히 5년 마다 실시하는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연간급여액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인건비만을 조사하고 있어 연간급여액을 별도로 조사하는 서비스업통계조사 및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차이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종사자 구분, 종사자 수 산정기준, 연간급여액 등 고용과 관련된 조사내용이 산업구조통계 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어 위 통계를 이용해 경제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산업간 고용과 임금구조의 비교가 불가능함.

□ 생산과 출하액(매출액, 영업수익, 사업수익)

- 출하액(매출액, 영업수익, 사업수익)의 경우는 고용관련 조사내용과는 달리 거의 모든 산업구조통계에서 조사내용의 분류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분류외에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조업(영업)개월 수를 감안한 월평균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구조통계에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음.
- 산업총조사(5인이상)는 매출액외에 수입액을 포착하기 위해 구입상품매출원가를 조사하고 있으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도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수입액을 포착하기 위해 임대수입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생산비용(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연간제조원가는 산업구조통계별로 분류가 상이하나 이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별 제조원가를 비교·분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산업구조통계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산업총조사에서는 판매비 및 관리비에 항목에서 급여총액(퇴직금, 복리후생비 제외)과 감가상각비를 별도 소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는 급여총액과 감가상각비가 기타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 물론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급여총액은 고용관련 조사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감가상각비가 다른 기타 판매비 및 관리비와 같이 기입하게 되어있어 제조업의 연간 자산가치의 추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 서비스업총조사, 도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는 급여와 퇴직금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리를 합친 인건비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다른 산업구조통계조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음.²⁸⁾

□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

- 유형고정자산의 자산별 조사내용을 보면 산업총조사(5인이상)의 조사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항목의 분류 불일치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무형자산액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나 전자는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직접개발, 용역개발, 외부구입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 등의 건수와 연말잔액을 조사함으로써 무형자산액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움.

28) 2005년 서비스총조사부터는 개인사업체 또는 비법인단체에 한해서만 인건비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법인사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항목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비로 나누어서 조사

<표 6-2> 생산액과 생산비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출하액(매출액, 수입액)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비 고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		연간총매출액 월평균매출액 (=총매출액/연간조업개월수)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산업 총조사 (1998)	5인이상	-연간출하액(매출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판매액, 폐품 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수리수입액, 소 계(연간출하액) - 수입액 구입상품매출액, 구입상품매 출원가, 임대수입액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소계(직접생산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 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 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	제품출하액은 별도의 항목 을 만들어 품목별(물량,금 액) 총출하액과 수출액, 재 고액(연초,연말),단위당출하 가격을 조사
	4인이하	제품출하액 임가공(가공수수료) 수입액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 소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총액, 퇴직금및복리후생 비, 세금과공과, 기타	
	본점용	-연간출하액(매출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판매액, 폐품 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 수리수입액, 소 계(연간출하액) - 광공업이외의 매출액 및 수입 액, 구입상품매출액, 임대수입액 건설, 운수 등 기타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 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소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 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 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	
	전기,가스 ·,수도, 증기 및 온수공급업	-전기업 연간주요 전력량, 연간전기판 매수입액(전기판매량 및 수입 액, 기타수입액) -가스업 연간생산량 및 판매량, 연간 판매수입액(연간가스판매수입 액, 기타수입액) -수도업 연간공급량 및 공급액, 연간 수입액(급수수입액, 수탁공사 수입액, 기타수입액) -증기 및 온수공급업 연간생산량 및 판매량, 연간 판매수입액(연간증기 및 온수 판매수입액, 기타수입액)	-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용수비, 전력비 연료비, 외주공사비, 수선비 소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 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 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	가스업과 증기 및 온수공 급업에 대해서는 상품매출 액, 상품매출원가, 임대수 입액을 별도로 작성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2005)		-출하액 제품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합 계(출하액) -수입액 구입상품매출액, 기타수입액 (임대, 건설, 운수수입액)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 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소계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 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광 고선전비, 운반,하역,보관비 기타(급여,감가상각비,보험 료,접대비 등)	

	출하액(매출액, 수입액)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비 고
광업 제조업통계조사 (2005)	-출하액 제품출하액, 부산물, 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합 계(출하액) -수입액 구입상품매출액, 기타수입액 (임대, 건설, 운수수입액)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 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소계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복리후 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광 고선전비, 운반, 하역, 보관비 기타(급여, 감가상각비, 보험 료, 접대비 등)	
서비스업총조사 (2005)	매출액(영업수익, 사업수익) 월평균매출액(=총매출액/연간 영업개월수)	-연간제조원가 매출원가(재료비, 이자, 수수료, 료, 기타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	매출원가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사용되는 용어이 며 “매출원가 = 기초상품 재고액+당기구입액 -기말 상품재고액”으로 정의 재료비는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서 사용되는 비용 이자, 수수료, 기타영업비 용은 금융업에만 해당되며 보험업은 기타투자영업비 용을 포함하고 생명보험업 은 책임준비금전입액을 별 도의 비용항목으로 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2004)	매출액 임대수입	-연간제조원가 재료매입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	
도소매업통계조사 (2004)	매출액 임대수입	-연간제조원가 상품매입액(1+2-3) 1.기초상품재고액 2.당기상품매입액 3.기말상품재고액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	
운수업통계조사 (2004)	운수수입 임대수입	-연간제조원가 재료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총액, 퇴직급여충당금전 입액, 복리후생비, 감가상각 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공 과금, 수선비, 사용료, 수수료 대손상각, 잡비	수상운수업은 판매비 및 관리비에 용선료 추가
건설업통계조사 (2005)	총매출액 건설공사매출액	-연간제조원가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잡비, 외주공사비 -판매비와 관리비 임금및급료,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복리후생비, 감가상 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주 : 1) 모든 통계조사의 종사자 수는 남녀로 구분하여 기입
2) 각 통계조사의 년도는 해당년도의 조사표가 이용되었음을 의미함.

- 내용별 유형고정자산액(미상각액)은 산업총조사(5인이상)의 조사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조사내용 분류의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고액은 제조업(5인이상 광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분류체계가 상이하나는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조사내용의 분류 불일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표 6-3>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의 산업구조통계별 비교

		유형고정자산(자산별)	유형고정자산(내용별)	재 고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5)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산업총조사(1998)	5인이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용광로, 요,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공구, 기구, 비품) 건설중인자산(건물), 건설중인자산(기계)	1.연초잔액 2.연간증가액(취득및대체액 포함) 3.연간감소액(처분손실및대체액 포함) 4.연간감가상각비 5.연말잔액(1+2-3-4)	완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및보조재료, 저장품(연료) *구입상품재고 별도로 조사
	4인이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계(기계장치,공구)	연말잔액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본점용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전기,가스·수도, 증기 및 온수공급업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연료재고액 및 재고량 * 연초재고와 연말재고에대해 금액과 수량을 기입 *수도업은 미조사
광업 제조업통계조사(2005)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 무형자산 중 컴퓨터소프트웨어(기업단위로 작성): 직접개발, 용역개발, 외부구입	5인이상 광·제조업과 동일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및보조재료, 저장품(연료) *구입상품재고 별도로 조사	
서비스업총조사(2005)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 *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	연말잔액 (연말잔액=연초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감가상각비)	도소매업: 기초상품재고액 기말상품재고액	
서비스업통계조사(2004)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2004)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기초상품재고액 기말상품재고액 *도소매업에 한해서 작성	
운수업통계조사(2004)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및 기타, 건설 중인 자산	1.연초잔액 2.연간증가액(취득및대체액 포함) 3.연간감소액(처분손실및대체액 포함) 4.연간감가상각비 5.연말잔액(1+2-3-4)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건설업통계조사(2005)	토지, 건물, 구축물, 건설장비, 기계장치, 차량선박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기타	1. 연초잔액(전기미상각잔액) 2. 연간증가액(당기증가액) 3. 연말잔액(당기미상각잔액) *연간감소액미기입	원재료, 연료, 저장품 * 연초재고와 연말재고액을 장부가격에의거 작성하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 시가로 기입	

(2) 조사항목 개념의 비교²⁹⁾

□ 고용

- 앞서 언급했듯이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분류가 종사상의 지위 등에 따라 산업구조통계별로 상이하여 종사자 개념의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상용종사자는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받는 자”로 정의되나 서비스총조사등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급여를 받는 자로서 유급임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견습사원, 파트타임종사자도 여기에 포함”으로 정의 되어 종사자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있음.
 - 동일한 분류를 사용하는 통계조사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표현이 서로 달라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용어도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
- 종사자 수 산정기준이 산업구조통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여 통계 간 비교가 불가능 하며 통계이용자가 산정기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통계적 추론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종사자 수는 1년간 근무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입하나 산업총조사(5인이상),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의 월평균종사자는 1년중 조업개월수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산정기준에 차이가 있음.
 -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에서는 연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종사자 수를 조사해 연평균 종사자, 조업기간 중 월평균 종사자 등과 다른 기준으로 종사자수를 산정
 - 건설업통계조사에서는 일용직의 종사자가 월평균 종사자 수에서 누락되고 연간투입 연인원이란 별도의 항목에서 조사되고 있어 다른 산업구조통계와 비교가 불가능

29)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통계별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정의는 5장 부록의 <부록 1> 참조.

- 이러한 종사자 수 산정기준의 차이는 고용의 계절성이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통계적 추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연간급여액의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통계조사의 연간급여액의 정의가 “각종 세금 공제전의 급여총액”으로만 정의되어 있어 개념이 불명확하며 사업실적에 기입하는 인건비와의 관계도 불분명
- 서비스업총조사는 연간급여액을 조사하지 않으며 인건비 항목은 퇴직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통계조사와 비교가 불가능

<표 6-4>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개념의 불일치

	종사자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출하액 (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유형고정자산 재고액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	○	△	○	○
산업총조사	○	○	○	○	○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	○	○	○	○
서비스업총조사	○	○	-	×	○	○
서비스업통계조사	○	×	△	×	○	○
도소매업통계조사	○	×	△	×	○	○
운수업통계조사	○	×	○	○	○	○
건설업통계조사	×	○	○	○	○	×

주 : ○는 해당 항목의 조사내용 개념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는 불일치, △는 개념이 불명확함, -는 미조사를 의미

□ 생산과 출하액(매출액, 수입액)

- 제조업관련 통계조사의 출하액, 운수업의 운수수입, 건설업의 건설공사매출액은 해당 사업체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매출액을 조사하지만 서비스업관련 통계조사는 매출액(영업수익, 경상경비지출)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수입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개념상 불일치가 발생
- 이에 따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연간매출액은 생산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수입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

- 건설업통계조사에서 제조업의 매출액과 관련된 용어는 건설공사매출액이나 기타수입액을 포함하는 총수입을 “총매출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혼선이 존재

□ 생산비용(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 앞서 언급했듯이 연간제조원가는 산업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개념도 일치하고 있음.
- 다만 제조업관련 통계조사에서는 급여총액과,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조사하나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의 개인사업체 및 비법인 단체는 인건비 항목에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

-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에서 유형고정자산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 건설업통계조사를 제외하고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연말잔액은 연초잔액과 연간증가액의 합에서 연간감소액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되지만 건설업통계조사에서는 연초잔액과 연간증가액의 합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개념상 불일치 발생
- 자산별 개념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약간 다르지만 산업구조통계 모두 동일한 개념을 사용
- 재고액은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에서 연초와 연말재고액을 조사하고 있으나 산업의 특성상 용어, 재고품목 분류에서 차이가 있을 뿐 개념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기타 타승인기관과의 산업구조통계 비교

- 고용과 관련된 종사자와 연간급여액과 관련된 조사내용은 주로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와 중복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부 주관 통계조사는 모두 표본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도 상용근로자 5인 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표본조사로 이루어지나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산업구조 통계와 모집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한편 매 5년 마다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자(무급종사자와 임금종사자)를 조사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는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안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각 사업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통계청 산업구조 통계와는 종사자의 정의가 다름.
- 생산과 생산비와 관련된 조사항목은 주로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에서 조사·작성되고 있음.
- 자료의 공표 시 국민계정에서는 산업별 생산액,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제조업 생산액, 국세청의 마크업울 등 타 기관의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가공통계임.
 - 따라서 국민계정의 부가가치 계산은 타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산업별 다른 부가가치 정의식을 이용하고 있어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부가가치와는 계산방식이 상이하어 직접적으로 자료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한편 산업연관표에서는 산업별 부가가치 항목과 중간투입액, 총산출액과 재고액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시점이 대규모통계조사(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와 상이하어 자료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계청에서 10년 주기로 국부조사를 통해 산업별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을 조사하나 1997년을 마지막으로 조사원을 통한 조사는 중지된 상태임.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액을 조사하지만 자본의 내용별(기계, 운수, 건설)로 분류되어 있고 산업별 자산을 파악하기 힘들며

-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정자본형성표에는 각 산업이 일정기간 동안 자 산별로 얼마만큼 고정자본을 형성했는지 알 수 있지만 총자본스톡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표 6-5> 타 승인기관 산업구조통계 비교

조사항목	타 승인기관의 산업구조 통계
고용 (종사자,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2007년 기준) 조사주기: 매월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가구 관련 조사내용: 취업자 수, 종사상지위(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 매월노동통계조사(노동부)(2005년 기준) 조사주기: 매월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7,438개 표본사업체 관련 조사내용: 전월 및 당월 근로자 수, 근로자의 월급여액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2004 기준) 조사주기: 매월 조사대상: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공공, 행정국방, 가사서비스,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의 5인 이상 사업체 중 6,344개의 표본 사업체 관련 조사내용: 성별, 근로일 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부)(2003 기준) 조사주기: 연간 조사대상: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에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중 2,438개의 표본기업체 관련 조사내용: 급여지급 연인원, 현금급여 총액, 현물지급 비용 - 노동력수요동향조사(노동부)(2004 기준) 조사주기: 매년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14,694개의 표본 사업체 관련조사내용: 사업체별, 산업(소분류)별, 직종(세분류)별 현재인원 - 산업연관표(한국은행)(2003년 기준) 조사주기: 매5년(실측표 기준) 조사대상: 전산업 관련조사내용: 취업자(무급종사자, 임금종사자) 수, 피용자 보수

조사항목	타 승인기관의 산업구조 통계
생산과 생산비 (출하액(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계정(한국은행)(2006 기준) 조사주기: 매분기 조사대상: 전산업 관련 조사내용: 산업별 생산액, 부가가치, 중간투입액 - 산업연관표(한국은행)(2003년 기준) 조사주기: 매5년(실측표 기준) 조사대상: 전산업 관련조사내용: 산업별 총산출액, 중간투입액, 부가가치, 영업잉여
자 산 (유형고정자산과 재고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부통계조사(통계청)(1997) 조사주기: 10년 조사대상: 정부, 법인(개인)기업, 가계 관련조사내용: 산업별 유형 및 고정자산, 재고액 * 직접방식의 국부통계는 1997년 까지만 실시 - 산업연관표(한국은행)(2003년 기준) 조사주기: 매5년(실측표 기준) 조사대상: 전산업 관련조사내용: 총고정자본형성, 재고액, 고정자본소모 -국민계정(한국은행)(2006 기준) 조사주기: 매분기 조사대상: 전산업 관련 조사내용: 총고정자본형성액(기계, 운수, 건설), 재고액

3) 국민계정에 활용되는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 광업, 제조업

- 제조업의 총산출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의 생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구하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4인이하 영세기업은 산업연관표 작성시 이용하는 영세기업 비율을 이용하여 추계
- 제조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하며 비교년의 명목 중간투입은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하는 데, 부문별 세부 명목 투입내역은 기준년의 투입내역과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등 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추계

- 제조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하며,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피용자보수, 고정자본소모, 영업잉여 등은 산업연관표와 정부부문 조세관련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 비교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비교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하며 비교년 부가가치율은 산업연관표를 통해 구한 품목별 기준년 부가가치율과 기업경영분석,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등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율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이용해 추계

<표 6-6> 통계별 부가가치 계산방법

□ 국민계정

$$\begin{aligned} \text{비교년 부가가치} &= \text{비교년 산출액} \times \text{비교년 부가가치율} \\ &= \text{피용자보수} + \text{고정자본소모} + \text{영업잉여} + \text{순기타생산세(기타 생산세-기타생산보조금)} \end{aligned}$$

$$\begin{aligned} \text{비교년 부가가치율} &= \text{기준년 부가가치율} \times \\ &\quad \left[\frac{\text{비교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율}}{\text{기준년 기업경영분석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율}} \right] \end{aligned}$$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통계조사상의 부가가치는 중간투입중 원재료비 등 주용 생산비만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계정의 부가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고선전비 등 간접생산비를 추가로 차감해야 함.

$$\begin{aligned} \text{광업제조업통계조사상의 부가가치} &= \\ &\quad \text{생산액} - \text{주요 생산비(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리유지비)} \end{aligned}$$

-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 개념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주요 생산비 외에 복리후생비 중 현물지급분, 운반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 기타 잡비와 같은 간접적 생산비도 각 사업장별 생산액으로 배분되어 제외해야 함.

□ 전기가스수도업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로부터 비용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결산서를 수집하여 추계
 - 수도부문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작성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이용하여 추계

□ 건설업

- 건물건설의 기준년 총산출은 건설교통부의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 통계와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의 건물 기성액 등을 참고하여 계산
 - 토목건설의 기준년 총산출은 민간토목 총산출과 정부토목 총산출의 합으로 계산하는데, 민간토목의 총산출은 대형 발주자의 건설투자실적과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의 토목공사 기성액 자료를 참고하여 구함.
 - 건설업의 기준년 중간투입은 산업연관표 등의 중간투입비율을 총산출에 적용하여 구하며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함.
 - 비교년의 총산출은 기준년과 유사하게 구하며 비교년 중간투입은 기준년과 달리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하며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명목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함.
 - 여기서 명목부가가치율은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대한건설협회 건설경영분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도소매업의 총산출 추계는 산업연관표 작성시 별도로 조사된 상품별 도소매 유통화율과 평균마크업(mark-up)율을 각 상품별 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액-수출액-재고)에 곱하여 상품별 거래마진을 구하고 이들을 합산하여 거래마진을 추정하는 상품흐름법을 사용
 - 한편 도소매업의 비교년 총산출은 기본적으로 기준년의 추계방법과 같으나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명목 마크업을 및 부가가치율을 매년 수정

- 음식숙박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도소매업통계조사의 매출액을 이용하여 추계하며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추계하고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얻은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함.
- 비교년의 총산출은 도소매업통계조사 등을 이용하여 기준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

□ 운수창고통신업

- 철도여객 및 화물운송의 기준년 총산출은 기초자료(한국철도공사,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의 결산서)의 여객부문 수익을 이용하여 추계
 - 기준년과 비교년의 부가가치는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하여 구하며 중간투입은 기초자료의 영업원가 명세서, 판매비와 관리비 명세서를 이용하여 구함.
-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운송의 7개 부문은 통계청의 운수업통계조사의 운수수입을 기준년 총산출로 간주하며 기준년 중간투입은 운수업통계조사의 연료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수수료 등을 합산하여 구함.³⁰⁾

□ 금융보험업·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금융중개기관과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기관의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총산출, 중간투입 및 부가가치를 계산함.
-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기업경영분석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구한 후,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별 총산출에 곱해서 추계
 - 부동산 임대업의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의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구하며 부동산 개발업은 한국토지공사 등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총산출, 중간투입, 부가가치를 계산

30)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운송 외 7개 부문은 연안 및 내륙수상, 외항, 육상, 운수보조서비스, 수상운수보조서비스, 하역업, 기타운수관련서비스, 보관 및 창고업을 의미함.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업의 기준년 및 비교년의 추계방법은 일반정부의 기준년 및 비교년 추계방법과 동일하며 사용하는 기초통계 자료도 일반정부 추계시와 동일함.

□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기준년 총산출은 국세청 자료 및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와 기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등)를 이용하여 계산
 - 기준년 중간투입은 총산출에서 부가가치 금액을 차감하여 구하며 기준년 부가가치는 총산출에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구한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
- 비교년 명목 총산출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 국세청 외형거래액, 서비스업활동지수, 기타 전수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통계연보, 교육통계연보 등) 및 표본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간 매출액 증가율을 구한 후 전년도 명목 총산출에 적용
 - 비교년 명목 중간투입은 명목 총산출에서 명목 부가가치를 차감하여 구하며 비교년 명목 부가가치는 명목 총산출에 명목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추계
 - 여기서 명목 부가가치율은 서비스업 통계조사보고서와 국세청자료(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등을 이용하여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성 항목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표 6-7> 국민계정 작성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 이용현황

산업구분	자료명	조사내용	비고
광업, 제조업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품목별 생산액 및 주요 생산비	
건설업	건설업통계조사	공종별 기성액, 산업 및 공사실적 통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도소매통계조사	음식숙박업의 매출액	
운수업	운수업통계조사	운수수입	도로여객 및 도로화물운송 외 7개 부문
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서비스업통계조사	매출액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2005.

4) 산업연관표 작성에 활용되는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로서
 - 한국은행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로서 원칙적으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나 부분적으로 타 기관의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
- 부문별 총산출액의 실제 추계작업은 각 품목별 생산량과 출하단가로 구분하여 진행되는데 그 기초자료로 각종 생산통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 관련협회 및 업체자료 등이 이용
 - 각 부문별 취업자 및 피용자 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 및 각 협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실사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를 통하여 추계
 - 재고증가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투입구조 조사자료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 항목중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및 고정자본소모는 각 부문별 투입구조조사자료, 기업경영분석자료, 광업제조업통계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계

<표 6-8> 산업연관표에서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활용 현황

조사내용	자료명
부문별 산출액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고용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최종수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6.

5)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문제점

□ 조사항목의 분류와 개념의 불일치

- 앞 절에서 조사항목의 상세한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공통조사 항목의 분류는 기존 산업구조통계 간 서로 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세부 분류(또는 구성항목)가 일치하지 않아 산업구조통계 간에 비교가 불가능함.
 - 예를 들면 산업구조통계별로 종사자의 구분과 분류체계가 상이하거나 일부가 통합되어 있어 각 통계 간 비교가 불가능하여 산업간 고용구조변화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통계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고용관련 통계(특히 종사자 수와 연간급여액)는 고용구조 변화, 산업간 생산성 추이, 실질임금의 추이 분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통계 간의 조사내용의 불일치는 상기 비교와 분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
 - 예를 들면 최근 서비스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고용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수요의 증가에 따라 고용관련 조사내용의 일관성과 비교성의 확보가 시급함.
- 출하액(매출액)과 생산비용(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어서도 감가상각비 등 일부 세부항목이 합쳐져 있어 연간 자산가치의 추정 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조사내용의 개념은 소수의 조사내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나 산업구조통계마다 각 조사항목에 대해 제각기 다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항목의 용어를 통일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
 - 가령 상용종사자의 경우 건설업통계조사에서는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받는 자”로 정의되나 서비스총조사 등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급여를 받는 자로서 유급임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견습사원, 파트타임 종사자도 여기에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어 개념의 불일치가 발생

- 기존 산업구조통계 간에 개념의 불일치나 용어의 혼용이 통계 간 비교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용어의 통일과 개념의 일치는 통계의 신뢰성과 비교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작성 시 이용의 제약

- 한 나라의 경제구조를 국제표준에 의해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를 들 수 있는데, 기존 산업구조통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두 통계의 작성을 위한 보조자료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등 대다수의 산업구조통계가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 작성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조사항목 분류와 개념의 불일치로 인해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국민계정의 경우 SNA 체계에서 정의되는 부가가치의 개념이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부가가치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특히 국민계정의 부가가치 개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조사하는 주요 생산비 외에 복리후생비 중 현물지급분, 운반비, 보험료, 여비, 교통비 등이 별도의 조사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함.
 -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에서 중간투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이 좀더 세분화된 조사항목이 필요하나 현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사내용의 분류 및 개념의 불일치는 산업구조통계의 신뢰성과 비교성을 저하시켜 통계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세분화되지 않은 조사항목들은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작성시 주요 이용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떨어뜨려 산업구조 기초통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조사항목의 측면에서 경제센서스로서의 이행은 조사항목 용어의 통일과 개념의 정립을 통해 산업구조 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및 비교성을 제고하여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작

성시 주요 이용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두 경제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조사내용의 해외사례

1) 미국 경제센서스

-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내용은 산업분류, 사업체의 크기, 조직형태, 행정자료의 이용 여부 및 다른 통계조사의 표본에 포함여부에 따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조사표가 있어 본 절에서는 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내용을 파악³¹⁾
 - 미국 경제센서스에서 사용되는 조사표는 크게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 정규조사표(Questionnaire) 와 조직관련 조사표(Ownership or Control Form)로 나눌 수 있음.
 - 약식조사표는 2종의 공통조사표 외에 산업별 특성에 따라 30여종으로 나뉘어지며 정규조사표는 총 490여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기업의 소유 및 통제에 대한 조사표는 4종의 공통조사표 외에 산업별 특성에 따라 19종의 조사표가 있음.

(1)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s)의 조사내용³²⁾

-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 소규모 사업체 중 행정자료를 통해서 충분한 산업분류가 곤란할 경우 발송되며 대개의 경우 약식조사표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조사가 없음
 - 약식조사표는 주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NC-99023과 건설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NC-99026 으로 나뉘어 지며 일부산업은 별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30여종에 이룸(아래 <표 6-9> 참조).
- 양식 NC-99023 : 주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설문

31) 미국 경제센서스(2002년 기준)의 조사표의 구성과 산업별 전체 조사내용은 5장 부록의 <부록 1>과 <부록 2> 참조.

32)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의 양식은 <부록> 참조.

- 질문번호 1 (고용자 고유번호) : 고용자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질문
 - 질문번호 2 (사업장 위치) : 사업체의 주소 질문
 - 질문번호 3 (과건 근로자) : 과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
 - 질문번호 4 (산업 분류) : 미국의 산업분류를 객관식으로 나열하여 해당 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질문번호 5 (고객 분류) :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다른 소매/도매업자인지에 대해서 질문
 - 질문번호 6 (매출, 출하, 수입) : 수입원과 전체에서의 비중을 설문
 - 질문번호 7 (기타 사항) : 기타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록
 - 질문번호 8 (응답자 확인) : 응답자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 양식 NC-99026 : 주로 건설,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설문
- 질문번호 1 (고용자 고유번호) : 고용자등록번호 질문
 - 질문번호 2 (사업장 위치) : 사업체의 주소 질문
 - 질문번호 3 (산업 분류) : 구체적인 산업 분류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함
 - 질문번호 8 (응답자 확인) : 질문 4~7은 없음

<표 6-9>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표

산 업	약식조사표 ¹⁾	정규조사표	소유 및 통제 ²⁾
광 업		17	3
제조업		291	1
수도가스전기		2	1
건 설		13	1
도매업		40	1
소매업	6	29	
음식숙박서비스	1	4	1
운송창고업	1	7	
정 보		20	2
금융및보험	1	16	3
부동산 및 임대	3	6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5	12	4
행정지원폐기물관리	4	7	
교육서비스	1	1	
의료 및 사회복지원	3	9	1
예술, 오락	1	6	
기업관리		2	
기타서비스(공공서비스제외)	4	8	1
총 계	30	490	19

주 : 1) 약식조사표는 산업별 30여종 외에도 2종의 공통조사표가 있음.

2) 소유 및 통제에 대한 조사표는 19종 외에도 4종의 공통조사표가 있음.

<표 6-10> 약식조사표의 종류와 조사대상

양식 번호	조사 대상
NC-99023	약식조사표(주로 서비스업 대상)
NC-99026	약식조사표(주로 건설업과 제조업 대상)
AE-71190	프로모터, 관리인, 독립 아티스트 기타(Promoters, Agents/Managers, Independent Artists, and Miscellaneous Recreation)
AF-72290	숙박 및 음식서비스(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AS-56190	취업, 여행일정 관리, 안전서비스(Employment, Travel Arrangement, and Security Services)
AS-56191	사업 및 기타지원서비스(Business and Other Support Services)
AS-56192	빌딩 및 거주관리서비스(Services to Buildings and Dwellings)
AS-56290	폐기물관리 및 교정서비스(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ED-61190	교육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FI-52490	보험(Insurance Classification)
HC-62190	의료서비스(Ambulatory Health Care Services)
HC-62390	간호 및 간병시설(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C-62490	사회지원(Social Assistance)
OS-81190	차량수리 및 관리(Motor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OS-81191	기타 수리 및 관리서비스(Other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OS-81290	개인 및 세탁서비스, 애완동물관리제외(Personal Care and Laundry Services, except Pet Care)
OS-81390	사회 및 단체서비스(Civic, Social, and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PS-54190	법률, 회계서비스(Legal, Accoun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PS-54191	컴퓨터, 경영 및 상담서비스(Computer,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PS-54192	건축, 공학, 설문조사, 디자인 및 연구개발서비스(Architecture, Engineering, Surveying, Design,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PS-54193	광고 및 기타 전문서비스(Advertising and Other Professional Services)
PS-54194	위생 및 애완동물관리 서비스(Veterinary and Pet Care Services)
RE-53190	부동산 임대(Real Estate Lessors)
RE-53191	부동산서비스(Real Estate Services)
RE-53290	렌탈 및 임대(Rental and Leasing)
RT-44190	주유소, 차량 및 부품판매(Retail Gasoline Stations and Motor Vehicle and Parts Dealers)
RT-44191	가구소매, 가정용가구, 가정용전기제품 및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Retail Furniture, Home Furnishings, Electronics, Appliances, and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RT-44192	빌딩재료소매 및 잔디와 정원관리장비(Retail Building Materials, Hardware, and Lawn and Garden Equipment)
RT-44193	음식료품소매(Retail Food and Beverages)
RT-44194	의류와 장신구소매(Retail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RT-44195	기타소매(Miscellaneous Retailers)
TW-48490	트럭서비스(Trucking)

(2) 정규조사표(Regular Form)의 조사내용³³⁾

- 정규 조사표 (Questionnaire)는 사업체의 세부적인 경제 활동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경제센서스 조사표임.
 - 센서스국이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명부에 따라 각 사업장에 세부 산업분류에 따른 고유 조사표를 발송하며 해당 조사표에 답변하여 반송
 - 농림어업과 공공행정을 제외한 18개의 대분류 산업을 490개의 세분류 산업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산업에 대해 별도의 조사표를 발송하며
 - 조사내용은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90개의 산업의 개별 특성에 따라 조사내용이 상이함(<표5-9> 참조).³⁴⁾
 - 제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가 「연간제조업통계조사(ASM)」 표본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조사내용 일부가 다름.
- 임의의 조사내용이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내용을 공통항목과 일반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나머지는 일반항목으로 분류됨.
 - 조업개월수(Months in operation)
 - 고용자등록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 사업체 위치(Physical location of the economic activity)
 - 매출액, 출하액 또는 수입액(Value of sales, receipts, work done, or equivalent)
 - 전자상거래에 의한 출하 또는 수입액(E-Commerce sales, shipment, receipts, or revenue)
 - 종사자 수(Number of employees)와 급여(Payroll)
 - 파견근로자와 급여(Leased employment and payroll)
 - 응답자 확인
 - 위의 공통항목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의한 출하 또는 수입액과 파견근로자와 급여 항목은 2002년 경제센서스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임.

33) 정규조사표의 양식은 <부록 5> 참조.

34) 490개 산업별 상세 조사내용과 대분류 산업별 조사표의 구조에 대해서는 <부록 2>을 참조

- 조업개월수(Months in operation)는 조사시점 동안 해당 사업체가 생산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를 의미하며 고용자등록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는 국세청(IRS)에 등록된 고용자의 고유번호를 의미함.
- 매출액, 출하액 또는 수입액(Value of sales, receipts, work done, or equivalent)는 대분류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며 모든 산업에 대해 조사항목 22에서 더 자세하게 품목별 매출, 출하 또는 수입 금액과 수량에 대해 보고해야함.
 -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총 출하금액 중에서 수출금액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전자상거래에 의한 매출, 출하 또는 수입액(E-Commerce sales, shipment, receipts, or revenue)을 보고하되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은 총출하액 또는 수입액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한 비중을 보고해야함.
- 고용과 급여는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근로자 수와 급여를 파견근로자 수와 급여를 별도로 구분해 보고
 -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3월 12일을 포함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한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의 수를 의미하며 급여액에 대해서는 고용자가 지불한 복지비용을 제외한 세전 연간급여액과 1/4분기 급여액을 보고
 - 광업, 제조업의 경우 3월, 5월, 8월 및 12월 12일을 포함하는 각각의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 생산직근로자 수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평균 생산직 근로자 수와 3월 12일을 포함하는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 기타 근로자 수를 합한 총 근로자 수를 보고해야 하며 생산직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도 보고해야 함.
 - 건설업의 경우 단지 건설근로자와 기타 근로자 수를 구분해서 보고
 - 광업,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기타 근로자의 연평균 급여와 총 급여, 1/4분기 총급여액을 보고해야 하며 고용자의 복지비용 지출액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함.
 - 파견근로자의 경우 광업, 건설업 및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은 파견근로자

의 수와 연간급여액, 1/4분기 급여액을 보고해야 하며,

- 광업, 건설업 및 제조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대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형식으로 보고해야함.

<표 6-11> 미국 센서스의 질문 번호별 세부 내용(1)

질문 번호	항목	내용
1	사업 수행 기간	일년 중 산업활동을 수행한 개월수 질문
2	고용자등록번호	고용자등록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질문
3	사업체 위치	사업체의 주소 질문
4	매출, 출하, 수입	연간 판매, 출하 또는 수입액을 질문 - 수출액, 다른 국내기업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규모, 모든 매출이 단일 산업체의 중간재 공급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질문
5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 출하 또는 수입액에 대해 질문
6	고용과 급여	3월 12를 포함하는 급여 산정 기간 중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의 수를 질문 - 파견 근로자는 제외 - 제조업, 건설, 광업은 3월 12일, 5월 12일, 8월 12일, 11월 12일이 포함된 급여 산정 기간에 대해 각각의 고용 규모를 질문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도 별도 질문 (4개 고용규모의 평균으로 고용 규모 산출) - 제조업, 건설, 광업은 급여 관련 질문에서 연간 및 1/4분기 급여를 생산직과 기타근로자로 나누어 질문하고 복지 비용 및 노동 시간(제조업과 광업만 해당)에 대해서도 질문함
7	파견 근로자	질문 6과 같은 형태의 질문을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실시
8, 9		해당사항 없음
10	재고	후입선출법에 의해 재고를 평가하는가를 질문하고 이에 따른 재고 규모에 대해 질문
11	재고	선입선출법, 평균 비용, 기준 비용 등 다른 기법에 의한 재고 평가 규모에 대해 질문
12	자산, 자본소비,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자본지출비 규모에 대해서 질문 - 연초, 연말 총 자산가치 질문, - 빌딩과 구조물을 기계류와 구분해 자본지출에 대해 질문 - 기계류에 대한 자본지출을 운송,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타지출로 구분해서 질문
13	임대료	임대료에 대해서 1) 건물에 대한 부분과 2) 기계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
14	광산물 관련 비용	광산물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질문

○ 응답자의 이름, 직책, 전화와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조사표 작성일, 기

입한 내용이 조사 기준년도와 일치여부 등(모든 조사표에서 동일)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표 6-12> 미국 센서스의 질문 번호별 세부 내용(2)

질문 번호	항목	내용
15	비용 세부 내역	사업체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그 규모를 질문
16	원부자재 세부 내역	제조업 및 광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부자재의 구입 규모를 물량, 금액 기준으로 모두 조사 - 세부산업별로 사용되는 모든 원부자재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사전에 작성하여 배포
17	연료 사용	공업의 생산 활동에 사용된 연료의 물량 및 금액을 질문
18	업종 세부분류	생산, 판매 등 사업체의 경제 활동의 보다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 객관식의 형태로 질문
19	고객 분류	도/소매업에서 조사하며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다른 소매/도매업자인지에 대해서 질문 - 고객의 분류를 해당 산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을 파악
20	판매 방법	도/소매업에서 조사하며 판매 방법을 소매판매의 경우 상점, 전자상거래, 우편 주문, 전화 주문, 자판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매출에서의 비중을 질문
21	해당 사업이 지원한 산업	해당 산업이 지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설문
22	판매, 출하, 수입 세부 내역	모든 산업의 설문에 포함되는 질문으로서 해당 산업의 세부적인 생산 또는 서비스 항목에 대해서 판매 또는 수입 규모(물량) 및 금액에 대해 조사
23	건설물 형태	건설 산업에서 질문하며 공사한 건설물의 종류에 대해서 질문
24	배송	도/소매업에서 질문하며 배송을 통한 수입의 발생여부와 그 금액규모에 대해 질문
25	서비스 수출	미국 국경 밖에 위치한 사업체, 정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26	업종별 특별 조사	업종별로 특별한 주제에 대한 질문
27	공동 사업	주로 건설업에서 질문하며 다른 기업 또는 기관과 공동 수주 및 건설활동을 하는가 여부, 건수, 사업명을 질문하고 공동사업자명 및 주소도 질문
28	사업 활동 외주 여부	해당 산업의 세부 단계별 경제 활동을 나열하고 그 중 외주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 - 디자인, 주문, 재고 관리 등의 활동을 해당사업체, 동일 계열내의 다른 사업체, 다른 기업에서 수행하는지 조사
29	사업 상황	경제 활동을 지속했는지, 일시적 계절적으로 중단하는지, 활동을 중단했는지(중단 날짜 기록),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했는지(사업자명 및 주소 필요) 등에 대해 조사
30	응답자 확인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 번호 등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표 6-13>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질문 항목 비교 1

질문 번호		음식 숙박	사업 지원	예술 오락	건설	교육	금융 보험	의료	정보	기업 관리
		(72)	(56)	(71)	(23)	(61)	(52)	(62)	(51)	(55)
1	사업수행 기간	●	●	●	●	●	●	●	●	●
2	고용자 등록 번호	●	●	●	●	●	●	●	●	●
3	사업장 위치	●	●	●	●	●	●	●	●	●
4	매출, 출하, 수입 (총량자료)	●	●	●	●	●	●	●	●	●
5	전자 상거래 (매출, 출하, 수입)	●	●	●	●	●	●	●	●	
6	고용과 급여	●	●	●	●	●	●	●	●	●
7	파견 근로자 (고용과 급여)	●	●	●	●	●	●	●	●	●
8	미확인									
9	미확인									
10	재고 (후입선출 기준)				●				●	●
11	재고 (기타 기준)								●	●
12	자산, 자본소비, 감가상각				●					
13	임대료				●					
14	광산물 관련 비용									
15	비용 세부 내역		●		●				●	●
16	원부자재 세부 내역									
17	연료 사용									
18	업종 세부분류	●	●	●		●		●	●	●
19	고객 분류	●	●						●	
20	판매 방법									
21	해당 사업이 지원한 산업		●						●	●
22	판매, 출하, 수입 세부 내역	●	●	●	●	●	●	●	●	●
23	건설물 형태				●					
24	배송									
25	서비스 수출		●	●			●			●
26	업종별 특별 조사	●	●	●	●	●	●	●	●	●
27	공동 사업				●					
28	사업 활동 외주 여부	●	●		●	●	●		●	
29	사업 상황 (가동, 일시중단 등)	●	●	●	●	●	●	●	●	●
30	응답자 확인	●	●	●	●	●	●	●	●	●

주 : 음영은 2002년 경제센서스에 추가된 질문

<표 6-14> 미국의 산업별 센서스 질문 항목 비교 2

질문 번호		제조업	광업	기타 서비스	사업 서비스	부동 산	소매 판매	운수 창고	전기 가스	도매 판매
		(31-3)	(21)	(81)	(54)	(53)	(44-5)	(48-9)	(22)	(42)
1	사업수행 기간	●	●	●	●	●	●	●	●	●
2	고용자 등록 번호	●	●	●	●	●	●	●	●	●
3	사업장 위치	●	●	●	●	●	●	●	●	●
4	매출, 출하, 수입 (총량자료)	●	●	●	●	●	●	●	●	●
5	전자 상거래 (매출, 출하, 수입)	●	●	●	●	●	●	●	●	●
6	고용과 급여	●	●	●	●	●	●	●	●	●
7	파견 근로자 (고용과 급여)	●	●	●	●	●	●	●	●	●
8	미확인									
9	미확인									
10	재고 (후입선출 기준)	●	●					●		●
11	재고 (기타 기준)	●						●		●
12	자산, 자본소비, 감가상각	●	●							
13	임대료	●	●							
14	광산물 관련 비용		●							
15	비용 세부 내역	●	●	●				●		●
16	원부자재 세부 내역	●	●							
17	연료 사용		●							
18	업종 세부분류	●	●	●	●	●	●	●	●	●
19	고객 분류			●	●	●	●		●	●
20	판매 방법						●			●
21	해당 사업이 지원한 산업			●				●		
22	판매, 출하, 수입 세부 내역	●	●	●	●	●	●	●	●	●
23	건설물 형태									
24	배송						●			●
25	서비스 수출			●	●	●				
26	업종별 특별 조사	●	●	●	●	●	●	●	●	●
27	공동 사업						●			
28	사업 활동 외주 여부	●			●	●	●	●	●	●
29	사업 상황 (가동, 일시중단 등)	●		●	●	●	●	●	●	●
30	응답자 확인	●	●	●	●	●	●	●	●	●

주 : 음영은 2002년 경제센서스에 추가된 질문

○ 조직 관련 조사표 (Report of Organization) : 조사 대상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피소유되어 있는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설문

- 기존에 파악된 자회사 관련 정보의 확인 및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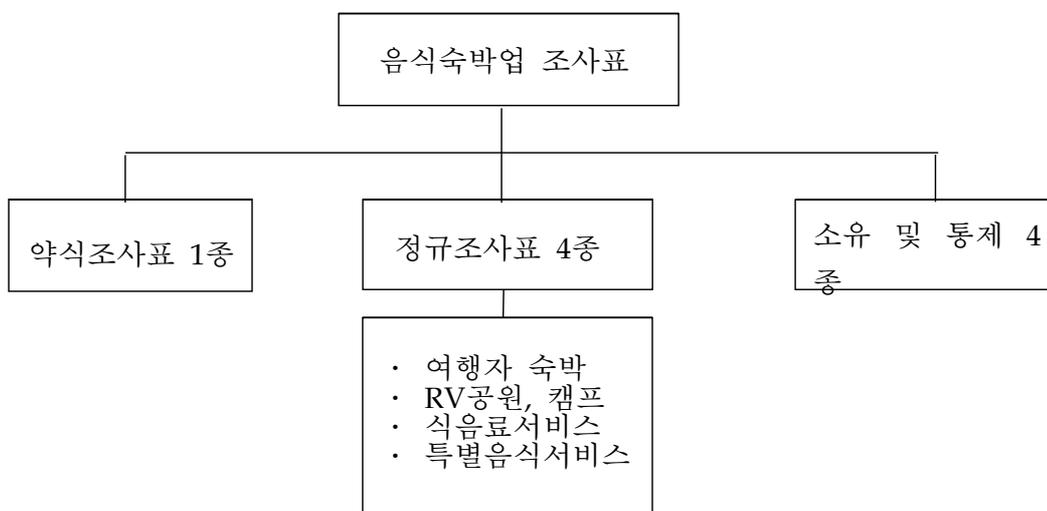
(3) 조직 관련 조사표(Ownership or Control)의 조사내용³⁵⁾

- 기업의 조직과 통제에 관한 조사는 양식 NC-99510, NC-99001, NC-99002, NC-99003의 네 종류가 있으나 NC-99001~3은 사실상 하나의 조사표이며 NC-99510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양식의 명칭이 다소 상이하지만 조사내용은 동일함.
 - 양식 NC-99510은 단일 장소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조사하며
 - 양식 NC-99001은 여러 장소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2002년 경제센서스의 조사대상 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양식 NC-99002, NC-99003을 추가적으로 작성
- NC-99510 : 소유 및 통제 관계에 대해 질문은 A, B, C로 구성되어 있음.
 - 질문 A : 설문 대상 기업이 ① 다른 국내 기업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경우 ② 다수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질문하며 ①, ②의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 다음 설문을 지속
 - 질문 B : 해당기업의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기업명과 주소 그리고 지분의 소유 비중 등을 질문
 - 질문 C :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와 이들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그리고 고용, 급여, 매출과 관련한 총량기준의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
- 양식 NC-99001~3은 NC-99510의 보다 세부적인 형태의 설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
 - 질문 1 (NC-99001, 응답자 확인) : 응답자 확인
 - 질문 2 (NC-99001) : 전화번호, e-mail 주소, 팩스 번호 등 응답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질문 3 (NC-99001, 소유권을 가진 국내 기업) : 소유 및 통제권을 가진 기업이 국내 기업일 경우 기업명 주소 지분을 등을 기록
 - 질문 4 (NC-99001, 해외 기업의 소유) : 해외 기업에 대해 10% 이상의 지분을 또는 그와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

35) 조직관련 조사표의 양식은 <부록 6> 참조.

- 질문 5A (NC-99002, 사전에 파악된 사업체에 대한 정보) : 해당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록하고 주소, 고용, 급여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파악
 - 질문 5B (NC-99003,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정보) : 센서스국에 의해 사전에 파악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주소, 고용, 급여 등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및 이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 파악
-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항목 특징은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사내용이 산업별로 상이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조사항목이 있다는데 있음.
- 경제활동에 새롭게 나타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사항목을 추가하는데 2002년 경제센서스에서는 파견근로자, 전자상거래, 외주에 의한 산업활동 등에 관련한 내용이 추가
- 미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항목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산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하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추세적 변화를 감안하여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조사항목을 검토할 필요
 - 서로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다수사업체의 혼선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표 설계시, 조사표를 표준화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
- 이상의 3종 경제센서스 조사표의 구조를 음식숙박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의 <그림 6-1>와 같음.

<그림 6-1> 음식숙박업의 조사표 구조



(4) 미국의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의 활용 현황

□ 국민계정에서의 활용 현황

- 미국의 국민계정은 분기 및 연간으로 작성되고 있어 매 5년마다 작성되는 경제센서스의 자료는 타 기관 작성통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지만 기준년(2, 7년) 국민계정 작성시에는 산업연관표와 함께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표 6-15> 참조).

- 국민계정의 항목 중 민간소비지출의 내구재 및 비내구재 기준년 지출을 추정할 때 경제센서스의 제조업 출하액이 주요 자료로 활용되도 있으며
- 민간 서비스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산업의 수입액이 민간 서비스 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
- 기준년 고정투자와 재고의 산정에 있어서도 경제센서스의 해당 산업의 수입 또는 출하액 자료가 주로 이용되고 있음.

<표 6-15> 미국 국민계정의 경제센서스 자료 활용 현황

국민계정		사용된 경제센서스의 조사내용	
민간 소비 지출	내구 재와 비내 구재	아래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구 및 비내구재	· 기준년 제조업 출하액
		신차(New autos)	· 상 동
		중고차와 중고트럭	· 상 동
		신경트럭(New light trucks) (Utility vehicles 포함)	· 기준년 중고차 판매인의 매출액 · 기준년 제조업 출하액
	서 비 스	차수리 및 임대, 기타수리서비스, 교통서비스, 법률 및 장례서비스,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소득세 환급서류 준비서비스, 헬스클럽, 호텔과 모텔, 교육서비스, 연구기관 및 재단 등	· 기업과 정부의 수입을 조정한 기준년 수입과 지출
		의료, 가정의료, 의료실험실시력검사	· 비영리전문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준년 지출 · 영리전문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소비를 제외 한 모든 수입
		사립간호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복지활동, 박물관, 도서관, 정당, 조합 및 전문단체 등	· 교육부문을 제외한 기준년 수입과 지출
		공공교육 및 병원, 수도 및 기타위생서비스, 복권	· · 복권에 대해서는 기준년 순수입 · 다른 서비스는 기준년 수입
		보험, 사립병원, 종교활동, 케이블 TV, 전기, 가스 및 전화	· 사립병원에 대해서는 기준년 수입과 지출 · 의료 및 병원 보험에 대해 경제센서스로부터 프리미엄에 대한 기준년 편익(benefit) · 전화 및 케이블 TV에 대해 기준년 수입
		비거 주용 건축	광물탐사, 굴삭
고정 투자	비거 주용 설비 및 소프 트웨 어	신차와 경트럭, 중고차와 트럭의 순구입을 제외한 설비투자	· 기준년 제조업의 출하액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 기준년 수입 · 자가개발(own-account)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 준년 생산비용	
재고	민간 재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	· 경제센서스의 기준년 재고
		광업, 수도가스전기, 건설, 기타 비농림 산업	· 상 동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Survey of Current Busoness", Nov 2006.

□ 산업연관표에서의 활용현황

- 2, 7년을 기준으로 5년마다 작성되는 미국의 산업연관표는 타 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동일한 해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제센서스의 자료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표 6-16> 미국 산업연관표의 경제센서스 자료 활용 현황

I/O의 중간투입 및 산출량	경제센서스의 자료 활용
중간투입 (Intermediate in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도소매, 창고업 및 수도가스전기: <p>상기 산업에 대해 경제센서스의 「기업지출통계조사」(Business Expense Survey:BES)에서 회계 및 광고서비스, 노동비용, 자료처리 및 기타컴퓨터관련서비스, 감가상각, 임대료지급, 법률서비스, 사무용품, 수리 및 유지비, 조세 및 라이선스 비용, 수도가스전기 비용 등의 자료를 이용 중간투입을 추정</p>
부가가치: 피용자보수 (Compensation of employe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센서스로부터 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경제센서스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이용하며 다른산업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
부가가치: 법인세 및 비조세 채무 (Indirect business tax and nontax li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와 같은 간접법인세 및 공과금과 같은 비조세채무는 경제센서스의 「기업지출통계조사」(Business Expense Survey:BES)를 이용하여 추정
산업별 산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업(NAICS 코드 21) 건설업(NAICS 코드 23) 제조업(NAICS 코드 31-33) 도소매업(NAICS 코드 42, 44-45) 운수 및 창고(NAICS 코드 48-49) 정보(NAICS 코드 51) 금융 및 보험(NAICS 코드 52) 전문사업서비스(NAICS 코드 54-56) 교육 및 의료(NAICS 코드 61-62) 레저 및 음식숙박(NAICS 코드 71-72) 기타서비스(NAICS 코드 81)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물(Scrap): 제조업(NAICS 코드 31-33) 재고평가조정(Inventory Valuation Adjustment)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BEA), "Concepts and Methods of the U.S. Input-Output Account", 2006.

주 : 기준년은 1997년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센서스임.

- 경제센서스의 자료가 산업연관표 작성에 이용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표 6-16>와 같은데, 산업연관표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투입을 비롯하여 산출량, 부가가치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음.
- 중간투입에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창고업 및 수도가스전기업에서 경제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처리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법률서비스 등 서비스의 중간투입을 추정
- 부가가치의 항목 중 피용자보수를 추정할 때, 경제센서스의 급여액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며 특히, 광업 및 제조업에서는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부수적으로 이용하여 피용자 보수를 추정
- 한편 부가가치 항목 중 조세관련 항목을 산정할 때, 경제센서스의 재산세와 공과금자료를 이용
- 산업별 산출액의 경우는 <표 6-15>에 나타나 있는 산업분류에 따라 경제센서스의 산업별 산출액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며 재고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용

2) 중국의 경제센서스

- 중국 경제센서스의 주요 조사사항은 '단위' 즉 조사대상 사업체의 기본적인 내용, 종사자, 재무상태, 생산경영상태, 생산능력, 원재료 및 에너지 사용, 과학기술활동 상황 등을 이루어짐.
- 조사대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단위 명칭, 단위 코드, 단위 주소, 주요 업무 활동, 산업 유형, 등기등록 유형, 기관 유형 등이 포함
- 종사자 항목은 종사자 총수와 성별, 학력별, 전공기술 직무에 따른 분류 상황 등이 포함
- 재무상태에는 주로 자산, 부채, 손익계산 등이 포함
- 생산경영상태에는 주로 생산, 판매, 재고, 원가(비용) 등이 포함
- 과학기술활동 현황에는 주로 과학기술 활동 인원 상황, 과학기술 활동경비 마련 및 지출 등의 사항이 포함

○ 조사사항의 기입은 다음과 같은 10의 규정에 기초하여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① 통계조사용 행정구획코드와 작성기준
- ② 기업등기의 분류에 관한 규정
- ③ 통계조사용 국유주식소유경제에 관한 분류방법
- ④ 소속단위에 대한 코드(GB/T12404-1997)
- ⑤ 통계조사용 기업규모의 분류방법
- ⑥ 3차 산업의 분류규정
- ⑦ 국민경제의 분류기준과 코드(GB/T4754-2002)
- ⑧ 주요광공업제품 생산·판매·재고에 관한 목록
- ⑨ 주요 광공업제품 생산능력에 관한 목록
- ⑩ 과학기술에 관한 통계조사용 분류코드

○ 조사표는 법인조사표, 사업체조사표, 자영업자조사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산업 및 영업규모별로 달리 적용되는 17종의 법인단위 조사표가 있음.

○ 중국 경제센서스의 조사항목을 살펴본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일반조사항목 안에 종사자 항목의 전공기술 직무에 따른 분류나 과학기술활동에 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경제센서스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과 대조
- 등기등록의 유형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등록업체를 파악

3) 일본의 경제센서스(예정)

(1) 「2009년 예비조사」에서의 조사내용

○ 「2009년 예비조사」는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포착에 중점을 두어 「2011년 본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과 동시에 폐지되는 사업체·기업 통계조사를 근거로 다음의 조사 사항을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사업체의 명칭·소재지·연락처

- 경영 조직
 - 본소·지소(출장소)의 구별
 - 본사·본소의 명칭, 소재지
 - 사업체의 개설 시기
 - 사업체의 종업원 수
 - 자본금
 - 경제활동의 내용
- 법인기업의 본사 사업체에 대해서는 상기 조사 사항 외에 다음의 기업 정보를 조사
-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복수 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경우)
 - 법인기업 전체의 경제활동의 내용(복수 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경우)
 - 산하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복수 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경우)
- 또한, 시험 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해당 조사 사항의 파악(파악하는 대상 법인기업 등)에 대해 계속 검토를 실시해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 실시계획 책정까지 결정
- 상기 내용에 관해서 필요에 따라 실제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09년 예비조사」 실시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조사 사항의 추가, 변경을 실시

□ 종업원 수에 관한 사항

- 종업원 수의 파악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해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추가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치
- 종업원 총수
 - 개인 사업주·가족 종업원·유급 임원의 총수
 - 상용 고용자수
 - 상용 고용자 이외의 고용자수
-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의 파악에 대해서는 임원수와 상용 고용자수

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09년 예비조사」의 조사 실시계획을 확정 할 때까지 추가 및 변경이 가능

(2) 「2011년 본조사」의 조사내용과 조사항목의 개념

□ 조사내용

○ 「2011년 본조사」는 사업체 및 법인기업의 회계항목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폐지되는 기존 대규모 통계조사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기능을 근거로 이하의 조사 사항을 사업체 단위로 조사

- 사업체의 명칭·소재지·연락처
- 경영 조직
- 본소·지소(출장소)의 구별
- 본사·본소의 명칭, 소재지
- 사업체의 개설 시기
- 사업체의 종업원 수
- 자본금

○ 이하의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체 단위로 파악할 수 없는 조사 대상(또는 산업) 이외에는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며, 이 경우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법인기업 단위로,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전체를 1단위로 파악

- 매출액(총액)
- 매출액(각각의 경제활동(품목 분류 등)에 따른)
- 해당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대규모 통계조사의 실적 등을 근거로 해 사업체 단위로 파악할지를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나,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09년 예비조사」 실시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내용 변경 가능

<표 6-17> 사업체단위에서의 매출액 조사 여부 (일본 표준산업분류 기준)

A 농업 (○)
B 임업 (○)
C 어업 (○)
D 광업 (○)
E 건설업 (○)
F 제조업 (○)
G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
H 정보 통신업 중 37 통신업, 38 방송업 (×) 이외 (○)
I 운송업 (×)
J 도매·소매업 (○)
K 금융·보험업 (×)
L 부동산업 (○)
M 음식점·숙박업 (○)
N 의료·복지 중 751 사회보험 사업단체 (×), 이외 (○)
O 교육, 학습 지원업 (○)
P 복합 서비스 사업 (○)
Q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

주 : ○: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는 산업, ×: 사업체 단위로 파악하지 않는 산업

- 법인기업의 본사 사업체에 대해서는 상기 조사 사항에 더하여 다음의 법인기업 정보를 조사

<표 6-18> 법인기업 추가 조사항목

- 법인기업의 개설 시기(복수 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경우)
-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복수 사업체를 가지는 법인기업의 경우)
- 법인기업 전체의 매출액(총액) ^{1) 2)}
- 법인기업 전체의 필요 경비 총액 ²⁾
- 법인기업 전체의 원재료비·구입비등 ²⁾
- 법인기업 전체의 급여 지급 총액 ²⁾
- 법인기업 전체의 감가상각비 ²⁾
- 법인기업 전체의 조세공과 ²⁾

주 : 1) 단독 사업체의 법인기업은 상기 이와 중복 시정을 도모
 2) 제조업의 단독 사업체의 법인기업의 사업체에 요구하는 매출액, 필요 경비 등의 회계 사항과 법인기업 단위로 요구하는 매출액, 필요 경비 등의 회계 사항의 중복 시정은 공업 통계조사에 대하여 그 필요 경비 등이 제조업 부문 이외를 범위에 포함하는지 아닌지의 판단을 근거로 해 검토

- 이러한 매출액(총액), 필요 경비 총액, 원재료비·구입비 등, 급여 지급 총액, 감가상각비, 조세공과 등의 법인기업 단위의 회계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산업 횡단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거쳐 「2011년 본조사」의 조사 실시계획 확정시 까지 변경하는 일도 가능
- 덧붙여 필요 경비 총액, 원재료비·구입비등에 대해서는 용어 및 그 내용에 대해 「2011년 본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 확정시 까지 충분히 검토를 실시
- 폐지되는 기존 통계조사에 대해 조사되고 있는 조사 사항으로 계속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
 - 상기 내용에 관해 필요에 따라서 실사 가능한 범위에서 「2011년 본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 확정시까지 조사 사항의 추가,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 종업원의 개념 및 종업원 수의 내역

- 앞에서 설명한 종업원 수의 파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11년 본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 확정시 까지 추가, 변경이 가능
- 법인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의 파악에 대해서 임원수와 상용 고용자수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11년 본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추가 및 변경

<표 6-19> 사업체에 있어 종사자수의 조사사항

항목	①~④ 합계	남성	여성	① 개인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유급직원	상용종사자			④ 상용종사자 이외의 고용자	I 파견 또는 하청으로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② 정사원, 정직원	파견 또는 하청으로 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③ 그 외 사람		
명	A	B	C	D	E	F	G	H	I
<p>○ A~I 의 란에 기입해야 할 사항은 이하대로 함.</p> <p>A : D 와 E 와 G 와 H 의 단순 합계를 기입</p> <p>B : A 가운데, 남성의 인원수를 기입</p> <p>C : A 가운데, 여성의 인원수를 기입</p> <p>D : 경영 조직이 개인경영의 경우 : 해당 사업체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수 및 무급으로 사업체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경영자의 가족의 인원수의 합계를 기입 경영 조직이 개인경영 이외의 경우 : 법인이업의 경우 상법상의 임원(고용 관계는 아니고 법인과의 위임 계약관계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여의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또 학교 법인, 단체 등에서는 각 법으로 규정된 임원상여(급여)의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 ※ 상용 고용자 : 노동 생산성의 파악의 관점 및 모집단 정보의 추출 조건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부터, 다음의 몇개의 조건을 채우는 사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고 있는 사람 · 1개월을 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되고 있는 사람 ·고용자 가운데, 조사일 전 2개월에 각각 18 일 이상 고용되고 있는 사람 고용 관계의 판단은 급여의 지분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급여의 지분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고용 관계가 있어도 급여의 지분을 받지 않는 휴업자는 포함하지 않음</p> <p>E : 상용 노동자 가운데,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 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을 기입</p> <p>F :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 이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취업 조건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파견 노동자나 제적 출향으로 불리는 노동자로 파견원 또는 출향원과 고용 관계를 계속한 채로 다른 회사 등 다른 경영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과 고용 관계를 가진 채로 하청으로서 다른 회사 등 다른 경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외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기업과 고용 관계를 가진 채로, 다른 회사 등 다른 경영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기입</p> <p>G :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 등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기입</p> <p>H : 조사일에 있고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고 있는 고용자 가운데 상용 고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자를 기입</p> <p>I : 조사일에 있고 해당 사업체에 파견 또는 하청으로서 다른 회사 등 별경영의 사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기입한다. 그 외 호청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조직과 고용 관계가 없는 노동자도 본 항목에 포함</p>									

- 주 : 1) 표현이나 예시에 대해서는 시험 조사 등을 거쳐 실사까지 적절한 것이 되도록 검토를 실시함.
- 2) F 란에는 「정사원」, 「정직원」 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 육아 휴가 등에 의해 급여의 지분을 받고 있는 휴업자를 이 항목에 포함하는 등, 노동 생산성 파악의 관점으로부터 제외해야 할 자에 대해서, 본 항목에 포함하는 조치를 검토함.
- 3) D~I 란을 남녀별로 추가해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사의 필요성 및 기입자 부담을 고려해,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해 실사까지 결정함.
- 4) A란 중 수라고 해 「파견(출향을 포함한다) 또는 하청으로서 다른 회사 등 별경영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해 파악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사의 필요성 및 기입자 부담을 고려해,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해 실사까지 결정함.

□ 매출액(총액)의 개념·용어 정리

- 매출액(총액)의 개념·용어에 대해서는 아래표의 결정사항을 기준으로 하지만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10년 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 책정까지 변경이 가능

<표 6-20> 산업별 매출액의 개념·용어

A 농업, B 임업, C 어업 => 판매 금액
D 광업 => 생산 금액
E 건설업 => 완성 공사액
F 제조업 => 제조품 출하액, 가공비 수입, 수리료 수입
G 전기업·가스·열공급·수도업 => 매출액
H 정보 통신업 => 매출액
I 운송업 => 영업수익
J 도매·소매업 => 매출액(상품 판매)
K 금융·보험업 => 경상 수익(영업수익), 경상비용(영업비용)
L 부동산업 => 매출액
M 음식점·숙박업 => 매출액
N 의료·복지 중 73 의료업 => 의술업 수입
N 의료·복지 중 751 사회보험 사업단체 => 영업수익
N 의료·복지 중 상기 이외 및 91 정치·경제·문화 단체, 92 종교 단체 => 수입금액 또는 필요 경비 총액으로 대체
O 교육, 학습 지원업 중 76 학교 교육 => 소비 수입
O 교육, 학습 지원업 중 77 그 외의 교육, 학습 지원업 => 수입금액
P 복합 서비스 사업 => 수입금액(매상고, 영업수익)
Q 서비스업(그 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91 정치·경제·문화 단체, 92 종교 단체를 제외) => 수입금액(매출액, 영업수익)

□ 각각의 경제활동(품목분류 등)에 따른 매출액

- 각각의 경제활동(품목분류 등)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도 결정된 사항(첨부참조)이 있으나 시험 조사 등을 근거로 2010년 조사의 조사 실시 계획 책정까지 변경이 가능

- 공무에 대해서는 매출액등의 회계항목을 조사하지 않음.

(3) 「2007년 시험조사」의 조사내용

-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에서는 2007년 9월에 「2009년 예비조사」를 위한 시험조사를 통계보고조정법에 기초하여 승인통계로 실시함.
 - 이 시험조사는 조사방법이나 조사표 설계 등이 적합한지를 「2009년 예비조사」 이전에 시험조사를 통해 검정할 목적으로 실시
- 일본 경제센서스의 조사항목은 기본적으로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결정은 올해 실시되는 시험조사의 결과에 기초할 예정임.
- 「2007년 시험조사」에서의 조사항목은 <표 6-22>와 같은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음.

<표 6-21> 「2007년 시험조사」의 조사표 구분

본·지	경영조직				
	개인	회사 (외국회사제외)	외국회사	회사 이외의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단독사업체	A	A		A	A
본소·본사·본점	A+B	A+B		A+B	A
지소·지사·지점	-	-	A	-	A

<표 6-22> 2007년 시험조사의 조사표 항목

	조사사항	조사표 A	조사표 B
사업체에 관한 사항	사업체(또는 기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	○
	소재지	○	○
	경영조직	○	
	사업체의 개설시기	○	○
	사업체의 종사자수	○	○
	사업체의 사업의 종류	○	○
	업태	○	○
	산하 사업체의 유무	○	
기업에 관한 사항	자본금 등의 액수	○	
	외국자본비율	○	
	주식회사 여부	○	
	모회사의 유무	○	
	모회사의 명칭 및 연락처	○	
	자회사의 유무	○	
	회사전체의 상용고용자수	○	
	회사전체의 주요 사업 종류	○	

- 올해 실시하는 시험조사의 조사표는 2종에 3가지로 A형(A-1, A-2)과 B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예정임.

4) OECD의 산업구조통계 조사내용

- OECD는 국가별 산업구조통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사항목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6-23>와 같음.

<표 6-23> OECD 산업구조통계의 조사항목

조사항목	비고
1. 출하액(Turnover or gross premiums written)	출하액(관세와 세금은 포함, 부가세 제외, 운송비, 포장비 포함)
2. 생산액(Production at producer's prices)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
3. 생산액(Production at factor costs)	생산비용으로 평가
4. 부가가치(Value added at basic prices)	기초가격으로 평가
5. 부가가치(Value added at factor costs)	생산비용으로 평가
6. 총영업이익(Gross operating surplus)	부가가치-비용자보수
7. 중간투입(Total purchases of goods and services)	자본재 구입비용 제외
8. 재고 증감(Change in stocks of goods and services)	조사기준년 초기와 말기의 차액
9. 에너지비용(Purchases of energy products(in value))	
10. 총유형자산(Gross Investment in tangible goods)	토지와 유형고정자산
11. 토지(Investment in land)	지하광물, 산림, 수자원의 구입포함
12. 건물 및 구축물(Investment in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사용되지 않거나 합병, 인수, 분사에 의한 빌딩은 제외
13. 기계장비(Investment in machinery and equipment)	운송장비 포함
14. 유형자산재 판매액(Sales of tangible investment goods)	
15. 순유형자산(Net investment in tangible goods)	총유형자산-유형자산 판매
16. 종사자 수(Employment, number of persons engaged)	파견근로자, 주주위원회 구성원, 장기휴가자, 군복무자 제외
17. 고용자 수(Employment, number of employees)	고용계약에 의해 임금을 받는 임시직 포함. 별가, 휴가자 포함.
18. 무급종사자 수(Employment, number of unpaid persons employed)	
19. 여성고용자 수(Employment, number of females employees)	
20. 정규노동시간 환산 고용자 수 (Employment, number of employees in full time equivalent units)	
21. 노동시간(Hours worked by employees)	유급휴가, 병가, 공공휴일 제외
22. 종사자의 보수(Compensation of labour, all persons engaged)	
23. 고용자의 보수(Compensation of labour, employees)	
24. 종사자 급여액(Wages and salaries, all persons engaged)	종사자의 보수에서 연금, 퇴직금, 제외, 소득세 포함.
25. 고용자 급여액(Wages and salaries, employees)	고용자의 보수에서 연금, 퇴직금 제외, 소득세 포함.
26. 기타 고용자에 의한 사회보장 지출 (Other employer's social contribution, employees)	고용자에 의한 의료보험, 연금지급액
27. 기업 수(Number of enterprises)	
28. 사업체 수(Number of establishment)	

자료 : OECD,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2006.

3. 국내외 공통항목 설정 현황

- 경제센서스 실시를 위한 공통조사 항목을 설정하기 전에 기존 산업구조 통계에서 어떤 항목이 공통으로 조사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중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절에서는 기존 산업구조통계가 어떤 공통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1) 국내 산업구조통계의 공통조사항목 현황

- 산업구조통계조사 별로 공통 조사항목을 살펴본 결과, 크게 일반사항, 고용, 생산, 생산비용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일반사항은 사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조직형태(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고용측면의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남녀구분), 연간급여액이 포함

<표 6-24> 국내 산업구조통계조사의 공통 조사항목 내용

		일반사항	고 용	생 산 (출하액, 매출액)	생산비용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산업총조사	5인 이상	1. 사업체명, 2. 소재지, 3. 연락처, 4. 조직 형태 ¹⁾	1. 종사자 수 (남,녀), 2. 연간급여액	1. 조업(영업) 개월 수, 2. 연간출하액 (매출액, 수입액)	1. 연간제조(매출) 원가 2. 판매비 및 관리비
	4인 이하				
	본점용				
	전기, 수도, 가스, 증기 및 온수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상 동	종사자 수	상 동	미조사	

주 : 1) 일반사항의 조직형태는 4인이하 광업·제조업과 전기·수도·가스·증기 및 온수공급업에는 없음.

- 생산측면에서는 조업(영업)개월 수, 연간출하액(매출액, 수입액),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연간제조(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고 있음.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산업구조통계에 포함되 주목적이 사업체명부 작성에 있으므로 연간급여액이나 생산비용은 조사항목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국의 공통조사항목 현황

- 미국, 중국 및 일본(2010년 예정)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센서스의 공통 조사항목으로는 우리나라가 조사하는 현 산업구조통계조사의 공통항목과 일치하고 있음.
- 3개국의 공통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체의 일반사항으로는 소재지와 연락처를 포함하며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구조통계의 공통조사항목 보다 오히려 숫자가 작음.

<표 6-25> 각 국별 공통조사항목

	공통 조사항목
미 국	1. 조업개월수(Months in operation) 2. 사용자등록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EIN)) 3. 소재지(Physical location of the economic activity), 연락처 4. 종사자 수(Number of employees) 5. 급여(Payroll) 6. 매출액(Value of sales, receipts, work done, or equivalent)
중 국 ¹⁾	1. 일반사항(명칭, 소재지, 주요 생산활동, 조직형태) 2. 종사자(총수, 성별, 학력별, 전공기술 직무) 3. 재무상태(자산, 부채, 손익계산) 4. 생산활동(생산, 판매, 재고, 원가(비용))
일 본	1. 사업체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 2. 사업체의 창설년월 3. 사업체의 종류 4. 업태 5. 종사자 수 6.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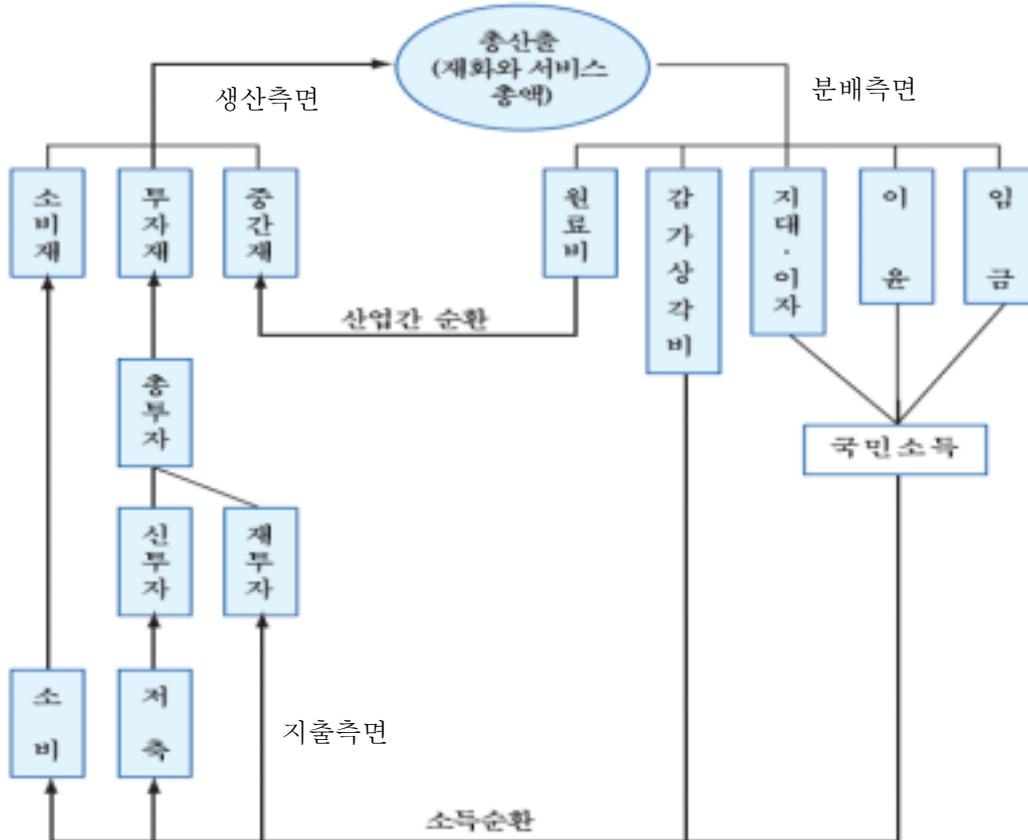
주 : 1) 중국의 경우 경제센서스 조사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통항목을 파악하기 불가능하여 모든 조사내용을 명기

4. 공통항목의 설정기준과 방안

1) 공통조사항목의 조건

- 경제의 순환과 산업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생산, 분배와 지출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그림 6-2>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생산측면에서 볼 때, 기업은 중간재, 노동 및 자본을 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하며 개별 산업의 생산액을 합하면 한 경제가 주어진 기간동안 생산한 총생산량이 됨.
 - 분배측면에서 기업은 생산을 위해 생산요소를 요소시장에서 구입하고 그 댓가로 임금 및 이윤, 자본비용, 중간투입비용을 지불하는데, 이때 지급한 비용을 모두 합하게 되면 총생산액과 동일하게 됨.

<그림 6-2> 경제의 순환구조



- 지출측면에서 각 경제주체(가계, 기업 및 정부)는 생산요소를 지급한 댓가로 받은 소득을 소비 또는 투자에 지출하며 이때 총지출액은 총생산액과 같아지게 되어 경제는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순환구조를 가지게 됨.
- 경제센서스가 주어진 기간동안 산업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생산, 분배 및 지출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한 총산출액과 중간투입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 설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선정해야함.
- 그러나 산업구조통계의 주된 관심사는 생산과 분배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경제센서스 공통항목의 설정을 위해 두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함.

2) 공통조사항목 설정의 기준

- 산업구조통계의 생산자(또는 공급자)와 수요자(또는 이용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과 근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통 조사항목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첫째, 경제센서스의 기본 목적이 일관성과 정합성을 가진 경제 또는 산업구조를 동일 시점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간 또는 부문간 조사항목의 비교가 가능해야 함.
- 둘째, 산업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 조사항목이 간단하면서도 본질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예를 들어 산업생산을 위해 자본과 노동은 가장 필수적인 생산요소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통 조사항목이 요구됨.
- 셋째, 학계와 전문가들은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요구하는 반면 정책입안자는 보다 다양한 통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통계를 생산하는 측에서는 공통 조사항목이 통계 사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넷째, 통계공급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다면 가능하면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응답자와 조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함.
-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기존 시계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공통조사항목이 설정되어야 함.
- 공통 조사항목 설정시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도 공통 조사항목 정의의 엄밀성이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

3) 공통항목의 설정

□ 공통조사항목

-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공통 조사항목은 생산과 분배측면을 고려하여 고용, 생산 및 생산비용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선정하되 개별 사업체의 일반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이 공통항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반사항으로는 사업체의 기본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창설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조사
 - 고용측면에서는 기존 산업구조통계가 조사하고 있는 종사자 수와 연간급여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충분함.
 - 생산측면에서는 출하액(매출액)을 조사하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등 다른 통계 작성의 편의를 위해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어서 조사
 - 생산비용측면에서는 중간투입을 포착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나누어 조사하되 구체적인 제조원가 산정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연초(연말)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 등)

<표 6-26> 공통 조사항목의 선정(案)

조 사 항 목			
일반사항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고 용	종사자수	자영업주	월평균종사자 (=연간총종사자/조업개월수)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및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		
급여액	상 등	연간 급여액과 월평균급여액(=연간급여액/조업개월수)	
생 산	출하액 (매출액, 수입액)	직접관련 출하액	품목별 출하액(매출액)
		기타 수입액	
생산비용	제조(매출) 원가	직접 생산비	원(부) 재료비, 전력 및 연료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등
	판매비 및 관리비	간접 생산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광고선전비, 운반비, 보험료, 통신비)

□ 공통조사항목의 정의

- 공통조사항목의 개념의 명확한 정의는 통계의 정확성,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개념정의를 토대로 공통조사항목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조사항목의 정의는 대규모조사인 「산업총조사」와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내용은 아래의 <표 6-27> 와 같음.

<표 6-27> 공통조사항목의 정의

조사항목		정의
종사자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그 가족 또는 친·인척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이상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상용종사자	-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는 자로서 유급임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견습사원, 파트타임 종사자도 여기에 포함
	임시 및 일일종사자	-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로 고용된 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파견받은 자는 제외
	무급종사자	- 일정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수당이나 수수료 등만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비법인단체의 회원이거나 월평균 근무일수가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인 명예직 종사자는 제외
연간 급여액	<p>- 조사기준년도 1년간 피고용자에게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현금과 현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며,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제 급여액과 조사기준년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되었던 것을 조사기준년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년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서 미지급된 것은 포함</p> <p>* 세금, 기여금, 저축, 노동조합비 등 피고용자 부담금을 사업자가 공제하기 이전의 총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은 지급한 현물이 자가 생산품인 경우에는 지급한 일자 현재의 공장인도 판매가격으로 평가하고 구입품인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격으로 환산 평가</p>	
(제품)출하액 매출액	제조업	<p>-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입액(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p> <p>- 출하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p> <p>-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의 조사기준년도 1년간 판매액을 말하며,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여기에 포함.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을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 포함.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여기에서 제외.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간접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을 조사</p>
	도소매 및 서비스업	- 매출액(영업수익, 사업수익) : 지난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입액

조사항목	정 의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p data-bbox="566 376 1356 517">- 주요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 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광고선전비, 운반비 등)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566 555 1356 1032">·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1년간 판매액으로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여기에 포함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을 포함하며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제외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소비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에 의함. <li data-bbox="566 1070 1356 1167">·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 <li data-bbox="566 1205 1356 1368">·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한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체)로 부터의 수탁은 자가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 <li data-bbox="566 1406 1356 1480">·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 <li data-bbox="566 1518 1356 1615">· 상품매출액 : 당해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 <li data-bbox="566 1653 1356 1682">· 기타수입액 : 임대, 건설, 운수수입액

조사항목	정의
<p>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p>	<p>도소매 및 서비스업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용(영업비용)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영업외비용은 제외하며 서비스업부문의 재료매입비, 금융·보험업의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책임준비금전입액 등은 기타 경비에 포함 · 매출원가 : 지난 1년간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영업비용으로써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원가 중 상품매입액 이외의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항목은 총조사의 목적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에 포함 <li style="padding-left: 20px;">* 매출원가 =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매입액 - 기말 상품재고액 · 기초 상품재고액 :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차장, 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상품, 기준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 상품, 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 중 재고품 또는 대금 미결제 상품 · 당기 상품매입액 : 지난 1년간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총액, 숙박업의 소모성 재료비, 음식점업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료비 총액을 말하며, 구입시 지출한 운송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 · 기말 상품재고액 :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지난 1년간 상품의 판매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관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 · 급여총액: 위에서 정의한 연간급여액과 동일 · 임차료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 대지,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고 지불한 지급임차료 총액 · 세금과 공과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사업체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공과금 총액을 말하며, 납부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제외 · 감가상각비 :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감소분을 일정기간 동안 배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2001년도 감가상각 총당금 전입액만을 포함 · 대손상각비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말함. · 기 타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불한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리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잡비 등과 같은 나머지 모든 경비를 포함

주 : 1)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매출액과 판매비 및 관리비의 정의는 도소매업 기준

□ 공통 조사항목의 설정 근거

- 위의 공통 조사항목의 설정이유와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첫째, 종사자와 급여액, 출하액(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는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
 - 또한 동 조사항목들은 비교가 용이해 수요자의 요구에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를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어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앞서 언급한 공통 조사항목 설정기준에 부합함.
 - 둘째,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미국, 중국과 일본(실시예정)에서도 대부분 동일한 항목을 공통으로 조사하고 있어 국제비교가 가능함.
 - 마지막으로 조사 시점과 방법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조사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은 국민계정이나 산업연관표 작성시 기초통계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통계 품질의 향상에 제고

□ 선정된 공통 조사항목의 장단점

- 공통 조사항목으로 선정된 조사내용은 기존 산업구조통계의 조사내용과 일치할 뿐 만 아니라 전산업에 걸쳐 조사항목의 용어와 정의를 통일시킴으로써 타기관 승인통계 작성 시 더욱 일관성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민계정의 부가가치 작성 시 서비스업 관련 통계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같은 제조업관련 통계조사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공통조사 항목의 일관성 제고는 서비스업 관련통계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 조사항목의 통일된 용어와 정의를 가지고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게 되면 기존의 연간 산업구조통계조사 역시 같은 조사내용의 용어와 정의를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이용하는 타승인기관의 통계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예를 들어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공하여 노동행정대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 경제센서스 공통 조사항목의 신뢰성 제고는 간접적으로 타승인기관의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결과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됨.
- 예상 안(案)으로 선정된 공통 조사항목은 사실상 기존 산업구조통계에서 조사하던 내용으로 추가적인 비용 상승이나 응답자와 조사자의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한편 종사자수를 산정할 때 세부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산업총조사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서 조사하던 직능(생산직, 사무직)에 따른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시계열 자료의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체에 대해 동일한 종사수의 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따른 시계열 자료의 유지 문제 외에도 조사항목의 비유용성이 제기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직능중심으로 종사자 수를 조사하던 운수업통계조사 역시 동일한 문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용직 종사자의 수가 많아 정확한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기존 추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

□ 차선의 공통조사 항목 및 기타 고려사항

- 생산과 분배측면에서 고용과 임금을 파악하기위한 종사자수와 연간급여액(또는 월평균급여액)은 적절한 조사항목으로 판단되지만 세부조사항목, 특히 종사자 수의 경우는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함.
- 종사상의 지위(무급 및 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무급종사자)에 따른 구분은 기존 산업구조통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분으로 시계열 유지를 위해 제시되었으나,
-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구분이 산업별 고용구조를 적절하고 현실에 맞는 구분인지는 노동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들어 파견근로에 의한 고용이 새로운 고용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설정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참고로 2002년 미국 경제센서스의 경우 서비스업의 이러한 고용추세를 반영하여 파견근로에 의한 종사자수와 급여액을 별도 조사항목으로 만들어 조사를 실시
- (제품)출하액(매출액, 사업수익)의 용어는 정의는 동일하더라도 산업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용어는 달리 사용하되 각기 다른 조사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에 실시한 서비스총조사에서처럼 결산서의 이용이 용이한 회사법인의 경우와 개인사업체 또는 영세사업체의 조사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응답자의 부담경감은 물론 자료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산비용(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역시 산업별로 조사항목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표를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연관표 및 국민계정에서의 경제센서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을 좀더 세분화하여 조사할 필요
 - 예를 들면 기타항목을 광고선전비,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운반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그러나 소규모 개인 또는 영세사업체의 경우 위의 항목을 모두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 조사표 안에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조사항목을 구분하여 기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추가항목 발굴 및 후보군 설정

1) 해외사례를 통한 공통·일반항목 개발

- 미국은 2002년 경제센서스에서 고용구조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상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공통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음.
 - 미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공통 조사항목에 파견근로자의 수와 연간 및 분기 급여액을 별도의 공통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
 -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했는지 여부와 전자상거래에 의한 출하액(매출액)을 별도로 조사
- 중국의 경우 조사내용에 최근 변화하는 고용형태나 과학기술 활동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고 있음.
 - 일반조사항목 안에 종사자 항목의 전공기술 직무에 따른 분류나 과학기술활동에 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이나 경제센서스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과 대조
 - 또한 등기등록의 유형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미등록업체를 파악

2) 통계분석 및 정책 수요변화에 따른 항목 개발

- 경제센서스가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당면 문제를 파악하는 한편, 이로부터 예상 되는 통계수요를 예상하여 추가적 조사항목의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가 주요 정책 현안으로 제기
 - 향후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서비스업의 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업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연구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와 도매업통계조사에서는 정보기술 기반 활용(전산장비보유대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 전자상거래활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나 전자거래에 의한 매출액 등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사내용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내에서는 신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통계수요, 예를 들면 연구개발투자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관련 연구인력 확보와 같은 추가항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에서는 각각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무형자산(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입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 이러한 조사내용을 세밀히 가다듬어 공통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급속한 증가, 생산의 글로벌화 등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통계수요가 조만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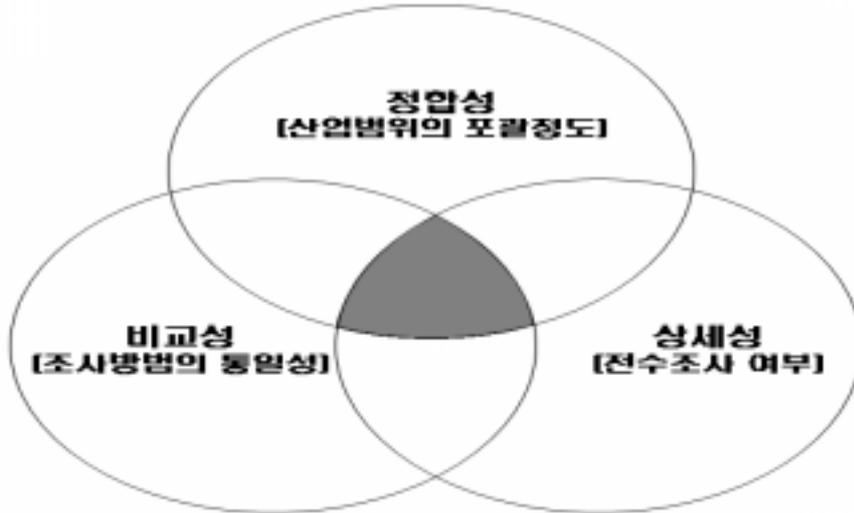
제7장 기타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1. 산업구조통계의 통폐합 및 시계열 유지방안

1) 통폐합의 기본방향

- 경제센서스가 도입될 경우 산업구조통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국가통계시스템의 어느 수준까지를 연계할 것인가에 따라 기존조사의 통폐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음.
 - 국가통계시스템 전체 혹은 경제통계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들과 연계를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구조통계에 한정할 것인가에 따라 고려해야 할 대상이나 범위에 달라질 것임.
- 본고에서는 경제센서스 도입의 목표를 고품질의 산업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통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설정하고, 통폐합의 기본방향을 산업구조통계에 한정하여 제시하고자 함.
 - 경제센서스의 도입단계에서 국가통계시스템 전체 혹은 경제통계시스템과의 연계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단계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통폐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경제센서스의 도입을 통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산업구조통계의 정합성, 비교성, 상세성 3가지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정합성은 산업의 포괄범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비교성은 조사방법(조사기준시점, 주사주기, 조사단위 등)의 통일과 조사내용의 표준화, 그리고 상세성은 조사단위를 모두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관련됨.
 - 이에 기존의 산업구조통계조사 가운데 이러한 3가지 충족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조사는 경제센서스로 통합이 가능할 것임.

<그림 7-1> 산업구조통계의 통합조건



- 상기의 3가지 조건을 산업구조통계 56종(모집단 명부확보를 위한 사업체 총조사는 제외)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이 일부 전수조사 통계와 산업범위가 중복되며, 일부 통계는 조사방법의 통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우선 표본조사로 실시되는 기타작성기관의 산업구조통계들은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산업총조사나 서비스업총조사와 산업범위가 중복되어 통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거의 없음.
 - 또한 이들 통계들은 자체의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센서스로 통합하게 되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산업구조통계 중 농림어업 관련 조사들은 대부분 조사단위의 상이성, 모집단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경제센서스로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는 산업범위의 중복성이 없으며, 조사방법 상 조사주기나 조사방식(전수조사) 등도 경제센서스의 성격과 부합

<표 7-1> 산업구조통계의 경제센서스 충족조건 비교표

통계명	경제센서스 충족조건		
	정합성 (산업법위의 중복여부)	비교성 (조사방법의 통일성)	상세성 (전수조사 여부)
산업총조사	●	●	●
서비스업총조사	●	●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	●
건설업통계조사	●	●	●
운수업통계조사	●	●	●
도소매업통계조사	●	●	
서비스업통계조사	●	●	
농업총조사	●		●
농업기본통계조사	●		
어업총조사	●		●
어업기본통계조사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	●
임업총조사	●		●
기업활동실태조사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	
환경산업통계조사		●	
문화산업통계조사		●	
광고산업통계조사		●	
미시산업통계		●	
부품소재산업경기전망조사		●	
중소유통업실태조사		●	
국내생물산업실태조사		●	
정보통신기술산업(ICT)통계		●	
국내sw기업수출통계조사		●	
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시장조사		●	
임업경영실태조사	●	●	
중소기업실태조사		●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	
장애인기업실태조사		●	
방송산업실태조사		●	
기업재무분석		●	
어업경영조사	●	●	
재래시장실태조사		●	
점포경영실태조사		●	
사업체패널조사		●	
상장기업의부가가치분석		●	
수출산업실태조사		●	
건설업통계	●	●	
건설업경영분석	●	●	
전문건설업통계조사	●	●	
설비건설업통계조사	●	●	
전기공사업통계조사	●	●	
전기공사업경영분석	●	●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	●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	●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		●	
로봇산업실태조사		●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	
국내e-비즈니스현황과전망에대항통계조사		●	
상용자기발전업체조사분석	●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	
여성기업실태조사		●	
국가산업단지임주기업체현황조사		●	
한국전력통계	●	●	
상수도통계	●	●	

주 : 각 충족조건을 정도를 상(●), 중(○), 하(○)로 표시하였으며, 공란은 해당사항이 없음.

- 그러나 조사단위가 상이하어 경제센서스로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욱이 조사내용 중 많은 부분이 회계적 사항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농림어업의 특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경제센서스로 통합할 경우 이러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조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됨.
- 이외에 농업기본조사와 어업기본조사도 상기의 총조사들과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경제센서스로 통합이 어려움.
-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는 정보의 상세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서비스업총조사와 중복되어 통합할 경우 시너지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결과에 입각할 때 산업구조통계 중 다음과 같은 6종의 통계가 경제센서스로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등의 통계조사가 경제센서스로 통합될 수 있음.

2) 통계통합 관련 개별 통계의 향후 추진방안

□ 산업총조사 및 서비스업총조사

-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산업구조통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조사로 경제센서스로 통합하도록 함.
 - 다만, 산업총조사는 현재의 3, 8자년 기준년도를 경제센서스의 기준연도인 0, 5자년으로 조정해야함.
 - 서비스업총조사는 현재의 조사주기 및 기준연도(0, 5자년)가 경제센서스와 동일하므로 경제센서스로 통합하도록 함.

<표 7-2> 산업구조통계의 통폐합 방안

통계조사명	조정방안			비고
	통합	간소화	현행유지	
산업총조사	●			· 조사기준년도 조정 (2013년=>2010년)
서비스업총조사	●			· 경제센서스로 통합
건설업통계조사	▲	●		· 표본조사 및 조사항목 축소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조정)
운수업통계조사	▲	●		· 표본조사 및 조사항목 축소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조정)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		· 표본조사로 조정 · 모집단 명부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확보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		
도소매업통계조사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미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미조사
농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어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임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농업기본통계조사			●	
어업기본통계조사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통합조사하고, 이외의 연도에는 현행대로 실시

주 : '▲' 조사는 현재 연간통계 중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경제센서스의 실시년도에는 경제센서스 조사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그 외 연도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연간조사인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유지하되, 경제센서스의 기준연도인 0, 5자년에 대한 조사는 경제센서스로 대체하고, 이외의 연도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함.
- 2010년 경제센서스 이전까지는 현행의 전수조사로 실시하며, 이후에는 조사항목을 간소화하여 표본조사로 전환되도록 함.

□ 건설업통계조사 및 운수업통계조사

- 연간조사인 건설업통계조사와 운수업통계조사는 경제센서스의 기준연도인 0, 5자년은 경제센서스로 대체하고, 이외의 연도에 대한 조사는 표본조사로 전환하도록 함.
-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연간 조사시 전수조사 방식 중 하나였던 건설관련협회로부터의 보고조사 방식보다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과 더불어 조사표 미회수에 따른 통계품질 저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센서스로 통합하되, 경제센서스의 실시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조사하도록 하며 경제센서스 실시 이후에는 표본조사로 전환하도록 함.
-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는 현재 모집단자료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자료와 법원등기소의 법인설립등기 명부를 기초로 하고 있음.
- 이에 경제센서스의 실시 이전까지는 모집단명부의 확보 등의 차원에서 현행대로 실시하되, 이후에는 경제센서스가 실시되는 해는 통합하여 조사하고 다른 기간에는 연간 표본조사로 전환하며, 조사내용은 공통항목을 중심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현행의 방식대로 계속 실시하
되 경제센서스가 실시되는 해에는 이에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관련 통계가 수요에 비해 빈약한 상태이므로 경제
센서스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경제센서스의 실시
이후에는 사업체의 영세성과 부정확한 응답 등 열악한 조사여건을 감안
하여 표본추출의 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모집단명부의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계속
조사를 실시하며, 경제센서스가 실시되는 해에는 이에 통합하여 실시하도
록 함.

3) 시계열 유지방안

- 통계합의 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계열의 단절문제는 조사방식의 변경
(전수조사→표본조사), 조사내용의 변경(조사항목의 변경 혹은 폐지, 조사
항목 분류의 불일치 조정, 조사항목 산정의 불일치 조정) 등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조사방식의 변경에 의한 시계열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조
사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사
업체통계조사 등일 것임.
- 조사항목의 분류나 선정은 통합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 종사자와 임
금 항목과 관련됨.
- 이러한 시계열의 단절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통계
의 활용성, 비용절감 등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시계열 유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기존 조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차 통계(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의 활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공통항목만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비용측면에서는 표본의 수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하 및 시계열 유지에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
- 조사방식의 변경(전수조사→표본조사)에 의한 시계열단절은 현재의 동일 산업에 대한 대규모 5년 주기조사와 연간조사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정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비스업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에는 연간 표본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외의 연도는 연간 표본조사만이 실시하고 이를 모집단규모로 환산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계열 유지의 가능성 여부를 검정하고, 오차의 범위가 클 경우 다른 기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항목의 정의 또는 산출내역의 변경에 따른 시계열 단절문제는 조사표를 각 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종사자 수의 분류에 따른 조사와 더불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 종사자를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의 경우 기존의 방식을 원용하여 일일종사자 수를 계산하도록 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음.

2. 경제센서스의 효율적 실시 방안

□ 행정자료의 활용방안

-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행정자료의 이용은 응답자의 부담경감은 물론 조사

원의 채용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사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자료를 쉽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 통계자료 전체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국세청이나 사회보장청 등은 사업체의 고용, 매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경제센서스국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수통계조사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입수
-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행정자료로는 국세청,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신고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응답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모집단명부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국세청 등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통계청의 사업체 모집단명부와 국세청의 모집단 성격이 서로 상이하나, 기존연구³⁶⁾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체관련 각종 통계조사 자료와의 연계 및 향후 경제센서스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4대 사회보험의 경우 이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에 기초하면, 모집단명부의 확보에의 활용과 종사자관련 사항에 대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행정자료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함.
- 행정자료를 보유한 정부기관의 자료제공 의무화와 더불어 이를 활용하는 경제센서스 실시조직에 대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완유지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함.

36) 통계청(2007),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을 위한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

<표 7-3>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적용대상

국민연금	1.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임의적용가입대상 - 당연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봄
건강보험	1.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2. 임의적용가입대상 - 임의가입 대상 없음
고용·산재보험	1.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 근로 1인이상 모든사업장(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3억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2004년부터 2천만원이상 확대적용) 2.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 응답부담의 경감 방안

○ 조사내용과 관련된 응답자의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응답시간을 줄이고 조사내용에 응답하기가 쉽도록 조사표를 설계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조사표를 받아 작성할 때 조사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쉽도록 디자인이 된 조사표는 응답자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판단됨.

- 조사표를 작성 시 응답자가 직접 종이 위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보다 조사원이 파일을 가져가 응답자의 컴퓨터에서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령 합계나 동일한 숫자를 다른 항목에 자동으로 기입되도록 작성된 파

일은 응답자의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어 응답 부담을 줄이고 조사원의 조사시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조사과일을 이용하게 되면 응답자와 입력원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조사내용의 정의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항목을 해당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준화하면 응답자가 쉽게 조사항목을 파악할 수 있어 응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임.
- 공통 조사항목의 조사표의 설계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법인/개인 사업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가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은 490여 종의 조사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한 페이지를 공통조사항목을 조사하는데 할당하고 조사항목의 번호를 공통 조사항목은 물론 일반 조사항목에도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여 일관성을 유지
 - 물론 미국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원을 통해 조사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으나 간결하고 통일성 있는 조사표의 설계는 응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령 개인사업체가 86.7%, 4인 이하 종사자를 가진 사업체가 85.8%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2005년 총조사에서 개인 및 법인별로 조사항목을 차별화하여 응답과 조사부담을 줄임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높인 바, 업종별, 규모별로 조사표를 다양화하면서 통일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
-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게 된다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일성 있고 일관된 조사표를 새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왜냐하면 기존 산업구조통계조사의 조사표는 종류별로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조사내용의 구분도 서로 달라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그대로 활용할 경우 자료공표 시 많은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응답자의 기입부담 경감과 사업체(기업체) 모집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표 사전인쇄 방식을 택하여 조사후 조사결과의 입력, 심사, 집계 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통계조사 기법의 도입

- 자료입력 방식의 전산화 또는 첨단 시스템과 기계장비의 도입을 통해 자료의 조사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계결과 공표의 신속성을 확보
- 미국의 경우 회수된 조사표는 직접입력이 아닌 스캐닝방식에 의해 입력되고 데이터 파일로 저장되어 경제센서스국에 전송

□ 경제센서스의 명칭 검토

-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조사의 명칭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도 중요함.
- 현재 통계청에서는 영문을 발음대로 표기한 센서스라는 용어 대신에 그 의미를 번역한 한글표기인 총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표 7-4> 조사명칭의 변경사례

기존 명칭	변경명칭
인구및주택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1990년)
농업센서스	농업총조사(1990년)
상업센서스	도소매업센서스 →도소매및서비스업총조사(1991년) →서비스업총조사(2006년)

- 경제센서스의 도입시 어떤 면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명칭의 사용이 가능함.
- 모든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산업센서스’ 혹은 ‘산업총조사’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예상됨.

- 조사단위로서 사업체를 강조한다면, '사업체센서스' 혹은 '사업체총조사'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면 '총사업체조사' 혹은 '총사업체통계조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과거에 사용한 명칭임.
- 조사단위가 사업체와 기업을 혼용하게 될 경우 '사업체기업체총조사'라는 명칭도 가능함.

<표 7-5> 표현가능한 조사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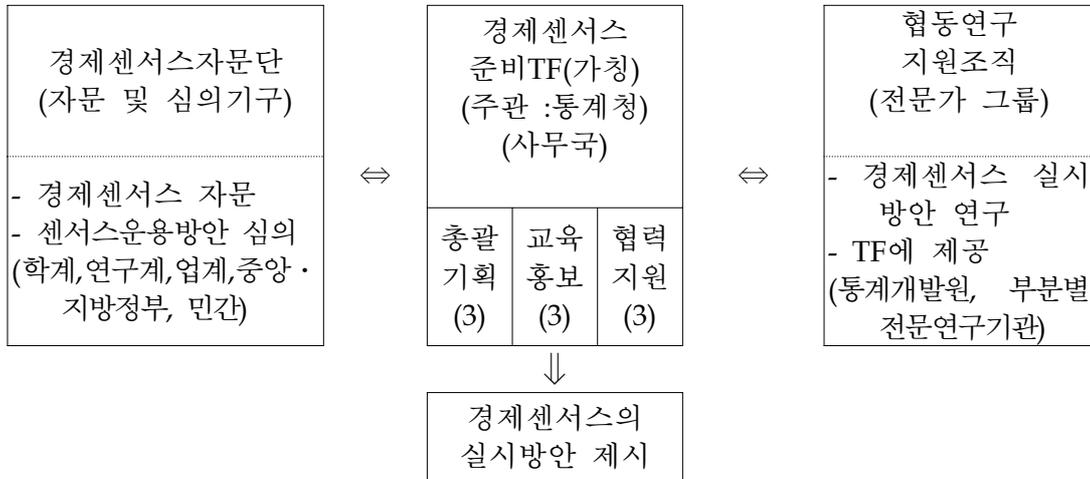
조사 명칭	개념과 한계
경제센서스	미국,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표현
경제총조사	경제센서스의 한글표현으로 영문표기는 동일
산업센서스	모든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 개념
산업총조사	산업센서스의 한글표현으로 영문표기는 동일하며, 현재 5년주기 조사에 사용
사업체센서스	모든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개념이지만 기업체 조사의 개념이 없음
사업체총조사	사업체센서스의 한글표현으로 영문표기는 동일
사업체기업체총조사	모든 사업체, 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개념
총사업체통계조사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다는 개념이나 과거에 사용

- 현재로서는 경제센서스의 개념 및 조사방법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경우 '경제센서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경제센서스라는 표현에는 전수조사라는 의미와 더불어 경제라는 의미에 모든 산업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 혹은 기업을 포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외국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미 그 정의나 의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

□ 경제센서스의 운용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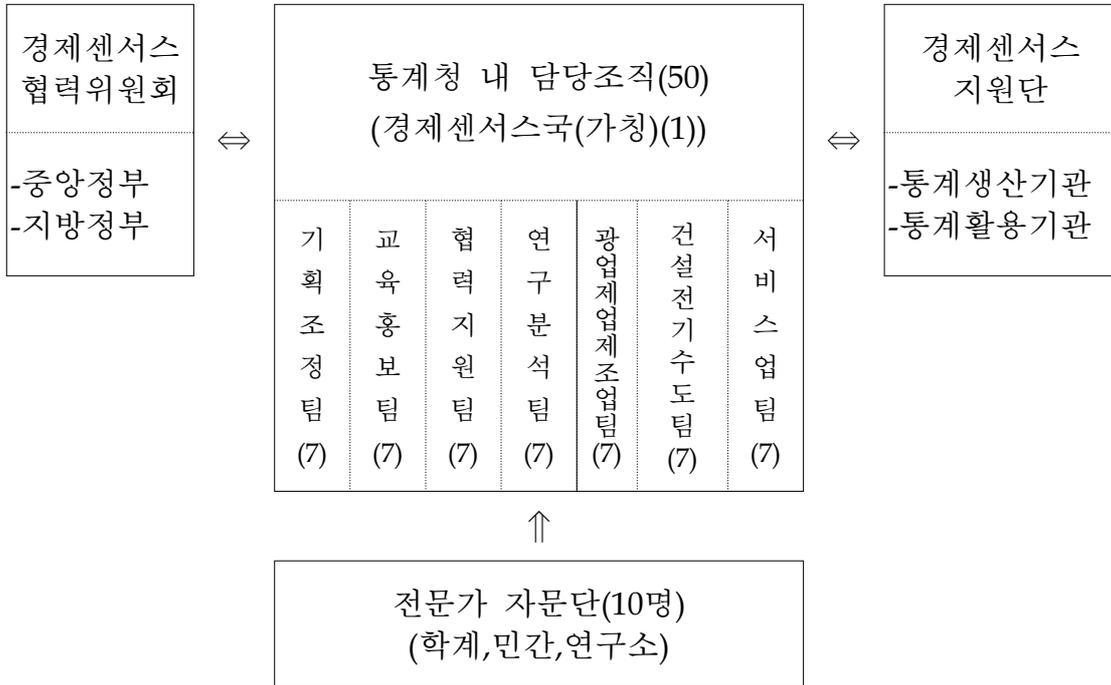
- 전산업·전지역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인 경제센서스는 국가통계시스템 자체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하고 방대한 통계조사사업임으로 이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운용조직이 필요함.
 - 운용조직은 단순히 실시 주관기관만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협의체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즉, 경제센서스를 실시할 통계청,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기타 통계생산기관(한국은행, 각종 협회), 지자체, 기타 통계활용기관 등 유관기관간 경제센서스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의 구성도 필요할 것임.
- 경제센서스의 운용조직은 실시준비와 본조사의 실시 시기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실시준비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므로 이를 전담하는 '경제센서스 운영TF팀(가칭)'을 통계청내에 조직하고 이를 지원, 협력하는 외부조직으로 협동연구조직과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센서스 준비TF팀(가칭)'은 실시지침의 총괄기획, 교육홍보, 협력지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1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각 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요청하며, 이에 기초하여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협동연구지원조직'은 지침마련을 위한 기초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개발원을 중심으로 각 부문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하여 경제센서스의 실시와 관련한 기초연구, 경제센서스의 단계별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 제시함.
 - '경제센서스자문단'은 해당분야의 연구 혹은 실시 경력을 보유한 중견급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조사연구의 결과나 실시지침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7-2> 경제센서스 준비TF팀(가칭) 구성(안)



- 경제센서스의 본격적 실시단계에서는 통계청내에 ‘경제센서스국(가칭)’을 설치하여 50여명의 규모로 운용하며, 정부부처의 경제센서스협력위원회, 경제센서스지원단, 전문가자문단 등을 추가 운용하는 협의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경제센서스국(가칭)’에서는 기획조정팀, 교육홍보팀, 협력지원팀, 연구분석팀 등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팀, 건설전기수도팀, 서비스업팀 등 3개 산업담당부서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센서스협력위원회’는 경제센서스가 국가통계인프라의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중앙·지방정부 부처의 통계관련 담당부서장을 중심으로 구성함.
- ‘경제센서스지원단’은 산업통계 관련 생산기관 및 활용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본조사의 실시 시 통계청의 경제센서스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전문가자문단’은 학계, 민간, 연구소 등으로 구성되며, 경제센서스의 관련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조사방법론상의 개선 등과 관련한 자문과 더불어 통계수요자와 경제센서스국과의 상호 의사교류 및 협의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함.

<그림 7-3> 경제센서스 실시조직 구성(안)



3. 경제센서스 실시의 기대효과

□ 통계조사대상자의 조사부담 및 조사관련 인건비 경감

- 경제센서스가 실시될 경우 산업구조통계의 통폐합으로 인한 응답조사의 축소와 조사방식의 전환(전수조사→표본조사)에 따른 표본 감소는 조사대상자의 응답부담을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
 - 예를 들면, 경제센서스 실시이전에 업체당 평균 약 20회 정도의 통계응답 부담이 있다고 가정하고 모두 경제센서스로 통합할 경우 경제센서스이외에 나머지 통계응답에 대한 비중이 50% 경감된다고 가정한다면, 업체당 평균 통계응답부담은 약 10.5회(1회+19회*50%)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경제센서스를 통해 통합실시 대상통계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조사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통계별 동일산업 조사표에 대한 인력투입이 통합조사표를 통해 축소되면서 인건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통계조사시 전체 예산의 약 70~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조사표에 따른 인력투입 축소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
- 기존 연구결과³⁷⁾에 따르면, 통계청 통계중 연간조사와 5년주기 조사통계에 대해 통합실시를 시행할 경우 인건비 절감 추정액은 약 6,160백만원으로 추정됨.
- 조사인력의 투입비용 축소 등 직접적 효과이외에도 통합조사표 설계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외에도 통합입력 프로그램 개발에 전산입력 인건비 등 간접적 효과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

□ 동일항목 및 동일대상 중복조사 방지효과

- 경제센서스의 도입으로 사업체의 기본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종사사수 등)외에 유사항목 등은 통합조사표를 설계 운용함으로써 중복조사가 방지됨.
 - 예를 들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조사표에 의해 실시할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조사를 방지
 - 이는 조사대상자의 조사응답 경감과 더불어 조사대상자 측면에서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제센서스로 인한 일괄적인 통계조사 실시는 서로 다른 기준년도를 채택함에 따라 조사대상이 중복(제조업체↔서비스업체) 또는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조사대상의 중복은 전수조사에 따른 통계의 과대계상을 유도하고, 조사대상의 제외는 과소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센서스의 실시는 전수조사의 오차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37) 예상해,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통합실시 방법연구」, 2006.

□ 표준화된 통계자료 생산 및 자료비교분석 가능

- 개별 통계조사 항목의 분류체계, 포괄범위 등에 대해 표준화된 조사항목에 의해 통합조정 조사표를 설계함에 따라 표준화된 통계자료의 생산 가능
 - 표준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5년주기 통계조사의 조사시기를 일치시킴에 따라 동일시점에서 통계조사간 상호 자료비교 분석이 가능
- 또한 경제센서스가 전산업을 포괄하여 시행될 경우 국가전체의 산업통계를 산출할 수 있으며, 특정시점에서의 개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제8장 결론: 경제센서스의 실시방안

1. 통계법 상의 위치와 명칭

- 향후 추진할 경제센서스는 산업구조통계의 통합적 대규모 조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실시해야 할 것임.
- 명칭은 한글의 경우 「경제센서스」, 영문표기는 Economic Census of Korea(ECK)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조사의 단위와 범위

- 조사의 기본 단위는 사업체로 설정하되, 실제 조사에 있어서 조사항목이 기업체단위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체단위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함.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기업체 단위를 병행하도록 함.
 - 다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사업체와 유사한 성격의 경영체 단위로 조사가 가능해질 경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단위의 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사범위는 우선 지역적으로는 도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산업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산업을 포괄하도록 설정함.
 - 단, 현재 모집단명부의 정비가 불충분한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모집단명부가 충분히 정비되는 시점까지 조사범위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가 미미한 국제 및 외국기관은 조사범위에서 제외함.
 - 공공행정 및 국방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사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표 8-1>조사범위의 국제비교

국 가	조 사 범 위
한 국	- 지역범위: 전지역(도서 포함) - 산업범위: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산업
미 국	- 지역범위: 미국 본토와 해외 부속도서 - 산업범위: 농림어업, 공공행정, 일부 정규규제가 엄격하거나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
중 국	- 지역범위: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전지역 - 산업범위: 제2차, 제3차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기업, 사업활동기업, 자영업체
일 본	- 지역범위: 전지역 - 산업범위: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3. 조사방법

- 조사방식은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병행하도록 함.
 - 행정자료를 통해서 기본적인 공통조사항목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도록 함.
 - 또한 공통항목 중 생산액(혹은 매출액) 등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표본조사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시점은 0자, 5자년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제1회 경제센서스는 2010년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2011년에 실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조사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조사실시 기간은 조사기준년의 익년 5-6월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사수단은 방문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함.
- 경제센서스관련 조사 및 점검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사준비 : 기초실시 방안마련, 예비조사안 마련, 경제센서스의 홍보, 모집단 구축 등(2007~8)
 - 예비조사 : 경제센서스 예비조사 실시(2009)
 - 중간점검 : 모집단명부 수정 보완, 업종별 조사표 작성(2009-2010)
 - 본조사 : 2010년 기준 1차 경제센서스 조사실시(2011)

<표 8-2> 조사방법의 국제비교

조사방법	한 국(안)	미 국	중 국	일 본
조사주기	5년(0,5년)	5년(2,7년)	5년(3,8년)	5년(0,5년)
조사시기	- 예비조사 (2009년 5-6월) - 본조사 (2011년 5-6월)	- 해당년도12월에 조사표 발송, 익 년 2월12일 마감.	-당해연도 9-12월 중 조사준비, 익년 1-5 월 중 조사실시	-예비조사 (2009년 6-7월 예정) -본조사 (2011년 6-7월 예정)
조사단위	사업체(기업체)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기업체)
조사방식	전수(표본)	전수(표본)	전수(표본)	전수

4. 조사내용

- 공통조사항목은 개별 사업체의 일반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일반사항으로는 사업체의 기본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창설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조사함.
 - 고용측면에서는 종사자 수와 연간급여액, 생산측면에서는 출하액(매출액)을 조사하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 등 다른 통계 작성의 편의를 위해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어 조사함.
 - 생산비용측면에서는 중간투입을 포착하기 위해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관리비로 나누어 조사하되, 구체적인 제조원가 산정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8-3> 조사내용의 국제비교

국 가	공통 조사항목
한 국	- 소재지, 연락처, 창설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 출하액(매출액), 제조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미 국	- 조업개월수, 사용자등록번호(EIN), 소재지, 연락처, - 종사자 수, 급여(Payroll) - 매출액(Value of sales, receipts, work done, or equivalent)
중 국	- 일반사항(명칭, 소재지, 주요 생산활동, 조직형태) - 종사자 - 재무상태(자산, 부채, 손익계산), 생산활동(생산, 판매, 재고, 원가(비용))
일 본	- 사업체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 사업체의 창설년월, 사업체의 종류, 업태 - 종사자 수 - 매출액

5. 기존 통계의 통폐합 방안

통계조사명	조정방안			비고
	통합	간소화	현행유지	
산업총조사	●			
서비스업총조사	●			
건설업통계조사	▲	●		· 표본조사 및 조사항목 축소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조정)
운수업통계조사	▲	●		· 표본조사 및 조사항목 축소 (경제센서스 조사항목으로 조정)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		· 표본조사로 조정 · 모집단 명부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확보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		
도소매업통계조사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미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미조사
농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어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임업총조사			●	· 향후 농어가 등록제 정착후 모집단명부화하여 센서스 조사로 흡수
농업기본통계조사			●	
어업기본통계조사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		●	· 경제센서스 실시년도에는 통합조사하고, 이외의 연도에는 현행대로 실시

주 : '▲' 조사는 현재 연간통계 중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향후 경제센서스의 실시년도에는 경제센서스 조사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그 외 연도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6. 연도별 추진계획

	2007	2008	2009	2010	2011
준비단계			예비조사 실시	모집단명부의 확정	본조사 실시
과제 검토	기초 실시 방안 마련	예비조사안 마련 -구체적인 행정자료 활용방안, -응답부담 경감 방안, 조사표 설계 -기존통계의 통폐합 및 시계열 유지방안, -소요예산 검토 모집단명부 확충 방안		실시방안 확정 사전 교육 및 홍보 활동	
조직 운용	TF팀 구성	-TF팀 보강 -자문단, 협동연구조직 보강 준비 TF팀 운영	실시조직 구성안 마련	실시 조직 운영	

<참 고 문 헌>

- 산업연구원, 「경제센서스 실시방안 연구 - 미국출장보고서」, 2007.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경제센서스에 관한 국제워크숍 출장보고서」, 내부자료, 2005.
- 통계청, 「경제센서스 추진 방향 검토」, 내부토론자료, 2007.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국세청 파견출장 수행결과 보고서」, 2007.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산업총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서비스업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서비스업총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메타 DB,
웹페이지: <http://meta.nso.go.kr/metaSearch/index.jsp>, 2007.
- 통계청,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2007.
- 통계청, 「통계활용 국제포럼 발표자료집」, 2006.
- 통계청, 「2005년 기준 서비스업총조사 평가결과 보고서」, 내부자료, 2007.
-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사업체대상 통계조사의 개선방안」, 2003.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 해설」, 2006.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체계」, 2005.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A Guide to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of the United States」, 2006.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Concepts and Methods of the U.S. Input-Output Accounts」, 2006.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 2006.
-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Annual Survey of Manufacture」, 웹 페이지: <http://www.census.gov/econ/overview/ma0300.html>, 2006.
-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Guide to the 2002 Economic Census」, 2006.
-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Procedural History of the 2002 Economic Census」, 2006.
-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Understanding the 2002 Economic Census」, 2006.
- Peter Hernon (eds),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Symposium on the 1997 Economic Census U.S. Bureau of the Census」, Vol. 15, No.3, 1998.
- United Nations, 「Second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Industrial Statistics New York, 16-19 July 2007」, 2007.

<부록>

<부록 1>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과 한국행정구역분류

□ 산업분류의 설정

-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됨.
 -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됨.
 -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함.
- 단일사업체가 산업영역을 달리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수행할 경우에 종업원 수 및 시설 면에서 그 주된 활동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활동의 결합형태에 따라 산업결정 방법을 달리함.
 - 별목과 제재, 점토채취와 벽돌제조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종단계의 활동에 따라 분류되며, 제조한 신발과 구입한 신발의 판매, 빵/과자 제조와 설탕/과자 제조 등과 같이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이들 활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된 산출물에 따라 분류함.
 - 예를 들면 별목한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일부만 제재하는 경우에는 별목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별목한 원목을 판매하지 않고 이를 직접 제재하는 경우에는 제재업으로 분류함.
 -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하여 분류함.

□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함.
-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함.
-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위는 달리 명시된 항목내용이 없으면 최종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함.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항목에 분류함.
-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하에서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고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재료를 제공함.
-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개량, 개조 및 재생은 그 기계장비 및 용품의 제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하나 이들의 경상적인 유지수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92 : 수리업"으로 분류함.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장 내에서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경상적인 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활동은 "63 : 운수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객의 특정 사업장내에서 건물 및 산업시설의 경상적인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는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분류함.
- 동일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함.
-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사무" 이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함.

□ 사업체의 결정(사업체통계조사 기준)

-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단위임.
 -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이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됨.
 - 사업체통계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으므로 1개의 기업체가 여러 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함.
-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함.
 - ①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
 - ②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 ③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④ 국가, 지자체 :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입법부, 사법부, 국·공립학교법인, 국·공립의료법인이 여기에 해당
 - ⑤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
- 사업체구분은 아래와 같음.
 - ① 단독사업체 : 동일 경영(동일소유권 또는 동일 통제 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

② 공장, 지사(점), 영업소 : 동일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

③ 본사, 본점, 본부 :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 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업체

○ 사업체변동은 아래와 같음.

① 존속 : 사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전년조사 시와 같은 장소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② 신설 및 누락 : 전년조사 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조사 시 새로운 사업체가 생긴 경우를 말하며 전년도 조사 시 누락된 사업체도 포함

③ 대상 외 :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또는 중복, 가공사업체가 있는 경우

④ 철회 및 폐쇄 :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중 금년조사 시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

○ 사업의 종류

①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말함.

②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사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액이나 매출액비중이 큰 산업부문 2가지를 조사함.

□ 지역개념과 한국행정구역분류

○ 기업체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활동의 종류는 불문하고 일정지역에 한정된 모든 활동에 관한 통계자료가 수집, 분류, 집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개념(하나의 기업체가 단일 장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이 적용됨.

○ 이는 경제활동의 유형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경제활동이 단일 소유권 하

에서 수행되며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수행되는 모든 활동이 포괄되는 것임. 그러나 지역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적 활동에 관한 고려 없이 지역상의 동질성을 요구하는 통계작성에만 적합하게 됨.

- 한편, 한국행정구역 분류는 전국의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하여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역자료의 분류와 집계, 지역간 통계자료의 비교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음.

- 대분류(시·도), 중분류(시·군·구), 소분류(읍·면·동)의 3단계로 분류

- 대분류 : 코드 7자리 중 앞 2자리가 해당됨 - 서울시(11), 6대 광역시(21~26), 9개 도(31~39)

- 중분류 : 코드 7자리 중 앞 3~5자리가 해당됨 - 시·구(010~290), 군(310~990)

- 소분류 : 코드 7자리 중 마지막 2자리가 해당됨 - 읍(11~29), 면(31~49), 동(51~99)

<부록 2> 미국의 산업분류와 산업분류작업 조직

- 산업분류의 체계는 크게 북미산업분류(NAICS: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와 북미상품분류(NAPCS: North American Product Classification)로 나뉨.

- 1997년 이전 센서스에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가 사용되었으나, 1997년 경제센서스부터 북미산업분류가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2002년 북미산업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 대분류는 20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자리까지 표기되는 중분류는 96개, 그리고 4자리까지 표기되는 소분류는 313개, 5자리와 6자리까지 표기되는 세분류는 1,170개에 이룸.

-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사용되는 NAICS는 2, 3, 4, 5자리까지 분류되지만 미국의 경우 6자리까지 추가하여 세세분류함.

NAICS level	NAICS code	Description
Sector	72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Subsector	722	Food Service and Drinking Places
Industry group	7222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Industry	722221	Limited-Service Eating Places
U.S. industry	722211	Limited-Service Restaurants
	722212	Cafeterias
	722213	Snack and Nonalcoholic Beverage Bars

○ 한편, 산업분류를 위한 업무는 경제분류정책위원회(Economic Classification Policy Committee: ECPC)에 의해 관장되는데 이 조직은 관리·예산사무소(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의해 승인되며 센서스국, 경제분석국(BEA), 노동통계국(BLS) 등으로부터 위원들이 구성되고 산업분류의 개정과 변경에 대해 OMB에 정책을 제안하고 산업분류의 개정 및 개발을 담당함.

- 산업분류작업에 참여하는 조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팀으로 구성
- 경제분류개발팀(Economic Classification Development Branch: ECDB)은 센서스국의 다른 통계팀, 미국내 다른 경제통계작성기관, 다른 나라와 협력체제하에 산업분류시스템을 유지 및 개발을 담당하고, 새로 개정된 산업분류를 적절히 이용하고 산업분류를 사용하는 정부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조언을 담당함.
- 경제분류운영팀(Economic Classification Operation Branch: ECOB)은 센서스 프로그램내의 산업과 상품분류의 적용을 지원 및 운영을 담당하고 새로운 기업의 산업별 등록을 담당하는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를 지원하는 분기기업등록통계(Quarterly Birth Survey) 작성, 경제센서스를 위한 약식조사표의 개발과 유지, 자동등록기 및 분석적분류처리시스템(Classification Analytical Processing System)의 개발과 유지 등을 담당함.
-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등록 장치를 개발하고 경제센서스 프로그램, 다른 정부기관 및 일반인의 교육과 조언을 담당함.

<부록 3> 조사항목의 산업구조통계별 개념과 분류

	종 사 자 수
전국사업체기 초통계조사	<p>- 종사자수: 1년간 근무한 월평균 종사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 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거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무자 등)
산업총조사	<p>○ 광공업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p> <p>- 종사자수 :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피고용자수를 종사상의 직종별로 연말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 기준으로 각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종사자 포함)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 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을 사무 및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함 · 피고용자수 : 상용, 임시 및 일용종사자까지도 포함하며,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하나 위탁 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지는 하나 장기 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하고, 연말피고용자수는 12월 31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 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중 월평균 피고용자수는 조사대상기간중 조업한 각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일수로 나눈 종사자수를 말함 <p>① 생산직 종사자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 가공, 검사, 조작, 포장, 입고, 출하, 보수, 생산 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종사자이며 광업에 있어서는 채광, 굴진, 권양, 천공,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출하, 보전, 수리, 생산과정의 기록 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p> <p>②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 생산종사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며 생산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임원도 여기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광공업 종사자 4인 이하 광업 및 제조업 - 종사자수 :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수를 사업체의 종사자수로 하였으며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유급종사자로 구분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 종사자 :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상시 및 임시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정규 작업시간 1/3이상 종사하고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 월평균종사자수 : 각 월말 종사자수 누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구한 수 ○ 광공업 본사 및 본점용은 5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의 조사내용과 동일 ○ 전기, 가스, 수도,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종사자수는 생산직과 사무직 및 기타 두 분류이며 생산직은 전기, 가스, 수도, 증기 및 온수공급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12월말 현재기준과 조업기간 중 월평균종사자수 등 두 분류로 나누어 조사
<p>광업 · 제조업통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및 피고용자수를 종사상의 직종별로 연말과 조업기간중 월평균 기준으로 한 각 해당 사업체의 종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사업체의 소유주(출자자 포함)와 그의 가족(동업 종사자 포함)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정규 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을 사무 및 생산업무 등에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피고용자 : 상용, 임시 및 일용종사자까지도 포함하며,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를 포함. 그러나 위탁 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 사업체의 종사자와 사업체에서 비록 급여를 지급하기는 하나 장기 결근자(3개월이상), 군복무자 등은 제외. 연말피고용자수는 12월 31일 현재 그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남녀종사자를 말하며, 조업기간중 월평균 피고용자수는 조사대상 기간중 조업한 각 월의 종사자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눈 종사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직 종사자 :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 가공, 검사, 조작, 포장, 입고, 출하, 보수, 생산 공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종사자이며 광업에 있어서는 채광, 굴진, 권양, 천공,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출하, 보전, 수리, 생산과정의 기록 사무,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사무직 및 기타 종사자 : 생산직종사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며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후선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사환,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에게 있어서 보수를 받는 임원도 여기에 포함
<p>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수 : 영업기간 중에 사업체에 종사한 월평균 종사자수로 3개월 이상 장기 결근자, 군복무자 및 하청업체 종사자, 다른 회사에서 파견한 종사자 등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주와 그 가족

	<p>또는 친·인척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이상을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종사자 :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 급여를 받는 자로서 유급임원,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견습사원, 파트타임 종사자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고용주와 1년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일일로 고용된 자로서 다른 회사에서 파견한 자는 제외 · 무급종사자 : 일정 급여를 받지 않고 실적수당이나 수수료 등만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비법인단체의 회원이거나 월평균 근무일수가 정상근무일수의 1/3미만인 명예직 종사자는 제외
도소매업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 월평균 종사자 수(타사업체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를 하는 용역회사 종사자 등은 제외) ·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동업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시종사자 :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상용종사자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로 약속된 자(단순히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 · 임시종사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일용종사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무급 종사자 : 도·소매업체에서 판매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판매원 및 배달원이나 음식점체 등에서 일정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봉사료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접대부 등과 정상 근무일수의 1/3이상을 업무에 종가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임원 등
서비스업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 월평균 종사자 수(타사업체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를 하는 용역회사 종사자 등은 제외) ·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 개인경영 사업체의 소유주(동업자 포함)와 그 가족으로서 정상 영업시간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의 고용기간을 정하여 고정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상용 종사자와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사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기로 약속된 자(단순히 이익배당만 받는 주주는 제외) · 임시 종사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 일용 종사자 :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무급 종사자 :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외무사원, 정상 근무일수의 1/3 이상을 업무에 종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임원 등
운수업통계조사	<p>○ 육상운송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 상용·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 중인자 포함.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정류장 등에서 운수기업체의 승차권을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은 제외

<p>1. 차량관계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고정운전기사와 대기(스페어)로 분류) · 정비 및 수리공 · 기타(안전관리자, 세차원, 조수, 안내원 등) <p>2. 기타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자 · 사무직 및 기타 <p>3. 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 또는 그의 가족으로서 사업체에 관련되는 제반업무에 주당 정상작업시간의 1/3이상을 종사하되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개인업체는 반드시 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p>○ 수상운송업</p> <p>1. 선내근무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 해기사로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등(외국인 근로자 제외) · 부원: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중 선박직원 이외의 자로서 갑판장, 갑판수, 조기장, 조기수, 조기원, 조리수, 조리원, 사무원, 간호사 등 · 기타 <p>2. 육상근무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자 · 사무직 및 기타 <p>3. 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p>○ 항공운송업</p> <p>- 종사자 수 : 상용·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 중인자 포함. 단 3개월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외국인종사자는 제외)</p> <p>1. 항공기관계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종사 · 항공기관사 · 운항관리사 · 항공정비사 · 항공공장정비사 · 객실승무원 · 기타 <p>2. 기타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자 · 사무직 및 기타 <p>○ 운송관련서비스</p> <p>- 종사자 수: 상용·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 중인자 포함. 단 3</p>

	<p>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p> <p>1. 장비관계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운전기사 · 부원(보통선원) · 냉장냉동기사 · 기타 <p>2. 기타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자 · 안내원 · 검수, 검량, 감정원 · 사무직 및 기타 <p>3. 사업주(무급가족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p>○ 철도·지하철·송유관</p> <p>- 종사자 수: 상용, 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 중인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와 급여액을 운수업체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종사자 즉, 여객터미널 등에서 운수기업체의 승선권을 판매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매표원, 검표원 등은 제외</p> <p>1. 열차·장비관계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사 · 부기관사 · 여객전무 및 차장 · 정비 및 수리공 · 기타 <p>2. 기타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노무자 · 사무직 및 기타 <p>○ 유료도로</p> <p>- 종사자 수 : 상용·임시종사자,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 중인자 포함. 단 3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 등은 제외</p> <p>1. 차량관계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기사 · 정비 및 수리공 · 기타 <p>2. 기타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직 · 기술직 · 단순노무자 · 사무직 및 기타
건설업통계조사	<p>- 종사자 수 : 건설업체의 현장 또는 현장이외의 장소에서 건설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동경영자와 주주는 종사자로 보지 않으며 겸업일 경우 건설부문 종사자만 분리 기입</p>

	<p>1. 상용종사자 :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및 기타종업원(경영자포함) · 기술자 및 기술공(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수행자) · 기능공(직접시공업무수행자) <p>2. 임시종사자: 취업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현장 근로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기능공 및 일용노동자 · 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 포함 <p>3.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p> <p>* 종사자 수는 연간투입인원과 월평균종사자 수를 기입</p> <p>* 상용직에 대해서만 월평균종사자의 각 월말의 종사자수 합계를 영업월수로 나누어 기입</p> <p>* 임시직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 1일(매일) 투입된 임시종사자수를 1년간 총합제한 연인원수를 “연간투입인원”에 기입</p> <p>* 임시직의 급여액을 알고 종사자수를 모를 때는 임시직급여액(노무비)/직종별 평균일당 = 임시종사자수로 계산</p>
--	--

출하액, 매출액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p>- 총매출액 : 연간총매출액</p> <p>*월평균 매출액 기입(월평균매출액 = 총매출액/조업개월 수)</p>
산업총조사	<p>○ 5인이상 광업제조업</p> <p>- 생산액 :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입액(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p> <p>- 출하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p> <p>·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의 조사기준년도 1년간 판매액을 말하며,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여기에 포함.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을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 포함.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여기에서 제외.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간접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을 조사</p> <p>·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체)로부터 받은 수탁은 자가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 ·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 · 구입상품매출액 : 당해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 · 구입상품매출원가 : 연간 구입한 총상품 중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구입원가 <p>○ 4인 이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출하액(매출액) : 조사기준년도 1년간의 완제품 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수입액의 합계로서 월평균 완제품 판매액, 월평균 수탁제조 수입액을 조사하고 여기에 연간 조업일수를 곱하여 연간 출하액을 산출. 완제품 판매액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제품 중에서 조사기준년도 1년간 판매한 것으로 직접판매,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 또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제조 또는 가공, 처리하여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함 <p>○ 본사 및 본점용</p> <p>연간 출하액(제품출하액, 부산물판매액, 폐품판매액, 임가공수입액, 수리수입액)과 광공업 이외의 매출액(구입상품매출액, 임대수입액, 건설, 운수 등 기타)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개념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와 동일</p> <p>○ 전기업</p> <p>연간주요전력량과 연간 전기판매 수입액 두 종류로 나누어서 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전기판매 수입액은 판매량과 판매액을 기입하며 그 외에도 기타 수입액을 기록 <p>○ 가스업</p> <p>연간 생산량 및 판매량, 연간판매 수입액 두 종류로 나누어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생산량 및 판매량(물량단위): 총생산량=순가스량+사업체내가스소비량 연간판매량= 순가스량-종합손실가스량
--	--

	<p>- 연간판매수입액: 연간가스판매수입액+기타수입액</p> <p>- 그 밖에도 상품매출액(외국이나 타회사로부터 구입·판매한 금액), 상품매출원가와 임대수입액을 기입</p> <p>○ 수도업 연간 공급량 및 공급액, 연간 수입액 두 종류로 나누어서 조사</p> <p>-연간 공급량(수량과 금액 모두 기입) 생산량: 수도사업체에서 급수 도는 배수한 총량을 기입 무수량: 공급과정상의 누수량과 소방용수와 같은 유효무수량 기입 공급량: 수용가의 수도계기에 의하여 부과된 양 기입(=생산량 - 무수량)</p> <p>- 연간 수입액(=급수수입액+수탁공사수입액+기타수입액) 급수수입액은 상수도 급수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위의 공급액과 일치해야함.</p> <p>○ 증기 및 온수공급업 연간 생산량 및 판매량, 연간판매수입액 두 종류로 나누어서 조사</p> <p>- 연간 생산량 및 판매량은 물량단위로 기록</p> <p>- 연간 판매수입액: 연간증기 및 온수판매수입액+기타수입액</p> <p>- 그 외에도 상품매출액, 상품매출원가, 임대수입액을 기입</p>
<p>광업제조업 통계조사</p>	<p>- 출하액 : 1년간의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판매액,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를 말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출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대한 미수금을 포함</p> <p>· 제품출하액 :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의 1년간 판매액으로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 견본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그리고 사무용이나 종사자에 대한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 평가하여 여기에 포함. 그러나 완제품의 판매를 본사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는 본사에 반출된 것은 출하로 보지 않고 본사에서 출하된 것만을 포함. 구입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것과 타사업체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탁 생산한 제품의 출하는 제외.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판매가격에 의하고 내국소비세 즉, 주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납부세액)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들을 제외한 가격에 의함.</p> <p>· 부산물·폐품 판매액 :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품, 불합격품(불량품)의 판매에 의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것은 제외</p> <p>·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 원재료 또는 중간 제품을 타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한 대가로 받은 임가공수입액을 말하며, 비제조업체(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타산업체)로 부터의 수탁은 자가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품출하액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수입액 :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서 받았거나 받아야 할 수입액 · 상품매출액 : 당해 사업체가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외국 또는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한 상품의 총매출액 · 기타수입액 : 임대, 건설, 운수수입액
도소매·서비스업총조사	- 매출액(영업수익, 경상경비지출액) : 지난 1년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영업수입액으로써 매출 부가가치세는 제외
도소매통계조사	- 매출액 :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총액으로 가공 및 판매수수료, 자가 소비한 상품의 판매가를 포함하며 판매시점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판매는 상품의 인도 시는 물론 상품의 인도전이라도 대금을 받았을 때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는 대금을 받지 않고 상품을 인도했을 때 · 위탁판매는 수탁자로부터 판매통지를 교환했을 때 · 상품권판매는 상품권과 상품을 교환했을 때
서비스업통계조사	- 매출액(수입액) :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총수입
운수업통계조사	- 운수수입 : 기업체의 운수활동 또는 운수관련서비스로부터 얻어진 모든 영업수입(영업외수입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외수입중 장비, 토지, 건물 및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별도로 기입
건설업통계조사	- 총매출액 : 손익계산서의 총매출액(겸업사업체의 경우 타산업분 포함) - 건설공사매출액 : 손익계산서상의 건설공사수입(분양수입 포함)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산업총조사	○ 5인 이상 광업·제조업 - 주요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 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 급여총액,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세금 과공과 대손상각비, 기타(광고선전비, 운반비 등)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조사대상년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 그러나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p>등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 · 전력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 조사기준년도에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포함 · 용수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을 말함 (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료용수를 포함)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조사기준도의 기성고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하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 · 수선비(수리유지비) :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에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감됨으로써 회계 상 유형고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 <p>-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 따라서 이 부가가치(센서스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음</p> <p>○ 4인 이하 광업·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로서 영세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로 구분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조사기준년도 1년간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도 포함하나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의 수탁 생산인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비는 제외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을 겸하고 있는 사업체가 자기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에 의함. · 연료·전력·용수비 : 가열(난방포함) 및 동력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 가
--	--

	<p>격,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말함</p> <p>- 부가가치 : 출하액에서 주요생산비(원재료비, 연료·전력·용수비, 수선비·위탁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함</p> <p>○ 본사 및 본점용과 전기, 가스, 수도, 증기 및 온수공급업 5인상 광업·제조업과 동일</p>
<p>광업 제조업 통계조사</p>	<p>- 주요생산비 : 1년동안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된 제 비용인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수선비를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비 :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2005년 1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부속품, 용기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하며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의 원재료비를 포함. 그러나 타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급된 원재료와 자가 생산한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중간제품의 비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광업 등 1차 산업활동을 겸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에 의함. · 연료비 : 1년간에 가열료(난방 포함),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 · 전력비 :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구입전력의 요금 및 사무실용 전등요금과 전년도에 지출한 요금으로서 미지급된 것도 여기에 포함 · 용수비 : 1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용수의 요금(사무실용과 종사자의 음료용수를 포함) · 외주가공비(위탁생산비)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의 해당년도의 생산분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임금을 포함 그러나 공급한 원재료의 가액은 여기서 제외하고 원재료비에 포함. · 수선비(수리유지비) :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따라서 수리 및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 소모품, 부속품의 구입액은 여기에 포함하였으나 공장의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자산 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제외 <p>○ 전기업</p> <p>- 생산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비 :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비를 말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료비는 조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연료 및 유지비로 별도 표시 · 구입전력비 : 한화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전력에 대하여 한전에서 지급한 비용 · 전력비 : 한전 산하사업체의 경우 소내소비전력료를 말하고, 한전 이외의 특정사

	<p>업체의 경우 구입전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 및 유지비 : 연료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으로 난방비를 포함. · 수선비 : 전기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 <p>-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전력판매는 배전사업부문(한전의 지사·지점)에서 담당하므로 발전사업·송변전 사업부문 및 일부지역(배전사업체가 광역시에 포함된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부가가치는 (-)가 나타남)</p> <p>○ 가스업</p> <p>- 생산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비 : 가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재료비, 부재료비 및 보조재료비 · 용수비 : 가스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비 · 전력비 : 가스생산을 위하여 사용된 구입전력 요금 · 연료비 : 가열료, 동력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모든 연료의 구입가격 · 수선비 : 가스공급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 · 외주공사비 :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여 준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 <p>-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p> <p>○ 수도업</p> <p>- 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정수, 배수 및 급수를 위하여 사용한 주요비용을 전기업, 가스업에서와 같이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수선비, 외주공사비, 기타로 나누어 조사</p> <p>-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p> <p>○ 증기 및 온수 공급업</p> <p>- 생산비 : 조사기준년도 1년간 증기 및 온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요비용을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공사비, 수선비로 나누어 조사</p> <p>- 부가가치 : 영업수입액에서 주요생산비를 공제하여 산출</p>
<p>도 소 매 서 비 스업총조사</p>	<p>- 사업비용(영업비용)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영업외비용은 제외하며 서비스업부문의 재료매입비, 금융·보험업의 이자비용, 수수료비용, 책임준비금전입액 등은 기타 경비에 포함</p> <p>· 매출원가 : 지난 1년간 매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된 영업비용으로써</p>

	<p>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매출원가 중 상품매입액 이외의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항목은 총조사의 목적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해당 항목에 포함</p> <p>* 매출원가 = 기초 상품재고액 + 당기 상품매입액 - 기말 상품재고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상품재고액 : 현재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치장, 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상품, 기준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 상품, 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 중 재고품 또는 대금 미결제 상품 · 당기 상품매입액 : 지난 1년간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총액, 숙박업의 소모성 재료비, 음식점업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재료비 총액을 말하며, 구입 시 지출한 운송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 · 기말 상품재고액 : 사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상품 재고액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지난 1년간 상품의 판매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관리·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지난 1년간 유급임원, 상용, 임시 및 일일 종사자에게 지급한 임금, 급료,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및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계한 세액 공제 전 총액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한 경우 시가로 환산하여 포함 · 임차료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건물, 대지,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고 지불한 지급임차료 총액 · 세금과 공과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납부한 각종 사업체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공과금 총액을 말하며, 납부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제외 · 감가상각비 :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한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감소분을 일정기간 동안 배분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하며, 2001년도 감가상각 총당금 전입액만을 포함 · 대손상각비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의 분실, 판매대금의 결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말함. · 기 타 : 지난 1년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불한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및 대손상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리비, 수도광열비, 접대비, 잡비 등과 같은 나머지 모든 경비를 포함
도 소 매 통 계 조사	<p>- 영업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원가 : 상품구입비,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 상품판매 활동 및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말함.
서 비 스 업 통 계 조사	<p>- 영업(운영)비용 : 상품구입비,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과 상품판매활동 및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인건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말함.</p>
운 수 업 통 계 조사	<p>- 운수비용 : 기업체의 운수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모든 재료비와 영업비용(영업외 비용 제외)</p> <p>* 손익계산서 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와 원가명세서의 동일한 비용을 합산하여 기재</p>

건설업 통계 조사	- 건설비용 : 매입부가가치세와 발주자공급 원자재비를 제외한 금액
-----------	--------------------------------------

유형고정자산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산업총조사	<p>○ 5인이상 광업·제조업</p> <p>- 유형고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비품, 차량운반구, 선박 등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증가액 : 조사기준연도 1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취득액의 평가는 타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을 말함 · 연간감소액 : 조사기준연도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나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에는 가치감소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함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포함하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 · 기계장치·용광로·요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용광로·요 등을 포함 · 차량운반구 및 선박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를 말함 · 기타(공구·기구·비품 등) :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건설 중인 자산 : 유형고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p>○ 4인이하 광업·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및 구축물, 기계, 기구 및 장치, 차량 및 운반구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고정자산은 제외 * 장부가액 또는 결산장부가 없는 사업체는 시가로 기입하며 임차사용분은 제외하나 임대하여 준 것은 포함.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자산 :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구, 비품, 차량, 운반구 및 선박 · 연간증가액: 1년간에 유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 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취득액의 평가는 다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건설 또는 생산의 경우에는 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에 의함. · 연간감소액 :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으로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 · 연간투자액 : 연간증가액의 합계에서 건설중인 자산 감소분을 뺀 금액 *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에는 가치감소 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함. · 토지 :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개발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탱크,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 · 기계장치·용광로·요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 로 등을 포함. · 차량, 선박 및 운반구 :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운반구 · 기타(공구·기구·비품 등) : 1년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건물신축, 기계설비 등)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해당사항 없음
도소매통계 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서비스업통 계조사	해당사항 없음(미조사)
운수업통계	· 연초잔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증가액 : 신규 및 중고 취득하였거나 이를 설치 및 증축, 개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부터 건물이나 기계장치 계정으로 대체되어온 것도 취득으로 간주(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가 제외) · 연간감소액(처분,손실,대체액) : 1년간 매각·양도·재해·도난·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말하며,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건설완료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한 것은 건설중인 자산계정 감소액에 기입 <p>* 연간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닌 당해연도 감가상각액만 기입 * 연말잔액은 조사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 잔액(유형자산명세서상 잔액) * 장부가액을 기입하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 기입 * 입차사용분은 제외하고 임대하여 준 것은 포함</p>
건설업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초잔액(전기미상각잔액) : 전기유형고정자산 명세서상의 미상각잔액 · 연간증가액(당기증가액) :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 · 연간감소액 : 미기입 · 연말잔액(당기미상각잔액) : 당기 유형고정자산 명세서상 미상각 잔액 <p>* 유형고정자산 명세서를 이용하여 기입</p>

<부록 4> 미국 경제센서스의 일반조사표(Regular Form)의 종류와 구성

대분류	코드	중분류	정규조사표	소유및통제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72	Traveler Accommodation	AF-72101	NC-99572	●
		RV Parks and Recreational Camps	AF-72102	NC-99510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AF-72201	NC-99510	●
		Special Food Services	AF-72202	NC-99510	●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56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Enterprise Support)	AS-56059		●
		Employment Services	AS-56101	NC-99510	●
		Administrative and Other Support Services	AS-56102	NC-99510	●
		Travel Arrangement and Reservation Services	AS-56103	NC-99510	●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S-56104	NC-99510	●
		Services to Buildings and Dwellings	AS-56105	NC-99510	●
		Waste Management	AS-56201	NC-99510	●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71	Performing Arts Companies and Independent Artists, Writers, and Performers	AE-71101	NC-99510	●
		Spectator Sports	AE-71102	NC-99510	●
		Promoters, Agents, and Managers	AE-71103	NC-99510	●
		Museums, Art Gallerie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AE-71201	NC-99510	●
		Amusement Parks, Arcades, and Gambling Industries	AE-71301	NC-99510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AE-71302	NC-99510	●
Construction	23	Residential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CC-23601	NC-99523	●
		Other Heavy Construction (except Land Subdivision, Highway, Street, & Bridge	CC-23701	NC-99523	●
		Land Subdivision	CC-23702	NC-99523	●
		Highway, Street, & Bridge Construction	CC-23703	NC-99523	●
		Poured, Precast Concrete, & Structure Steel Contractors	CC-23801	NC-99523	●
		Site Preparation, Glass & Glazing, Other Building Exterior, & Other Building Equipment Contractors	CC-23802	NC-99523	●
		Framing, Finish Carpentry, & Flooring Contractors	CC-23803	NC-99523	●
		Masonry, Drywall, Insulation, Tile, & Terrazzo Contractors	CC-23804	NC-99523	●
		Roofing, Siding, & Other Building Finishing Contractors	CC-23805	NC-99523	●
		Electrical Contractors	CC-23806	NC-99523	●
		Plumbing, Heating, & Air-Conditioning Contractors	CC-23807	NC-99523	●
		Painting & Wall Covering Contractors	CC-23808	NC-99523	●
		All Other Specialty Trade Contractors	CC-23809	NC-99523	●
Educational Services	61	Educational Services	ED-61101	NC-99510	●
Finance and Insurance	52	Monetary Authorities	FI-52101	NC-99510	●
		Commercial Banking, Savings Institutions, and Other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Unions	FI-52201	NC-99510	●
		Other Banks and Depository Institutions, Except Credit Unions	FI-52202	NC-99510	●
		Credit Unions	FI-52203	NC-99510	●
		Credit Card Issuing and Sales Financing	FI-52204	NC-99510	●
		Non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Card Issuing and Sales Financing	FI-52205	NC-99510	●
		Activities Related to Credit Intermediation	FI-52206	NC-99510	●
		Commercial Banking, Savings Institutions, and Other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Unions (Consolidated)	FI-52250	NC-99650 NC-99655	●
		Securities and Commodity Exchanges	FI-52301	NC-99510	●
		Securities and Commodity Contracts Intermediation and Brokerage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FI-52360	NC-99510	●
		Life,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Carriers	FI-52401	NC-99510	●
		Insurance Carriers, Except Life, Health, and Medical	FI-52402	NC-99510	●

		Insurance Agencies and Brokerages	FI-52403	NC-99510	●
		Life,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Carriers (Consolidated)	FI-52450	NC-99650 NC-99653	●
		Insurance Carriers, Except Life, Health, and Medical (Consolidated)	FI-52451	NC-99650 NC-99653	●
		Other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and Employee Benefit Funds	FI-52460	NC-99510	●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62	Health Practitioners	HC-62101	NC-99562	●
		Outpatient Care Facilities and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HC-62102	NC-99510	●
		Home Health and Miscellaneous Health Services	HC-62103	NC-99510	●
		Hospitals	HC-62201	NC-99510	●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HC-62301	NC-99510	●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HC-62401	NC-99510	●
		Services for The Elderly, Mentally Retarded, and Disabled	HC-62402	NC-99510	●
		Service for Families and Individuals	HC-62403	NC-99510	●
		Food, Shelter, Relief, and Job Training Services	HC-62404	NC-99510	●
Information	51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Enterprise Support)	IN-51059		●
		Newspaper Publishing	IN-51101	NC-99510	●
		Book Publishing	IN-51102	NC-99510	●
		Periodical Publishing	IN-51103	NC-99510	●
		Greeting Card and Other Miscellaneous Publishing	IN-51104	NC-99510	●
		Directory and Mailing List Publishing	IN-51105	NC-99510	●
		Software Publishing	IN-51106	NC-99510	●
		Motion Pictur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51201	NC-99510	●
		Motion Picture and Video Exhibition	IN-51202	NC-99510	●
		Sound Recording	IN-51203	NC-99510	●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Consolidated)	IN-51250	NC-99650 NC-99651	●
		Integrated 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solidated)	IN-51251	NC-99650 NC-99651	●
		Broadcasting Services	IN-51501	NC-99510	●
		Cable Services	IN-51701	NC-99510	●
		Telecommunications	IN-51702	NC-99510	●
		Telecommunications (Consolidated)	IN-51750	NC-99650 NC-99651	●
		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Consolidated)	IN-51751	NC-99650 NC-99651	●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IN-51801	NC-99510	●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b Search Portals,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IN-51802	NC-99510	●
Libraries and News Syndicates	IN-51901	NC-99510	●		
Management of Company and Enterprises	55	Holding Companies	MN-55101	NC-99510	●
		Corporate, Subsidiary, and Regional Managing Offices	MN-55102		●
Manufacturing	31 - 33	Animal Food Manufacturing	MA-10000		
			MC-31101	NC-99530	●

		Flour and Other Grain Mill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102		
		Fats and Oils	MA-10000	NC-99530	●
			MC-31103		
		Cereal Breakfast Foods	MA-10000	NC-99530	●
			MC-31104		
		Sugar	MA-10000	NC-99530	●
			MC-31105		
		Confectionery	MA-10000	NC-99530	●
			MC-31106		
		Frozen Food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107		
		Canned Food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108		
		Dried and Dehydrated Food and Pasta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109		
		Dairy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110		
		Animal Slaughtering and Processing (Except Poultry)	MA-10000	NC-99530	●
			MC-31111		
		Rendering and Meat By-Product Processing	MA-10000	NC-99530	●
			MC-31112		
		Poultry Processing	MA-10000	NC-99530	●
			MC-31113		
		Fish and Other Seafood	MA-10000	NC-99530	●
			MC-31114		
		Retail Bakeries	MA-10000	NC-99530	●
			MC-31115		
		Commercial Bakeries	MA-10000	NC-99530	●
			MC-31116		
		Flour Mixes and Cookie and Crack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117					
Tortillas	MA-10000	NC-99530	●		
	MC-31118				
Coffee and Tea	MA-10000	NC-99530	●		
	MC-31119				
Miscellaneous Foods	MA-10000	NC-99530	●		
	MC-31120				
Retail Bakeries	MC-31171	NC-99530			
Soft Drink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201				
Bottled Wat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202				
Ic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203				
Malt Beverag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204				
Wine, Distilled, and Blended Liquors	MA-10000	NC-99530	●		
	MC-31205				
Tobacco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206		
Yarn		MA-10000	NC-99530	●
		MC-31301		
Thread		MA-10000	NC-99530	●
		MC-31302		
Broadwoven Fabrics		MA-10000	NC-99530	●
		MC-31303		
Narrow Fabrics		MA-10000	NC-99530	●
		MC-31304		
Schiffli Machine Embroideries		MA-10000	NC-99530	●
		MC-31305		
Nonwoven Fabrics		MA-10000	NC-99530	●
		MC-31306		
Knitting Mill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307		
Textile Finishing		MA-10000	NC-99530	●
		MC-31309		
Coated Fabrics		MA-10000	NC-99530	●
		MC-31311		
Carpet and Rugs		MA-10000	NC-99530	●
		MC-31401		
Household Textile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402		
Textile Bags		MA-10000	NC-99530	●
		MC-31403		
Canvas and Related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404		
Rope, Cordage, and Twine		MA-10000	NC-99530	●
		MC-31405		
Tire Cord and Tire Fabrics		MA-10000	NC-99530	●
		MC-31406		
Miscellaneous Textile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1407		
Household Textile Products		MC-31471	NC-99530	
Canvas and Miscellaneous Textile Products		MC-31472	NC-99530	
Hosiery and Socks		MA-10000	NC-99530	●
		MC-31501		
Contract Cut and Sew Apparel		MA-10000	NC-99530	●
		MC-31505		
Apparel and Apparel Accessories		MA-10000	NC-99530	●
		MC-31506		
Hats, Caps, and Millinery		MA-10000	NC-99530	●
		MC-31507		
Gloves and Mittens		MA-10000	NC-99530	●
		MC-31508		
Men's and Boys' Neckwear		MA-10000	NC-99530	●
		MC-31509		
Cut and Sew Apparel Contractors			NC-99530	

		MC-31571		
Leather Tanning	MA-10000	NC-99530	●	
	MC-31601			
Footwear	MA-10000	NC-99530	●	
	MC-31602			
Luggage and Leather Goods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1603			
Sawmills and Cut Stock, Resawing, and Planing	MA-10000	NC-99530	●	
	MC-32101			
Wood Preservation	MA-10000	NC-99530	●	
	MC-32102			
Hardwood and Softwood Veneer and Plywood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03			
Engineered Wood Member, Truss, and Prefab. Wood Bldgs. Mfg.	MA-10000	NC-99530	●	
	MC-32105			
Reconstituted Wood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07			
Wood Window, Door, and Other Millwork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08			
Wood Container and Palle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11			
Manufactured Home (Mobile Hom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12			
All Other Miscellaneous Wood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114			
Sawmills		NC-99530		
	MC-32171			
Wood Container and Pallet Manufacturing		NC-99530		
	MC-32172			
All Other Miscellaneous Wood Product Manufacturing		NC-99530		
	MC-32173			
Pulp Mills	MA-10000	NC-99530	●	
	MC-32201			
Paper and Paperboard Mills	MA-10000	NC-99530	●	
	MC-32202			
Paperbox and Contain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205			
Plastics, Foil, and Paper Packaging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210			
Coated and Laminated Paper and Paperboard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211			
Laminated Aluminum Foil Manufacturing for Flexible Packaging Uses	MA-10000	NC-99530	●	
	MC-32214			
Paper Office Supply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216			
Sanitary Paper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219			
Commercial Printing	MA-10000	NC-99530	●	
	MC-32301			
Manifold Business Forms and Checkbooks	MA-10000	NC-99530	●	

		MC-32302		
Book Printing	MA-10000	NC-99530	●	
	MC-32303			
Bookbinding, Blankbooks, Binders, and Postpress Services	MA-10000	NC-99530	●	
	MC-32304			
Service Industries for the Printing Trade	MA-10000	NC-99530	●	
	MC-32305			
Commercial Printing		NC-99530		
	MC-32371			
Service Industries for the Printing Trade		NC-99530		
	MC-32372			
Petroleum Refineries, Lubricating Oils and Coal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2401			
Asphalt and Tar Roofing, Siding and Paving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2402			
Petro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1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2			
Inorgan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3			
Synthetic Organ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4			
Alkalies and Chlorin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5			
Carbon Black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6			
All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7			
Gum and Wood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8			
Cyclic Crude and Intermediat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09			
Ethyl Alcoho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10			
All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11			
Plastics Material Resin and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12			
Organic Fib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14			
Fertilizer and Related Chemicals	MA-10000	NC-99530	●	
	MC-32516			
Pesticide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19			
Drugs and Medicinal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20			
Paint and Coating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24			
Adhesiv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525		
	Soaps, Detergents, Polishes and Related Products	MA-10000 MC-32526	NC-99530	●
	Toilet Preparation Manufacturing	MA-10000 MC-32529	NC-99530	●
	Printing Ink Manufacturing	MA-10000 MC-32530	NC-99530	●
	Explosives Manufacturing	MA-10000 MC-32531	NC-99530	●
	Custom Compounding of Purchased Resin	MA-10000 MC-32532	NC-99530	●
	Photographic Film, Paper, Plate, and Chemical Manufacturing	MA-10000 MC-32533	NC-99530	●
	All Other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MA-10000 MC-32534	NC-99530	●
	Unlaminated Plastics Film and Sheet (Except Packaging)	MA-10000 MC-32602	NC-99530	●
	Plastic Bottles and Plastics Profile Shapes	MA-10000 MC-32603	NC-99530	●
	Plastics Pipe and Fittings	MA-10000 MC-32604	NC-99530	●
	Laminated Plastics Plate, Sheet, and Shapes	MA-10000 MC-32605	NC-99530	●
	Plastic Foam Products	MA-10000 MC-32606	NC-99530	●
	Plastics Plumbing Fixtures	MA-10000 MC-32607	NC-99530	●
	Resilient Floor Coverings and Asbestos Products	MA-10000 MC-32608	NC-99530	●
	Miscellaneous Plastics Products, N.E.C.	MA-10000 MC-32609	NC-99530	●
	Tire Manufacturing (Except Retreading)	MA-10000 MC-32610	NC-99530	●
	Tire Retreading	MA-10000 MC-32611	NC-99530	●
	Rubber and Plastics Hoses and Belting Manufacturing	MA-10000 MC-32612	NC-99530	●
	Rubber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MC-32613	NC-99530	●
	Vitreous China, Fine Earthenware and Porcelain Products	MA-10000 MC-32701	NC-99530	●
	Brick and Other Structural Clay Products, Except Refractories	MA-10000 MC-32704	NC-99530	●
	Clay and Nonclay Refractory Manufacturing	MA-10000 MC-32705	NC-99530	●
	Flat Glass Manufacturing	MA-10000 MC-32707	NC-99530	●
	Pressed and Blown Glass and Fabricated Glass Products	MA-10000 MC-32708	NC-99530	●
	Glass Container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09		
Cement, Lime, and Gypsum Products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0			
Ready-Mix Concrete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1			
Concrete Products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2			
Abrasive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5			
Cut Stone and Stone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6			
Ground or Treated Mineral and Earth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2717			
Misc.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Mineral Wool Mfg.	MA-10000	NC-99530	●	
	MC-32718			
Ready-mix Concrete Manufacturing	MC-32771	NC-99530		
Other Concrete Products		NC-99530		
	MC-32772			
Iron, Steel Mill, and Electrometallurgical Products Mfg.	MA-10000	NC-99530	●	
	MC-33101			
Alumina Refining	MA-10000	NC-99530	●	
	MC-33106			
Primary Aluminum Production	MA-10000	NC-99530	●	
	MC-33107			
Secondary Smelting and Alloying of Aluminum	MA-10000	NC-99530	●	
	MC-33108			
Aluminum Sheet, Plate, Foil, and Extruded Products	MA-10000	NC-99530	●	
	MC-33109			
Other Aluminum Rolling and Drawing	MA-10000	NC-99530	●	
	MC-33111			
Primary Smelting and Refining of Nonferrous Metals	MA-10000	NC-99530	●	
	MC-33112			
Copper Rolling, Drawing, and Extruding	MA-10000	NC-99530	●	
	MC-33114			
Copper Wire (Except Mechanical) Drawing	MA-10000	NC-99530	●	
	MC-33115			
Secondary Smelting, Refining, and Alloying of Copper	MA-10000	NC-99530	●	
	MC-33116			
Rolling, Drawing, and Extruding of Other Nonferrous Metals	MA-10000	NC-99530	●	
	MC-33117			
Secondary Smelting and Refining of Other Nonferrous Metals	MA-10000	NC-99530	●	
	MC-33118			
Iron, Steel and Steel Investment Foundries	MA-10000	NC-99530	●	
	MC-33119			
Nonferrous Foundries Including Aluminum, Copper, and Other	MA-10000	NC-99530	●	
	MC-33122			
Forging	MA-10000	NC-99530	●	
	MC-33201			
Custom Roll Forming	MA-10000	NC-99530	●	

		MC-33203		
	Crown and Closure Manufacturing (Including Metal Stamping)	MA-10000 MC-33204	NC-99530	●
	Powder Metallurgy Parts Manufacturing	MA-10000 MC-33206	NC-99530	●
	Cutlery and Flatware (Except Precious) Manufacturing	MA-10000 MC-33207	NC-99530	●
	Hand and Edge Tool Manufacturing	MA-10000 MC-33208	NC-99530	●
	Saw Blade and Handsaw Manufacturing	MA-10000 MC-33209	NC-99530	●
	Kitchen Utensil, Pot, and Pan Manufacturing	MA-10000 MC-33210	NC-99530	●
	Prefabricated Metal Building and Component Manufacturing	MA-10000 MC-33211	NC-99530	●
	Fabricated Structural Metal Manufacturing	MA-10000 MC-33212	NC-99530	●
	Plate Work Manufacturing	MA-10000 MC-33213	NC-99530	●
	Metal Window and Door Manufacturing	MA-10000 MC-33214	NC-99530	●
	Sheet Metal Work Manufacturing	MA-10000 MC-33215	NC-99530	●
	Ornamental and Architectural Metal Work Manufacturing	MA-10000 MC-33216	NC-99530	●
	Power Boilers, Heat Exchangers, and Heavy Gauge Metal Tanks	MA-10000 MC-33217	NC-99530	●
	Metal Can and Other Metal Container Manufacturing	MA-10000 MC-33219	NC-99530	●
	Hardware Manufacturing	MA-10000 MC-33221	NC-99530	●
	Spring (Heavy and Light Gauge) Manufacturing	MA-10000 MC-33222	NC-99530	●
	Other Fabricated Wire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MC-33224	NC-99530	●
	Machine Shops	MA-10000 MC-33225	NC-99530	●
	Precision Turned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MC-33226	NC-99530	●
	Bolt, Nut, Screw, Rivet, and Washer Manufacturing	MA-10000 MC-33227	NC-99530	●
	Metal Heat Treating	MA-10000 MC-33228	NC-99530	●
	Metal Coating, Engraving and Allied Activities	MA-10000 MC-33229	NC-99530	●
	Industrial Valve Manufacturing	MA-10000 MC-33231	NC-99530	●
	Fluid Power Valve and Hose Fitting Manufacturing	MA-10000 MC-33232	NC-99530	●
	Plumbing Fixture Fitting and Trim Manufacturing	MA-10000	NC-99530	●

		MC-33233		
	Other Metal Valve and Pipe Fitting Manufacturing	MA-10000 MC-33234	NC-99530	●
	Ball and Roller Bearing Manufacturing	MA-10000 MC-33235	NC-99530	●
	Small Arms and Ammunition Manufacturing	MA-10000 MC-33236	NC-99530	●
	Fabricated Pipe and Pipe Fitting Manufacturing	MA-10000 MC-33240	NC-99530	●
	Industrial Pattern Manufacturing	MA-10000 MC-33241	NC-99530	●
	Enameled Iron and Metal Sanitary Ware Manufacturing	MA-10000 MC-33242	NC-99530	●
	Other Miscellaneous Fabricated Metal Product Manufacturing	MA-10000 MC-33243	NC-99530	●
	Fabricated Structural Metal Manufacturing	MC-33271	NC-99530	
	Sheet Metal Work Manufacturing	MC-33272	NC-99530	
	Ornamental and Architectural Metal Work Manufacturing	MC-33273	NC-99530	
	Machine Shops	MC-33274	NC-99530	
	Precision Turned Product Manufacturing	MC-33275	NC-99530	
	Electroplating, Coating, Engraving and Allied Activities	MC-33276	NC-99530	
	Other Miscellaneous Fabricated Metal Product Manufacturing	MC-33277	NC-99530	
	Farm, Turf, Lawn, and Garden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1	NC-99530	●
	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2	NC-99530	●
	Oil and Gas Field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3	NC-99530	●
	Woodworking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4	NC-99530	●
	Pulp and Paper Industries Machinery	MA-10000 MC-33305	NC-99530	●
	Textile Machinery	MA-10000 MC-33306	NC-99530	●
	Printing Trades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7	NC-99530	●
	Food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MC-33308	NC-99530	●
	Special Industry Machinery, N.E.C.	MA-10000 MC-33309	NC-99530	●
	Automatic Merchandising (Vending) Machines	MA-10000 MC-33310	NC-99530	●
	Commercial Laundry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311		
Optical Instrument and Lens Mfg	MA-10000	NC-99530	●	
	MC-33312			
Photographic Equipment and Supplies	MA-10000	NC-99530	●	
	MC-33313			
Service Industry Machinery, N.E.C.	MA-10000	NC-99530	●	
	MC-33314			
Blowers, Exhaust, and Ventilating Fans	MA-10000	NC-99530	●	
	MC-33315			
Heating Equipment, Except Warm Air Furnaces	MA-10000	NC-99530	●	
	MC-33316			
Refrigeration, Air-Conditioning and Warm Air Heating Equip.	MA-10000	NC-99530	●	
	MC-33317			
Machine Tool Access. and Dies, Tools, Jigs, and Fixtures	MA-10000	NC-99530	●	
	MC-33318			
Metalworking Machinery	MA-10000	NC-99530	●	
	MC-33319			
Turbines, Turbine Generators, and Other Engine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320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Gears	MA-10000	NC-99530	●	
	MC-33321			
Pumps and Compressors; Measuring and Dispensing Pumps	MA-10000	NC-99530	●	
	MC-33322			
Conveying and Elevating Equipment and Industrial Trucks	MA-10000	NC-99530	●	
	MC-33323			
Hoists, Cranes, and Monorails	MA-10000	NC-99530	●	
	MC-33324			
Power-Driven Handtools	MA-10000	NC-99530	●	
	MC-33325			
Welding Apparatus	MA-10000	NC-99530	●	
	MC-33326			
Packaging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327			
Industrial Furnaces and Ovens	MA-10000	NC-99530	●	
	MC-33328			
Fluid Power Equipment, Except Valves	MA-10000	NC-99530	●	
	MC-33329			
Scales and Balances	MA-10000	NC-99530	●	
	MC-33330			
Industry Machinery and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331			
Special Dies, Tools, Jigs, Fixtures and Mold Manufacturing		NC-99530		
	MC-33371			
Cutting Tool and Machine Tool Accessory Manufacturing		NC-99530		
	MC-33372			
Industry Machinery and Equipment		NC-99530		
	MC-33373			
Computing and Office Machines	MA-10000	NC-99530	●	
	MC-33401			
Communications Equip.; Search and Detection Equip.	MA-10000	NC-99530	●	

		MC-33402		
	Radio Receivers and Television Sets and Related Equipment	MA-10000 MC-33403	NC-99530	●
	Electronic Components and Accessories	MA-10000 MC-33404	NC-99530	●
	Electromedical, and Electrotherapeutic Apparatus	MA-10000 MC-33405	NC-99530	●
	Instruments	MA-10000 MC-33406	NC-99530	●
	Clocks, Watches, and Watchcases	MA-10000 MC-33407	NC-99530	●
	Prerecorded Records, Magnetic Tapes, and Discs	MA-10000 MC-33408	NC-99530	●
	Magnetic and Optical Recording Media (Unrecorded)	MA-10000 MC-33409	NC-99530	●
	Electric Lamps	MA-10000 MC-33501	NC-99530	●
	Lighting Fixtures	MA-10000 MC-33502	NC-99530	●
	Household Appliances	MA-10000 MC-33503	NC-99530	●
	Power, Distribution, and Specialty Transformers	MA-10000 MC-33504	NC-99530	●
	Motors, Generators, and Motor-Generator Sets	MA-10000 MC-33505	NC-99530	●
	Switchgear, Switchboard Apparatus and Industrial Controls	MA-10000 MC-33506	NC-99530	●
	Storage Batteries, Primary Batteries	MA-10000 MC-33507	NC-99530	●
	Fiber Optic Cable, Other Communication and Energy Wire	MA-10000 MC-33508	NC-99530	●
	Wiring Devices	MA-10000 MC-33509	NC-99530	●
	Carbon and Graphite Products	MA-10000 MC-33510	NC-99530	●
	Miscellaneous Industrial Electrical Equipment	MA-10000 MC-33511	NC-99530	●
	Motor Vehicles and Passenger Car Bodies	MA-10000 MC-33601	NC-99530	●
	Truck and Bus Bodies; Truck Trailers	MA-10000 MC-33602	NC-99530	●
	Travel and Camping Trailers and Motor Homes	MA-10000 MC-33603	NC-99530	●
	Carburetors, Pistons, Piston Rings, and Valves	MA-10000 MC-33604	NC-99530	●
	Vehicular Lighting Equipment Manufacturing	MA-10000 MC-33605	NC-99530	●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MA-10000 MC-33606	NC-99530	●
	Motor Vehicle Seating and Interior Trim	MA-10000	NC-99530	●

		MC-33607		
Motor Vehicle Metal Stampings	MA-10000	NC-99530	●	
	MC-33608			
Aircraft Industries	MA-10000	NC-99530	●	
	MC-33609			
Aerospace Industries	MA-10000	NC-99530	●	
	MC-33610			
Rail Transportation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611			
Ship Building and Repairing	MA-10000	NC-99530	●	
	MC-33612			
Boat Building	MA-10000	NC-99530	●	
	MC-33613			
Motorcycles, Bicycles, and Parts	MA-10000	NC-99530	●	
	MC-33614			
Military Armoured Vehicle, Tank and Tank Components	MA-10000	NC-99530	●	
	MC-33615			
Miscellaneous Transportation Equipment	MA-10000	NC-99530	●	
	MC-33616			
Wood Kitchen Cabinets and Countertops	MA-10000	NC-99530	●	
	MC-33701			
Household Furniture and Wood Housings	MA-10000	NC-99530	●	
	MC-33702			
Fixtures and Office and Institutional Furniture	MA-10000	NC-99530	●	
	MC-33703			
Mattresses	MA-10000	NC-99530	●	
	MC-33711			
Blinds and Shades	MA-10000	NC-99530	●	
	MC-33712			
Wood Kitchen Cabinets and Countertops		NC-99530		
	MC-33771			
Nonupholstered Wood Household Furniture Manufacturing		NC-99530		
	MC-33772			
Fixtures and Custom Architectural Woodwork		NC-99530		
	MC-33773			
Surgical and Medical Instruments, Apparatus, and Supplies	MA-10000	NC-99530	●	
	MC-33901			
Dental Equipment and Supplies	MA-10000	NC-99530	●	
	MC-33902			
Ophthalmic Goods	MA-10000	NC-99530	●	
	MC-33903			
Dental Laboratories	MA-10000	NC-99530	●	
	MC-33904			
Jewelry, Jewelers' Findings, and Lapidary Work	MA-10000	NC-99530	●	
	MC-33905			
Hollowware and Flatware	MA-10000	NC-99530	●	
	MC-33906			
Sporting and Athletic Goods	MA-10000	NC-99530	●	
	MC-33907			
Toys, Games, Dolls, and Children's Vehicles, Exc. Bicycles	MA-10000	NC-99530	●	

			MC-33908		
		Pens, Pencils, Marking Devices, and Artists' Materials	MA-10000 MC-33909	NC-99530	●
		Carbon Paper and Inked Ribbons	MA-10000 MC-33910	NC-99530	●
		Signs, Displays, and Advertising Specialties	MA-10000 MC-33911	NC-99530	●
		Gaskets, Packings, and Seals	MA-10000 MC-33912	NC-99530	●
		Musical Instruments	MA-10000 MC-33913	NC-99530	●
		Buttons, Needles, Pins, Fasteners, and Similar Notions	MA-10000 MC-33914	NC-99530	●
		Brooms, Brushes, and Mops	MA-10000 MC-33915	NC-99530	●
		Burial Caskets	MA-10000 MC-33916	NC-99530	●
		Miscellaneous Manufactured Products	MA-10000 MC-33917	NC-99530	●
		Dental Laboratories		NC-99530	
		Jewelry, Jewelers' Findings, and Lapidary Work		NC-99530	
		Sporting and Athletic Goods		NC-99530	
		Signs, Displays, and Advertising Specialties		NC-99530	
		Miscellaneous Manufactured Products		NC-99530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Extraction	MI-21101	NC-99520	●
		Natural Gas Liquid Extraction	MI-21102	NC-99530	●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Extraction	MI-21171	NC-99530	
		Coal Mining	MI-21201	NC-99530	●
		Iron Ore Mining	MI-21202	NC-99530	●
		Copper, Lead, Zinc, Gold, and Silver Ore Mining	MI-21203	NC-99530	●
		Uranium-Radium-Vanadium Ore Mining	MI-21204	NC-99530	●
		Miscellaneous Metal Ore Mining	MI-21205	NC-99530	●
		Stone, Sand, and Gravel Mining or Quarrying	MI-21206	NC-99530	●
		Clay, Ceramic, and Refractory Mineral Mining	MI-21207	NC-99530	●
		Potash, Soda, and Borate Mineral Mining	MI-21208	NC-99530	●
		Phosphate Rock Mining	MI-21209	NC-99530	●
		Miscellaneous Chemical and Fertilizer Mineral Mining	MI-21210	NC-99530	●
		Miscellaneous Nonmetallic Mineral Mining	MI-21211	NC-99530	●
		Stone Mining and Quarrying, and Sand and Gravel Mining	MI-21271	NC-99530	
		Oil and Gas Field Services	MI-21301	NC-99521	●
		Mineral Contract Services	MI-21302	NC-99521	●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81	Repair, Laundry, and Other Selected Services (Enterprise Support)	OS-81059		●

Administration)		Motor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OS-81101	NC-99510	●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OS-81102	NC-99510	●
		Personal Care Services	OS-81201	NC-99510	●
		Other Personal Services	OS-81202	NC-99510	●
		Laundry Services	OS-81203	NC-99581	●
		Grantmaking and Advocacy	OS-81301	NC-99510	●
		Civic, Social, and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OS-81302	NC-99510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Enterprise Support)	PS-54059		●
		Legal Services	PS-54101	NC-99557	●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 and Payroll Services	PS-54102	NC-99563	●
		Architectural Services	PS-54103	NC-99554	●
		Engineering Services	PS-54104	NC-99554	●
		Surveying and Mapping Services	PS-54105	NC-99554	●
		Specialized Design Services	PS-54106	NC-99510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PS-54107	NC-99510	●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PS-54108	NC-99510	●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PS-54109	NC-99510	●
		Advertising and Related Services	PS-54110	NC-99510	●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PS-54111	NC-99510	●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53	Real Estate Services	RE-53101	NC-99510	●
		Real Estate Lessors	RE-53160	NC-99550	●
		Rental and Leasing of Automotive Equipment (Without Drivers)	RE-53201	NC-99553	●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Consumer Goods	RE-53202	NC-99510	●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RE-53203	NC-99510	●
		Miscellaneous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RE-53301	NC-99510	●
Retail Trade	44 - 45	Automobile Dealers	RT-44101	NC-99510	●
		Recreational Vehicle, Boat, and Other Motor Vehicle Dealers	RT-44102	NC-99510	●
		Automotive Parts, Accessories, and Tire Stores	RT-44103	NC-99510	●
		Furniture Stores	RT-44201	NC-99510	●
		Home Furnishings Stores	RT-44202	NC-99510	●
		Electronics and Appliance Stores	RT-44301	NC-99510	●
		Building Material and Supplies Dealers	RT-44401	NC-99510	●
		Lawn and Garden Equipment and Supplies Dealers	RT-44402	NC-99510	●
		Food and Beverage Stores	RT-44501	NC-99510	●
		Health, Optical Goods, and Personal Care Stores	RT-44601	NC-99510	●
		Gasoline Stations	RT-44701	NC-99510	●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Stores	RT-44801	NC-99510	●
		Shoe Stores	RT-44802	NC-99510	●
		Jewelry Stores	RT-44803	NC-99510	●

		Sporting Goods Stores	RT-45101	NC-99510	●
		Hobby, Toy, and Sewing Stores	RT-45102	NC-99510	●
		Musical Instrument, Music, and Video Stores	RT-45103	NC-99510	●
		Book Stores and Newsstands	RT-45104	NC-99510	●
		Department, Variety, and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RT-45201	NC-99510	●
		Warehouse Clubs and Supercenters	RT-45202	NC-99510	●
		Florists	RT-45301	NC-99510	●
		Pet and Pet Supplies Stores	RT-45302	NC-99510	●
		Antique and Used Merchandise Stores	RT-45304	NC-99510	●
		Manufactured (Mobile) Home Retailers	RT-45305	NC-99510	●
		Tobacco Stores	RT-45306	NC-99510	●
		Art Dealers and Miscellaneous Store Retailers	RT-45307	NC-99510	●
		Office Supply, Stationery, and Gift Stores	RT-45360	NC-99510	●
		Electronic Shopping, Vending Operators, and Direct Selling	RT-45401	NC-99510	●
		Fuel Dealers	RT-45402	NC-99510	●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48 - 49	Air Transportation	TW-48160	NC-99510	●
		Water Transportation	TW-48360	NC-99510	●
		Trucking and Warehousing (Enterprise Support)	TW-48459		●
		Trucking and Warehousing	TW-48460	NC-99510	●
		Transit and Ground Passenger Transportation	TW-48560	NC-99510	●
		Pipelines	TW-48601	NC-99510	●
		Transportation Services	TW-48801	NC-99510	●
Utilities	22	Electric, Gas, and Water Utilities	UT-22101	NC-99510	●
		Electric, Gas, and Water Utilities (Consolidated)	UT-22150	NC-99650	●
Wholesale Trade	42	Motor Vehicles	WH-42101	NC-99542	●
		Motor Vehicles Parts and Supplies	WH-42103	NC-99542	●
		Furniture and Homefurnishings	WH-42105	NC-99542	●
		Lumber and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WH-42107	NC-99542	●
		Photographic and Commercial Equipment	WH-42109	NC-99542	●
		Computers and Office Equipment	WH-42111	NC-99542	●
		Professional Equipment and Supplies	WH-42113	NC-99542	●
		Ferrous and Nonferrous Metals	WH-42115	NC-99542	●
		Coal, Coke, and Other Minerals and Ores	WH-42117	NC-99542	●
		Electrical Goods	WH-42119	NC-99542	●
		Hardware, and Plumbing and Heating Equipment and Supplies	WH-42121	NC-99542	●
		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ry and Equipment	WH-42123	NC-99542	●
		Farm and Garden Machinery and Equipment	WH-42125	NC-99542	●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WH-42127	NC-99542	●
		Industrial Supplies	WH-42129	NC-99542	●
		Service Establishment Equipment and Supplies	WH-42131	NC-99542	●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Supplies	WH-42133	NC-99542	●
Sporting, Recreational, Hobby Goods, Toys, and Supplies	WH-42135	NC-99542	●		
Scrap and Recyclable Materials	WH-42137	NC-99542	●		

	Jewelry, Watches, and Precious Stones and Metals	WH-42139	NC-99542	●
	Miscellaneous Durable Goods	WH-42141	NC-99542	●
	Paper and Paper Products	WH-42201	NC-99542	●
	Drugs, Drug Proprietaries and Druggists' Sundries	WH-42203	NC-99542	●
	Piece Goods and Notions	WH-42205	NC-99542	●
	Men's and Women's Apparel and Footwear	WH-42207	NC-99542	●
	Grocery Wholesalers	WH-42209	NC-99542	●
	Frozen Foods	WH-42211	NC-99542	●
	Dairy Products	WH-42213	NC-99542	●
	Poultry, Poultry Products, Meat,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WH-42215	NC-99542	●
	Confectionery	WH-42217	NC-99542	●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H-42219	NC-99542	●
	Farm-Product Raw Materials	WH-42221	NC-99542	●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WH-42223	NC-99542	●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WH-42225	NC-99542	●
	Beer, Wine, and Distilled Alcoholic Beverages	WH-42227	NC-99542	●
	Farm Supplies	WH-42229	NC-99542	●
	Books, Periodicals, Flowers, and Florists' Supplies	WH-42231	NC-99542	●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WH-42233	NC-99542	●
	Paints, Varnishes, Wallpaper and Supplies	WH-42235	NC-99542	●
	Miscellaneous Nondurable Goods	WH-42237	NC-99542	●

<부록 5> 미국경제센서스의 세부 산업별 조사내용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Traveler Accommodation	○	○	○	○	○	○	○											○	○			○				○			○	○	
	RV Parks and Recreational Camps	○	○	○	○	○	○	○												○			○				○			○	○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	○	○	○	○	○	○												○	○			○				○			○	○
	Special Food Services	○	○	○	○	○	○	○												○			○				○			○	○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Administrative and Support and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Enterprise Support)	○	○	○	○	○	○	○								○			○	○			○	○			○	○			○	○
	Employment Services	○	○	○	○	○	○	○												○			○				○	○			○	○
	Administrative and Other Support Services	○	○	○	○	○	○	○												○	○			○			○	○			○	○
	Travel Arrangement and Reservation Services	○	○	○	○	○	○	○												○	○			○			○	○			○	○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	○	○	○	○	○	○												○	○			○			○	○			○	○
	Services to Buildings and Dwellings	○	○	○	○	○	○	○												○	○			○			○	○			○	○
	Waste Management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Performing Arts Companies and Independent Artists, Writers, and Performers	○	○	○	○	○	○	○											○				○			○				○	○	
	Spectator Sports	○	○	○	○	○	○	○											○				○				○				○	○
	Promoters, Agents, and Managers	○	○	○	○	○	○	○											○				○								○	○
	Museums, Art Galleries, Botanical and Zoological Gardens	○	○	○	○	○	○	○											○				○								○	○
	Amusement Parks, Arcades, and Gambling Industries	○	○	○	○	○	○	○											○				○								○	○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 Industries	○	○	○	○	○	○	○											○				○								○	○
Construction	Residential &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	○	○	○	○	○				○		○	○		○							○	○			○	○	○	○	○
	Other Heavy Construction (except Land Subdivision, Highway, Street, & Bridge)	○	○	○	○	○	○	○				○		○	○		○							○	○			○		○	○	○
	Land Subdivision	○	○	○	○	○	○	○				○		○	○		○							○	○			○		○	○	○
	Highway, Street, & Bridge Construction	○	○	○	○	○	○	○				○		○	○		○							○	○			○		○	○	○
	Poured, Precast Concrete, & Structure Steel Contractors	○	○	○	○	○	○	○				○		○	○		○							○	○			○		○	○	○
	Site Preparation, Glass & Glazing, Other Building Exterior, & Other Building Equipment Contractors	○	○	○	○	○	○	○				○		○	○		○							○	○			○		○	○	○
	Framing, Finish Carpentry, & Flooring Contractors	○	○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sonry, Drywall, Insulation, Tile, & Terrazzo Contractors	○	○	○	○	○	○	○			○		○	○		○							○	○			○			○	○	
	Roofing, Siding, & Other Building Finishing Contractors	○	○	○	○	○	○	○			○		○	○		○							○	○			○			○	○	
	Electrical Contractors	○	○	○	○	○	○	○			○		○	○		○							○	○			○			○	○	
	Plumbing, Heating, & Air-Conditioning Contractors	○	○	○	○	○	○	○			○		○	○		○							○	○			○			○	○	
	Painting & Wall Covering Contractors	○	○	○	○	○	○	○			○		○	○		○							○	○			○			○	○	
	All Other Specialty Trade Contractors	○	○	○	○	○	○	○			○		○	○		○							○	○			○			○	○	
Education al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	○	○	○	○	○	○	○														○			○					○	○	
Finance and Insurance	Monetary Authorities	○	○	○	○	○	○	○														○			○			○			○	○
	Commercial Banking, Savings Institutions, and Other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Unions	○	○	○	○	○	○	○														○			○			○	○		○	○
	Other Banks and Depository Institutions, Except Credit Unions	○	○	○	○	○	○	○														○			○			○	○		○	○
	Credit Unions	○	○	○	○	○	○	○														○			○			○			○	○
	Credit Card Issuing and Sales Financing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Finance and Insurance	Non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Card Issuing and Sales Financing	○	○	○	○	○	○	○											○				○			○	○			○	○
	Activities Related to Credit Intermediation	○	○	○	○	○	○	○											○				○			○	○			○	○
	Commercial Banking, Savings Institutions, and Other Depository Credit Intermediation, Except Credit Unions (Consolidated)	○	○	○	○	○	○	○											○				○			○	○			○	○
	Securities and Commodity Exchanges	○	○	○	○	○	○	○											○				○			○				○	○
	Securities and Commodity Contracts Intermediation and Brokerage and Other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	○	○	○	○	○	○											○				○			○				○	○
	Life,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Carriers	○	○	○	○	○	○	○											○				○				○			○	○
	Insurance Carriers, Except Life, Health, and Medical	○	○	○	○	○	○	○											○				○				○			○	○
	Insurance Agencies and Brokerages	○	○	○	○	○	○	○											○				○				○			○	○
	Life, Health, and Medical Insurance Carriers (Consolidated)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nsurance Carriers, Except Life, Health, and Medical (Consolidated)	○	○	○	○	○	○	○											○				○				○		○	○	○	
	Other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and Employee Benefit Funds	○	○	○	○	○	○	○												○				○				○			○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Health Practitioners	○	○	○	○	○	○	○												○				○				○			○	
	Outpatient Care Facilities and Medical and Diagnostic Laboratories	○	○	○	○	○	○	○													○				○				○			○
	Home Health and Miscellaneous Health Services	○	○	○	○	○	○	○													○				○				○			○
	Hospitals	○	○	○	○	○	○	○													○				○				○			○
	Nursing and Residential Care Facilities	○	○	○	○	○	○	○													○				○				○			○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	○	○	○	○	○	○													○				○				○			○
	Services for The Elderly, Mentally Retarded, and Disabled	○	○	○	○	○	○	○													○				○				○			○
	Service for Families and Individuals	○	○	○	○	○	○	○													○				○				○			○
	Food, Shelter, Relief, and Job Training Services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nformation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Enterprise Support)	○	○	○	○	○	○	○								○			○			○	○			○	○			○	○
	Newspaper Publishing	○	○	○	○	○	○	○			○	○							○				○			○				○	○
	Book Publishing	○	○	○	○	○	○	○			○	○							○				○			○				○	○
	Periodical Publishing	○	○	○	○	○	○	○			○	○							○				○			○				○	○
	Greeting Card and Other Miscellaneous Publishing	○	○	○	○	○	○	○			○	○							○				○			○				○	○
	Directory and Mailing List Publishing	○	○	○	○	○	○	○			○	○							○				○			○				○	○
	Software Publishing	○	○	○	○	○	○	○			○	○							○				○			○				○	○
	Motion Pictur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	○	○	○	○	○	○			○	○							○				○			○				○	○
	Motion Picture and Video Exhibition	○	○	○	○	○	○	○			○	○							○				○			○				○	○
	Sound Recording	○	○	○	○	○	○	○			○	○							○				○			○				○	○
	Motion Picture and Video Production (Consolidated)	○	○	○	○	○	○	○			○	○							○				○			○				○	○
	Integrated Recor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nsolidated)	○	○	○	○	○	○	○			○	○							○				○			○				○	○
	Broadcasting Services	○	○	○	○	○	○	○											○				○			○	○			○	○
	Cable Services	○	○	○	○	○	○	○											○	○			○			○	○			○	○
	Telecommunications	○	○	○	○	○	○	○											○	○			○			○	○			○	○
	Telecommunications (Consolidated)	○	○	○	○	○	○	○											○	○			○			○	○			○	○
Cable and Other Program Distribution (Consolidated)	○	○	○	○	○	○	○											○				○			○	○			○	○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Internet Service Providers, Web Search Portals,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	○	○	○	○	○	○											○	○			○			○				○	○	
	Libraries and News Syndicates	○	○	○	○	○	○	○											○				○			○					○	○
Management of Companies and Enterprises	Holding Companies	○	○	○	○	○	○	○											○				○							○	○	
	Corporate, Subsidiary, and Regional Managing Offices	○	○	○	○	○	○	○			○	○					○			○			○	○			○	○			○	○
Manufacturing	Animal Food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Flour and Other Grain Mill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
	Fats and Oils	○	○	○	○	○	○	○			O,M	○	O,M	O,M		O,M	○		○				○							○	○	○
	Cereal Breakfast Foods	○	○	○	○	○	○	○			O,M	○	O,M	O,M		O,M	○						○							○	○	○
	Sugar	○	○	○	○	○	○	○			O,M	○	O,M	O,M		O,M	○						○							○	○	○
	Confectionery	○	○	○	○	○	○	○			O,M	○	O,M	O,M		O,M	○		○				○							○	○	○
	Frozen Food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anned Food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Dried and Dehydrated Food and Pasta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Dairy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Animal Slaughtering and Processing (Except Poultry)	○	○	○	○	○	○	○			O,M	○	O,M	O,M		O,M	○		○				○							○	○	○
	Rendering and Meat By-Product Process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oultry Process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Fish and Other Seafood	○	○	○	○	○	○	○			O,M	○	O,M	O,M		O,M	○						○							○	○	○
	Retail Bake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Commercial Bake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Flour Mixes and Cookie and Crack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Tortillas	○	○	○	○	○	○	○			O,M	○	O,M	O,M	O,M	○						○								○	○	○
	Coffee and Tea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ellaneous Foods	○	○	○	○	○	○	○			O,M	○	O,M	O,M	O,M	○						○								○	○	○
	Retail Bakeries	○	○	○	○	○	○	○			○		○	○	○	○	○		○				○								○	○
	Soft Drin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Bottled Wat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Ic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alt Beverag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Wine, Distilled, and Blended Liquors	○	○	○	○	○	○	○			O,M	○	O,M	O,M	O,M	○						○								○	○	○
	Tobacco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Yarn	○	○	○	○	○	○	○			O,M	○	O,M	O,M	O,M	○		○				○								○	○	○
	Thread	○	○	○	○	○	○	○			O,M	○	O,M	O,M	O,M	○						○								○	○	○
	Broadwoven Fabrics	○	○	○	○	○	○	○			O,M	○	O,M	O,M	O,M	○		○				○								○	○	○
	Narrow Fabrics	○	○	○	○	○	○	○			O,M	○	O,M	O,M	O,M	○		○				○								○	○	○
	Schiffli Machine Embroide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Nonwoven Fabrics	○	○	○	○	○	○	○			O,M	○	O,M	O,M	O,M	○						○								○	○	○
	Knitting Mill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Textile Finish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Coated Fabrics	○	○	○	○	○	○	○			O,M	○	O,M	O,M	O,M	○						○								○	○	○
	Carpet and Rugs	○	○	○	○	○	○	○			O,M	○	O,M	O,M	O,M	○						○								○	○	○
	Household Textile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
	Textile Bags	○	○	○	○	○	○	○			O,M	○	O,M	O,M	O,M	○						○								○	○	○
	Canvas and Related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Rope, Cordage, and Twine	○	○	○	○	○	○	○			O,M	○	O,M	O,M	O,M	○						○								○	○	○	
Tire Cord and Tire Fabrics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ellaneous Textile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	
Household Textile Products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Canvas and Miscellaneous Textile Products	○	○	○	○	○	○	○			○		○	○									○							○	○	
	Hosiery and Socks	○	○	○	○	○	○	○			○,M	○	○,M	○,M	○,M	○,M	○	○					○							○	○	○
	Contract Cut and Sew Apparel	○	○	○	○	○	○	○			○,M	○	○,M	○,M	○,M	○,M	○	○					○							○	○	○
	Apparel and Apparel Accessories	○	○	○	○	○	○	○			○,M	○	○,M	○,M	○,M	○,M	○	○					○							○	○	○
	Hats, Caps, and Millinery	○	○	○	○	○	○	○			○,M	○	○,M	○,M	○,M	○,M	○						○							○	○	○
	Gloves and Mittens	○	○	○	○	○	○	○			○,M	○	○,M	○,M	○,M	○,M	○	○					○							○	○	○
	Men's and Boys' Neckwear	○	○	○	○	○	○	○			○,M	○	○,M	○,M	○,M	○,M	○						○							○	○	○
	Cut and Sew Apparel Contractors	○	○	○	○	○	○	○			○		○	○	○	○							○								○	○
	Leather Tanning	○	○	○	○	○	○	○			○,M	○	○,M	○,M	○,M	○,M	○	○					○							○	○	○
	Footwear	○	○	○	○	○	○	○			○,M	○	○,M	○,M	○,M	○,M	○						○								○	○
	Luggage and Leather Goods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Sawmills and Cut Stock, Resawing, and Planing	○	○	○	○	○	○	○			○,M	○	○,M	○,M	○,M	○,M	○	○					○							○	○	○
	Wood Preservation	○	○	○	○	○	○	○			○,M	○	○,M	○,M	○,M	○,M	○	○					○							○	○	○
	Hardwood and Softwood Veneer and Plywood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
	Engineered Wood Member, Truss, and Prefab. Wood Bldgs. Mfg.	○	○	○	○	○	○	○			○,M	○	○,M	○,M	○,M	○,M	○						○							○	○	○
	Reconstituted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Wood Window, Door, and Other Millwork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
	Wood Container and Pallet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
Manufactured Home (Mobile Home)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All Other Miscellaneous Wood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M	○	○,M	○,M	○,M	○,M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Sawmills	○	○	○	○	○	○	○			○		○	○	○								○								○	○	
	Wood Container and Pallet Manufacturing	○	○	○	○	○	○	○			○		○	○	○								○								○	○	
	Pulp Mills	○	○	○	○	○	○	○			O,M	○	O,M	O,M	O,M	O,M	○	○					○								○	○	○
	Paper and Paperboard Mills	○	○	○	○	○	○	○			O,M	○	O,M	O,M	O,M	O,M	○	○					○								○	○	○
	Paperbox and Contain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lastics, Foil, and Paper Packag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oated and Laminated Paper and Paperboard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Laminated Aluminum Foil Manufacturing for Flexible Packaging Uses	○	○	○	○	○	○	○			O,M	○	O,M	O,M	O,M	○							○								○	○	○
	Paper Office Supply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Sanitary Paper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Commercial Print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Manifold Business Forms and Checkbooks	○	○	○	○	○	○	○			O,M	○	O,M	O,M	O,M	○							○								○	○	○
	Book Print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Bookbinding, Blankbooks, Binders, and Postpress Services	○	○	○	○	○	○	○			O,M	○	O,M	O,M	O,M	○							○								○	○	○
Service Industries for the Printing Trade	○	○	○	○	○	○	○			O,M	○	O,M	O,M	O,M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Petroleum Refineries, Lubricating Oils and Coal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	
	Asphalt and Tar Roofing, Siding and Paving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Petro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Industrial Gas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Inorgan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Synthetic Organic Dye and Pigmen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Alkalies and Chlorin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arbon Blac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All Other Basic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Gum and Wood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yclic Crude and Intermediat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Ethyl Alcoho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All Other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lastics Material Resin and Synthetic Rubb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Organic Fib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Fertilizer and Related Chemicals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Pesticide and Other Agricultural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Drugs and Medicinal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aint and Coat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Adhesiv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Soaps, Detergents, Polishes and Related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Toilet Preparation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rinting In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Explosives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ustom Compounding of Purchased Resin	○	○	○	○	○	○	○			O,M	○	O,M	O,M		O,M	○						○							○	○	○
	Photographic Film, Paper, Plate, and Chemic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All Other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and Preparations	○	○	○	○	○	○	○			O,M	○	O,M	O,M		O,M	○						○							○	○	○
	Unlaminated Plastics Film and Sheet (Except Packag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lastic Bottles and Plastics Profile Shapes	○	○	○	○	○	○	○			O,M	○	O,M	O,M		O,M	○						○							○	○	○
	Plastics Pipe and Fittings	○	○	○	○	○	○	○			O,M	○	O,M	O,M		O,M	○						○							○	○	○
Laminated Plastics Plate, Sheet, and Shapes	○	○	○	○	○	○	○			O,M	○	O,M	O,M		O,M	○						○							○	○	○	
Plastic Foam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Plastics Plumbing Fixtur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Resilient Floor Coverings and Asbestos Product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Miscellaneous Plastics Products, N.E.C.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Tire Manufacturing (Except Retread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Tire Retread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Rubber and Plastics Hoses and Belting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Rubber Product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Vitreous China, Fine Earthenware and Porcelain Product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Brick and Other Structural Clay Products, Except Refractori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Clay and Nonclay Refractory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Flat Glass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O	
	Pressed and Blown Glass and Fabricated Glass Product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O	
	Glass Container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Cement, Lime, and Gypsum Products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O
	Ready-Mix Concrete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O
Concrete Products Manufacturin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Abrasive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ut Stone and Stone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	
	Ground or Treated Mineral and Earth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and Mineral Wool Mfg.	○	○	○	○	○	○	○			O,M	○	O,M	O,M		O,M	○						○							○	○	○
	Ready-mix Concrete Manufacturing	○	○	○	○	○	○	○			○		○	○		○							○							○	○	
	Other Concrete Products	○	○	○	○	○	○	○			○		○	○		○							○							○	○	
	Iron, Steel Mill, and Electrometallurgical Products Mfg.	○	○	○	○	○	○	○			O,M	○	O,M	O,M		O,M	○		○				○					○		○	○	○
	Alumina Refin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rimary Aluminum Production	○	○	○	○	○	○	○			O,M	○	O,M	O,M		O,M	○		○				○							○	○	○
	Secondary Smelting and Alloying of Aluminum	○	○	○	○	○	○	○			O,M	○	O,M	O,M		O,M	○		○				○							○	○	○
	Aluminum Sheet, Plate, Foil, and Extruded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
	Other Aluminum Rolling and Draw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Primary Smelting and Refining of Nonferrous Metals	○	○	○	○	○	○	○			O,M	○	O,M	O,M		O,M	○		○				○							○	○	○
	Copper Rolling, Drawing, and Extrud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opper Wire (Except Mechanical) Draw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Secondary Smelting, Refining, and Alloying of Copper	○	○	○	○	○	○	○			O,M	○	O,M	O,M		O,M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Rolling, Drawing, and Extruding of Other Nonferrous Metals	○	○	○	○	○	○	○			O,M	○	O,M	O,M	O,M	○	○					○							○	○	○		
	Secondary Smelting and Refining of Other Nonferrous Metals	○	○	○	○	○	○	○			O,M	○	O,M	O,M	O,M	○	○					○								○	○	○	
	Iron, Steel and Steel Investment Found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Nonferrous Foundries Including Aluminum, Copper, and Other	○	○	○	○	○	○	○			O,M	○	O,M	O,M	O,M	○						○					○		○	○	○		
	Forg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Custom Roll Form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rown and Closure Manufacturing (Including Metal Stamp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Powder Metallurgy Parts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Cutlery and Flatware (Except Precious)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Hand and Edge Too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Saw Blade and Handsaw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Kitchen Utensil, Pot, and Pan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refabricated Metal Building and Componen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Fabricated Structural Metal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late Wor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etal Window and Doo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Sheet Metal Wor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Ornamental and Architectural Metal Work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Power Boilers, Heat Exchangers, and Heavy Gauge Metal Tanks	○	○	○	○	○	○	○			O,M	○	O,M	O,M		O,M	○						○							○	○	○
	Metal Can and Other Metal Contain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Hardwar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Spring (Heavy and Light Gaug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Other Fabricated Wire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Machine Shops	○	○	○	○	○	○	○			O,M	○	O,M	O,M		O,M	○						○				○			○	○	○
	Precision Turned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Bolt, Nut, Screw, Rivet, and Washer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etal Heat Treat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etal Coating, Engraving and Allied Activit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Industrial Valv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Fluid Power Valve and Hose Fitt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Plumbing Fixture Fitting and Trim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Other Metal Valve and Pipe Fitt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Ball and Roller Bear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Small Arms and Ammunition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Fabricated Pipe and Pipe Fitting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Industrial Pattern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Enameled Iron and Metal Sanitary Ware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Other Miscellaneous Fabricated Metal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Fabricated Structural Metal Manufacturing	○	○	○	○	○	○	○			○		○	○		○							○							○	○	
	Sheet Metal Work Manufacturing	○	○	○	○	○	○	○			○		○	○		○							○							○	○	
	Ornamental and Architectural Metal Work Manufacturing	○	○	○	○	○	○	○			○		○	○		○							○							○	○	
	Machine Shops	○	○	○	○	○	○	○			○		○	○		○							○							○	○	
	Precision Turned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		○	○		○							○							○	○	
	Electroplating, Coating, Engraving and Allied Activities	○	○	○	○	○	○	○			○		○	○		○							○							○	○	
	Other Miscellaneous Fabricated Metal Product Manufacturing	○	○	○	○	○	○	○			○		○	○		○							○							○	○	
	Farm, Turf, Lawn, and Garden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Oil and Gas Field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Woodworking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Pulp and Paper Industries Machinery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Textile Machinery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Printing Trades Machinery and Equipment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Food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Special Industry Machinery, N.E.C.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Automatic Merchandising (Vending) Machin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Commercial Laundry Equipment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Optical Instrument and Lens Mfg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Photographic Equipment and Suppli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Service Industry Machinery, N.E.C.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Blowers, Exhaust, and Ventilating Fan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Heating Equipment, Except Warm Air Furnac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Refrigeration, Air-Conditioning and Warm Air Heating Equip.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Machine Tool Access. and Dies, Tools, Jigs, and Fixture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Metalworking Machinery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Turbines, Turbine Generators, and Other Engine Equipment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Mechanical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Gears	O	O	O	O	O	O	O			O,M	O	O,M	O,M		O,M	O						O							O	O	O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Clocks, Watches, and Watchcases	○	○	○	○	○	○	○			O,M	○	O,M	O,M		O,M	○						○						○	○	○
	Prerecorded Records, Magnetic Tapes, and Discs	○	○	○	○	○	○	○			O,M	○	O,M	O,M		O,M	○						○						○	○	○
	Magnetic and Optical Recording Media (Unrecorded)	○	○	○	○	○	○	○			O,M	○	O,M	O,M		O,M	○						○						○	○	○
	Electric Lamps	○	○	○	○	○	○	○			O,M	○	O,M	O,M		O,M	○						○						○	○	○
	Lighting Fixtures	○	○	○	○	○	○	○			O,M	○	O,M	O,M		O,M	○						○						○	○	○
	Household Appliances	○	○	○	○	○	○	○			O,M	○	O,M	O,M		O,M	○						○						○	○	○
	Power, Distribution, and Specialty Transformers	○	○	○	○	○	○	○			O,M	○	O,M	O,M		O,M	○						○						○	○	○
	Motors, Generators, and Motor-Generator Sets	○	○	○	○	○	○	○			O,M	○	O,M	O,M		O,M	○		○				○						○	○	○
	Switchgear, Switchboard Apparatus and Industrial Controls	○	○	○	○	○	○	○			O,M	○	O,M	O,M		O,M	○						○						○	○	○
	Storage Batteries, Primary Batte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Fiber Optic Cable, Other Communication and Energy Wire	○	○	○	○	○	○	○			O,M	○	O,M	O,M		O,M	○		○				○						○	○	○
	Wiring Devices	○	○	○	○	○	○	○			O,M	○	O,M	O,M		O,M	○						○						○	○	○
	Carbon and Graphite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ellaneous Industrial Electrical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
	Motor Vehicles and Passenger Car Bodies	○	○	○	○	○	○	○			O,M	○	O,M	O,M		O,M	○						○						○	○	○
	Truck and Bus Bodies; Truck Trailers	○	○	○	○	○	○	○			O,M	○	O,M	O,M		O,M	○						○						○	○	○
	Travel and Camping Trailers and Motor Homes	○	○	○	○	○	○	○			O,M	○	O,M	O,M		O,M	○						○						○	○	○
Carburetors, Pistons, Piston Rings, and Valves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Vehicular Lighting Equipment Manufactu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Motor Vehicle Seating and Interior Trim	○	○	○	○	○	○	○			O,M	○	O,M	O,M		O,M	○						○							○	○	○
	Motor Vehicle Metal Stampings	○	○	○	○	○	○	○			O,M	○	O,M	O,M		O,M	○						○							○	○	○
	Aircraft Indust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Aerospace Indust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Rail Transportation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Ship Building and Repairing	○	○	○	○	○	○	○			O,M	○	O,M	O,M		O,M	○						○							○	○	○
	Boat Building	○	○	○	○	○	○	○			O,M	○	O,M	O,M		O,M	○						○							○	○	○
	Motorcycles, Bicycles, and Parts	○	○	○	○	○	○	○			O,M	○	O,M	O,M		O,M	○						○							○	○	○
	Military Armoured Vehicle, Tank and Tank Components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ellaneous Transportation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Wood Kitchen Cabinets and Countertops	○	○	○	○	○	○	○			O,M	○	O,M	O,M		O,M	○						○							○	○	○
	Household Furniture and Wood Housings	○	○	○	○	○	○	○			O,M	○	O,M	O,M		O,M	○						○							○	○	○
	Fixtures and Office and Institutional Furniture	○	○	○	○	○	○	○			O,M	○	O,M	O,M		O,M	○						○							○	○	○
	Mattresses	○	○	○	○	○	○	○			O,M	○	O,M	O,M		O,M	○						○							○	○	○
	Blinds and Shades	○	○	○	○	○	○	○			O,M	○	O,M	O,M		O,M	○						○							○	○	○
	Wood Kitchen Cabinets and Countertops	○	○	○	○	○	○	○			○		○	○		○							○								○	○
	Nonupholstered Wood Household Furniture Manufacturing	○	○	○	○	○	○	○			○		○	○		○							○								○	○
Fixtures and Custom Architectural Woodwork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Pumps and Compressors; Measuring and Dispensing Pumps	○	○	○	○	○	○	○			O,M	○	O,M	O,M		O,M	○						○						○	○	○	
	Conveying and Elevating Equipment and Industrial Trucks	○	○	○	○	○	○	○			O,M	○	O,M	O,M		O,M	○						○							○	○	○
	Hoists, Cranes, and Monorails	○	○	○	○	○	○	○			O,M	○	O,M	O,M		O,M	○						○							○	○	○
	Power-Driven Handtools	○	○	○	○	○	○	○			O,M	○	O,M	O,M		O,M	○						○							○	○	○
	Welding Apparatus	○	○	○	○	○	○	○			O,M	○	O,M	O,M		O,M	○						○							○	○	○
	Packaging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Industrial Furnaces and Ovens	○	○	○	○	○	○	○			O,M	○	O,M	O,M		O,M	○						○							○	○	○
	Fluid Power Equipment, Except Valves	○	○	○	○	○	○	○			O,M	○	O,M	O,M		O,M	○						○							○	○	○
	Scales and Balances	○	○	○	○	○	○	○			O,M	○	O,M	O,M		O,M	○						○							○	○	○
	Industry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Special Dies, Tools, Jigs, Fixtures and Mold Manufacturing	○	○	○	○	○	○	○			○		○	○		○							○								○	○
	Cutting Tool and Machine Tool Accessory Manufacturing	○	○	○	○	○	○	○			○		○	○		○							○								○	○
	Industry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		○	○		○							○								○	○
	Computing and Office Machines	○	○	○	○	○	○	○			O,M	○	O,M	O,M		O,M	○		○				○					○	○	○	○	○
	Communications Equip.; Search and Detection Equip.	○	○	○	○	○	○	○			O,M	○	O,M	O,M		O,M	○						○							○	○	○
	Radio Receivers and Television Sets and Related Equipment	○	○	○	○	○	○	○			O,M	○	O,M	O,M		O,M	○						○							○	○	○
	Electronic Components and Accesso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
	Electromedical, and Electrotherapeutic Apparatus	○	○	○	○	○	○	○			O,M	○	O,M	O,M		O,M	○						○							○	○	○
Instruments	○	○	○	○	○	○	○			O,M	○	O,M	O,M		O,M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anufacturing	Surgical and Medical Instruments, Apparatus, and Supplies	○	○	○	○	○	○	○			O,M	○	O,M	O,M		O,M	○						○						○	○	○	
	Dental Equipment and Suppl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Ophthalmic Goods	○	○	○	○	○	○	○			O,M	○	O,M	O,M		O,M	○	○					○							○	○	○
	Dental Laboratories	○	○	○	○	○	○	○			O,M	○	O,M	O,M		O,M	○	○					○							○	○	○
	Jewelry, Jewelers' Findings, and Lapidary Work	○	○	○	○	○	○	○			O,M	○	O,M	O,M		O,M	○						○							○	○	○
	Hollowware and Flatware	○	○	○	○	○	○	○			O,M	○	O,M	O,M		O,M	○						○							○	○	○
	Sporting and Athletic Goods	○	○	○	○	○	○	○			O,M	○	O,M	O,M		O,M	○						○							○	○	○
	Toys, Games, Dolls, and Children's Vehicles, Exc. Bicycles	○	○	○	○	○	○	○			O,M	○	O,M	O,M		O,M	○						○							○	○	○
	Pens, Pencils, Marking Devices, and Artists' Materials	○	○	○	○	○	○	○			O,M	○	O,M	O,M		O,M	○						○							○	○	○
	Carbon Paper and Inked Ribbons	○	○	○	○	○	○	○			O,M	○	O,M	O,M		O,M	○						○							○	○	○
	Signs, Displays, and Advertising Specialties	○	○	○	○	○	○	○			O,M	○	O,M	O,M		O,M	○						○							○	○	○
	Gaskets, Packings, and Seals	○	○	○	○	○	○	○			O,M	○	O,M	O,M		O,M	○						○							○	○	○
	Musical Instruments	○	○	○	○	○	○	○			O,M	○	O,M	O,M		O,M	○						○							○	○	○
	Buttons, Needles, Pins, Fasteners, and Similar Notions	○	○	○	○	○	○	○			O,M	○	O,M	O,M		O,M	○						○							○	○	○
	Brooms, Brushes, and Mops	○	○	○	○	○	○	○			O,M	○	O,M	O,M		O,M	○						○							○	○	○
	Burial Caskets	○	○	○	○	○	○	○			O,M	○	O,M	O,M		O,M	○						○							○	○	○
	Miscellaneous Manufactured Products	○	○	○	○	○	○	○			O,M	○	O,M	O,M		O,M	○						○							○	○	○
	Dental Laboratories	○	○	○	○	○	○	○			○		○	○		○			○				○								○	○
	Jewelry, Jewelers' Findings, and Lapidary Work	○	○	○	○	○	○	○			○		○	○		○							○								○	○
	Sporting and Athletic Goods	○	○	○	○	○	○	○			○		○	○		○							○								○	○
Signs, Displays, and Advertising Specialties	○	○	○	○	○	○	○			○		○	○		○							○								○	○	
Miscellaneous Manufactured Products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Mining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Extraction	○	○	○	○	○	○	○			○		○	○	○	○	○	○					○								○
	Natural Gas Liquid Extraction	○	○	○	○	○	○	○			○		○	○	○	○	○	○	○					○							○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Extraction	○	○	○	○	○	○	○					○	○		○								○							○
	Coal Mining	○	○	○	○	○	○	○			○		○	○	○	○	○	○	○					○				○			○
	Iron Ore Mining	○	○	○	○	○	○	○			○		○	○	○	○	○	○	○					○							○
	Copper, Lead, Zinc, Gold, and Silver Ore Mining	○	○	○	○	○	○	○			○		○	○	○	○	○	○	○					○				○			○
	Uranium-Radium-Vanadium Ore Mining	○	○	○	○	○	○	○			○		○	○	○	○	○	○	○					○							○
	Miscellaneous Metal Ore Mining	○	○	○	○	○	○	○			○		○	○	○	○	○	○	○					○							○
	Stone, Sand, and Gravel Mining or Quarrying	○	○	○	○	○	○	○			○		○	○	○	○	○	○	○					○							○
	Clay, Ceramic, and Refractory Mineral Mining	○	○	○	○	○	○	○			○		○	○	○	○	○	○	○					○							○
	Potash, Soda, and Borate Mineral Mining	○	○	○	○	○	○	○			○		○	○	○	○	○	○	○					○							○
	Phosphate Rock Mining	○	○	○	○	○	○	○			○		○	○	○	○	○	○	○					○							○
	Miscellaneous Chemical and Fertilizer Mineral Mining	○	○	○	○	○	○	○			○		○	○	○	○	○	○	○					○							○
	Miscellaneous Nonmetallic Mineral Mining	○	○	○	○	○	○	○			○		○	○	○	○	○	○	○					○							○
	Stone Mining and Quarrying, and Sand and Gravel Mining	○	○	○	○	○	○	○					○	○		○								○							○
	Oil and Gas Field Services	○	○	○	○	○	○	○			○		○	○	○	○	○	○						○				○			○
Mineral Contract Services	○	○	○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Other Services (except Public Administration)	Repair, Laundry, and Other Selected Services (Enterprise Support)	○	○	○	○	○	○	○								○			○	○		○	○			○	○			○	○	
	Motor Vehicle Repair and Maintenance	○	○	○	○	○	○	○											○	○			○				○			○	○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	○	○	○	○	○	○											○	○			○			○	○			○	○	
	Personal Care Services	○	○	○	○	○	○	○											○				○							○	○	
	Other Personal Services	○	○	○	○	○	○	○											○				○							○	○	
	Laundry Services	○	○	○	○	○	○	○											○				○				○			○	○	
	Grantmaking and Advocacy	○	○	○	○	○	○	○											○				○				○			○	○	
Civic, Social, and Other Membership Organizations	○	○	○	○	○	○	○											○				○				○			○	○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Enterprise Support)	○	○	○	○	○	○	○								○			○	○		○	○			○	○			○	○	
	Legal Services	○	○	○	○	○	○	○											○				○			○	○			○	○	
	Accounting, Tax Preparation, Bookkeeping, and Payroll Services	○	○	○	○	○	○	○											○	○			○			○	○			○	○	
	Architectural Services	○	○	○	○	○	○	○											○	○			○			○	○			○	○	
	Engineering Services	○	○	○	○	○	○	○											○	○			○			○	○			○	○	
	Surveying and Mapping Services	○	○	○	○	○	○	○											○	○			○			○	○			○	○	
	Specialized Design Services	○	○	○	○	○	○	○											○	○			○			○	○			○	○	
	Computer Systems Design and Related Services	○	○	○	○	○	○	○											○	○			○			○	○			○	○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s	○	○	○	○	○	○	○											○	○			○			○	○		○	○	○	○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	○	○	○	○	○	○											○	○			○			○	○			○	○	
	Advertising and Related Services	○	○	○	○	○	○	○											○	○			○			○	○			○	○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	Real Estate Services	○	○	○	○	○	○	○											○				○				○			○	○	
	Real Estate Lessors	○	○	○	○	○	○	○												○				○				○			○	○
	Rental and Leasing of Automotive Equipment (Without Drivers)	○	○	○	○	○	○	○												○	○			○				○			○	○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Consumer Goods	○	○	○	○	○	○	○												○	○			○				○			○	○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Commercial and Industrial	○	○	○	○	○	○	○												○	○			○			○	○			○	○
	Miscellaneous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	○	○	○	○	○	○												○				○			○			○	○	
Retail Trade	Automobile Dealers	○	○	○	○	○	○	○											○	○	○		○		○		○		○	○	○	
	Recreational Vehicle, Boat, and Other Motor Vehicle Dealers	○	○	○	○	○	○	○												○	○	○		○		○		○		○	○	○
	Automotive Parts, Accessories, and Tire Stores	○	○	○	○	○	○	○												○	○	○		○		○		○		○	○	○
	Furniture Stores	○	○	○	○	○	○	○												○	○	○		○		○		○		○	○	○
	Home Furnishings Stores	○	○	○	○	○	○	○												○	○	○		○		○		○		○	○	○
	Electronics and Appliance Stores	○	○	○	○	○	○	○												○	○	○		○		○		○		○	○	○
	Building Material and Supplies Dealers	○	○	○	○	○	○	○												○	○	○		○		○		○		○	○	○
	Lawn and Garden Equipment and Supplies Dealers	○	○	○	○	○	○	○												○	○	○		○		○		○		○	○	○
	Food and Beverage Stores	○	○	○	○	○	○	○												○	○	○		○		○		○		○	○	○
	Health, Optical Goods, and Personal Care Stores	○	○	○	○	○	○	○												○	○	○		○		○		○		○	○	○
	Gasoline Stations	○	○	○	○	○	○	○												○	○	○		○		○		○		○	○	○
	Clothing and Clothing Accessories Stores	○	○	○	○	○	○	○												○	○	○		○		○		○		○	○	○
	Shoe Stores	○	○	○	○	○	○	○												○	○	○		○		○		○		○	○	○
	Jewelry Stores	○	○	○	○	○	○	○												○	○	○		○		○		○		○	○	○
	Sporting Goods Stores	○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tail Trade	Hobby, Toy, and Sewing Stores	○	○	○	○	○	○	○											○	○	○		○		○				○	○	○
	Musical Instrument, Music, and Video Stores	○	○	○	○	○	○	○											○	○	○		○		○		○		○	○	○
	Book Stores and Newsstands	○	○	○	○	○	○	○											○	○	○		○		○		○		○	○	○
	Department, Variety, and Other General Merchandise Stores	○	○	○	○	○	○	○											○	○	○		○		○		○	○	○	○	○
	Warehouse Clubs and Supercenters	○	○	○	○	○	○	○											○	○	○		○		○		○	○	○	○	○
	Florists	○	○	○	○	○	○	○											○	○	○		○		○		○		○	○	○
	Pet and Pet Supplies Stores	○	○	○	○	○	○	○											○	○	○		○		○				○	○	○
	Antique and Used Merchandise Stores	○	○	○	○	○	○	○											○	○	○		○		○		○		○	○	○
	Manufactured (Mobile) Home Retailers	○	○	○	○	○	○	○											○	○	○		○		○				○	○	○
	Tobacco Stores	○	○	○	○	○	○	○											○	○	○		○		○		○		○	○	○
	Art Dealers and Miscellaneous Store Retailers	○	○	○	○	○	○	○											○	○	○		○		○		○		○	○	○
	Office Supply, Stationery, and Gift Stores	○	○	○	○	○	○	○											○	○	○		○		○		○		○	○	○
	Electronic Shopping, Vending Operators, and Direct Selling	○	○	○	○	○	○	○											○	○	○		○		○		○		○	○	○
Fuel Dealers	○	○	○	○	○	○	○											○	○	○		○				○		○	○	○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Air Transportation	○	○	○	○	○	○	○										○				○						○	○	○	
	Water Transportation	○	○	○	○	○	○	○										○				○							○	○	
	Trucking and Warehousing (Enterprise Support)	○	○	○	○	○	○	○			○	○						○				○	○				○		○	○	○
	Trucking and Warehousing	○	○	○	○	○	○	○											○				○				○		○	○	○
	Transit and Ground Passenger Transportation	○	○	○	○	○	○	○											○				○				○		○	○	○
	Pipelines	○	○	○	○	○	○	○											○				○				○		○	○	○
	Transportation Services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Utilities	Electric, Gas, and Water Utilities	○	○	○	○	○	○	○											○	○			○				○			○			○	○
	Electric, Gas, and Water Utilities (Consolidated)	○	○	○	○	○	○	○												○	○			○				○		○	○	○	○	
Wholesale Trade	Motor Vehicles	○	○	○	○	○	○	○			○	○				○			○	○	○		○		○		○		○	○	○	○		
	Motor Vehicles Parts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Furniture and Homefurnishings	○	○	○	○	○	○	○			○	○				○			○	○	○		○		○		○		○	○	○	○		
	Lumber and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	○	○	○	○	○	○			○	○				○			○	○	○		○		○		○		○	○	○	○		
	Photographic and Commercial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Computers and Office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Professional Equipment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Ferrous and Nonferrous Metals	○	○	○	○	○	○	○			○	○				○			○	○	○		○		○		○		○	○	○	○		
	Coal, Coke, and Other Minerals and Ores	○	○	○	○	○	○	○			○	○				○			○	○	○		○		○		○		○	○	○	○		
	Electrical Goods	○	○	○	○	○	○	○			○	○				○			○	○	○		○		○		○		○	○	○	○		
	Hardware, and Plumbing and Heating Equipment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Construction and Mining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Farm and Garden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	○	○	○	○	○	○			○	○				○			○	○	○		○		○		○		○	○	○	○		
	Industrial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Service Establishment Equipment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Transportation Equipment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holesale Trade	Sporting, Recreational, Hobby Goods, Toys,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Scrap and Recyclable Materials	○	○	○	○	○	○	○			○	○				○			○	○	○		○		○		○		○	○	○
	Jewelry, Watches, and Precious Stones and Metals	○	○	○	○	○	○	○			○	○				○			○	○	○		○		○		○		○	○	○
	Miscellaneous Durable Goods	○	○	○	○	○	○	○			○	○				○			○	○	○		○		○		○		○	○	○
	Paper and Paper Products	○	○	○	○	○	○	○			○	○				○			○	○	○		○		○		○		○	○	○
	Drugs, Drug Proprietaries and Druggists' Sundries	○	○	○	○	○	○	○			○	○				○			○	○	○		○		○		○		○	○	○
	Piece Goods and Notions	○	○	○	○	○	○	○			○	○				○			○	○	○		○		○		○		○	○	○
	Men's and Women's Apparel and Footwear	○	○	○	○	○	○	○			○	○				○			○	○	○		○		○		○		○	○	○
	Grocery Wholesalers	○	○	○	○	○	○	○			○	○				○			○	○	○		○		○		○		○	○	○
	Frozen Foods	○	○	○	○	○	○	○			○	○				○			○	○	○		○		○		○		○	○	○
	Dairy Products	○	○	○	○	○	○	○			○	○				○			○	○	○		○		○		○		○	○	○
	Poultry, Poultry Products, Meat, Meat Products, Fish, and Seafood	○	○	○	○	○	○	○			○	○				○			○	○	○		○		○		○		○	○	○
	Confectionery	○	○	○	○	○	○	○			○	○				○			○	○	○		○		○		○		○	○	○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	○	○	○	○	○			○	○				○			○	○	○		○		○		○		○	○	○
	Farm-Product Raw Materials	○	○	○	○	○	○	○			○	○				○			○	○	○		○		○		○		○	○	○
	Chemicals and Allied Products	○	○	○	○	○	○	○			○	○				○			○	○	○		○		○		○		○	○	○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	○	○	○	○	○	○			○	○				○			○	○	○		○		○		○		○	○	○
	Beer, Wine, and Distilled Alcoholic Beverages	○	○	○	○	○	○	○			○	○				○			○	○	○		○		○		○		○	○	○
	Farm Supplies	○	○	○	○	○	○	○			○	○				○			○	○	○		○		○		○		○	○	○
	Books, Periodicals, Flowers, and Florists' Supplies	○	○	○	○	○	○	○			○	○				○			○	○	○		○		○		○		○	○	○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	○	○	○	○	○	○			○	○				○			○	○	○		○		○		○		○	○	○	
Paints, Varnishes, Wallpaper and Supplies	○	○	○	○	○	○	○			○	○				○			○	○	○		○		○		○		○	○	○	
Miscellaneous Nondurable Goods	○	○	○	○	○	○	○			○	○				○			○	○	○		○		○		○		○	○	○	

<부록 6> 미국경제센서스의 약식조사표(Classification Form)_NC99023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NC-99023

2002 ECONOMIC CENSUS
GENERAL CLASSIFICATION REPORT

OMB No. 0607-0884: Approval Expires 7/31/2004

DUE DATE
30 DAYS AFTER
RECEIPT OF FORM

NC-99023

An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control number is printed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is form. If OMB number is not shown on this questionnaire, this survey is invalid.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is estimated to take 10 minutes to complete this questionnaire.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Paperwork Project 0607-0884, Room 3110, Federal Building 3,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20233-1800. You may e-mail comments to Paperwork@census.gov; use "Paperwork Project 0607-0884" as the subject.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Return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Ten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e mailing address.)

1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this establishment on its latest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If this establishment did not file form 941, Go to 2 .	0021 <input type="checkbox"/> Yes 0022 <input type="checkbox"/> No - Enter current EIN (9 digits) → 0025
2	PHYSICAL LOCATION A. Is this establishment's physical location the same as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0021 <input type="checkbox"/> Yes 0022 <input type="checkbox"/> No - Enter physical location →
	1125 Number and street _____ _____	1126 City, town, village, etc. 1127 State 0028 ZIP Code _____ _____ _____
	B. Is this establishment physically located inside the legal boundaries of the city, town, village, etc.? 0041 <input type="checkbox"/> Yes 0042 <input type="checkbox"/> No 0043 <input type="checkbox"/> No legal boundaries 0044 <input type="checkbox"/> Do not know	
	C. Type of municipality where this establishment is physically located 0051 <input type="checkbox"/> City, village, or borough 0052 <input type="checkbox"/> Town or township 1152 <input type="checkbox"/> Other or do not know	
3	LEASED EMPLOYMENT Did this establishment have any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 leasing company's EIN? Exclude: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 Purchased or managed services, such as janitorial, guard, or landscape services •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purchased from another firm, such as software consulting,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or accounting services.	0241 <input type="checkbox"/> Yes 0242 <input type="checkbox"/> No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CONTINUE ON PAGE 2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In the past 12 months, what was this establishment's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Find the Economic Sector (e.g., Service, Retail, Construction, Wholesale, Transportation) that best describes your business or activity. Within that sector, choose ONE description that best fits your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Mark (X) only ONE box.

+ SERVICE

0700

HEALTH SERVICES AND SOCIAL ASSISTANCE

- 624 410 00 7 Child Day Care Service
- 330 118 00 6 Dental Lab
- 621 410 00 0 Family Planning Center
- 621 403 00 6 Freestanding Ambulatory Surgical or Emergency Center
- 621 610 00 5 Home Health Care Service
- 621 310 00 2 Office of Chiropractor
- 621 210 00 4 Office of Dentist
- 621 320 00 1 Office of Optometrist
- 621 301 00 2 Office of Podiatrist
- 621 111 00 4 Office of Physician (MD or DO), Except Mental Health
- 621 112 00 2 Office of Physician (MD or DO), Mental Health
- 621 420 00 9 Outpatient Mental Health or Substance Abuse Center
- 623 210 00 2 Residential Care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 623 312 00 8 Residential Care for the Elderly - No Health Service Provided
- 623 000 00 9 Residential Care for Youth or Offenders
- 624 110 00 3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Children and Youth
- 624 120 00 2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Disabled
- 624 100 00 5 Social Assistance Service for Families and All Others
- Other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AUTOMOTIVE REPAIR SERVICES AND MAINTENANCE

- 811 112 00 2 Automotive Exhaust System Repair
- 811 122 00 1 Automotive Glass Replacement Shop
- 811 101 00 6 Automotive Oil Change and Lubrication Shop
- 811 113 00 0 Automotive Transmission Repair Shop
- 811 118 20 7 Brake, Front End, and Wheel Alignment Shop
- 811 102 00 4 Carwash
- 811 111 00 4 General Automotive Repair Shop
- 811 121 10 2 Paint Or Body Repair Shop
- Other Automotive Repair Services and Maintenanc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OTHER REPAIR SERVICES (EXCEPT AUTOMOTIVE)

- 811 412 00 6 Appliance Repair and Maintenance
- 811 310 00 3 Commercial, Farming, or Industrial Equipment Repair and Maintenance
- 811 212 30 7 Computer Repair and Maintenance
- 811 211 00 2 Consumer Electronics Repair and Maintenance
- 811 420 00 9 Furniture Repair
- 811 400 40 8 Garment Repair and Alteration Service
- 811 212 40 6 Office Machine Repair and Maintenance
- Other Repair Services (Except Automotiv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ACCOMMODATIONS

- 721 101 00 5 Bed and Breakfast Inn
- 721 120 00 4 Casino Hotel
- 721 110 00 5 Hotel (Except Casino Hotel), Motel, or Motor Hotel
- 721 214 00 5 Overnight Recreation or Vacation Camp (Except Campground)
- 721 310 00 1 Rooming and Boarding House
- 721 211 00 1 Trailer Park, RV (Recreational Vehicle) Park, or Campground (Except Residential)
- Other Traveler Accommodation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FOOD SERVICES

- 722 213 40 2 Bagel Shop
- 722 212 00 8 Cafeteria
- 722 320 00 9 Caterer
- 722 213 50 1 Coffee Shop
- 722 213 60 0 Cookie Shop
- 722 213 30 3 Donut Shop
- 722 410 00 8 Bar, Tavern, Pub, or Other Drinking Place (Alcoholic Beverages)
- 722 310 00 0 Food Service Contractor
- 722 213 20 4 Frozen Yogurt Shop
- 722 110 00 4 Full-Service Restaurant
- 722 213 10 5 Ice Cream and Soft Serve Shop
- 722 211 00 0 Limited-Service Restaurant
- 722 213 70 9 Other Snack and Nonalcoholic Beverage Bar
- Other Food Servic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CONTINUE ON PAGE 3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 SERVICE - Continued

OTHER SERVICES

- 713 120 00 4 Arcade or Family Fun Center
- 541 310 00 0 Architectural Service
- 812 111 00 3 Barber Shop
- 812 112 00 1 Beauty Shop
- 561 740 00 2 Carpet and Upholstery Cleaning Service
- 541 211 00 0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 813 410 40 4 Civic or Social Club (Except Scouting Organizations)

- 812 310 20 0 Coin-Operated Laundry or Drycleaning
- 561 440 10 8 Collection Agency
- 611 610 10 6 Dance School
- 812 101 00 5 Diet or Weight Reducing Service
- 812 320 20 8 Drycleaning Plant
- 561 330 00 2 Employee Leasing Service
- 561 310 00 4 Employment Placement Agency
- 541 330 00 7 Engineering Service
- 541 620 00 1 Environmental Consulting Service
- 561 710 00 5 Exterminating and Pest Control Service
- 713 040 00 6 Fitness Center, Gymnasium, or Athletic Club

- 812 210 10 2 Funeral Home
- 713 010 00 8 Golf Course or Country Club
- 541 430 00 5 Graphic Design Service
- 541 410 00 7 Interior Design Service
- 561 611 00 5 Investigation Service
- 561 720 00 4 Janitorial Service
- 561 730 00 3 Landscape Service
- 541 110 10 2 Law Office
- 561 622 00 2 Locksmith
- 713 030 00 6 Marina
- 512 131 00 4 Motion Picture Theater (Except Drive-In)
- 812 113 00 0 Nail Salon
- 812 030 00 6 Parking Lot or Garage
- 561 430 00 1 Photocopying and Duplicating Service
- 812 022 00 3 Photofinishing, One-Hour
- 812 021 00 5 Photofinishing (Except One-Hour)
- 541 021 00 3 Photographic Studio, Portrait
- 561 000 00 4 Printing Broker
- 813 000 40 5 Property Owners' Association
- 561 621 00 4 Security Systems Service
- 511 210 00 7 Software Publishing
- 611 620 00 6 Sports and Recreation Instruction
- 541 370 00 3 Surveying or Mapping (Except Geophysical) Service
- 561 700 20 5 Swimming Pool Cleaning and Maintenance
- 561 320 00 3 Temporary Help Service
- 541 101 00 3 Title Abstract and Settlement Office
- 541 040 00 3 Veterinarian's Office
- 532 230 00 0 Video Tape Rental
- Other Servic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 TRANSPORTATION

TRUCKING

- 484 230 20 6 Agricultural Products Trucking, Long-Distance
- 484 220 20 7 Agricultural Products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 484 220 30 6 Dump Trucking
- 484 122 00 7 General Freight Trucking, LTL, Long-Distance
- 484 110 20 0 General Freight Trucking Without Storage, LTL, Local
- 484 121 00 0 General Freight Trucking, TL, Long-Distance
- 484 110 10 1 General Freight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TL
- 484 220 40 5 Specialized Freight (Except Waste) Trucking Without Storage, Local
- 484 230 30 5 Specialized Freight (Including Waste) Trucking, Long-Distance
- 484 210 10 0 Used Household and Office Goods Moving Without Storage, Local
- 484 210 20 8 Used Household and Office Goods Moving, Long-Distance
- Other Trucking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OTHER TRANSPORTATION

- 488 110 10 8 Airport Operation and Terminal Service
- 621 010 00 0 Ambulance or Rescue Service, Except by Air
- 488 510 20 7 Arrangement of Transportation of Freight/Cargo
- 402 110 20 0 Courier Service - Air
- 402 210 00 0 Local Messenger and Local Delivery
- 402 110 10 1 Courier Service (Except Air or Local)
- 488 510 10 8 Freight Forwarding
- 485 320 00 6 Limousine or Luxury Passenger Rental with Driver
- 485 410 10 4 School Bus Service
- 485 001 00 4 Special Needs Transportation (Senior Citizen, Handicapped, Infirm)
- 562 111 00 5 Solid Waste (Except Hazardous Waste) Collection, Local
- 562 112 00 3 Hazardous Waste Collection
- 485 310 00 7 Taxicab Service
- 561 510 00 0 Travel Agency
- 488 410 00 2 Towing Service, Motor Vehicle
- 403 110 10 0 Warehousing and Storage, General Merchandise
- 531 130 00 3 Self-Storage and Mini-Warehousing
- Other Transportation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 RETAIL TRADE

- 441 310 40 6 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Store (Except Used)
- 441 310 50 5 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Store, Used
- 445 310 00 6 Beer, Wine, and Liquor Store
- 451 110 21 7 Bicycle Shop
- 441 110 00 4 Car Dealer, New and Used
- 441 120 00 3 Car Dealer, Used Only
- 443 120 30 8 Computer Software Store
- 443 120 10 0 Computer Store (Custom Assembly)
- 443 120 20 9 Computer Store (Except Custom Assembly)
- 445 120 00 9 Convenience Food Store
- 454 110 50 3 Electronic Shopping, General Merchandise
- 454 110 61 0 Electronic Shopping,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 454 110 62 8 Electronic Shopping, Pharmacy
- 454 110 63 6 Electronic Shopping, Other Specialized Merchandise
- 454 110 70 1 Mail-Order House, General Merchandise
- 454 110 81 8 Mail-Order House,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 454 110 82 6 Mail-Order Pharmacy
- 454 110 83 4 Mail-Order House, Other Specialized Merchandise
- 448 140 00 4 Family Clothing Store
- 442 210 00 1 Floor Coverings Store
- 453 110 00 9 Florist
- 442 110 10 2 Furniture Store
- 447 110 00 8 Gasoline Station With Convenience Store
- 447 190 10 9 Gasoline Station With No Convenience Store
- 451 110 10 0 General-Line Sporting Goods Store
- 453 220 00 6 Gift, Novelty, Craft and Souvenir Store
- 444 130 00 9 Hardware Store
- 443 111 00 0 Household Appliance Store
- 442 299 00 4 Houseware and Kitchenware Store
- 445 210 00 8 Meat Market
- 444 220 40 4 Nursery and Garden Center
- 444 210 00 9 Outdoor Power Equipment Store
- 453 010 00 2 Pet and Pet Supplies Store
- 446 110 10 8 Pharmacy and Drug Store
- 443 112 40 4 Radio, TV, and Other Electronics Store
- 522 298 10 8 Pawn Shop
- 453 310 20 3 Second-Hand Store (Except Pawn Shop)
- 445 110 00 0 Supermarket or Grocery Store
- 441 320 00 9 Tire Dealer
- 447 190 20 8 Truck Stop
- 442 291 00 1 Window Treatment Store
- 448 120 00 6 Women's Clothing Store
- 448 210 20 3 Women's Shoe Store
- Other Retail Business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 WHOLESALE TRADE

Mark (X) only ONE box in part 1 and ONE box in part 2.

1. Kind of Business or Activity

- 421 430 12 5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Sold For End Use
- 421 430 11 7 Computers and Peripheral Equipment Sold For Resale
- 421 610 00 7 Electrical Apparatus and Equipment
- 421 940 10 7 Jewelry, Watches, and Gemstones
- 422 210 10 4 General-Line Drugs, Cosmetics, and Toiletries
- 422 210 20 3 Specialty-Line Drugs, Cosmetics, and Toiletries
- 421 910 00 1 Sporting and Recreational Goods
- 421 450 10 7 Surgical, Medical, and Hospital Equipment and Supplies
- 422 320 00 2 Men's and Boys' Clothing
- 422 330 00 1 Women's, Children's, and Infants' Clothing
- Other Wholesale Trade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2. Type of Operation

0900

- 11 Merchant Wholesaler
- 42 Broker, Representing Buyers and Sellers
- 46 Manufacturers' Agent
- 49 Electronic Marketer
- Other Type of Operation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 MANUFACTURING

1700

- 323 112 00 3 Commercial Flexographic Printing
- 323 110 00 7 Commercial Lithographic Printing
- 323 113 00 1 Commercial Screen Printing
- 323 115 00 6 Digital Printing
- 323 114 00 9 Quick Printing
- Other Commercial Printing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 113 310 00 7 Logging Camp and Logging Contractor
- 332 710 00 3 Machine Shop
- 312 130 00 8 Winery
- Other Manufacturing - Specify *z*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 CONSTRUCTION

233 110 00 6 Land Subdivision

SPECIALTY TRADE CONTRACTOR

- 235 710 10 0 Asphalt and Concrete Paving Contractor
- 235 510 00 6 Carpentry Finishing Contractor
- 235 510 10 4 Carpentry Framing Contractor
- 235 710 00 2 Concrete Contractor (Except Paving)
- 235 420 00 8 Drywall or Insulation Contractor
- 235 310 00 0 Electrical Contractor
- 235 030 00 5 Excavation Contractor (Building)
- 234 090 40 6 Excavation Contractor (Except Building)
- 235 520 00 4 Flooring Contractor
- 235 020 00 6 Glass Contractor
- 235 210 10 1 Highway and Traffic Line Painting
- 235 410 00 8 Masonry, Stone Setting, and Other Stone Work Contractor
- 235 210 00 3 Painting and Wall Covering Contractor
- 235 110 00 5 Plumbing,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HVAC) Contractor
- 235 610 10 2 Roofing Contractor
- 235 610 00 4 Sheet Metal Contractor (Except HVAC, Roofing and Siding)
- 235 610 20 1 Siding Contractor (Including Gutters and Downspouts)
- 235 430 00 6 Tile, Marble, Terrazzo, and Mosaic Contractor
- Other Specialty Trade Contractor - *Specify* _____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 234 110 00 5 Highway and Street Construction
- 234 120 10 3 Bridge Construction
- 234 010 00 0 Oil or Gas Pipelines, Mains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 234 030 10 5 Petrochemical Plants and Refineries Construction
- 234 020 00 7 Power and Communication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 234 030 20 4 Power Generation Plants and Power Transformer Stations Construction
- 234 120 00 5 Tunnel Construction
- 234 010 10 7 Water or Sewer Lines, Mains and Related Structures Construction
- Other Heavy Construction - *Specify* _____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 CONSTRUCTION - Continued

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233 210 10 3 Single Family - General Contractor
- 233 220 10 2 Multifamily - General Contractor
- 233 210 20 2 Single Family - Operative Builder
- 233 220 20 1 Multifamily - Operative Builder
- 233 210 30 1 Single Family - Remodeling Contractor
- 233 220 30 0 Multifamily - Remodeling Contractor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233 310 10 1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Warehouse Construction
- 233 320 00 2 Commercial and Institutional Building Construction
- Other Nonresidential Building Construction - *Specify* _____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 FINANCE, INSURANCE & REAL ESTATE

- 523 001 00 0 Administrator of Private Estate
- 813 211 00 0 Grantmaking Foundation
- 524 210 00 2 Insurance Agency and Brokerage
- 524 201 00 2 Insurance Claims Adjusting
- 523 030 00 6 Investment Advice, Without Portfolio Management
- 531 110 10 4 Lessor of Apartment Buildings
- 531 120 20 2 Lessor of Manufacturing and Industrial Buildings
- 531 120 10 3 Lessor of Professional and Other Buildings
- 531 120 30 1 Lessor of Shopping Centers and Retail Stores
- 531 120 00 5 Lessor of Other Nonresidential Buildings
- 531 110 00 6 Lessor of Other Residential Buildings
- 522 310 00 2 Mortgage and Other Loan Brokers
- 523 020 10 6 Portfolio Management
- 531 312 00 7 Property Management - Nonresidential Real Estate
- 531 311 00 0 Property Management - Residential Real Estate
- 531 210 00 4 Real Estate Agent or Broker - Nonresidential
- 531 210 10 2 Real Estate Agent or Broker - Residential
- 531 320 00 0 Real Estate Appraiser
- 523 120 00 4 Securities Brokerage
- 524 202 10 0 Third-Party Administration - Pension, Health, and Welfare Funds
- 524 202 00 1 Third-Party Administration of Insurance Funds
- 523 001 00 0 Trustees in Bankruptcy
- Other Finance, Insurance and Real Estate - *Specify* _____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8.)

4 PRINCIPAL BUSINESS OR ACTIVITY - Continued

+ RENTAL AND LEASING SERVICES, EXCEPT REAL ESTATE

VEHICULAR

- 532 411 00 7 Aircraft Rental and Leasing Without Pilot
- 532 111 00 2 Car (Passenger) Rental Without Driver
- 532 112 00 0 Car (Passenger) Leasing Without Driver
- 532 411 10 5 Commercial Vessel Rental and Leasing Without Crew
- 532 411 20 4 Railroad Car Rental and Leasing
- 532 120 20 1 Truck Leasing Without Driver
- 532 120 10 2 Truck Rental Without Driver
- 532 120 00 4 Utility Trailer and Recreational Vehicle Rental and Leasing

OTHER, EXCEPT REAL ESTATE

- 532 310 00 0 General Rental Center
- 234 000 30 7 Crane Rental With Operator
- 234 000 40 6 Construction Equipment Rental (Except Crane) With Operator
- 532 420 00 8 Computer Rental and Leasing
- 532 420 10 6 Office Furniture and Machines (Except Computer Rental and Leasing)
- 532 210 00 2 Consumer Electronics and Appliances Rental
- 532 220 10 0 Formal Wear Rental
- 532 202 00 0 Recreational Goods Rental
- 532 220 00 2 Wardrobe Rental
- 532 201 00 2 Home Health Equipment Rental
- 532 400 10 9 Medical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Except Home Health Equipment)
- 532 400 20 8 Industrial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 532 412 00 5 Oilfield and Well Drilling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 532 400 30 7 Motion Picture Equipment Rental and Leasing
- Other Rental and Leasing (Except Real Estate) - *Specify:*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 OTHER

- 813 110 00 4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s
- 814 110 00 3 Private Household (Employing Domestic Help, e.g., Cooks, Maids, Gardeners, etc.)
- Crop Production
- Animal Production
- Agricultural and Forestry Services
- Fishing, Hunting, and Trapping
- Mineral Extraction
- Mineral Service
- Other Business or Activity

Specify below

(Specify source of receipts in 6.)

5 CLASS OF CUSTOMER

A. Was a box marked under the Retail Trade or Wholesale Trade headings on page 4?

- Yes - Go to line B
- No - Go to **6**

B. As a general business practice, did this establishment sell to household consumers and individual users in the past 12 months?

- 0251 Yes - Go to line C
- 0252 No - Go to line D

C. Were 10 percent or more of your sales to household consumers and individual users in the past 12 months?

- 0251 Yes
- 0252 No

D. Were 75 percent or more of this establishment's sales to retailers/wholesalers for resale in the past 12 months?

- 0255 Yes
- 0257 No

E. Did this establishment require proof of business or professional license from new customers in the past 12 months?

- 0275 Yes
- 0277 No

6 DETAIL OF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List below the principal lines of merchandise sold, specific construction work done, products produced, or services provided and indicate the approximate percentage each was of the total dollar volume of business (e.g., gasoline 85%, auto repairs 10%, oil 5%) in the past 12 months.

Source	Percent
	%
	%
	%
	%
	%
	%
Total →	100 %

7 REMARKS

8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 <i>Print or Type</i>	8174	Area code	Number	Extension
		Telephone	-		

<부록 7> 미국 경제센서스 정규 조사표(산업용 기계 및 장비)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FORM

2002 ECONOMIC CENSUS

OMB No. 0607-0899; Approval Expires 08/31/2004

DUE DATE
FEBRUARY 12, 2003

Mail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Please read the accompanying information sheet(s) before answering the questions.

Need help or have questions about filling out this form?
Visit our Web site at www.census.gov/econhelp
Call 1-800-233-6136, between 8:00 a.m. and 8:00 p.m., Eastern time, Monday through Friday.

- OR -

Write to the address above. Include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printed in the mailing address.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YOUR RESPONSE IS REQUIRED BY LAW. Title 13, United States Code, requires businesse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is questionnaire to answer the questions and return the report to the U.S. Census Bureau. By the same law, **YOUR CENSUS REPORT IS CONFIDENTIAL.** It may be seen only by persons sworn to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Census Bureau information and may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Further, copies retained in respondents'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 Use blue or black ink.
- Do not use pencil.
- Place an "X" inside the box.
- Please center numbers in their respective boxes. Examples:
- Do not put slashes through 0 or 7.

X	0	1	2	3	4	5	6	7	8	9
---	---	---	---	---	---	---	---	---	---	---

The reporting unit for this form is an establishment. An **establishment** is generally a single physical location where business is conducted or where services or industrial operations are performed.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1 MONTHS IN OPERATION Mark "X" if None

		2002	
		Number of months	
Number of months in operation during 2002 (if none, mark "X" and go to 1) 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the same as the one used for this establishment on its latest 2002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0021 Yes 0022 No - Enter current EIN (9 digits) → 0025 | | | | | | | | | |

3 PHYSICAL LOCATION

A. Is this establishment's physical location the same as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0001 Yes

0002 No - Enter physical location →

0005 Number and street		0007 State		0008 ZIP Code	
0006 City, town, village, etc.					

B. Is this establishment physically located inside the legal boundaries of the city, town, village, etc.?

0041 Yes 0042 No 0043 No legal boundaries 0044 Do not know

C. Type of municipality where this establishment is physically located

0046 City, village, or borough 0047 Town or township 0048 Other or do not know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CONTINUE ON PAGE 2

<p>HOW TO REPORT DOLLAR FIGURES</p>	<p>Dollar figures should be rounded to thousands of dollars.</p> <p>If a figure is \$1,025,628.79: Report → <input type="checkbox"/></p> <p>If a value is "0" (or less than \$500.00): Report → <input checked="" type="checkbox"/></p>	<p>Mark "X" if Non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2002</th> </tr> <tr> <th style="width: 33%;">\$ Bil.</th> <th style="width: 33%;">Mil.</th> <th style="width: 33%;">Thou.</th> </tr> </thead> <tbody>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 0 2 6</td> <td></td> </tr> </tbody> </table>	2002			\$ Bil.	Mil.	Thou.		1 0 2 6	
2002												
\$ Bil.	Mil.	Thou.										
	1 0 2 6											
4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p>A. Total value of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Report detail in 4). 0100 <input type="checkbox"/></p> <p>B. Value of products exported (This is a breakout of the value reported on line A.) Report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for export. Include shipments to customers in the Panama Canal Zone,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U.S. possessions, as well as the value of products shipped to exporters or other wholesalers for export. Also, include the value of products sold to the U.S. Government to be shipped to foreign governments. Exclude products shipped for further manufacture, assembly, or fabrication in the United States. 0130 <input type="checkbox"/></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3">2002</th> </tr> <tr> <th style="width: 33%;">\$ Bil.</th> <th style="width: 33%;">Mil.</th> <th style="width: 33%;">Thou.</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40px;"></td> <td></td> <td></td> </tr> </tbody> </table>	2002			\$ Bil.	Mil.	Thou.			
2002												
\$ Bil.	Mil.	Thou.										
5 E-COMMERCE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p>A. Did any of the amount reported in 4, line A include e-commerce sales, shipments, or receipts? (E-commerce sales, shipments, or receipts are online orders for products from customers where price and/or terms of the sale are accepted or negotiated over an Internet, Extrane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network, electronic mail, or other online system. Payment may or may not be made online.)</p> <p>0181 <input type="checkbox"/> Yes - Go to line B 0182 <input type="checkbox"/> No - Go to 6</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2002</th> </tr> <tr> <th style="width: 80%;">Percent</th> <th style="width: 2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r> </tbody> </table>	2002		Percent	%					
2002												
Percent	%											
<p>B. Percent of total value of products shipped and other receipts reported in 4, line A using e-commerce (Report whole percents. Estimates are acceptable.) 019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2002</th> </tr> <tr> <th style="width: 80%;">Percent</th> <th style="width: 20%;">%</th> </tr> </thead> <tbody> <tr> <td style="height: 20px;"></td> <td></td> </tr> </tbody> </table>	2002		Percent	%					
2002												
Percent	%											

CONTINUE ON PAGE 3

31000029

31000029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6 EMPLOYMENT AND PAYROLL

Include:

- Full- and part-time employees working at this establishment whose payroll was reported on Internal Revenue Service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and filed under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corrected in 2.

Exclude:

-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n employee leasing company's EIN.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A. Number of employees

1. Number of production workers for pay periods including:

- a. March 12. 0325
- b. May 12. 0326
- c. August 12 0327
- d. November 12. 0328

2. Sum lines A1a through A1d 0329

3. Average annual production workers (Divide line 2 by 4 - omit fractions.) 0330

4. All other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0336

5. TOTAL (Sum lines A3 and A4) 0337

Mark 'X' if None	2002	
	Number	
<input type="checkbox"/>		

B. Payroll before deductions (Exclude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1. Annual payroll

- a. Production workers 0364
- b. All other employees 0365
- c. **TOTAL (Sum lines B1a and B1b) 0366**

2. First quarter payroll (January-March, 2002) 0369

C.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0370

Mark 'X' if None	2002	
	\$ Mil.	Thou.
<input type="checkbox"/>		

D. Number of annual hours worked by production workers (Annual hours worked by production workers reported on line A1.) 0399

Mark 'X' if None	2002	
	Hours	
	\$ Mil.	Thou.
<input type="checkbox"/>		



31000037

CONTINUE ON PAGE 4

7 LEASED EMPLOYMENT AND PAYROLL

A. Did this establishment have any full- or part-time leased employees whose payroll was filed under an employee leasing company's EIN?

Exclude:

- Temporary staffing obtained from a staffing service.
- Contractors, subcontractors, or independent contractors.
- Purchased or managed services, such as janitorial, guard, or landscape services.
- Professional or technical services purchased from another firm, such as software consulting, computer programming, engineering, or accounting services.
- Employees already reported in **6**.

For further clarification, see information sheet(s).

0341 Yes - Go to line B

0342 No - Go to **10**

B. Number of leased employees

1. Number of leased production workers for pay periods including:

- a. March 12, 0375
- b. May 12, 0376
- c. August 12 0377
- d. November 12, 0378

2. Sum lines B1a through B1d 0379

3. Average annual leased production workers (Divide line 2 by 4 - omit fractions) . . . 0380

4. All other leased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0381

5. TOTAL (Sum lines B3 and B4) 0384

Mark "X" if None	2002	
	Number	
<input type="checkbox"/>		

C.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before deductions (Exclude employer's cost for fringe benefits.)

1. Annual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 a. Leased production workers 0384
- b. Other leased employees 0385
- c. TOTAL** (Sum lines C1a and C1b) 0390

2. First quarter payroll for leased employees (January-March, 2002). 0390

D. Employer's fringe benefits cost for leased employees (Include fringe benefits for all leased employees reported on line B.) 0325

Mark "X" if None	2002	
	\$ MIL	Thou.
<input type="checkbox"/>		

Mark "X" if None	2002	
	Hours	Thou.
<input type="checkbox"/>		

E. Number of annual hours worked by leased production workers (Annual hours worked by leased production workers reported on line B1.) 0395

8-9 Not Applicable.

31000045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0 INVENTORIES

(Report inventories using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actices.)

Were inventories of this establishment subject to the Last-in, First-out (LIFO) method of valuation?

0481 Yes - Use the sum of the LIFO amount plus the LIFO reserve for completing lines A through F2. If you changed to LIFO for calendar year 2002, specify in the REMARKS section.

0482 No - Complete only lines A through E1. Line E1 should equal line D.

	Mark "X" if None	End of 2002			Mark "X" if None	End of 2001		
		\$ Bil.	Mil.	Thou.		\$ Bil.	Mil.	Thou.
A. Finished goods	0481 <input type="checkbox"/>				0401 <input type="checkbox"/>			
B. Work-in-process	0483 <input type="checkbox"/>				0403 <input type="checkbox"/>			
C. Materials, supplies, fuels, etc.	0482 <input type="checkbox"/>				0402 <input type="checkbox"/>			
D. TOTAL	0480 <input type="checkbox"/>				0400 <input type="checkbox"/>			
E. Of the value on line D report:								
1. Amount not subject to LIFO costing	0464 <input type="checkbox"/>				0404 <input type="checkbox"/>			
2. Amount subject to LIFO costing (gross)	0465 <input type="checkbox"/>				0405 <input type="checkbox"/>			
F. Of the value on line E2 report:								
1. Amount of LIFO reserve	0466 <input type="checkbox"/>				0406 <input type="checkbox"/>			
2. Amount of LIFO value (net)	0467 <input type="checkbox"/>				0407 <input type="checkbox"/>			

11 Not Applicable.

NEW 2002 FILE BY SOURCE BY TYPE 04/01/02

31000052

CONTINUE ON PAGE 6

		Mark "X" if None	2002		
			\$ Mil.	Thou.	
12 ASSETS, CAPITAL EXPENDITURES, RETIREMENTS, AND DEPRECIATION (Refer to the instructions on how to report leasing arrangements.)					
Report the dollar value of assets, capital expenditures, and depreciation					
A.	Gross value of depreciable assets (acquisition costs)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0600	<input type="checkbox"/>		
B.	Capital expenditures for new and used depreciable assets in 2002				
1.	Capital expenditures for new and used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Exclude land.)	0620	<input type="checkbox"/>		
2.	Capital expenditures for new and used machinery and equipment	0630	<input type="checkbox"/>		
3. TOTAL	(Sum lines B1 and B2)	0620	<input type="checkbox"/>		
C.	Gross value of depreciable assets sold, retired, scrapped, destroyed, etc.	0610	<input type="checkbox"/>		
D.	Gross value of depreciable assets at the end of 2002 (Sum lines A and B3 minus C)	0605	<input type="checkbox"/>		
E.	Depreciation charges	0640	<input type="checkbox"/>		
F.	Breakdown of expenditures for new and used machinery and equipment by type (Reported on line B2.)				
1.	Automobiles, trucks, etc., for highway use.	0622	<input type="checkbox"/>		
2.	Computers and peripheral data processing equipment	0623	<input type="checkbox"/>		
3.	All other expenditures for machinery and equipment	0624	<input type="checkbox"/>		
4. TOTAL	(Sum lines F1 through F3)	0620	<input type="checkbox"/>		
13 RENTAL PAYMENTS					
Report the dollar value of rental payments					
A.	Rental payment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Include land.)	0651	<input type="checkbox"/>		
B.	Rental payments for machinery and equipment.	0652	<input type="checkbox"/>		
C. TOTAL	(Sum lines A and B).	0650	<input type="checkbox"/>		
14 Not Applicable.					

SEE INSTRUCTIONS ON HOW TO REPORT LEASING ARRANGEMENTS

31000060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15 SELECTED EXPENSES

A. Selected production related costs

- 1. Cost of materials, parts, containers, packaging, etc. used (Report detail in ①.) 0421
- 2. Cost of products bought and sold as such without further processing (Report sales in ②.) 0422
- 3. Cost of purchased fuels consumed for heat, power, or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0423
- 4. Cost of purchased electricity (Report quantity on line B1.) 0424
- 5. Cost of work done for you by others on your materials 0425
- 6. **TOTAL** (Sum lines A1 through A5). 0426

Mark 'X' if None	2002		
	\$ Bil.	Mil.	Thou.
<input type="checkbox"/>			

B. Quantity of Electricity

- 1. Purchased electricity (Quantity comparable to cost reported on line A4.) 0427
- 2. Generated electricity (Gross less generating station use) 0428
- 3. Electricity sold or transferred to other establishments (Include on lines B1 or B2) 0429

Mark 'X' if None	2002	
	Mil.	Thou.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ORM 990-SS (2002) 10-15-02

31000078

<부록 8> 조직관련 조사표(NC95100, NC99001)

OMB No. 0607-0886
Approval Expires 08/31/2004

If not shown, please enter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from the mailing address. ▶

FORM NC-99510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OWNERSHIP OR CONTROL

A. Is your company owned or controlled by another domestic company
OR
does your company operate at more than one physical location?

Yes - Complete lines B and C and return this form with your completed 2002 Economic Census form.

No - Discard this form (NC-99510) and return your completed 2002 Economic Census form.

B. Ownership or control

1. Does another domestic company hold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your company or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your company?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the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No - Go to line C

Name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small>Enter EIN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9 digits)</small>	→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City, town, village, etc.	State		ZIP Code		

2. Percent of voting stock held by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Mark "X" only ONE box.)

<input type="checkbox"/> Less than 50%	<input type="checkbox"/> 50%	<input type="checkbox"/> More than 50%	2002 Number
--	------------------------------	--	----------------

C. Number of establishments operated at the end of 2002 under the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as corrected in ② on the first page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If more than one establishment:

- Provide the physical location address and other information requested on the back of this form for each location.
- Provide the headquarter's location first, followed by all other locations.
- Data for establishments operated during 2002, but not in operation at the end of the year, should be included with the headquarter's location.
- The sum of all sales, shipments, receipts, or revenue; employment and payroll; and leased employment and payroll for all locations should equal the amounts reported in ④, ⑤, and ⑥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 For employees that worked at more than one location, report the employment and payroll data for the employees at the ONE location where they spent most of their working time.

Public reporting burden for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estimated to vary from 1 to 5 minutes, with an average of 1.2 minutes per response. Send comments regarding this burden estimate or any other aspect of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suggestions for reducing this burden, to: Paperwork Project 0607-0886, Room 3110, Federal Building 3,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20233-1500. You may e-mail comments to Paperwork@census.gov; use "Paperwork Project 0607-0886" as the subject. Response to this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not required unless it displays a valid approval number from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The OMB eight-digit number appears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the form.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99510018

CONTINUE ON PAGE 2

C. Number of establishments operated at the end of 2002 under the EIN shown in the mailing address or as corrected in **E** on the first page of the 2002 Economic Census form - Continued

BEFORE YOU BEGIN: If this EIN had more than 3 physical locations at the end of 2002, copy this page and provide the requested data for all of your locations.

1	Name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State	ZIP Code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 Mil.	Thou.	\$ Mil.	Thou.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Annual payroll					
2	Name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State	ZIP Code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 Mil.	Thou.	\$ Mil.	Thou.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Annual payroll					
3	Name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Number and street (P.O. box and rural route addresses are not physical locations.)				\$ Mil.		Thou.		
	City, town, village, etc.				2002		Estimates are acceptable		
	State	ZIP Code	Number of employees for pay period including March 12.	Paid employees		Leased employees			
				Number		Number			
Describe kind of business at this location				\$ Mil.	Thou.	\$ Mil.	Thou.		
				First quarter payroll (Jan-Mar, 2002)					
				Annual payroll					



99510026



U.S.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U.S. CENSUS BUREAU

2002 REPORT OF ORGANIZATION

FORM
NC-99001

OMB No. 0607-0444; Approval Expires 11/30/2003

DUE DATE
FEBRUARY 12, 2003

Mail your completed form to:

U.S. CENSUS BUREAU
1201 East 10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4-0001

Need help or have questions about filling out this form?

Visit our Web site at
www.census.gov/econhelp

Call 1-800-233-6136, between 8:00 a.m. and 8:00 p.m., Eastern time, Monday through Friday.

- OR -

Write to the address above. Include your 11-digit Census File Number (CFN) printed in the mailing address.

NC-99001

**INFORMATION COPY
DO NOT USE TO REPORT**

(Please correct any errors in this mailing address.)

YOUR RESPONSE IS REQUIRED BY LAW. Title 13, United States Code, requires businesse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receive this questionnaire to answer the questions and return the report to the U.S. Census Bureau. By the same law, **YOUR CENSUS REPORT IS CONFIDENTIAL.** It may be seen only by persons sworn to uphold the confidentiality of Census Bureau information and may be used only for statistical purposes. Further, copies retained in respondents' files are immune from legal process.

1 CERTIFICATION - This report is substantially accurate and wa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0072 Name of person to contact regarding this report					0073 Title					
0071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address (Number and street, P.O. box, etc.)										
0072 City, town, village, etc.						0073 State		0074 ZIP Code		
Telephone		Area code	Number		Extension	Fax		Area code	Number	
0076 Internet e-mail address						Date completed		Month	Day	Year

99001018

PENALTY FOR FAILURE TO REPORT

2 COMPANY OWNERSHIP OR CONTROL - DOMESTIC

A. Does another domestic company hold more than 50 percent of the voting stock of your company or have the power to control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your company?

0008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0009 No - Go to 3

0050 Name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Ente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f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9 digits) →
0052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0053 City, town, village, etc.	0054 State 0055 ZIP Code

B. Percent of voting stock held by owning or controlling company (Mark "X" only ONE box.)

0027 Less than 50% 0028 50% 0029 More than 50%

3 COMPANY OWNERSHIP OR CONTROL - FOREIGN

Does a foreign entity (company, individual, government, etc.) own directly or indirectly 10 percent or more of the voting stock or other equity rights of your company?

6101 Yes - Enter the following information on the owning entity and go to 4

6103 Name of foreign beneficial owner	
6104 Home office address (Number and street)	
6105 City	6106 Country
Percent ownership (direct and indirect) (Mark "X" only ONE box.) →	6111 <input type="checkbox"/> 10-24% 6113 <input type="checkbox"/> 50% 6115 <input type="checkbox"/> 100% 6112 <input type="checkbox"/> 25-49% 6114 <input type="checkbox"/> 51-99%

6102 No - Does a foreign entity own or control 10 percent or more of any U.S. corporation of which you are the majority owner?

6121 Yes - Provide the name, mailing address, and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of subsidiaries in which a foreign entity has a 10 percent or more direct ownership interest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Be sure to enter the item number, your company's name and address, and Census File Number in the upper right corner of each additional sheet. Then go to 4.

6122 No - Go to 4

4 FOREIGN AFFILIATES

Does this company alone, or with its domestic affiliates, own 10 percent or more of the voting stock of an incorporated foreign business enterprise, or an equivalent interest in an unincorporated business enterprise, including ownership or real estate?

6126 Yes

6127 No



<부록 9> 중국 경제센서스 지표 해설

1. 산업분류 규정

- ‘국민경제 업종 분류(T4754— 2002)’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
- 산업은 범위는 다음과 같음.
 - 1차 산업 : 농업, 숲, 목축민, 어업
 - 2차 산업 : 광산업, 제조업, 전력, 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의 업체, 건축업 등
 - 3차 산업 : 1차 및 2차 산업이외의 업종
 - 교통 운송, 창고저장과 우편 행정업을 포함
 - 정보 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종,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요식업, 금융업, 부동산업, 대여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과학 등
 - 본 규정이 발표의 일부터 집행(지난 1985년 3차의 산업 구분은 폐지)

산업별	업종 분류 (GB/T 4754-2002)		
	부문	대분류	업종분류
1차산업	A		농림목어업
		01	농업
		02	임업
		03	목축업
		04	어업
		05	농림, 목, 어업서비스
2차산업	B		광산업
		06	석탄은 선택의 업을 채굴과 제거한다
		07	석유, 천연가스개발채굴업
		08	철화합광물채굴업
		09	비철금속채굴업
		10	비금속광물채굴업
		11	기타광산업채굴업
	C		제조업
		13	농업 부식품 가공업
		14	식품제조업
		15	음료제조업
		16	담배 제품업
		17	방직업
		18	방직복장, 신발, 모자 제조업
		19	피혁, 모피, 깃털 (솜털) 및 그 제품업
		20	목재 가공 및 나무, 대나무, 덩굴, 종려나무, 풀 제품업
		21	가구제조업
		22	제지업
		23	인쇄업과 기록의 매개물의 복사
		24	문교체육용품제조업
		25	석유의 가공, 코크스 및 핵연료 가공업
		26	화학원료및 화학제품제조업
		27	의약품제조업
		28	화학섬유제조업
		29	고무제품업

		30	플라스틱제품업
		31	비금속광물제품업
		32	비철합금물제품업
		33	비철합금물제품업
		34	금속제품업
		35	설비제조업을 통용한다
		36	전용설비제조업
		37	교통운수설비제조업
		39	전기기계및 전자제품제조업
		40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41	측정기기및 문화,사무용기계제조업
		42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43	자원과 낚아서 쓸모 없는 재료를 폐기하는 가공업
	D		전력, 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의 업
		44	전력, 열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의 업
		45	가스는 업을 생산과 제공한다
		46	물의 생산과 공급의 업
	E		건축업
		47	주택과 토목 공사 건축업
		48	건축이 업을 설치한다
		49	건축의 장식의 업
		50	기타건축업업?
3차산업	F		교통 운송, 창고저장과 우편 행정업
		51	철도운수업
		52	도로 수송업문화,사무용기계제조업
		53	도시 대중 교통 업
		54	수상운수업
		55	항공운수업
		56	파이프운수업
		57	하역의 운송과 기타 운송의 서비스업
		58	창고업
		59	우편 행정업
	G		정보 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종
		60	통신과 기타 정보 전송 서비스업
		61	컴퓨터 서비스업, 우편 행정업
		62	소프트웨어업종, 사무용기계제조
	H		도매와 소매업
		63	도매업수업
		65	소매업
	I		숙박과 요식업
		66	숙박업운수업
		67	요식업
	J		금융업
		68	은행업
		69	증권업
		70	보험업
		71	기타금융활동정보 전송 서비스업
	K		부동산업
		72	부동산업
	L		대여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73	리스 산업직업
		74	비즈니스서비스업?
	M		과학의 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75	연구와 시험
		76	전문 기술 서비스업
		77	과학기술 교류와 보급의 서비스업
		78	지질탐사업
	N		수리, 환경과 공공 시설관리업
		79	수리관리업
		80	환경관리업
		81	공공시설관리업
	O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업
		82	주민서비스업
		83	기타서비스업
	P		교육

		84	교육
	Q		위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업
		85	위생
		86	사회보장업
		87	사회복지업
	R		문화, 체육과 오락업
		88	뉴스출판업, 기타 서비스업
		89	방송, 텔레비전, 영화와 음반업
		90	문화예술업
		91	스포츠
		92	오락업
	S		공공관리와 사회 조직
		93	중국공산당 기관 보급의 서비스업
		94	국가기구
		95	인민정협과 민주당과
		96	군중그룹, 사회단체와 종교의 조직
		97	기층시민자치조직
	T		국제조직
		98	국제조직

2. 기업구분 및 등록유형 규정

- 본 규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공업 및 상업담당)에서 대상기업의 등록구분이며, 기타 경제 조직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
- 기업을 등록유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자본기업
 - 국유기업
 - 그룹기업
 - 주식합작회사
 - 공동경영기업
 - 유한책임회사
 - 주식유한회사
 - 개인기업
 - 기타기업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 투자 기업
 - 합자경영기업(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
 - 공동 경영 기업 (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 독자 투자의 경영 기업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이 투자한 주식유한회사
 - 외국인투자기업
 - 중외합자 경영 기업

- 중외합작 경영 기업
 - 외자 기업(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
 - 외국기업인이 투자한 주식유한회사
- 국유기업은 기업 전체 자산을 중국국가가 소유하는 경우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의 등록의 관리조례’ 참조
 - 단체 기업은 기업 자산이 집단소유의 형태를 가지는 경우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의 등록의 관리조례’에 따라 등록된 경제 조직
 - 주식 협력 기업은 합작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기업 및 노동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에 가입하고, 일정한 비율의 사회 자산 투자를 편성되도록 받아들이고, 자체 경영을 시행하고,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며, 공동으로 일하고, 노동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여 결합한 집체경제 조직임.
 - 공동경영의 기업은 2 이상의 서로 같은 혹은 다른 소유제 성질의 기업법인 혹은 사업부문 법인으로 자원,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성된 경제 조직.
 - 유한책임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의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등록, 2~50명의 주주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각 주주는 그 납부를 인정한 출자액으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그 전체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제 조직.
 - 유한책임회사는 국유 독자 회사 및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
 - 국유 독자 회사는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투자 기구 혹은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부문이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 기타 유한책임회사는 국유 독자 회사 이외의 기타 유한책임회사
 - 주식유한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의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등록을 규정하며,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모으고, 주주는 그 청약의 주식으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며, 회사의 그 전체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제 조직.

- 사영기업은 자연인이 투자하여 설립되거나 또는 자연인이 주식소유를 조절하고, 고용노동을 기초로 한 영리성 경제 조직임. ‘회사법’, ‘동업의 기업법’, ‘사영기업 잠정 조례’에 따라 사영 유한책임회사, 사영 주식유한회사, 사영 동업의 기업, 사영 독자 기업 등으로 구분
 - 사영 독자 기업은 ‘사영기업 잠정 조례’에 따라 1명의 자연인 투자 경영으로부터, 고용노동을 기초로 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기업
 - 사영 동업 기업은 ‘동업 기업법’ 또는 ‘사영기업 잠정 조례’에 따라, 2 이상의 자연인이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 공동 경영하며,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기업.
 - 사영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사영기업 잠정 조례’에 따라 2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임.
 - 사영 주식유한회사는 ‘회사법’에 따라 5 이상의 자연인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유한회사.
- 기타 기업은 상기한 이외의 기타 국내자본 경제 조직임.
- 합자경영기업(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지역 투자자와 내륙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여 설립되고, 이윤과 위험을 분담함.
- 공동경영기업(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지역 투자자와 내륙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 경영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설립하고 이윤 및 이윤을 분담하는 기업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 독자 투자의 경영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륙에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지역 투자자 전액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이 투자한 주식유한회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외경제무역부의 법률’에 따라 비준을 거쳐 설립되고, 그 중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의 주식 자본이 기업등록자본의 25% 이상인 경우임.

-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의 기업등록자본의 비율이 25% 이내일 경우, '국내자본기업 중의 주식유한회사'에 속함.
- 중외합자의 경영 기업은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인과 중국 내륙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 규정한 비율에 따라 투자하여 설립되나, 이윤과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
- 중외합작의 경영 기업은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인과 중국 내륙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 경영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설립하여, 이윤 및 위험을 분담하는 기업
- 외자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 기업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 내륙에 외국투자자 전액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
- 외국기업인이 주식유한회사를 투자하여 설립되고, 그 중 외자의 주식 자본이 25% 이상인 기업(25% 이하는 국내자본기업중의 주식유한회사)
- 본 규정은 국가통계국이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공동으로 운용하며, 1992년 제정한 '경제 유형의 구분의 임시 시행 규정'은 폐지함.

코드	기업 유형
100	국내자본기업
110	국유기업
120	그룹기업
130	주식합작회사
140	공동경영기업
141	국유가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142	집단이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143	국유는 집단과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한다
149	기타 공동경영의 기업
150	유한책임회사
151	국유독자기업
159	기타유한책임회사
160	주식유한회사
170	개인기업
171	사영 독자 기업.
172	사영 동업 기업

173	사영 유한책임회사 류 형
174	사영 주식유한회사
190	기타기업
200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 투자 기업
210	합자경영기업(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
220	공동 경영 기업 (항구 혹은 마카오, 타이완 자본)
230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 독자 투자의 경영 기업
240	항구, 마카오, 타이완 기업인이 투자한 주식유한회사
300	외국인투자기업
310	중외 합자 경영 기업
320	중외 합작 경영 기업
330	외자 기업(타이완 기업인 투자 기업)
340	외국기업인이 주식유한회사를 투자한다

3. 경제 요소의 규정

- 중국 경제 중의 소유방식에 따른 경제요소의 구성을 의미하며, 거시적 정책 결정과 관리를 위해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
- 본 규정은 통계의 가공과 계산에 있어 생산액, 판매소득, 국내총생산 등 주요 경제적 총량 지표에 적용되는 경제요소임.

경제 요소의 분류

세대 번호	분 류
1	공유 경제
11	국유경제판매 소득, 국내 총생산 등
12	그룹경제
2	비공유 경제
21	사유 경제제
22	홍콩 마카오 타이완경제
23	외국기업인 경제

- 공유 경제는 자산이 국가 혹은 국민의 집단에 속하며, 국유경제와 집체경제로 구분됨.
 - 국유경제는 자산이 국가에 속하는 것을 의미
 - 집체경제는 자산이 국민의 집단에 속하는 것을 의미
- 비공유 경제는 자산이 내륙 개인, 외국기업인, 홍콩, 마카오, 타이완 기업

인 등에 속하며, 사유 경제, 홍콩 마카오 타이완의 경제와 외국기업인 경제로 구분됨.

- 사유 경제는 자산이 내륙 국민 개인에게 속해 있음.
- 홍콩, 마카오, 타이완 경제는 자산이 홍콩 마카오의 타이완 기업인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
- 외국기업인 경제는 자산이 외국기업인에게 속해 있음.

4. 지배 주식에 따른 공유와 비공유 경제분류

- 중국의 공유 경제와 비공유 경제의 구분을 위해 국가통계국은 1998년 지배주식의 상황의 관련 규정을 정함.
- 분류 대상으로서 법인 기업인 경우, 기업 자본금이 누가 출자했느냐에 따라 분류되며, 출자자의 지배주식의 정도에 따라 분류됨.

<지배주식의 분류와 코드>

코드	내 용
100	공유 지배주식 경제
110	국유가 주식소유를 조절
111	국유가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112	국유가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120	집단이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121	집단이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122	집단이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00	비공유의 지배주식의 경제
210	개인이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11	개인이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12	개인이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20	홍콩 마카오의 타이완 기업인이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21	홍콩 마카오의 타이완 기업인이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
222	홍콩 마카오의 타이완 기업인이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
230	외국기업인이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31	외국기업인이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32	외국기업인이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는 것은 어느 출자자가 기업 전체 자본금(주식자본)의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는 것은 가장 많이 출자한 부분이 기업의 전체 자본금의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
- 그러나 비공유 경제(민간부분)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지배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존 분류로는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 2005년에 실시한 경제센서스에서는 기본 단위 상황표 <101표 09>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됨.

09(코드)	지배주식 상황
1	국유가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2	국유가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3	집단이 절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4	집단이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를 조절한다
9	기타

5. 개인 경영 분류

- ‘개인경영’의 통계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자영업자와 개인동업으로 구분함.

코드	개인경영분류
400	개인경영
410	자영업자
420	개인동업

6. 기업 규모 분류

- 공업(광산업, 제조업, 전력, 가스)의 , 건축업 , 교통 운송 , 창고저장과 우편 행정업 , 도매와 소매업 , 숙박과 요식업 등 기업의 규모에 대한 규정
- 종사자수, 판매액, 자산총액 등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구분

업종명	지표명	계산 단위	대형	중형	소형
공업기업	종사자 수	명	2000및 이상	300-2000	300이하
	판매액	1만원안	30000및 이상	3000-30000	3000이하
	자산 총액계	1만원안	40000및 이상	4000-40000	4000이하
건축업	종사자 수	런	3000및 이상	600-3000	600이하
	판매액	1만원안	30000및 이상	3000-30000	3000이하
	자산 총액	1만원안	40000및 이상	4000-40000	4000이하
도매업	종사자 수	명	200및 이상	100-200	100이하
	판매액	1만원안	30000및 이상	3000-30000	3000이하
소매업	종사자 수	명	500및 이상	100-500	100이하
	판매액	1만원안	15000및 이상	1000-15000	1000이하
교통수송업	종사자 수	명	3000및 이상	500-3000	500이하
	판매액 수	1만원안	30000및 이상	3000-30000	3000이하
우편 행정업	종사자 수	명	1000및 이상	400-1000	400이하
	판매액	1만원안	30000및 이상	3000-30000	3000이하
숙박과 요식업업	종사자 수	명	800및 이상	400-800	400이하
	판매액 수	1만원안	15000및 이상	3000-15000	3000이하

○ “공업 기업”은 광산업,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업 등에서 생산 및 제조하는 기업

- 공업 기업의 판매액은 연간 제품판매수입
- 건축업의 판매액은 연 공정의 결산의 소득
- 도매와 소매업의 판매액은 연간판매액
- 교통 운송과 우편 행정업, 숙박과 요식업 기업의 판매액은 연 영업 수입
- 자산 총액은 자산의 합계

○ 대형 및 중형기업은 각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단계 아래로 조정됨.

7. 도시 및 농촌 분류

○ 현 단계에서의 도시 농촌 인구 사회와 경제발전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본 규정 적용

○ 본 규정은 통계상으로서 도시 농촌의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며, 기존의 행정구획, 종속관계, 관리 권한과 기구의 편성, 및 도시 계획, 소도시와 촌

락의 계획 등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음.

○ 전 지역을 도시와 향촌으로 구분하고, 도시의 경우 행정구획의 기초위에 본 규정을 거쳐 확정된 지역으로 시가지와 진의지역으로 구분

- 시가지는 시 관할구역과 본 규정을 거쳐 확정된 지역

- 가두 사무소에서 관리한 거주민 위원회 지역
- 도시 공공 시설, 거주의 시설 등 거주민 위원회 지역과 촌민 위원회 지역

- 진의 지역은 시가지 이외의 진과 기타 지역이며, 본 규정을 거쳐 확정된 지역

- 관리하는 거주민 위원회 지역
- 진의 공공 시설, 거주의 시설 등 전반적인 촌민 위원회 지역
- 상주 인구 3000명 이상이 독립한 공업과 광업 지역, 개발구, 과학 연구 단위, 대학과 전문학교, 농장, 영림을 담당하는 기관 등 특수 지역.

○ 향촌은 도시 이외의 기타 지역

<통계표 상의 도시 농촌의 분류>

100 도시

110 시가지

111 주 시가지

112 도농 결합 지역

120 진의 지역

121 진의 중심 지역

122 고향 결합 지역

123 특수 지역

200 향촌

210 고향 중심 지역

220 촌락

- 주 시가지 : 주 시가지는 시 관할구역을 의미하며, 다음 각 지역
 - 가두 사무소에서 관리한 거주민 위원회 지역
 - 도시의 공공 시설, 거주외 시설 등을 연결한 기타 촌급 지역
- 도농 결합 지역 : 도시의 공공 시설, 거주외 시설 등 부분과 연결하는 촌급 지역
- 중심 지역
 - 진의 중심 지역은 시 관할구역, 현, 자치현, 자치가 관리하는 시가지외의 지역
 - 거주민 위원회 지역
 - 진의 공공 시설, 거주외 시설 등 연결한 기타 촌급 지역
- 고향의 결합 지역은 진의 공공 시설, 거주외 시설 등 부분과 연결하는 지역
- 특수 지역은 행정 지역에 종속되지 않고, 또한 상주인구 3000명이상으로 공업과 광업 지역, 개발구, 과학 연구 단위, 대학과 전문학교, 농장, 영림을 담당하는 기관과 기타 특수 지역 등.
 - 개발구: 각급의 인민정부가 비준한다고 지적한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공업단지, 과학기술 지역 등
 - 농업(임업)의 장은 농장 , 영림을 담당하는 기관을 가리킨 장의 부의 소재지의 지역 , 및 경제가 비교적 발달하고 , 일정한 2차 및, 3차 산업 규모의 농업(임업)의 장의 노동자 집결지를 가지고 있다 . 농업(임업)의 장의 부 이상의 관리기구는 주둔지의 행정 지역을 따라 시가지 혹은 진의 지역을 구분
- 기타 특수 지역은 상주 인구 3000명이면서 70%이상이 비농업산업에 종하는 독립지역
- 고향 중심 지역 : 촌민 위원회 지역과 고향의 관리한 거주민 위원회 지역

- 촌락 : 농촌민이 각종 생산 활동에 거주와 종사한다고 지적인 지역이고, 및 아직 도시의 농장, 영림을 담당하는 기관 등 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

코드	구분	주요 내용
10	중앙	전국 인대 상무 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각 부 위원회 및 그 소속 기구, 국무원의 각 직속 기구, 사무기구 및 그 소속 기구를 포함
20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함
40	시, 지역	자치주, 동맹, 성 관할 도시, 직할시 관할 구역을 포함 (현)
50	현	포함하여 시, 성 관할 도시 관할 구역, 자치현(기치), 기치, 현급 시를 관리한다
60	도로, 진, 고향	
61	도로, 진, 고향	
62	진	
63	고향	
70	주민, 촌민 위원회	
71	거주민 위원회	
72	촌민 위원회	
90	기타	

8. 문화산업분류

- 16차 대표대회에서 문화 건설과 문화 체제개혁의 요구에 관해, 과학, 체계적으로, 실행할 만한 문화산업의 통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
- 공익성 문화 활동과 경영성 문화 활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문화 관리와 문화의 통계를 위해서 과학, 일치된 범위와 정의를 제공
- 문화산업의 범위는 대중에게 문화, 엔터테인먼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적인 활동이고, 및 이런 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의 집합.
 - 문화 제품 제작과 영업 활동
 - 문화전파 분야
 - 문화 레저오락
 - 문화용품 생산과 영업 활동
 - 문화 설비 생산과 영업 활동
 - 문화 제품의 제작과 영업 활동

문화 산업분류	업종코드
[1] 뉴스 서비스 1. 뉴스 서비스 뉴스업	8810
[2] 발행 관련 출판 1. 책, 신문, 간행물 출판 발행 ○ 책, 신문, 간행물 출판 도서출판 신문 출판 정기간행물 출판 기타 출판 ○ 책, 신문, 간행물 책, 신문, 간행물 인쇄 포장의 장식 및 기타 인쇄 * ○ 책, 신문, 간행물 발행 도서 도매 도서 소매 신문잡지 도매 신문잡지소매, 간행물 출판	8821 8822 8823 8829 2311 2319 6343 6543 6344 6544
2. 음반 및 전자 출판 발행 ○ 음반제품 출판 음반제품 출판 음반 제작 ○ 전자 출판 전자 출판물 출판 - 전자 출판물 출판 - 전자 출판물 제작 ○ 음반 및 전자 출판물 복제 기록의 매개물의 복사 * - 음반제품 복사 - 전자 출판물 복사 ○ 음반 및 전자 출판물 발행 음반제품 및 전자 출판물 도매 음반제품 및 전자 출판물 소매	8824 8940 8825 2330 6345 6545
3.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서비스 * - 관련 서비스	7450
[3] 방송, 텔레비전, 영화 서비스 1. 방송, 텔레비전 서비스 방송전자 출판물 - 라디오방송국 - 기타 방송 서비스 텔레비전 - TV방송국 - 기타 텔레비전 서비스	8910 8920
2. 방송, 텔레비전의 전송 유선 방송 텔레비전의 전송 서비스 - 유선 방송, 텔레비전 전송네트워크 서비스 유선 방송, 텔레비전 수신	6031

9. 정보산업분류

- 정보 관련 산업의 통계의 범위를 통일과 규범화시키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비교 가능하도록 분류기준을 정함.
- 본 규정에 의한 정보 관련 산업은 주로 전자 정보와 관련되는 활동
 - 전자통신 설비 생산, 판매와 대여 활동;
 - 컴퓨터 설비 생산, 판매와 대여 활동;
 - 관찰, 측량과 기록의 사물 현상의 전자설비, 부품의 생산 활동
 - 전자 정보의 전파
 - 전자 정보의 가공, 처리 및 관리
 - 전자 기술을 통한 가공, 제작, 전파와 관리의 정보 문화 제품 서비스
- 본 규정은 국가표준(GB/T4754-2002)에서 업종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2002년 유엔 통계의 '북미의 산업 분류의 체계(NAICS)'와 OECD의 국제표준 산업의 분류(ISIC/Rev.3.1) 등을 고려하여 '정보업'은 '정보와 통신 기술' 2개 분류로 구분됨.

종류이름.3.1	분류 코드
[1] 전자 정보 설비 제조	
1.컴퓨터 설비 제조(NAICS 참조)	
컴퓨터 컴퓨터의 제조	4041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의 제조	4042
컴퓨터 외부 설비의 제조	4043
2.통신설비 제조	
통신 전송시설의 제조	4011
통신이 설비 제조 교환	4012
통신 단말기 설비의 제조	4013
이동통신 및 단말기 설비 제조	4014
기타 통신설비의 제조	4019
3.TV방송 설비 제조업 제조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설비 제조 제작 및 발사	4031
TV방송 접수 설비 및 기자재 제조	4032
텔레비전설비 및 기타 TV방송 설비 제조	4039
4.가정용 시청각 설비의 제조	
가정용 TV영화설비 제조 제조	4071
가정용 음향 설비의 제조	4072
5.전자 부속품과 부품이 제조	
전자 진공 부속품의 제조	4051
반도체 부속품의 제조 분리	4052
칩회로 제조	4053
광전자 부속품 및 기타 전자 부속품 제조	4059
전자 부품 및 컴포넌트 제조	4061

전기회로판의 제조 인쇄	4062
6.전용 전자 측정기기의 제조	
레이더 및 조립의 설비 제조	4020
환경감측의 전용 측정기기의 제조	4121
가이드, 기상 및 해양 기기의 제조	4123
농업 임업 목축업의 물고기의 전용 측정기기의 제조	4124
지질 탐사와 지진의 기기 제조	4125
해자 및 원자핵 측정기구 측량 제조	4127
전자 측정기구의 제조 측량	4128
기타 기기의 제조	4129
7.전자 측정기기의 제조 통용	
공업 자동제어의 시스템 장치 제조	4111
전기 공학 측정기기 제조	4112
실험 분석기기 제조	4114
계량기 및 기타 통용의 측정기구 제조	4119
8.기타전자 정보설비 제조제조	
전선 케이블의 제조	3931
광섬유, 광케이블의 제조	3932
계산기 및 화폐 전용 설비 제조	4155
[2] 전자 정보 설비의 판매와 대여	
1.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설비 판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설비 도매	6375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보조설비 소매	6572
기타전자제품 소매 제조	6579
2.통신설비 판매	
통신 및 TV방송 설비 도매	6376
통신설비 소매 및 보조설비 판매	6573
3.컴퓨터 및 통신설비 대여	
컴퓨터 및 통신설비가 대여	7314
[3] 전자 정보 전송 서비스	
1.전자통신	
고정 전신 서비스	6011
이동 전신 서비스	6012
기타 텔레콤서비스	6019
2.인터넷정보서비스 및 보조설비 판매	
인터넷정보서비스 및 보조설비 도매	6020
3.TV방송의 전송 서비스	
유선 방송 텔레비전의 전송 서비스	6031
무선 TV방송의 전송 서비스	6032
4.인공위성의 전송 서비스	
인공위성의 전송 서비스	6040
[4]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종	
1. 컴퓨터서비스	
컴퓨터의 시스템 서비스	6110
데이터 처리	6120
컴퓨터 수리	6130
기타 컴퓨터 서비스	6190
2.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초 소프트웨어 서비스	6211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6212
기타 소프트웨어 서비스	6290
[5] 기타 정보의 관련 서비스	
1. 방송, 텔레비전, 영화와 음반업	
방송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종	8910
텔레비전	8920
영화제작과 발행	8931
영화 상영	8932
음반 제작	8940
2. 뉴스출판업	
뉴스업	8810
도서출판	8821
신문 출판	8822
정기간행물 출판	8823
음반제품 출판	8824
전자 출판물 출판	8825

기타 출판	8829
3. 도서관과 문서국	
도서관	9031
문서국	9032

<유엔 “정보업”과 중국센서스의 “정보 관련 산업의 분류”의 대조표>

UN의 정보업	업종명	중국 경제센서스
매체의 출판, 인쇄와 복사, 녹음		
2211 서적, 팜플렛과 기타 출판물의 출판	도서출판	8821
2212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 출판	신문 출판	8822
	정기간행물 출판	8823
2213 기록의 매개물의 출판	음반제품 출판	8824
	전자 출판물 출판	8825
2219 기타 출판	기타 출판	8829
우편 행정과 전신		
6420 전보전신	고정 전신 서비스	6011
	이동 전신 서비스	6012
	기타 텔레콤서비스	6019
	유선 방송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6031
	무선 TV방송의 전송 서비스	6032
	인공위성의 전송 서비스	6040
컴퓨터와 관련 활동		
7221 소프트웨어 및 기타 출판물의 출판	기초 소프트웨어 서비스	6211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6212
7230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6120
7240 데이터베이스 활동과 전자 내용의 온라인 전송	인터넷정보 전송 서비스	6020
엔터테인먼트, 문화와 체육 활동		
9211 영화와 녹화테잎의 제작과 발행	영화제작과 발행	8931

10. 첨단기술산업 분류

업종코드	업종명
253핵연료 가공	405전자 부속품의 제조
2665정보 화학품의 제조	4051전자 진공 부속품의 제조
27의약제조업	4052반도체 부속품 제조
2710화학 약품의 원래 약의 제조	4053집적회로 제조
2720화학 약품 제제의 제조	4059광전자 부속품 및 기타 전자 부속품 제조
2730중국의약 음편의 가공	406전자 부품의 제조
2740조제중약 제조	4061전자 부품 및 컴포넌트가 제조
2750동물 약품 제조	4062전기회로판 제조
2760생물, 생화학 제품의 제조	407가정용 시청각 설비의 제조
2770위생 재료 및 의약 용품 제조	4071가정용 TV영화설비 제조
368의료 기기 설비 및 기구 제조	4072가정용 음향 설비의 제조
3681의료설비 제조 진단, 감호 및 치료	409기타전자 설비 제조 제조
3682구강 설비 및 기물 제조	411측정기기의 제조 통용
3683실험실 및 의료용 소독 설비와 제조	4111공업 자동제어 시스템 장치 제조
3684의료, 외과 및 수의사는 기구 제조	4112전기 공학 측정기기의 제조
3685기계의 치료 및 간호 설비 제조	4113측정기구의 제조를 제도, 계산 및 측량
3686의수, 기관 및 식물기구 제조	4114실험 분석기기의 제조
3689기타 의료설비 및 기구 제조	4115시험기 제조
376항공 우주비행기의 제조	4119 계량기 및 기타 통용의 측정기구 제조
3761비행기제조 및 수리	412전용 측정기기의 제조
3762우주비행기 제조	4121환경감측의 전용 측정기기의 제조
3769기타 비행기의 제조	4122자동차 및 기타는 수치의 계량기로 제조
40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4123가이드, 기상 및 해양 기기의 제조
401통신설비 제조	4124농업 임업 목축업,수산업 전용 측정기기 제조
4011통신 전송시설의 제조	4125지질 탐사와 지진의 기기 제조
4012통신이 설비 제조 교환	4126교육 관련기기의 제조
4013통신 단말기 설비의 제조	4127핵자 및 원자핵 복사 측정기구 제조
4014이동통신 및 단말기 설비 제조다	4128전자가 측정기구의 제조 측량
4019기타 통신설비의 제조	4129기타 기기 제조
402레이더 및 조립의 설비 제조	4141광학 기기 제조
403TV방송 설비 제조 일 기관 및 식물	4154복사와 오프셋 인쇄 설비 제조
4031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설비 제조 제작 및 송신	4155계산기 및 화폐 전용 설비 제조
4032 TV방송 설비 및 기자재 제조	4190기타 측정기기의 제조 및 수리
4039 기타 TV방송 설비 제조	621공공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측량
404컴퓨터 제조	6211기초 소프트웨어 서비스
4041컴퓨터 컴퓨터의 제조	6212어플리케이션 서비스
4042컴퓨터 네트워크 설비의 제조	
4043컴퓨터 외부 설비의 제조	

-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국유기업 및 연제품판매수입 5,001 위안 이상의 비국유공업기업이 해당됨.

- 첨단기술산업의 R&D는 대기업 및 중형기업의 경우 연간데이터를 사용하며, 국유 소형기업 및 매출 5,001위안 이상의 비국유소형기업에 대해서는 임의추출 조사를 실시함.
- 국제비교시 첨단기술산업의 범위는 핵연료의 가공, 정보, 화학품의 제조, 공공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제외하고 산정함.

업종	코드
1, 핵연료의 가공	253
이, 정보 화학품의 제조	2665
3, 의약 제조업	27
화학 약품의 제조	271+272
조제중약 제조	276
생물, 생화학 제품의 제조	277
4, 항공 우주비행기의 제조	376
1. 비행기제조 및 수리	3761
2. 우주비행기 제조	3762
3. 기타 비행기의 제조	3769
5, 전자 및 통신설비 제조업	40-404
1. 통신설비 제조	401
:통신 전송시설의 제조	4011
통신이 설비 제조 교환	4012
통신 단말기 설비의 제조	4013
이동통신 및 단말기 설비 제조	4014
2. 레이더 및 조립의 설비 제조	402
3. TV방송 설비 제조비 제조업	403
4. 전자 부속품의 제조	405
전자 진공 부속품의 제조	4051
반도체 부속품의 제조	4052
집적회로 제조	4053
광전자 부속품 및 기타 전자 부속품 제조	4059
5. 전자 부품의 제조	406
6. 가정용 시침각 설비의 제조	407
7. 기타전자 설비 제조 제조업	409
6, 컴퓨터 및 사무용설비 제조업	404+4154+4155
1. 컴퓨터 컴퓨터의 제조	4041
2. 컴퓨터 네트워크 설비의 제조	4042
3. 컴퓨터 외부 설비의 제조	4043
4. 사무용설비 제조	4154+4155
7이, 의료설비 및 측정기기제조업	368+411+412+4141+419
1. 의료설비 및 기구 제조	368
2. 측정기기 제조	411+412+4141+419
8, 공공 소프트웨어 서비스	6211+6212

11. 공업(철강 등)의 기업규모 기준

	계량 단위	대형	중형	소형
<철강>				
철강컴비나트	강철 1만톤/년	100이상	10-100	10이하
특수 제강소	강철 1만톤/년	50이상	10-50	10이하
독립 제철공장	철 1만톤/년	100이상	20-100	20이하
독립 광산	철광 1만톤/년	200이상	60-200	60이하
기타철화합물공업	1만위엔(총투자액)	5000이상	2000-5000	2000이하
<비철금속>				
니켈 컴비나트	니켈 1만톤/년	3이상	0.5-3	0.5이하
기타중금속 컴비나트	연광 1만톤/년	2이상	0.8-2	0.8이하
사(모래) 광물	광석 1만톤/년	200이상	100-200	100이하
혈맥 광산	광석 1만톤/년간	100이상	20-100	20이하
산화알루미늄 공장	1만톤/년	20이상	5-20	5이하
금속 제련, 전기 분해	연광 1만톤/년	3이상	1-3	1이하
중금속	1만톤/년	3이상	0.5-3	0.5이하
경금속	1만톤/년	2이상	0.3-2	0.3이하
기타비철금속 공업	1만위엔(총투자액)	5000이상	1000-5000	1000이하
<석탄>				
석탄광산	원탄 1만톤/년	500이상	200-500	200이하
독자 세탄공업	세정탄 1만톤/년	120이상	30-120	30이하
기타석탄 공업	1만위엔(총투자액)	2000이상	1000-2000	1000이하
<석유>				
가스전 개발			(여건에 따라)	
정유공장	원유 1만톤/년	250이상	50-250	50이하
장거리송유관(기체)			(대형/중형)	
<화학>				
암모니아 합성	1만톤/년간	15이상	4.5-15	4.5이하

<부록 10> 중국경제센서스의 조사표

一、第一次全国经济普查表式

(一) 普查基层表目录

表号	表名	范围	报送单位	报送时间
601表	法人单位基本情况	全部法人单位	各省、自治区、直辖市普查办公室	规模以上工业、资质建筑业、房地产开发业、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住宿和餐饮业企业4月底前 其余5月底前
602表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	全部产业活动单位	同上	同上
602-1表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	批发和零售业、住宿和餐饮业产业活动单位	同上	同上
B603表	规模以上工业企业生产情况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4月底前
B604表	规模以上工业企业财务状况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同上
B605表	规模以上工业企业主要工业产品生产能力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同上
B606表	规模以上工业企业能源购进、消费及库存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同上
B606-1表	规模以上工业企业能源购进、消费及库存附表	规模以上有能源加工转换活动的工业企业	同上	同上
B607表	工业企业主要原材料及水消费	全部工业企业	同上	规模以上工业企业4月底前 规模以下工业企业5月底前
L608表	规模以上工业企业科技项目一览表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4月底前
L609表	规模以上工业企业科技活动情况	规模以上工业企业	同上	同上
B610表	规模以下工业企业生产经营状况	规模以下工业企业	同上	5月底前
B611表	规模以下工业企业产品生产、销售、库存	规模以下工业企业	同上	同上
B612表	规模以下工业企业能源购进、消费及库存	规模以下工业企业	同上	同上
C613表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生产情况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同上	4月底前
C614表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财务状况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同上	同上
C615表	劳务分包及资质以外建筑业企业生产经营状况	劳务分包及资质以外建筑业企业生产经营状况	同上	劳务分包企业4月底前 资质以外建筑业企业5月底前
H616表	房地产开发企业经营情况	房地产开发业企业	同上	4月底前
H617表	房地产开发企业财务状况	房地产开发业企业	同上	同上
H618表	物业管理、中介服务及其他房地产业生产经营状况	物业、中介和其他房地产业企业	同上	5月底前
D619表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业务活动情况	道路运输业、城市公共客运业、水上运输业、航空运输业、管道运输业、装卸搬运和其他运输服务业、电信业企业、其他快递服务企业	同上	5月底前
D620表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财务状况	同上	同上	同上
B621表	批发和零售业企业商品销售分类情况	全部批发和零售企业	同上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企业4月底前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企业5月底前

表号	表名	范围	报送单位	报送时间
E622 表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企业财务状况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企业	同上	4月底前
E623 表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企业财务状况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企业	同上	5月底前
E624 表	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企业经营状况	限额以上住宿餐饮企业	同上	4月底前
E625 表	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企业经营状况	限额以下住宿餐饮企业	同上	5月底前
G626 表	服务业企业财务状况	以下行业中的企业和除执行行政事业会计制度的各类单位：租赁和商务服务业, 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探业, 水利、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 居民服务和其他服务业, 教育, 卫生、社会保障和社会福利业, 文化、体育和娱乐业以及仓储业, 互联网信息服务、广播电视传输服务、卫星传输服务业, 计算机服务业和软件业, 典当业	同上	5月底前
G627 表	行政事业单位财务状况	公共管理和社会组织行业中的法人单位以及以下行业中执行行政事业单位会计制度的事业法人、民办非企业法人和其他组织机构：租赁和商务服务业, 科学研究、技术服务和地质勘探业, 水利、环境和公共设施管理业, 居民服务和其他服务业, 教育, 卫生、社会保障和社会福利业, 文化、体育和娱乐业以及仓储业, 互联网信息服务、广播电视传输服务、卫星传输服务业, 计算机服务业和软件业	同上	5月底前
G29 表	个体经营户经营情况调查表(参考)			
D630 表	铁路运输业资产负债表	铁路运输业	铁道部	5月底前
D631 表	铁路运输业损益表	同上	同上	同上
D632 表	铁路运输业运输总支出表	同上	同上	同上
D633 表	国家邮政企业财务状况	国家邮政系统	国家邮政局	5月底前
G634 表	银行业及相关金融业资产负债表	银行业、金融信托与管理、金融租赁、财务公司及其他金融业	人民银行	5月底前
G635 表	银行业及相关金融业损益表	同上	同上	同上
G636 表	保险业资产负债表	保险业	保监会	5月底前
G637 表	保险业利润表	同上	同上	同上
G638 表	保险业业务费用明细表	同上	同上	同上
G639 表	证券业资产负债表	证券业	证监会	5月底前
G640 表	证券业损益表	同上	同上	同上
G641 表	证券业费用明细表	同上	同上	同上

(二) 普查综合表目录

表号	表名	报送单位	报送时间
651 表	法人单位及产业活动单位综合表	各省、自治区、直辖市普查办公室	5 月底前
652 表	按机构类型分组的法人单位综合表	同上	5 月底前
653 表	按机构类型分组的产业活动单位综合表	同上	5 月底前
654 表	法人单位基本情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655 表	多产业法人单位所属产业活动单位情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B656 表	规模以上工业企业价值量综合表	同上	4 月底前
B657 表	规模以下工业企业价值量综合表	同上	5 月底前
B658 表	工业企业产品生产、销售、库存综合表	同上	5 月底前
B659 表	规模以上工业企业产品产量、生产能力及能力利用率综合表	同上	5 月底前
B660 表	工业企业能源购进、消费及库存综合表	同上	规模以上工业 4 月底前, 规模以下工业 5 月底前
B661 表	工业企业主要原材料消费综合表	同上	5 月底前
B662 表	工业企业水消费综合表	同上	5 月底前
L663 表	工业企业科技活动情况综合表	同上	4 月底前
C664 表	建筑业企业主要指标综合表(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同上	4 月底前
C665 表	建筑业企业财务状况综合表(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同上	4 月底前
C666 表	建筑业企业主要经济指标综合表(劳务分包建筑业企业)	同上	4 月底前
C667 表	建筑业企业主要经济指标综合表(资质以外建筑业企业)	同上	5 月底前
H668 表	房地产开发企业主要指标综合表	同上	4 月底前
H669 表	房地产开发企业财务状况综合表	同上	4 月底前
H670 表	房地产物业管理企业主要指标综合表	同上	5 月底前
H671 表	房地产中介服务企业主要指标综合表	同上	5 月底前
H672 表	其他房地产企业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D673 表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业务活动情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D674 表	交通运输及电信业企业能源消费综合表	同上	5 月底前
D675 表	交通运输及电信业企业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76 表	批发和零售业企业商品销售情况综合表	同上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 4 月底前,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 5 月底前
E677 表	住宿和餐饮业企业经营状况综合表	同上	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 4 月底前, 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 5 月底前
E678 表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企业主要财务状况综合表	同上	4 月底前
E679 表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企业主要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80 表	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企业主要财务状况综合表	同上	4 月底前
E681 表	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企业主要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82 表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83 表	批发零售业、住宿餐饮业产业活动单位按经营地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84 表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商品销售情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E685 表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住宿餐饮经营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G686 表	服务业企业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G687 表	行政事业单位财务状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628 表	个体经营户经营情况综合表	同上	5 月底前



中国经济普查
CHINA ECONOMIC CENSUS

法人单位基本情况

2004年

表号: 601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第三条: 国家机关、社会团体、企事业单位和个体工商户等统计调查对象, 必须依照本法和国家规定, 如实提供统计资料, 不得虚报、瞒报、拒报、迟报, 不得伪造、篡改。		01 法人单位代码	<input type="text"/>
		02 法人单位名称:	<input type="text"/>
		03 法定代表人(负责人):	<input type="text"/>
04 单位所在地及行政区划		行政区划代码(普查机构填写)	<input type="text"/>
省(自治区、直辖市)		地(区、市、州、盟)	县(区、市、旗)
乡(镇)		街(村)、门牌号	
单位位于:		街道办事处	社区(居委会)、村委会
05 联系方式	区号	<input type="text"/>	电子信箱 <input type="text"/>
	电话号码	<input type="text"/>	
	分机号	<input type="text"/>	
	传真号码	<input type="text"/>	
	邮政编码	<input type="text"/>	
		网 址	<input type="text"/>
06 行业类别		行业代码 <input type="text"/>	
主要业务活动(或主要产品) 1 _____; 2 _____; 3 _____		(普查机构填写)	
07 登记注册(或批准)情况(如登记注册或批准机关为多个, 请复选) 机关级别: 1 国家, 2 省, 3 地(市), 4 县(市)			
	登记注册(或批准)机关名称	机关级别	登记注册号
1	工商行政管理部门		
2	编制部门		
3	民政部门		
9	其他(请注明批准机关)		
08 登记注册类型			
内资	149 其他联营	174 私营股份有限公司	外商投资
110 国有	151 国有独资公司	190 其他	310 中外合资经营
120 集体	159 其他有限责任公司	港澳台商投资	320 中外合作经营
130 股份合作	160 股份有限公司	210 与港澳台商合资经营	330 外资企业
141 国有联营	171 私营独资	220 与港澳台商合作经营	340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
142 集体联营	172 私营合伙	230 港澳台商独资	
143 国有与集体联营	173 私营有限责任公司	240 港澳台商投资股份有限公司	<input type="text"/>
09 控股情况(限企业填报) 1 国有绝对控股, 2 国有相对控股, 9 其他 <input type="text"/>			
10 隶属关系 10 中央, 20 省(自治区、直辖市), 40 地(区、市、州、盟), 50 县(区、市、旗), 61 街道, 62 镇, 63 乡, 71 居委会, 72 村委会, 90 其他 <input type="text"/>			
11 开业(成立)时间			<input type="text"/> 年 <input type="text"/> 月
12 营业状态(限企业填报) 1 营业, 2 停业(歇业), 3 筹建, 4 当年关闭, 5 当年破产, 9 其他 <input type="text"/>			
13 执行会计制度类别 1 企业会计制度, 2 事业单位会计制度, 3 行政单位会计制度, 9 其他 <input type="text"/>			
14 机构类型 1 企业, 2 事业单位, 3 机关, 4 社会团体, 5 民办非企业单位, 9 其他组织机构 <input type="text"/>			

法人单位基本情况续表(601表)

15 工会成立情况		1. 未成立工会		2. 已成立工会															
						加入工会的人数													
						百	十	千	百	十	人								
16 产业活动单位数		百		十		个		百		十		个		百		十		个	
总计								3 建筑业						6 住宿、餐饮业					
1 农林牧渔业								4 交通运输、电信业						7 房地产业					
2 工业								5 批发、零售业						9 其他					
17 年末从业人员数		指标名称		代码		总计		女性											
		甲		乙		百		十		千		百		十		千		百	
		年末从业人员合计		01															
		按学历分：1. 具有研究生及以上学历人员		02															
		2. 具有大学本科学历人员		03															
		3. 具有大专学历人员		04															
		4. 具有高中学历人员		05															
		5. 具有初中及以下学历人员		06															
		其中按专业技术职称分：具有高级技术职称人员		07															
		具有中级技术职称人员		08															
		具有初级技术职称人员		09															
		其中按技术等级分：高级技师		10															
		技师		11															
		高级工		12															
		中级工		13															
18 企业主要经济指标		指标名称		千		百		元		千		百		元		千		元	
		全年营业收入合计																	
		其中：主营业务收入																	
		资产总计																	
19 计算机使用情况		指标名称		千		百		台		千		百		台		千		台	
		期末在用计算机数																	
		其中：微机																	
20 企业集团情况		本企业是：1 集团母公司(核心企业或集团总部)，		2 成员企业															
(限企业集团母公司及成员企业填写)		如选择2, 请填写集团母公司(核心企业或集团总部)单位代码		□□□□□□□□															
21 企业资质等级(限建筑业及房地产业企业填写)		建筑业(新资质企业, 请填写资质证书编号前4位; 没有新资质的企业, 请填写9999)		□□□□															
		房地产开发业：1 一级, 2 二级, 3 三级, 4 四级, 5 暂定, 9 其他		□															
		物业管理：1 一级, 2 二级, 3 三级, 9 其他		□															
22 住宿业情况(限住宿业企业填报)		星级等级：1 五星, 2 四星, 3 三星, 4 二星, 5 一星, 9 其他		□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联系电话：		填表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在此盖章)															
审表人：		审表日期：200 年 月 日																	



中国经济普查
CHINA ECONOMIC CENSUS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

2004年

表号: 602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00 单位类别 <input type="checkbox"/> 1 法人单位本部(总部、本店、本所等) 2 法人单位分支机构(分部、分厂、分店、支所等)	01 产业活动单位代码 <input style="width:100%;" type="text"/> 02 产业活动单位名称: _____ 03 单位负责人: _____																																																		
04 单位所在地及行政区划 行政区划代码(普查机构填写) <input style="width:100%;" type="text"/> _____省(自治区、直辖市) _____地(区、市、州、盟) _____县(区、市、旗) _____乡(镇) _____街(村)、门牌号 单位位于: _____街道办事处 _____社区(居委会)、村委会																																																			
05 联系方式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0%;">区号</td> <td style="width:10%;"><input type="text"/></td> </tr> <tr> <td>电话号码</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分机号</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传真号码</td> <td><input type="text"/></td> </tr> <tr> <td>邮政编码</td> <td><input type="text"/></td> </tr> </table>	区号	<input type="text"/>	电话号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分机号	<input type="text"/>	传真号码	<input type="text"/>	邮政编码	<input type="text"/>	电子信箱 _____																																
区号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电话号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分机号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传真号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邮政编码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6 行业类别 主要业务活动(或主要产品) 1 _____ ; 2 _____ ; 3 _____ 行业代码 <input style="width:100%;" type="text"/> (普查机构填写)																																																			
07 登记注册(或批准)情况 (如登记注册或批准机关为多个,请复选) 机关级别: 1 国家, 2 省, 3 地(市), 4 县(市)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登记注册(或批准)机关名称</th> <th>机关级别</th> <th>登记注册号</th> </tr> </thead> <tbody> <tr> <td>1 工商行政管理部门</td> <td></td> <td></td> </tr> <tr> <td>2 编制部门</td> <td></td> <td></td> </tr> <tr> <td>3 民政部门</td> <td></td> <td></td> </tr> <tr> <td>9 其他(请注明批准机关)</td> <td></td> <td></td> </tr> </tbody> </table>		登记注册(或批准)机关名称	机关级别	登记注册号	1 工商行政管理部门			2 编制部门			3 民政部门			9 其他(请注明批准机关)																																					
登记注册(或批准)机关名称	机关级别	登记注册号																																																	
1 工商行政管理部门																																																			
2 编制部门																																																			
3 民政部门																																																			
9 其他(请注明批准机关)																																																			
08 登记注册类型 <table style="width:100%; font-size: small;"> <tr> <td style="width:25%;">内资</td> <td style="width:25%;">149 其他联营</td> <td style="width:25%;">174 私营股份有限公司</td> <td style="width:25%;">外商投资</td> </tr> <tr> <td>110 国有</td> <td>151 国有独资公司</td> <td>190 其他</td> <td>310 中外合资经营</td> </tr> <tr> <td>120 集体</td> <td>159 其他有限责任公司</td> <td>港澳台商投资</td> <td>320 中外合作经营</td> </tr> <tr> <td>130 股份合作</td> <td>160 股份有限公司</td> <td>210 与港澳台商合资经营</td> <td>330 外资企业</td> </tr> <tr> <td>141 国有联营</td> <td>171 私营独资</td> <td>220 与港澳台商合作经营</td> <td>340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td> </tr> <tr> <td>142 集体联营</td> <td>172 私营合伙</td> <td>230 港澳台商独资</td> <td></td> </tr> <tr> <td>143 国有与集体联营</td> <td>173 私营有限责任公司</td> <td>240 港澳台商投资股份有限公司</td> <td></td> </tr> </table>		内资	149 其他联营	174 私营股份有限公司	外商投资	110 国有	151 国有独资公司	190 其他	310 中外合资经营	120 集体	159 其他有限责任公司	港澳台商投资	320 中外合作经营	130 股份合作	160 股份有限公司	210 与港澳台商合资经营	330 外资企业	141 国有联营	171 私营独资	220 与港澳台商合作经营	340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	142 集体联营	172 私营合伙	230 港澳台商独资		143 国有与集体联营	173 私营有限责任公司	240 港澳台商投资股份有限公司																							
内资	149 其他联营	174 私营股份有限公司	外商投资																																																
110 国有	151 国有独资公司	190 其他	310 中外合资经营																																																
120 集体	159 其他有限责任公司	港澳台商投资	320 中外合作经营																																																
130 股份合作	160 股份有限公司	210 与港澳台商合资经营	330 外资企业																																																
141 国有联营	171 私营独资	220 与港澳台商合作经营	340 外商投资股份有限公司																																																
142 集体联营	172 私营合伙	230 港澳台商独资																																																	
143 国有与集体联营	173 私营有限责任公司	240 港澳台商投资股份有限公司																																																	
11 开业(成立)时间 _____年____月																																																			
12 营业状态 1 营业, 2 停业(歇业), 3 筹建, 4 当年关闭, 5 当年破产, 9 其他 <input type="checkbox"/>																																																			
14 机构类型 1 企业产业活动单位, 2 事业产业活动单位, 3 机关产业活动单位, 4 社会团体产业活动单位, 9 其他产业活动单位 <input type="checkbox"/>																																																			
17 年末从业人员数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万</td><td style="width:10%;">千</td><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十</td><td style="width:10%;">人</td> </tr> <tr> <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 </tr> </table>	百	万	千	百	十	人	<input type="text"/>	23 经营性单位收入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亿</td><td style="width:10%;">元</td><td style="width:10%;">千</td><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万</td><td style="width:10%;">元</td><td style="width:10%;">元</td> </tr> <tr> <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 </tr> </table>	百	亿	元	千	百	万	元	元	<input type="text"/>	24 行政事业性单位支出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元</td><td style="width:10%;">千</td><td style="width:10%;">百</td><td style="width:10%;">元</td><td style="width:10%;">元</td> </tr> <tr> <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td><input type="text"/></td> </tr> </table>	百	元	千	百	元	元	<input type="text"/>																										
百	万	千	百	十	人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百	亿	元	千	百	万	元	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百	元	千	百	元	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 归属法人单位情况																																																			
1 法人单位代码 <input style="width:100%;" type="text"/>	2 法人单位行政区划代码 <input style="width:100%;" type="text"/>																																																		
3 法人单位名称: _____																																																			
4 法人单位详细地址: _____																																																			

单位负责人: _____ 统计负责人: _____ 填表人: _____ 填表日期: 2004年 月 日
(产业活动单位在此盖章)

**规模以上工业企业
财务状况**
2004年

表号: B 6 0 4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乙	千 亿	百 亿	十 亿	千 万	百 万	十 万			千 元	乙	千 亿	百 亿	十 亿	千 万	百 万
一、年初存货	11								财产保险费	56							
二、年末资产负债	—	—							差旅费	57							
流动资产合计	12								工会经费	58							
其中: 短期投资	13								办公费	59							
应收帐款	14								职工教育费	60							
存 货	15								排污费	61							
其中: 产成品	16								财务费用	62							
流动资产年平均余额	17								其中: 利息支出	63							
长期投资	18								营业利润(亏损以“-”号填列)	64							
固定资产合计	19								投资收益(亏损以“-”号填列)	65							
固定资产原价	20								补贴收入	66							
其中: 生产经营用	21								营业外收入	67							
累计折旧	22								营业外支出	68							
其中: 本年折旧	23								利润总额(亏损以“-”号填列)	69							
固定资产净值年平均余额	25								应交所得税	70							
无形资产	26								广告费	72							
资产总计	29								劳动、失业保险费	73							
流动负债合计	30								养老保险和医疗保险费	74							
其中: 应付帐款	31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75							
长期负债合计	32								四、工资、福利费、增值税	—	—						
负债合计	33								本年应付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所有者权益合计	34								其中: 主营业务应付工资总额	77							
其中: 实收资本	35								本年应付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国家资本	36								其中: 主营业务应付福利费总额	79							
集体资本	37								本年应交增值税	80							
法人资本	38								本年进项税额	81							
个人资本	39								本年销项税额	82							
港澳台资本	40								工业中间投入合计	83							
外商资本	41								其中: 直接材料	84							
三、损益及分配	—	—							制造费用中的中间投入	85							
主营业务收入	43								管理费用中的中间投入	86							
主营业务成本	48								营业费用中的中间投入	87							
主营业务税金及附加	49								五、现金流量	—	—						
其他业务收入	51								经营活动产生的现金流量净额	88							
其他业务利润(亏损以“-”号填列)	52								投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净额	89							
营业费用	53								筹资活动产生的现金流量净额	90							
管理费用	54								六、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其中: 税金	55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表号: B606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文 号: 国统字(2004)8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规模以上工业企业
能源购进、消费及库存
2004年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年初库存量		购进量		合计	消费量			年末库存量	采用折标系数	参考折标系数
			甲	乙	丙	丁		实物量	金额(千元)	1. 工业生产消费			
原煤	吨	01	1	2	3	4	5	6	7	8	9	10	丁
洗精煤	吨	02											0.7143
其他洗煤	吨	03											0.9
型煤	吨	04											0.2-0.7
焦炭	吨	05											0.5-0.7
其他焦化产品	吨	06											0.9714
焦炉煤气	立方米	07											1.1-1.5
高炉煤气	立方米	08											5.714-6.143
其他煤气	立方米	09											1.286
天然气	立方米	10											1.7-12.1
液化天然气	吨	11											11-13.3
原油	吨	12											1.7572
汽油	吨	13											1.4286
煤油	吨	14											1.4714
柴油	吨	15											1.4714
燃料油	吨	16											1.4571
液化石油气	吨	17											1.4286
炼厂干气	吨	18											1.7143
其他石油制品	吨	19											1.5714
热力	百万千焦	20											1-1.4
电力	万千瓦时	21											0.0341
其他燃料	吨标准煤	22											4.04
能源合计	吨标准煤	23											-

补充资料: 一、2003年: 1. 综合能源消费量(24) 吨标准煤; 2. 工业总产值(25) 万元;

二、2004年: 1. 综合能源消费量(26) 吨标准煤; 2. 工业总产值(27) 万元。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说明: 1. 本表指标均保留两位小数; 2. 非能源加工转换企业, 综合能源消费量=工业生产消费的能源合计; 能源加工转换企业, 综合能源消费量=工业生产消费的能源合计+能源加工转换产出合计(B606-1表第11列); 3. 报告日期: 2004年 月 日

表号: B 6 0 6-1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文号: 国统字(2004)8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规模以上工业企业
能源购进、消费及库存附表
(有能源加工转换活动的规模以上工业企业填报)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工业生产消费量	加工转换投入合计										能源加工转换产出
				火力发电投入	供热投入	原煤入洗投入	炼焦投入	炼油投入	制气投入	液化投入	加工型煤投入	11		
甲	乙	丙	1	2	3	4	5	6	7	8	9	10	11	
原煤	吨	01												
洗精煤	吨	02												
其他洗煤	吨	03												
型煤	吨	04												
焦炭	吨	05												
其他焦化产品	吨	06												
焦炉煤气	万立方米	07												
高炉煤气	万立方米	08												
其他煤气	万立方米	09												
天然气	万立方米	10												
液化天然气	吨	11												
原油	吨	12												
汽油	吨	13												
柴油	吨	14												
燃料油	吨	15												
燃料油	吨	16												
液化石油气	吨	17												
炼厂干气	吨	18												
其他石油制品	吨	19												
热力	百万千焦	20												
电力	万千瓦时	21												
其他燃料	吨标准煤	22												
能源合计	吨标准煤	23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说明: 1. 本表所有指标均保留两位小数, 2. 计算“能源加工转换产出”指标使用的折算系数同B006表。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工业企业
主要原材料及水消费
2004年

表号: B607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主要原材料消费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年初库存量	本年购进量	本年消费量	工业生产消费	年末库存量
						4	
甲	乙	丙	1	2	3	4	5
生铁	吨	1					
钢材	吨	2					
钢材重复轧制	吨	3					
钢丝	吨	4					
铜	吨	5					
铝	吨	6					
铅	吨	7					
锌	吨	8					
铜材	吨	9					
铝材	吨	10					
润滑油	吨	11					
硫酸(折100%)	吨	12					
盐酸(含量31%以上)	吨	13					
浓硝酸(折100%)	吨	14					
氢氧化钠(烧碱)(折100%)	吨	15					
碳酸钠(纯碱)(折100%)	吨	16					
乙烯	吨	17					
合成橡胶	吨	18					
水泥	吨	19					
平板玻璃	重量箱	20					
	平方米	21					
原木	立方米	22					
其中: 直接消费	立方米	23	—	—			—
加工锯材消费	立方米	24	—	—			—
锯材	立方米	25					
纱	吨	26					
布	米	27					

水消费

指标名称	代码	数量(立方米)	金额(千元)
甲	乙	1	2
工业取水总量	28		
1. 地下水及地表水	29		
2. 自来水	30		
3. 其他水	31		—
重复用水量	32		—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规模以上工业企业 科技活动情况

表号: L 6 0 9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甲	乙	丙	1
一、科技活动情况	—	—	—	二、企业办科技机构情况	—	—	—
(一)科技活动人员合计	人	01		1.企业办科技机构数	个	25	
1.参加科技项目人员	人	02		2.机构科技活动人员	人	26	
2.科技管理和服务人员	人	03		其中:博士毕业	人	27	
合计中:全职人员	人	04		硕士毕业	人	28	
合计中:高中级技术职称人员	人	05		3.机构内部开展科技活动经费支出	千元	29	
无高中级技术职称的大学本科及以上学历人员	人	06		4.仪器设备原价	千元	30	
合计中:研究与试验发展(R&D)人员	人	07		三、科技活动产出情况	—	—	—
(二)科技活动经费筹集总额	千元	08		1.新产品产值	千元	31	
1.企业资金	千元	09		2.新产品销售收入	千元	32	
2.金融机构贷款	千元	10		其中:出口	千元	33	
3.政府资金	千元	11		3.专利申请数	件	34	
4.国外资金	千元	12		其中:发明专利	件	35	
5.其他资金	千元	13		4.拥有发明专利数	件	36	
(三)科技活动经费支出总额	千元	14		四、技术改造和技术获取情况	—	—	—
1.企业内部开展科技活动经费支出合计	千元	15		1.技术改造经费支出	千元	37	
内部支出合计按用途分组:	—	—	—	2.引进国外技术经费支出	千元	38	
①劳务费(含工资)	千元	16		3.引进技术的消化吸收经费支出	千元	39	
②原材料费	千元	17		4.购买国内技术经费支出	千元	40	
③购买和自制设备的支出	千元	18		五、其他情况	—	—	—
④其他	千元	19		1.工程技术人员	人	41	
合计中:研究与试验发展(R&D)经费支出	千元	20		2.当年用于科研的基建经费支出	千元	42	
合计中:新产品开发经费支出	千元	21		其中:土建工程支出	千元	43	
2.委托外单位开展科技活动经费支出	千元	22		3.生产经营用机器设备原价	千元	44	
其中:对研究院所及高等学校的支出	千元	23		其中:微电子控制设备	千元	45	
对其他企业支出	千元	24		4.享受各级政府对技术开发的减免税	千元	46	

补充资料: 企业在国外设立的科技机构(47) _____ 个。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规模以下工业企业
生产经营状况**

表号: B 6 1 0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一、生产情况	—	—	—									
工业总产值(当年价格)	千元	01										
工业销售产值(当年价格)	千元	02										
其中: 出口交货值	千元	03										
二、财务状况	—	—	千	百	十	亿	千	百	十	万	元	千
(一)年初存货	—	21										
(二)年末存货	—	22										
(三)资产负债	—	—	—									
固定资产原价	—	23										
本年折旧	—	24										
资产总计	—	25										
负债合计	—	26										
实收资本	—	27										
国家资本	—	28										
集体资本	—	29										
法人资本	—	30										
个人资本	—	31										
港澳台资本	—	32										
外商资本	—	33										
(四)损益及分配	—	—	—									
营业收入合计	—	34										
其中: 产品销售收入	—	35										
产品销售成本	—	36										
产品销售税金及附加	—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	38										
营业利润	—	39										
利润总额	—	40										
(五)从业人员劳动报酬	—	41										
(六)劳动、失业保险费	—	42										
(七)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	人	94										

补充资料: (04)本企业是□ 1 环保设备(产品)生产企业, 2 综合利用生产企业, 3 其他企业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规模以下工业企业 能源购进、消费及库存

表号: B 6 1 2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8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2004年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年初库存量	购进量		合计	消费量			年末库存量	
				实物量	金额(千元)		1.工业生产消费	用于原材料	2.非工业生产消费		在合计中: 运输工具消费
甲	乙	丙	1	2	3	4	5	6	7	8	9
原煤	吨	01									
洗精煤	吨	02									
其他洗煤	吨	03									
型煤	吨	04									
焦炭	吨	05								—	
其他焦化产品	吨	06								—	
焦炉煤气	万立方米	07								—	
高炉煤气	万立方米	08								—	
其他煤气	万立方米	09								—	
天然气	万立方米	10									
液化天然气	吨	11									
原油	吨	12								—	
汽油	吨	13									
煤油	吨	14									
柴油	吨	15									
燃料油	吨	16									
液化石油气	吨	17									
炼厂干气	吨	18									
其他石油制品	吨	19								—	
热力	百万千焦	20								—	
电力	万千瓦时	21									
其他燃料	吨标准煤	22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说明: 本表所有指标均保留两位小数。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总承包和专业承包 建筑业企业生产情况

2004年

表号: C 6 1 3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生产情况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甲	乙	丙	1
一、建筑业合同情况	—	—	—	六、年末自有施工机械设备	—	—	—
签订的合同额	千元	01		净值	千元	19	
1. 上年结转合同额	千元	02		总台数	台	20	
2. 本年新签合同额	千元	03		总功率	千瓦	21	
二、承包工程完成情况	—	—	—	七、从业人员情况	—	—	—
1. 直接从建设单位承揽工程完成的产值	千元	04		计算建筑业劳动生产率的平均人数	人	22	
① 自行完成产值	千元	05		年末从业人员中管理人员	人	23	
② 分包出去工程的产值	千元	06		年末从业人员中工程技术人员	人	24	
2. 从建设单位以外承揽工程完成的产值	千元	07		年末从业人员中持有一级资质证书的项目经理	人	25	
三、建筑业总产值	千元	08		年末从业人员中现场施工工人	人	26	
其中: 装饰装修产值	千元	09		其中: 持证上岗人员	人	27	
其中: 在外省完成的产值	千元	10		八、主要建筑材料消耗量	—	—	—
按构成分:	—	—	—	1. 钢材	吨	28	
1. 建筑工程产值	千元	11		2. 木材	立方米	29	
2. 安装工程产值	千元	12		3. 水泥	吨	30	
3. 其他产值	千元	13		4. 平板玻璃	重量箱	31	
四、竣工产值	千元	14		平方米	平方米	32	
五、房屋建筑施工面积	平方米	15		5. 铝材	吨	33	
其中: 本年新开工面积	平方米	16		九、补充资料	—	—	—
其中: 实行投标承包面积	平方米	17		企业总产值	千元	34	
其中: 本年新开工	平方米	18		在境外完成的营业额	千元	35	

房屋建筑完成情况

指标名称	代码	房屋建筑竣工面积(平方米)	竣工房屋价值(千元)
甲	乙	1	2
合 计	36		
1. 厂房、仓库	37		
2. 住宅	38		
3. 办公用房	39		
4. 批发和零售用房	40		
5. 住宿和餐饮用房	41		
6. 居民服务业用房	42		
7. 教育用房	43		
8. 文化、体育和娱乐用房	44		
9. 卫生医疗用房	45		
10. 科研用房	46		
11. 其他用房	47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总承包和专业承包
建筑业企业财务状况**
2004年

表号：C 6 1 4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乙	千	百	十	万	千			百	十	万	千	百	十	万	
甲	乙							甲	乙								
一、年初存货	11							工程结算税金及附加	49								
二、年末资产负债	—	—						工程结算利润	50								
流动资产合计	12							其他业务收入	51								
其中：存货	15							其他业务利润	52								
长期投资	18							经营费用	53								
固定资产合计	19							管理费用	54								
固定资产原价	20							其中：税金	55								
其中：生产经营用	21							财产保险费	56								
累计折旧	22							差旅费	57								
其中：本年折旧	23							工会经费	58								
在建工程	24							财务费用	62								
无形资产	26							其中：利息支出	63								
递延资产	27							营业利润	64								
其他资产	28							营业外收入	67								
资产总计	29							营业外支出	68								
流动负债合计	30							利润总额	69								
长期负债合计	32							应交所得税	70								
负债合计	33							应付利润	71								
所有者权益合计	34							劳动、失业保险费	73								
其中：实收资本	35							住房公积金及住房补贴	75								
国家资本	36							四、工资、福利费	—	—							
集体资本	37							本年应付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法人资本	38							其中：主营业务应付工资总额	77								
个人资本	39							本年应付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港澳台资本	40							其中：主营业务应付福利费总额	79								
外商资本	41							五、补充资料	—	—							
三、损益及分配	—	—						应收工程款	91								
工程结算收入	43							其中：竣工工程	92								
工程结算成本	48							六、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劳务分包及资质以外建筑业
企业生产经营状况**

表号：C 6 1 5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一、生产情况												
1. 建筑业总产值	千元	01										
其中：装饰装修产值	千元	02										
按构成分：(1)建筑工程产值*	千元	03										
(2)安装工程产值*	千元	04										
(3)其他产值*	千元	05										
2. 竣工产值*	千元	06										
3. 房屋建筑施工面积*	平方米	07										
其中：本年新开工*	平方米	08										
4. 房屋建筑竣工面积*	平方米	09										
其中：住宅*	平方米	10										
5. 从业人员情况	—	—										
计算建筑业劳动生产率的平均人数	人	11										
年末从业人员中管理人员	人	12										
年末从业人员中工程技术人员	人	13										
年末从业人员中现场施工工人	人	14										
二、财务状况												
(一) 资产负债	—	—	千	百	十	亿	千	百	十	万	千	元
固定资产原价	—	23										
本年折旧	—	24										
资产总计	—	25										
负债合计	—	26										
实收资本	—	27										
国家资本	—	28										
集体资本	—	29										
法人资本	—	30										
个人资本	—	31										
港澳台资本	—	32										
外商资本	—	33										
(二) 损益及分配	—	—										
营业收入合计	—	34										
其中：主营业务收入(工程结算收入)	—	35										
主营业务成本(工程结算成本)	—	36										
主营业务税金及附加(工程结算税金及附加)	—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	38										
营业利润	—	39										
利润总额	—	40										
(三) 从业人员劳动报酬	—	41										
(四) 劳动、失业保险费	—	42										
(五) 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	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说明：带*号的指标劳务分包建筑业企业免填。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房地产开发企业经营情况

表号: H 6 1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投资额和新增固定资产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资金来源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甲	乙	丙	1
计划总投资		万元	101		一、本年资金来源合计	万元	301	
实际需要的总投资		万元	102		1.上年末结余资金	万元	302	
自开始建设 至本年底	累计完成投资	万元	103		2.本年资金来源小计	万元	303	
	累计新增固定资产	万元	104		(1)国家预算内资金	万元	304	
未完工程累计投资		万元	105		(2)国内贷款	万元	305	
本年计划投资		万元	106		(3)债券	万元	306	
本年完成投资		万元	107		(4)利用外资	万元	307	
其中:商品房建设投资额		万元	115		其中:外商直接投资	万元	308	
土地开发投资额		万元	116		对外借款	万元	309	
按构成分:建筑工程		万元	108		其中:统借统还	万元	310	
安装工程		万元	109		(5)自筹资金	万元	311	
设备工器具购置		万元	110		其中:自有资金	万元	316	
其中:购置旧设备		万元	111		(6)其他资金来源	万元	318	
其他费用		万元	112		其中:集资	万元	319	
其中:非建筑物的购置费		万元	113		定金及预收款	万元	323	
土地购置费		万元	114		二、本年各项应付款合计	万元	320	
按工程用途分:		—	—	—	其中:工程款	万元	321	
住宅		万元	118		设备、器材款	万元	322	
其中:别墅、高档公寓		万元	119		其他指标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经济适用房		万元	120			甲	乙	丙
办公楼		万元	121		竣工房屋住宅套数合计	套	503	
商业营业用房		万元	122		其中:别墅、高档公寓套数	套	504	
其他		万元	123		经济适用房套数	套	505	
本年新增固定资产		万元	128		拆迁还建竣工房屋面积	平方米	506	
土地购置和开发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统建代建竣工房屋面积	平方米	507	
	甲	乙	丙	1	公益性建筑竣工面积	平方米	508	
本年完成开发土地面积		平方米	401		全年从业人员劳动报酬	万元	511	
待开发土地面积		平方米	403					
本年购置土地面积		平方米	404					
本年土地成交价款		万元	405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房地产开发企业经营情况续表 (H616 表)

利用外资情况

国别(地区)名称	国别(地区)代码	金额(万元)	直接投资
甲	乙	520	521

施工、竣工房屋面积及竣工价值

指标名称	代码	施工面积(平方米)		竣工面积(平方米)	竣工房屋价值(万元)
		1	新开工 2		
甲	乙				
合 计	601				
1.住宅	602				
其中:别墅、高档公寓	603				
经济适用房	604				
2.办公楼	605				
3.商业营业用房	606				
4.其他	607				

商品房销售与出租情况

指标名称	代码	实际销售面积(平方米)		预售面积(平方米)	出租面积(平方米)		空置面积(平方米)	空置一年至三年(含一年)	空置三年以上(含三年)	实际销售额(万元)	销售给个人	
		1	销售给个人 2		4	出租给个人 5					9	10
甲	乙											
合 计	701											
其中:外销(租)	702						—	—	—			
1.住宅	704											
其中:别墅、高档公寓	705											
经济适用房	706											
2.办公楼	708											
3.商业营业用房	709											
4.其他	710											

法人单位名称:

房地产开发企业财务状况

表号: H 6 1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甲	乙	千	百	十	亿			千	百	十	万	千	元
一、年初存货	11							主营业务税金及附加	49						
二、年末资产负债	—	—						主营业务利润	50						
流动资产合计	12							其他业务收入	51						
其中: 存货	15							其他业务利润	52						
固定资产原价	20							销售费用	53						
累计折旧	22							管理费用	54						
其中: 本年折旧	23							其中: 税金	55						
资产总计	29							差旅费	57						
负债合计	33							工会经费	58						
所有者权益合计	34							财务费用	62						
其中: 实收资本	35							其中: 利息支出	63						
国家资本	36							营业利润	64						
集体资本	37							投资收益	65						
法人资本	38							营业外收入	67						
个人资本	39							营业外支出	68						
港澳台资本	40							利润总额	69						
外商资本	41							应交所得税	70						
三、损益及分配	—	—						劳动、失业保险费	73						
主营业务收入	43							住房公积金及住房补贴	75						
土地转让收入	44							四、工资、福利费	—	—					
商品房销售收入	45							本年应付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房屋出租收入	46							本年应付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其他收入	47							五、经济适用房减免税费	93						
主营业务成本	48							六、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房地产物业管理、中介服务及其他房地产业企业生产经营状况

表号：H 6 1 8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一、物业管理情况	—	—	—								
1. 在管物业占地面积	平方米	01									
2. 在管房屋建筑面积	平方米	02									
其中：①住宅	平方米	03									
②办公用房	平方米	04									
③商业营业用房	平方米	05									
④厂房	平方米	06									
二、中介服务情况	—	—	—								
1. 房屋代理销售：成交合同面积	平方米	07									
成交合同数	个	08									
成交合同金额	千元	09									
2. 房屋代理出租：成交合同面积	平方米	10									
成交合同数	个	11									
成交合同金额	千元	12									
三、财务状况	—	—	千	百	十	亿	千	百	十	万	千
(一) 资产负债	—	—	—								
固定资产原价	—	23									
本年折旧	—	24									
资产总计	—	25									
负债合计	—	26									
实收资本	—	27									
国家资本	—	28									
集体资本	—	29									
法人资本	—	30									
个人资本	—	31									
港澳台资本	—	32									
外商资本	—	33									
(二) 损益及分配	—	—	—								
营业收入合计	—	34									
其中：主营业务收入	—	35									
主营业务成本	—	36									
主营业务税金及附加	—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	38									
营业利润	—	39									
利润总额	—	40									
(三) 从业人员劳动报酬	—	41									
(四) 劳动、失业保险费	—	42									
(五) 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	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 业务活动情况

表号: D 6 1 9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 0 0 4 年

填报企业类型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填报企业类型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丁	1	甲	乙	丙	丁	1
公路运输企业	汽车	辆	01		民航企业	民航	旅客吞吐量	人	25
	其中:客车	辆	02			机场	货物吞吐量	吨	26
	客位	客位	03			航空公司	飞机	架	27
	其中:货车	辆	04				其中:通用航空飞机	架	28
	吨位	吨位	05				运输飞机座位数	个	29
	客运量	人	06				客运量	人	30
	旅客周转量	人公里	07				旅客周转量	人公里	31
	货运量	吨	08				货运量	吨	32
	货物周转量	吨公里	09				货物周转量	吨公里	33
水路运输企业	机动船	艘	10		管道企业	输油(气)管道里程	公里	34	
	净载重	吨位	11			输油(气)量	万吨	35	
	载容量	客位	12			输油(气)周转量	万吨公里	36	
	驳船	艘	13		城市交通企业	公共汽(电)车	辆	37	
	客运量	人	14			出租汽车	辆	38	
	旅客周转量	人公里	15			客运量	人	39	
港口企业	货运量	吨	16		电信企业	局用交换机容量	万门	40	
	国际标准集装箱运量	TEU	17			固定电话用户	万户	41	
	货物周转量	吨公里	18			其中:住宅电话用户	万户	42	
	码头长度	米	19			移动交换机容量	万户	43	
	泊位数	个	20			移动电话用户	万户	44	
	其中:万吨级	个	21			其中:CDMA用户	万户	45	
	港口货物吞吐量	万吨	22			增值电信业务服务收入	万元	46	
国际标准集装箱吞吐量	TEU	23		其中:1.因特网接入服务		万元	47		
装卸企业	装卸量	万吨	24		2.信息服务	万元	48		

补充资料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年初库存量	本年消费量	年末库存量
甲	乙	丙	1	2	3
煤炭	吨	49			
汽油(1升=0.74公斤)	吨	50			
柴油(重柴油1升=0.92公斤,轻柴油1升=0.87公斤)	吨	51			
煤油	吨	52			
燃料油	吨	53			
液化天然气	吨	54			
液化石油气	吨	55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 0 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
财务状况**

表号：D 6 2 0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甲	代码 乙	本年实际							
		千 亿	百 亿	十 亿	亿 元	千 万	百 万	十 万	万 元
一、资产负债	—	—							
固定资产原价	23								
本年折旧	24								
资产总计	25								
负债合计	26								
实收资本	27								
国家资本	28								
集体资本	29								
法人资本	30								
个人资本	31								
港澳台资本	32								
外商资本	33								
二、损益及分配	—	—							
营业收入合计	34								
其中：主营业务收入	35								
主营业务成本	36								
主营业务税金及附加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38								
营业利润	39								
利润总额	40								
三、从业人员劳动报酬	41								
四、劳动、失业保险费	42								
五、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表号: E 6 2 1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批发和零售业企业商品销售分类情况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2 0 0 4 年

指标名称	代 码	销售合计 (千元)	批发额 (千元)	零售额 (千元)	指标名称	代 码	销售合计 (千元)	批发额 (千元)	零售额 (千元)
甲	乙	1	2	3	甲	乙	1	2	3
总 计	01				10. 家用电器和音像器材类	21			
1. 食品、饮料、烟酒类	02				11. 中西药品类	22			
(1) 粮油类	03				其中: 西药	23			
(2) 肉禽蛋类	04				中草药及中成药	24			
(3) 其他食品类	05				12. 文化办公用品类	25			
(4) 饮料类	06				13. 家具类	26			
(5) 烟酒类	07				14. 通讯器材类	27			
2. 服装、鞋帽、针纺织品类	08				15. 煤炭及制品类	28			
(1) 服装类	09				16. 木材及制品类	29			
(2) 鞋帽类	10				17. 石油及制品类	30			
(3) 针、纺织品类	11				18. 化工材料及制品类	31			
3. 化妆品类	12				其中: 化肥类	32			
4. 金银珠宝类	13				19. 金属材料类	33			
5. 日用品类	14				20. 建筑及装潢材料类	34			
其中: 洗涤用品类	15				21. 机电产品及设备类	35			
儿童玩具类	16				其中: 农机类	36			
6. 五金、电料类	17				22. 汽车类	37			
7. 体育、娱乐用品类	18				23. 种子饲料类	38			
8. 书报杂志类	19				24. 棉麻类	39			
9. 电子出版物及音像制品类	20				25. 其他类	40			

补充资料: 年末零售营业面积(41) _____ 平方米

单位负责人: _____

统计负责人: _____

填表人: _____

报出日期: 2 0 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 企业财务状况

2004年

表号：E 6 2 2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甲	乙	千	百	十	千	百			十	千	百	十	千		
一、年初存货	11								主营业务税金及附加	49							
二、年末资产负债	—	—							主营业务利润	50							
流动资产合计	12								其他业务利润	52							
其中：存货	15								营业费用	53							
固定资产原价	20								管理费用	54							
累计折旧	22								其中：税金	55							
其中：本年折旧	23								差旅费	57							
资产总计	29								工会经费	58							
负债合计	33								财务费用	62							
所有者权益合计	34								其中：利息支出	63							
其中：实收资本	35								营业利润	64							
国家资本	36								利润总额	69							
集体资本	37								应交所得税	70							
法人资本	38								劳动、失业保险费	73							
个人资本	39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75							
港澳台资本	40								四、工资、福利费、增值税	—	—						
外商资本	41								本年应付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三、损益及分配	—	—							本年应付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营业收入合计	42								本年应交增值税	80							
其中：主营业务收入	43								五、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主营业务成本	48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 企业经营状况

表号：E 6 2 4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甲	乙	丙	1
一、住宿餐饮经营情况	—	—	—	二、住宿餐饮设施状况	—	—	—
营业额	千元	01		1. 客房数	间	06	
1. 客房收入	千元	02		2. 床位数	个	07	
2. 餐费收入	千元	03		3. 餐位数	位	08	
3. 商品销售收入	千元	04		三、补充资料	—	—	—
4. 其他收入	千元	05		年末餐饮营业面积	平方米	09	

财务状况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甲	乙	千亿元	十亿元	千万元	十万元			千元	甲	乙	千亿元	十亿元	千万元
一、年初存货	11							主营业务成本	48						
二、年末资产负债	—	—						主营业务税金及附加	49						
流动资产合计	12							主营业务利润	50						
其中：存货	15							其他业务利润	52						
固定资产原价	20							营业费用	53						
累计折旧	22							管理费用	54						
其中：本年折旧	23							其中：税金	55						
资产总计	29							差旅费	57						
负债合计	33							工会经费	58						
所有者权益合计	34							财务费用	62						
其中：实收资本	35							其中：利息支出	63						
国家资本	36							营业利润	64						
集体资本	37							利润总额	69						
法人资本	38							应交所得税	70						
个人资本	39							劳动、失业保险费	73						
港澳台资本	40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75						
外商资本	41							四、工资、福利费	—	—					
三、损益及分配	—	—						本年应扣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营业收入合计	42							本年应扣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其中：主营业务收入	43							五、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
企业经营状况

表号: E 6 2 5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指标名称	计量单位	代码	本年实际
甲	乙	丙	1	甲	乙	丙	1
一、住宿餐饮经营情况	—	—	—	二、住宿餐饮设施状况	—	—	—
营业额	千元	01		1. 客房数	间	06	
1. 客房收入	千元	02		2. 床位数	个	07	
2. 餐费收入	千元	03		3. 餐位数	位	08	
3. 商品销售收入	千元	04		三、补充资料	—	—	—
4. 其他收入	千元	05		年末餐饮营业面积	平方米	09	

财务状况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千	百	十	亿	千	百	十	万
甲	乙	元	元	元	元	元	元	元	元
(一) 资产负债	—	—	—	—	—	—	—	—	—
固定资产原价	23								
本年折旧	24								
资产总计	25								
负债合计	26								
实收资本	27								
国家资本	28								
集体资本	29								
法人资本	30								
个人资本	31								
港澳台资本	32								
外商资本	33								
(二) 损益及分配	—	—	—	—	—	—	—	—	—
营业收入合计	34								
其中: 主营业务收入	35								
主营业务成本	36								
主营业务税金及附加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38								
营业利润	39								
利润总额	40								
(三) 从业人员劳动报酬	41								
(四) 劳动、失业保险费	42								
(五) 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服务业企业财务状况

表号: G 6 2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甲	代码 乙	本年实际								
		千 亿	百 亿	十 亿	亿 元	千 万	百 万	十 万	万 元	千 元
一、资产负债	—	—								
固定资产原价	23									
本年折旧	24									
资产总计	25									
负债合计	26									
实收资本	27									
国家资本	28									
集体资本	29									
法人资本	30									
个人资本	31									
港澳台资本	32									
外商资本	33									
二、损益及分配	—	—								
营业收入合计	34									
其中: 主营业务收入	35									
主营业务成本	36									
主营业务税金及附加	37									
费用合计(营业费用、管理费用、财务费用)	38									
营业利润	39									
利润总额	40									
三、从业人员劳动报酬	41									
四、劳动、失业保险费	42									
五、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行政事业单位财务状况

表号: G 6 2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 标 名 称	代 码	本 年 实 际									
		千 亿	百 亿	十 亿	亿 元	千 万	百 万	十 万	万 元	千 元	
甲	乙										
一、年末资产	01										
其中: 固定资产原价	02										
二、上年结余	03										
三、本年收入合计	04										
其中: 财政拨款	05										
上级补助收入	06										
事业收入	07										
经营收入	08										
四、本年支出合计	09										
其中: 人员支出	10										
公用支出	11										
其中: 福利费	12										
劳务费	13										
就业补助费	14										
取暖费	15										
差旅费	16										
各种设备、交通工具及图书资料购置费	17										
对个人和家庭补助支出	18										
其中: 助学金	19										
抚恤和生活补助	20										
五、收支结余	21										
六、经营税金(限事业单位填)	22										
七、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单位负责人:

统计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个体经营户经营情况调查表 (参考表式)

表 号: 6 2 9 表
制表机关: 国 家 统 计 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 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2 0 0 4 年

个体经营户编码: □□□□□□

一、个体经营户基本情况

个体经营户名称: _____ 个体经营户主姓名: _____ 联系电话: _____ 邮政编码: □□□□□□ 经营场所位于: _____省(自治区、直辖市) _____地(区、市、州、盟) _____县(市、区、旗) _____乡(镇、街道) _____村(居)委会 地址码: □□□□□□-□□□□-□□□□(由调查人员填写)	行业类别: □□(由调查人员填写) 01.工业 02.建筑业 03.交通运输业 04.批发业 05.零售业 06.住宿业 07.餐饮业 08.房地产业 09.租赁和商务服务业 10.教育 11.卫生和福利业 12.居民服务业 13.文化、体育和娱乐业 14.其他服务业 是否有营业执照 <input type="checkbox"/> 1有 <input type="checkbox"/> 2无
---	---

二、个体经营户经济指标

指标名称	代码	计量单位	本年实际
甲	乙	丙	1
从业人员数	01	人	
营业收入	02	元	
营业支出	03	元	
其中: 雇员报酬	04	元	
缴纳税费	05	元	
固定资产原价	06	元	

填表人: _____

填表日期: 2 0 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铁路运输业资产负债表

表号: D 6 3 0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资产	行次	年初数 (千元)	年末数 (千元)	负债和所有者权益		行次	年初数 (千元)	年末数 (千元)
				甲	乙			
流动资产				流动负债				
货币资金	1			短期借款	46			
短期投资	2			应付票据	47			
应收票据	3			应付帐款	48			
应收帐款	4			预收帐款	49			
减:坏帐准备	5			其他应付款	50			
应收帐款净额	6			应付工资	51			
预付帐款	7			应付福利费	52			
其他应收款	8			未交税金	53			
存货	9			未付利润	54			
待摊费用	10			其他未交款	55			
待处理流动资产净损失	11			预提费用	56			
一年内到期的长期债券投资	12			一年内到期的长期负债	57			
其他流动资产	13			其他流动负债	58			
流动资产合计	21			流动负债合计	65			
长期投资				长期负债				
长期投资	22			长期借款	66			
拨付所属投资	23			应付债券	67			
固定资产				长期应付款	68			
固定资产原价	24			其他长期负债	75			
减:累计折旧	25			长期负债合计	76			
固定资产净值	26			所有者权益				
固定资产清理	27			实收资本	78			
在建工程	28			上级拨入投资	79			
待处理固定资产净损失	29			资本公积	80			
固定资产合计	35			盈余公积	81			
无形及递延资产				未分配利润	82			
无形资产	36			所有者权益合计	85			
递延资产	37							
无形及递延资产合计	40							
其他资产								
其他长期资产	41							
资产合计	45			负债及所有者权益合计	90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铁路运输业损益表

表号：D 6 3 1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 0 0 4 年

项目	行次	本年累计数(千元)
甲	乙	1
一、主营业务收入	1	
减：营业成本	2	
营业税金及附加	4	
二、主营业务利润	7	
加：其他业务利润	9	
减：管理费用	10	
财务费用	11	
三、营业利润	14	
加：投资收益	15	
营业外收入	16	
减：营业外支出	17	
四、利润总额	20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 0 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铁路运输业运输总支出表

表号：D 6 3 2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项目	计量单位	行次	合 计		客 运		货 运		路 网	
			计划数	实际数	计划数	实际数	计划数	实际数	计划数	实际数
甲	乙	丙	1	2	3	4	5	6	7	8
运输总支出	千元	1								
营业支出	千元	2								
1. 营运成本	千元	3								
(1) 工资	千元	4								
(2) 材料	千元	5								
(3) 燃料	千元	6								
(4) 电力	千元	7								
(5) 折旧	千元	8								
(6) 其他	千元	9								
2. 管理费用	千元	10								
3. 财务费用	千元	11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国家邮政企业财务状况

表号: D 6 3 3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千元)	指标名称	代码	本年实际 (千元)
甲	乙	1	甲	乙	1
一、年初存货	11		主营业务成本	48	
二、年末资产负债	—	—	主营业务税金及附加	49	
流动资产合计	12		主营业务利润	50	
其中: 存货	15		其他业务利润	52	
固定资产原价	20		管理费用	54	
累计折旧	22		其中: 税金	55	
其中: 本年折旧	23		差旅费	57	
资产总计	29		工会经费	58	
负债合计	33		财务费用	62	
所有者权益合计	34		其中: 利息支出	63	
其中: 实收资本	35		营业利润	64	
国家资本	36		利润总额	69	
集体资本	37		应交所得税	70	
法人资本	38		劳动、失业保险费	73	
个人资本	39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75	
港澳台资本	40		四、工资、福利费	—	—
外商资本	41		本年应付工资总额(贷方累计发生额)	76	
三、损益及分配	—	—	本年应付福利费总额(贷方累计发生额)	78	
营业收入合计	42		五、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4	
其中: 主营业务收入	4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单位名称:

银行业及相关金融业 资产负债表

表号: G 6 3 4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单位代码

2004年

行列名称	项目			行列名称	项目				
	代码	本期余额 (千元)	比年初 增减 (千元)		比同期 增减 (千元)	代码	本期余额 (千元)	比年初 增减 (千元)	比同期 增减 (千元)
甲	乙	1	2	3	甲	乙	1	2	3
流动资产	—	—	—	—	流动负债	—	—	—	—
一、现金及银行存款	1				一、短期存款	35			
二、存放中央银行	2				二、活期储蓄存款	36			
三、存放同业	3				三、财政性存款	37			
四、存放联行款项	4				四、向中央银行借款	38			
五、拆放同业	5				五、同业存放	39			
六、短期贷款	6				六、联行存放	40			
七、应收帐款	7				七、同业拆入	41			
其中: 应收利息	8				八、解解汇款及临时存款	42			
八、减: 坏账准备	9				九、汇出汇款	43			
九、短期投资	10				十、委托存款	44			
十、减: 短期投资跌价准备	11				十一、卖出回购资产	45			
十一、委托贷款及投资	12				十二、应付及预提帐项	46			
十二、买入返售资产	13				十三、存放短期保证金	47			
十三、特处理流动资产损失	14				十四、发行短期债券	48			
十四、其他流动资产	15				十五、其他流动负债	49			
长期资产	16				长期负债	—	—	—	—
十五、中长期贷款	17				十六、长期存款	50			
十六、减: 贷款损失准备	18				十七、定期储蓄存款	51			
十七、长期投资	19				十八、存放长期保证金	52			
十八、减: 长期投资减值准备	20				十九、发行长期债券	53			
十九、固定资产净值	21				二十、其他长期负债	54			
固定资产	22				所有者权益	—	—	—	—
减: 累计折旧	23				二十一、实收资本	55			
二十、固定资产减值准备	24				二十二、资本公积	56			
二十一、固定资产清理	25				二十三、公积金	57			
二十二、在建工程	26				二十四、公益金	58			
二十三、减: 在建工程减值准备	27				二十五、未分配利润	59			
二十四、特处理固定资产损失	28				其中: 本年利润	60			
无形递延及其他资产	29				二十六、一般准备金	61			
二十五、无形递延及其他资产	30								
二十六、减: 抵债资产减值准备	31								
二十七、减: 无形资产减值准备	32								
二十八、减: 其他资产减值准备	33								
资产总计	34				负债总计	62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单位名称:

银行业及相关金融业

表号: G 6 3 5 表

单位代码

损益表

2004年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 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行列名称	项目	代码	本外币累计数 (千元)	本币累计数 (千元)	外币累计数 (千元)
	甲	乙	1	2	3
一、营业收入		1			
利息收入		2			
金融机构往来收入		3			
手续费收入		4			
证券销售差价收入		5			
证券发行差价收入		6			
租赁收益		7			
汇兑收益		8			
其他营业收入		9			
二、营业支出		10			
利息支出		11			
金融机构往来支出		12			
手续费支出		13			
营业费用		14			
1. 职工工资		15			
2. 福利费		16			
3. 业务宣传费		17			
4. 业务招待费		18			
5.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19			
6. 工会经费		20			
7. 税金		21			
8. 差旅费		22			
9. 会议费		23			
10. 电子设备运转费		24			
11. 印刷费		25			
12. 公杂费		26			
13. 租赁费		27			
14. 递延资产摊销		28			
汇兑损失		29			
当年提取准备金		30			
其他营业支出		31			
三、投资收益		32			
四、营业税金及附加		33			
五、营业利润		34			
营业外收入		35			
营业外支出		36			
六、利润总额		37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 年 月 日

单位名称：
 请选择□(1 财产保险公司, 2 人寿保险公司, 3 再保
 险公司, 4 保险资产管理公司, 5 保险中介机构)
 单位代码

保险行业资产负债表
 2004年

表号: G 6 3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资 产			负债及所有者权益		
甲	行次	期末数	甲	行次	期末数
流动资产:	—	—	流动负债:	—	—
现金	1		短期借款	46	
银行存款	2		拆入资金	47	
短期投资	3		应手续费	48	
拆出资金	4		应付佣金	49	
买入返售证券	5		应付分保帐款	50	
保户质押贷款	6		预收保费	51	
垫付保费	7		预收分保赔款	52	
应收资产管理费	8		存入分保准备金	53	
应收利息	9		存入保证金	54	
应收保费	10		应付工资	55	
其他应收款	11		应付福利费	56	
应收款项小计	12		应付保户利益	57	
减: 坏帐准备	13		应付利润	58	
预付款项	14		应交税金	59	
存出分保准备金	15		卖出回购证券款	60	
存出保证金	16		其他应付款	61	
存出营业保证金	17		预提费用	62	
待摊费用	18		未决赔款准备金	63	
一年内到期的长期债券投资	19		其中: 已发生未报告责任准备金	64	
其他流动资产	20		未到期责任准备金	65	
流动资产合计	21		保户储金	66	
长期投资:	—	—	一年内到期的长期负债	67	
长期股权投资	22		其他流动负债	68	
长期债券投资	23		系统往来	69	
长期基金投资	24		流动负债合计	70	
减: 投资风险准备	25		长期负债:	—	—
证券投资基金	26		长期责任准备金	71	
拨付所属资金	27		寿险责任准备金	72	
长期贷款	28		长期健康险责任准备金	73	
减: 贷款呆帐准备	29		保险保障基金	74	
其他长期投资	30		长期借款	75	
合并价差	31		长期应付款	76	
固定资产:	—	—	外币兑换	77	
固定资产原值	32		住房周转金	78	
减: 累计折旧	33		其他长期负债	79	
固定资产净值	34		长期负债合计	80	
在建工程	35		负债合计	81	
固定资产清理	36		递延税项	82	
待处理固定资产净损失	37		所有者权益:	—	—
固定资产合计	38		实收资本	83	
无形资产及其他资产:	—	—	上级拨入资金	84	
无形资产	39		资本公积	85	
长期待摊费用	40		其中: 汇差调整	86	
存出资本保证金	41		盈余公积	87	
抵债物资	42		其中: 公益金	88	
其他长期资产	43		总准备金	89	
无形资产及其他资产合计	44		未分配利润	90	
			所有者权益合计	91	
			少数股东权益	92	
资产总计	45		负债及所有者权益总计	9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 年 月 日

单位名称:

请选择□(1 财产保险公司, 2 人寿保险公司, 3 再保险公司, 4 保险资产管理公司, 5 保险中介机构)

单位代码

保险业利润表

2004年

表号: G 6 3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项 目	行次	本年累计数(千元)
甲	乙	1
一、业务收入	1	
其中: 1. 保费收入	2	
2. 资产管理费收入	3	
3. 中介业务收入	4	
二、业务支出	5	
其中: 1. 赔款及给付支出	6	
2. 资产管理业务成本	7	
3. 中介业务支出	8	
4. 营业税金及附加	9	
5. 营业费用	10	
三、准备金提转差	11	
四、承保利润	12	
加: 投资收益	13	
其他收入	14	
减: 其他支出	15	
五、营业利润	16	
加: 营业外收入	17	
减: 营业外支出	18	
六、利润总额	19	
减: 所得税	20	
七、净利润	21	

单位负责人:

填表人:

填表日期: 200 年 月 日

单位名称:

请选择口(1 财产保险公司, 2 人寿保险公司, 3 再保险公司, 4 保险资产管理公司, 5 保险中介机构)

单位代码

保险业业务费用明细表

2004年

表号: G 6 3 8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科目	行次	本年累计数 (千元)	科目	行次	本年累计数 (千元)
甲	乙	1	甲	乙	1
一、手续费支出	1		24. 职工教育费	28	
二、佣金支出	2		25. 职工福利费	29	
三、营业费用	3		26. 劳动保险费	30	
(一) 业务管理费	4		27. 劳动保护费	31	
1. 邮电费	5		28. 待业保险费	32	
2. 印刷费	6		29. 车船使用费	33	
3. 差旅费	7		30. 银行结算费	34	
4. 会议费	8		31. 取暖降温费	35	
5. 水电费	9		32. 安全防卫费	36	
6. 租赁费	10		33. 诉讼公正费	37	
7. 修理费	11		34. 开发转让费	38	
8. 外事费	12		35. 电子设备运转费	39	
9. 公杂费	13		36. 低值易耗品摊销	40	
10. 咨询费	14		37. 印花税	41	
11. 审计费	15		38. 房产税	42	
12. 绿化费	16		39. 车船使用税	43	
13. 无形资产摊销	17		40. 土地使用税	44	
14. 企业财产保险费	18		41. 其他	45	
15. 长期待摊费用	19		(二) 固定资产折旧费	46	
16. 住房公积金	20		(三) 提存坏帐准备金	47	
17. 社会统筹保险费	21		(四) 提存投资风险准备金	48	
18. 上交管理费	22		(五) 提存贷款呆帐准备金	49	
19. 同业公会会费	23		(六) 宣传费	50	
20. 学会会费	24		(七) 防预费	51	
21. 董事会费	25		(八) 招待费	52	
22. 工会经费	26				
23. 职工工资	27		合 计	53	

单位负责人:

填表人:

填表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证券业资产负债表

2004年

表号: G 6 3 9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资 产	代码	年初数 (千元)		年末数 (千元)		负债和所有者权益	代码	年初数 (千元)		年末数 (千元)	
		甲	乙	1	2			甲	乙	1	2
流动资产:	—	—	—	—	—	流动负债:	—	—	—	—	—
现金	01					短期借款	57				
银行存款	02					其中: 质押借款	58				
其中: 自有资金存款	03					拆入资金	59				
客户资金存款	04					卖出回购证券款	60				
交易保证金	05					应付款项	61				
应收保证金	06					应付工资	62				
清算备付金	08					应付福利费	63				
其中: 自有备付金	09					应付利润	64				
客户备付金	10					其他应付款	65				
短期投资	11					应交税金	66				
拆出资金	17					其他应收款	67				
买入返售证券	18					预收帐款	68				
应收款项	21					预提费用	69				
减: 坏账准备	22					受托资金	70				
应收款项净额	23					一年内到期的长期负债	71				
应收股利	24					其他流动负债	72				
应收利息	25					流动负债合计	73				
其他应收款	26										
预付帐款	27										
受托资产	28										
待摊费用	32										
一年内到期的长期债券投资	33										
其他流动资产	34										
流动资产合计	35										
长期投资:	—	—	—	—	—	长期负债:	—	—	—	—	—
长期股权投资	36					长期借款	74				
长期债券投资	37					应付债券	75				
长期投资合计	38					长期应付款	76				
减: 长期投资减值准备	39					其他长期负债	77				
长期投资净额	40					长期负债合计	78				
固定资产:	—	—	—	—	—						
固定资产原价	41					递延税项:	—	—	—	—	—
减: 累计折旧	42					递延税款贷项	79				
固定资产净值	43					负债合计	87				
减: 固定资产减值准备	44										
固定资产净额	45										
在建工程	46					所有者权益:	—	—	—	—	—
固定资产清理	48					实收资本(股本)	88				
待处理固定资产净损失	49					资本公积	89				
固定资产合计	50					一般风险准备	90				
无形资产及其他资产:	—	—	—	—	—	盈余公积	91				
无形资产	51					其中: 法定公益金	92				
长期待摊费用	52					未分配利润	93				
其他长期资产	53					所有者权益合计	94				
无形资产及其他资产合计	54										
递延税项:	—	—	—	—	—						
递延税款借项	55										
资产总计	56					负债和所有者权益总计	95				

单位负责人:

填表人:

填表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名称:

法人单位代码

证券业损益表

2004年

表号: G 6 4 0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项 目	代码	本年数 (千元)	上年数 (千元)
甲	乙	1	2
一、营业收入	01		
其中: 1. 证券经手费收入	02		
2. 证券上市费收入	03		
3. 开户费收入	04		
4. 过户费收入	05		
5. 结算费收入	06		
6. 手续费收入	07		
7. 自营证券差价收入(亏损以“-”号填列)	08		
8. 受托投资管理收益	09		
9. 证券发行收入	10		
10. 管理费收入	11		
11. 投资咨询收入	12		
12. 利息收入	13		
13. 其他业务收入	14		
14. 汇兑收益	15		
二、营业支出	16		
其中: 1. 营业费用	17		
2. 财务费用	18		
3. 营业税金及附加	19		
4. 利息支出	20		
5. 其他业务支出	21		
三、营业利润	22		
加: 投资收益(亏损以“-”号填列)	23		
营业外收入	24		
减: 营业外支出	25		
四、利润总额(亏损以“-”号填列)	26		
减: 所得税	27		
五、净利润(亏损以“-”号填列)	28		
加: 期初未分配利润	29		
盈余公积转入	30		
其他转入	31		
六、可供分配的利润	32		
减: 提取法定盈余公积	33		
提取法定公益金	34		
其他项目提取	35		
七、可供投资者分配的利润	36		
减: 应付优先股股利	37		
提取任意盈余公积	38		
应付普通股股利	39		
转增资本(股本)的普通股股利	40		
八、未分配利润	41		

单位负责人:

填表人:

填表日期: 200 年 月 日

注: 营业收入中, 证券交易所填报指标 02、03、13、14、15; 期货交易所填报 06、13、14、15; 登记结算公司填报 04、05、13、14、15; 证券公司填报 06、07、08、09、13、14、15; 基金公司填报 10、13、14、15; 期货经纪公司填报 06、13、14、15; 证券投资咨询公司填报 12、13、14、15

法人单位名称:

证券业费用明细表

表号: G 6 4 1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 2005年12月

法人单位代码

2004年

项 目	代码	本年数 (千元)	上年数 (千元)
甲	乙	1	2
营业费用	01		
其中: 广告费	02		
其他营业费	03		
管理费用:	04		
其中: 税金	05		
差旅费	06		
工会经费	07		
劳动、失业保险费	08		
住房公积金和住房补贴	09		
办公费	10		
职工教育经费	11		
交际应酬费	12		
其他管理费	13		
工资福利费:	14		
其中: 工 资	15		
福利费	16		
合 计	17		

单位负责人:

填表人:

填表日期: 200 年 月 日

法人单位及产业活动单位

表号：6 5 1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综合表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法人单位数(个)			产业活动单位数(个)	
		合计	单产业法人单位	多产业法人单位	合计	其中：多产业法人所属的产业活动单位
甲	乙	1	2	3	4	5
总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国民经济行业中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按机构类型分组的

表号：6 5 2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法人单位综合表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全部法人	企业法人	事业法人	机关法人	社团法人	其他法人				
							合计	居委会	村委会	民办非企业	其他
甲	乙	1	2	3	4	5	6	7	8	9	10
总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国民经济行业中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按机构类型分组的

表号：6 5 3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产业活动单位综合表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全部产业活动单位	企业产业活动单位	事业产业活动单位	机关产业活动单位	社团产业活动单位	其他产业活动单位			
							合计	居委会	村委会	其他
甲	乙	1	2	3	4	5	6	7	8	9
总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国民经济行业中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法人单位基本情况综合表

表号：6 5 4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全部法人		企业法人				事业法人		机关法人		社团法人		其他法人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资产总计(千元)	全年营业收入(千元)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单位数(个)	从业人员(人)
甲	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总计															
按国民经济行业中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多产业法人单位所属产业活动单位 情况综合表

表号：6 5 5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多产业	工业	建筑业	房地	交通	批发和	住宿和	服务业	行政事	农业	其他
		法人合计	法人	法人	产业法人	运输业法人	零售业法人	餐饮业法人	业法人	业单位法人	法人	
甲	乙	1	2	3	4	5	6	7	8	9	10	11
一、产业活动单位数(个)												
按国民经济行业大类分组												
二、从业人员数(人)												
按国民经济行业大类分组												
三、经营性收入												
按国民经济行业大类分组												
四、行政事业性支出												
按国民经济行业大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规模以上工业企业价值量综合表

表号: B 6 5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个)		工业	工业	工业	出口 交货值
		1	2	总产值 (当年价)	增加值 (当年价)	销售产值 (当年价)	
甲	乙	1	2	3	4	5	6
总计	01						
总计中: 国有控股企业	02						
总计中: 轻工业	03						
重工业	04						
总计中: 大型企业	05						
中型企业	06						
小型企业	07						
总计中: 按登记注册类型分组							
⋮							
总计中: 按工业行业中类分组							
⋮							

续表 1

流动资产合计	流动资产 年平均余额	固定资产原价	固定资产净值 年平均余额	资产总计	流动负债合计	长期负债合计
7	8	9	10	11	12	13

续表 2

所有者 权益合计	实收资本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成本	主营业务税金 及附加	营业利润	利润总额
14	15	16	17	18	19	20

续表 3

亏损企业 亏损总额	应交所得税	工业中间投入	本年应交 增值税	本年应付 工资总额	本年应付 福利费总额	劳动、待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21	22	23	24	25	26	27	28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 说明: 1. 亏损企业: 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个数。
2. 亏损企业亏损总额: 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利润总额叠加。
3. 工业增加值: 工业总产值-工业中间投入+应交增值税(若应交增值税>0)
或工业总产值-工业中间投入(若应交增值税<0)。
4. 叠加本年应交增值税(24)时, 若企业的本年应交增值税<0, 将该企业的本年应交增值税赋0。

规模以下工业企业价值量

综合表

表号: B 6 5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个)		工业总产值(当年价)	工业销售产值(当年价)	出口交货值
		1	2			
甲	乙	1	2	3	4	5
总计	01					
总计中:轻工业	02					
重工业	03					
总计中:中型企业	04					
小型企业	05					
总计中:按登记注册类型分组						
⋮						
总计中:按工业行业中类分组						
⋮						

续表 1

年初存货	年末存货	固定资产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营业收入合计	产品销售收入
6	7	8	9	10	11	12	13	14

续表 2

产品销售成本	产品销售税金及附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亏损企业亏损总额	从业人员劳动报酬	劳动、失业保险费	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15	16	17	18	19	20	21	22	2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说明: 1. 亏损企业: 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个数。

2. 亏损企业亏损总额: 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利润总额叠加。

工业企业产品

表号: B 6 5 8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生产、销售、库存综合表

综合机关名称:

产品名称	产品代码	计量单位	企业数 (个)	本年生产量	本年销售量	出口交货量		本企业 自用量	年末库存量
						4	5		
甲	乙	丙	1	2	3	4	5	6	
原煤	0600003	万吨							
天然原油	0710003	万吨							
纱	1711002	万吨							
卷烟	1620002	万支							
硫酸(折100%)	2611003	万吨							
纯碱	2612008	吨							
烧碱	2612004	吨							
乙烯	2614011	吨							
氮肥(折含氮100%)	2621004	万吨							
磷肥	2622002	万吨							
钾肥	2623002	万吨							
水泥	3111005	万吨							
平板玻璃	3141003	万重量箱							
粗钢	3220003	万吨							
钢材	3230007	万吨							
氧化铝	3316003	吨							
金属切削机床	3521003	万台							
汽车	3721003	万辆							
家用电冰箱	3951003	万台							
房间空气调节器	3952003	万台							
程控交换机	4012003	万线							
光通信设备	4011013	台							
电子计算机	4041003	万台							
微型电子计算机	4041008	万台							
集成电路	4053003	万块							
彩色电视机	4071004	万台							
发电量	4410003	亿千瓦小时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说明: 分别汇总出规模以上工业、规模以下工业二张表。

规模以上工业企业产品产量、
生产能力及能力利用率综合表

表号：B 6 5 9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产品名称	产品代码	产品生产 能力代码	计量单位	企业数 (个)	本年生产量	年末生产能力	能力利用率 (%)
甲	乙	丙	丁	1	2	3	4=2/3×100%
原煤	0600003	0601	万吨				
天然原油	0710003	0701	万吨				
卷烟	1620002	1601	万支				
硫酸(折100%)	2611003	2601	万吨				
纯碱	2612008	2603	吨				
烧碱	2612004	2602	吨				
乙烯	2614011	2605	吨				
水泥	3111005	3102	万吨				
平板玻璃	3141003	3103	万重量箱				
粗钢	3220003	3204	万吨				
钢材	3230007	3212	万吨				
氧化铝	3316003	3315	吨				
汽车	3721003	3707	万辆				
家用电冰箱	3951003	3911	万台				
房间空气调节器	3952003	3913	万台				
程控交换机	4012003	4006	万线				
微型电子计算机	4041008	4007	万台				
集成电路	4053003	4025	万块				
彩色电视机	4071004	4013	万台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说明：能力利用率=本年生产量/年末生产能力×100%。

工业企业能源

表 号: B 6 6 0 表
制表机关: 国 家 统 计 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 号: 国统字(2004)69号

购进、消费及库存综合表

综合机关名称: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企业数 (个)	年初 库存量	购进量		消费量				年末 库存量	
					实物量	金额 (千元)	合计	1.工业 生产消 费	用于原 材料	2.非工 业生产 消费		合计中: 运输工 具消费
甲	乙	丙	1	2	3	4	5	6	7	8	9	10
原煤	吨	01										
洗精煤	吨	02										
其他洗煤	吨	03										
型煤	吨	04										
焦炭	吨	05										
其他焦化产品	吨	06										
焦炉煤气	万立方米	07										
高炉煤气	万立方米	08										
其他煤气	万立方米	09										
天然气	万立方米	10										
液化天然气	吨	11										
原油	吨	12										
汽油	吨	13										
煤油	吨	14										
柴油	吨	15										
燃料油	吨	16										
液化石油气	吨	17										
炼厂干气	吨	18										
其他石油制品	吨	19										
热力	百万千焦	20										
电力	万千瓦时	21										
其他燃料	吨标准煤	22										
能源合计	吨标准煤	2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说明: 分别汇总出规模以上工业、规模以下工业二张表。

工业企业主要原材料消费综合表

表号: B 6 6 1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产品名称	计量单位	代码	企业数 (个)	本年消费量		年末库存量
					工业生产消费	
甲	乙	丙	1	2	3	4
生铁	万吨	01				
钢材	万吨	02				
钢材重复轧制	万吨	03				
钢丝	万吨	04				
铜	万吨	05				
铝	万吨	06				
铅	万吨	07				
锌	万吨	08				
铜材	万吨	09				
铝材	万吨	10				
润滑油	万吨	11				
硫酸(折100%)	万吨	12				
盐酸(含量31%以上)	万吨	13				
浓硝酸(折100%)	万吨	14				
氢氧化钠(烧碱)(折100%)	万吨	15				
碳酸钠(纯碱)(折100%)	万吨	16				
乙烯	万吨	17				
合成橡胶	万吨	18				
水泥	万吨	19				
平板玻璃	万重量箱	20				
	万平方米	21				
原木	万立方米	22				
其中:直接消费	万立方米	23				
加工锯材消费	万立方米	24				
锯材	万立方米	25				
纱	万吨	26				
布	万米	27				

单位负责人: _____ 填表人: _____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说明: 本表分别按规模以上工业、规模以下工业二张表汇总。

工业企业水消费综合表

表号: B 6 6 2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水消费数量 (立方米)	水消费金额 (千元)
甲	丙	1	2	3
工业取水总量	01			
1.地下水及地表水	02			
2.自来水	03			
3.其他水	04			
重复用水量	05			

单位负责人: _____ 填表人: _____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说明: 本表分别按规模以上工业、规模以下工业两张表汇总。

工业企业科技活动情况综合表

表号: L 6 6 3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科技活动					R&D 人员折 合全时当量 (人年)
			有科技 活动	人员 (人)	其中:科学 家和工程师	其中: R&D 人员	其中: 机构人员	
甲	乙	1	2	3	4	5	6	7
总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工业行业大类分组								

续表 1

科技活动 经费筹集				科技活动 经费内部支出					企业办 科技机构 (个)
总额	其中: 1. 企 业资金	2. 金融 机构贷款	3. 政府 资金	其中: 1. 经 常费支出	2. 科研 基建支出	其中: R&D 经费	其中: 新产 品开发经费		
8	9	10	11	12	13	14	15	16	17

续表 2

科技 项目数 (项)	新产品 项目	项目 经费	新产品 产值	专利 申请数 (件)		技术改造 经费支出	技术引进 经费支出	消化吸收 经费支出	购买国内技 术经费支出
				发明专利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说明: 本表分别按规模以上工业、大中型企业和小型企业汇总。

建筑业企业主要指标综合表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表号: C 6 6 4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有工作量企业数	年末从业人员(人)	计算劳动生产率平均人数(人)	签订合同额	自有施工机械设备年末总台数(台)	自有施工机械设备年末净值	自有施工机械设备年末总功率(千瓦)
		(个)							
甲	乙	1	2	3	4	5	6	7	8
总计		说明: 1. 有工作量的企业为建筑业总产值大于零的企业个数。 2. 本表按资质等级第一位为1或者2的企业汇总。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建筑业行业中类分组									
三、按隶属关系分组									
四、按企业资质等级分组									

续表

建筑业总产值	其他			竣工产值	钢材消耗(吨)	木材消耗(立方米)	水泥消耗(吨)	房屋建筑施工面积(平方米)	房屋建筑竣工面积(平方米)	住宅	竣工房屋价值	住宅
	建筑工程产值	安装工程产值	其他产值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建筑业企业财务状况综合表
(总承包和专业承包建筑业企业)

表号: C 6 6 5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资产总计	流动资产合计		长期投资	固定资产合计	固定资产原价
			存货				
甲	乙	1	2	3	4	5	6
总计		说明: 建筑业增加值(28)=8+18+22+23+25+26+27。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建筑业行业中类分组							
三、按隶属关系分组							
四、按企业资质等级分组							

续表1

累计折旧	本年折旧	在建工程	无形资产	递延资产	负债合计	流动负债合计	长期负债合计

续表2

所有者权益合计	实收资本	工程结算收入	工程结算税金及附加	工程结算利润	其他业务收入	管理费用	税金

续表3

营业利润	利润总额	劳动、失业保险费	应付工资总额	应付福利费总额	建筑业增加值	应收工程款	竣工工程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建筑业企业主要经济指标综合表
(劳务分包建筑业企业)

表号: C 6 6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人员 (人)		计算劳动生产 率的平均人数 (人)	建筑业总产值
			有工作量企业			
甲	乙	1	2	3	4	5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建筑业行业中类分组						
三、按隶属关系分组						
四、按企业资质等级分组						

续表 1

固定资产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成本
6	7	8	9	10	11	12	13

续表 2

主营业务 税金及附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14	15	16	17	18	19	20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建筑业企业主要经济指标综合表
(资质以外建筑业企业)

表号: C 6 6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 从业人员 (人)	计算劳动 生产率的 平均人数 (人)	建筑业 总产值	竣工产值	房屋建筑	房屋建筑
							施工面积 (平方米)	竣工面积 (平方米)
甲	乙	1	2	3	4	5	6	7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建筑业行业中类分组								
三、按隶属关系分组								

续表 1

固定资产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成本
8	9	10	11	12	13	14	15

续表 2

主营业务 税金及附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16	17	18	19	20	21	22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房地产开发企业主要指标综合表

表号: H 6 6 8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万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计划总 投资	实际需要 总投资	累计完成 投资	本年完成 投资额	办公楼完 成投资额
甲	乙	1	2	3	4	5	6	7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隶属关系分组								
三、按资质等级分组								

续表 1

住宅完成 投资额	别墅、高档 公寓完成 投资额	经济适用房 完成投资额	商业营业 用房完成 投资额	其他完成 投资额	本年新增 固定资产	本年完成土 地开发面积 (平方米)	本年土地 购置面积 (平方米)	资金来源 小计
8	9	10	11	12	13	14	15	16

续表 2

施工面积 (平方米)	本年新开工 面积	竣工面积 (平方米)	竣工房屋 价值	商品房 销售面积 合计 (平方米)	住宅销售 面积 (平方米)	别墅、高档 公寓销售 面积 (平方米)	经济适用房 销售面积 (平方米)	办公楼销售 面积 (平方米)
17	18	19	20	21	22	23	24	25

续表 3

商业营业用 房销售面积 (平方米)	其他销售 面积 (平方米)	商品房 实际销售额	住宅实际 销售额	别墅、高档 公寓实际 销售额	经济适用房 实际销售额	办公楼实际 销售额	商业营业 用房实际 销售额	其他实际 销售额
26	27	28	29	30	31	32	33	34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房地产开发企业财务状况综合表

表号: H 6 6 9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资产总计	流动资产 合计		固定资产 原价
					存货		
甲	乙	1	2	3	4	5	6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隶属关系分组							
三、按资质等级分组							

续表 1

累计折旧	本年折旧	负债合计	实收资本	主营业务 收入	土地转让 收入	商品房屋 销售收入	房屋出租 收入	其他收入	主营业务 成本

续表 2

主营业务 税金 及附加	主营业务 利润	其他业务 利润	投资收益	利润总额	应交所得 税	劳动、失 业保险费	应付工资 总额	应付福利 费总额	经济 适用房 减免税费	全部从业 人员年平 均人数 (人)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房地产物业管理企业 主要指标综合表

表号: H 6 7 0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在管物业 占地面积 (平方米)	在管房屋 建筑面积 (平方米)	房屋用途			
						住宅	办公用 房	商业营 业用房	厂房
甲	乙	1	2	3	4	5	6	7	8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资质等级分组									
三、按隶属关系分组									

续表 1

固定资产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 成本
9	10	11	12	13	14	15	16

续表 2

主营业务 税金及附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 业保险费	全部从业 人员年平 均人数 (人)
17	18	19	20	21	22	2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房地产中介服务企业 主要指标综合表

表号: H 6 7 1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房屋代理销售		
				成交 合同面积 (平方米)	成交 合同数 (个)	成交 合同金额
甲	乙	1	2	3	4	5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隶属关系分组						

续表 1

房屋代理出租			固定资产 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成交 合同面积 (平方米)	成交 合同数 (个)	成交 合同金额					
6	7	8	9	10	11	12	13

续表 2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主营业务 成本	主营业务 税金及附 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其他房地产企业财务状况综合表

表号: H 6 7 2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固定资产 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总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企业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隶属关系分组								

续表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主营业务 成本	主营业务 税金及附 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年 月 日

交通运输和电信业企业 业务活动情况综合表

表号: D 6 7 3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汽车 (辆)	客车		货车 (辆)	吨位 (吨位)	客运量 (人)	旅客 周转量 (人公里)	货运量 (吨)	货物 周转量 (吨公里)
			客车 (辆)	客位 (客位)						
甲	1	2	3	4	5	6	7	8	9	10
公路运输企业										

续表 1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机动船 (艘)	净载重 (吨位)	载容量 (客位)	驳船 (艘)	客运量 (人)	旅客 周转量 (人公里)	货运量 (吨)	国际标准 集装箱 (TEU)	货物 周转量 (吨公里)
水路运输企业										

续表 2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码头长度 (米)	泊位数 (个)	港口货物吞吐量 (万吨)		国际标准集装箱 (TEU)
				万吨级	甲	
甲	1	2	3	4	5	6
港口企业						

续表 3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装卸量 (万吨)
甲	1	2
装卸企业		

续表 4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旅客吞吐量 (人)	货物吞吐量 (吨)
甲	1	2	3
民航机场			

续表 5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飞机 (架)	运输飞机		客运量 (人)	旅客周转量 (人公里)	货运量 (吨)	货物周转量 (吨公里)
			通用航空 飞机	运输飞机 座位数(个)				
甲	1	2	3	4	5	6	7	8
航空公司								

续表 6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输油(气)管道里程 (公里)	输油(气)量 (万吨)	输油(气)周转量 (万吨公里)
甲	1	2	3	4
管道企业				

续表 7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公共汽(电)车 (辆)	出租汽车 (辆)	客运量 (人)
甲	1	2	3	4
城市交通企业				

续表 8

指标名称	企业单位数 (个)	局用交换 机容量 (万门)	固定电话		移动交换 机容量 (万户)	移动电话 用户 (万户)	CDMA 用户	增值电信 业务服务 (万元)	1. 因特网 接入服务		2. 信息 服务
			用户 (万户)	住宅电话 用户					1	2	
甲	1	2	3	4	5	6	7	8	9	10	
电信企业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交通运输及电信业企业
能源消费综合表**

表号：D 6 7 4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综合机关名称：

能源名称	计量单位	代码	企业数(个)	年初库存	本年消费量	年末库存量
甲	乙	丙	1	2	3	4
煤炭	万吨	01				
汽油	万吨	02				
柴油	万吨	03				
煤油	万吨	04				
燃料油	万吨	05				
液化天然气	万吨	06				
液化石油气	万吨	07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交通运输及电信业企业
财务状况综合表**

表号：D 6 7 5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计量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个)	亏损企业	年末从业人员数(人)	固定资产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总计									
按登记注册类型分组									
⋮									
按交通运输及电信行业中类分组									
⋮									

续表

营业收入合计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成本	主营业务税金及附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亏损企业亏损总额	从业人员劳动报酬	劳动、失业保险费	全部从业人员年平均人数(人)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说明：1. 亏损企业：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个数。

2. 亏损企业亏损总额：按利润总额小于零的企业利润总额汇总。

批发和零售业企业 商品销售情况综合表

表号：E 6 7 6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产业活动 单位数 (个)	年末 从业人数 (人)	销售合计	批发额	零售额
甲	乙	1	2	3	4	5	6
总 计							
一、批发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批发行业小类分组 3. 按商品销售类值分组 二、零售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零售行业小类分组 3. 按商品销售类值分组		说明： 1. 本表根据 601 表、602 表和 E621 表的有关指标加工汇总。 2. 本表分别按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法人、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法人汇总。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住宿和餐饮业企业 经营状况综合表

表号：E 6 7 7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产业活动 单位数 (个)	年末从业 人数 (人)	营业额	客房收入	餐费收入	商品销售 收入
甲	乙	1	2	3	4	5	6	7
总 计								
一、住宿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住宿行业中类分组 3. 按星级分组 二、餐饮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餐饮行业中类分组		说明： 1. 本表根据 601 表、602 表、E624 表和 E625 表的有关指标加工汇总。 2. 本表分别按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法人、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法人汇总。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企业
主要财务状况综合表**

表号：E 6 7 8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流动资产合计		固定资产 原价	累计折旧	本年折旧
				存货			
甲	乙	1	2	3	4	5	6
总计							
一、批发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批发行业小类分组							
二、零售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零售行业小类分组							

续表 1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成本	主营业务税金及附加	主营业务利润	其他业务利润	营业费用
7	8	9	10	11	12	13	14	15

续表 2

管理费用	营业利润	利润总额	应交所得税	劳动、失业 保险费	应付工资	应付福利费	本年应交 增值税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16	17	18	19	20	21	22	23	24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企业
主要财务状况综合表**

表号：E 6 7 9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固定资产 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总计								
一、批发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批发行业小类分组								
二、零售业								
其中：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零售行业小类分组								

续表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主营业务 成本	主营业务 税金及附 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年 月 日

**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企业
主要财务状况综合表**

表号: E 6 8 0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流动资产 合计		固定资产 原价	累计折旧	本年折旧
				存货			
甲	乙	1	2	3	4	5	6
总计							
一、住宿业							
其中: 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住宿行业中类分组							
二、餐饮业							
其中: 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餐饮行业中类分组							

续表 1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主营业务收入	主营业务成本	主营业务税金及附加	主营业务利润	其他业务利润
7	8	9	10	11	12	13	14

续表 2

营业费用	管理费用	营业利润	利润总额	应交所得税	劳动、失业 保险费	应付工资	应付福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15	16	17	18	19	20	21	22	23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企业
主要财务状况综合表**

表号: E 6 8 1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个)	年末从业 人员数 (人)	固定资产 原价	本年折旧	资产总计	负债合计	实收资本
总计								
一、住宿业								
其中: 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住宿行业中类分组								
二、餐饮业								
其中: 国有及国有控股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餐饮行业中类分组								

续表

营业收入 合计	主营业务 收入	主营业务 成本	主营业务 税金及附 加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报酬	劳动、失业 保险费	全部从业人员 年平均人数 (人)
8	9	10	11	12	13	14	15	16	17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综合表

表号：E 6 8 2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批发业					零售业					住宿业		餐饮业			
		产业活动单位(个)	年末从业人数(人)	销售合计	批发额	零售额	产业活动单位(个)	年末从业人数(人)	销售合计	批发额	零售额	产业活动单位(个)	年末从业人数(人)	营业额	产业活动单位(个)	年末从业人数(人)	营业额
甲	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合计	01																
1. 工业法人	02																
2. 建筑业法人	03																
3. 房地产业法人	04																
4. 交通运输电信业法人	05																
5. 批发零售业法人	06																
6. 住宿餐饮业法人	07																
7. 服务业法人	08																
8. 行政事业单位法人	09																
9. 农业法人	10																
10. 其他法人	11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说明：本表根据 601 表、602 表和 602-1 表的有关指标加工汇总。

**批发零售业、住宿餐饮业
产业活动单位按经营地汇总综合表**

表号：E 6 8 3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产业活动单位数(个)	年末从业人数(人)	销售合计	批发额	零售额	住宿餐饮业营业额
甲	乙	1	2	3	4	5	6
一、批发业	—	—	—	—	—	—	—
按法人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01						—
减：本省法人在外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02						—
加：外省法人在本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03						—
按产业活动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04						—
二、零售业	—	—	—	—	—	—	—
按法人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05						—
减：本省法人在外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06						—
加：外省法人在本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07						—
按产业活动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08						—
三、住宿业	—	—	—	—	—	—	—
按法人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09						—
减：本省法人在外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10						—
加：外省法人在本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11						—
按产业活动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12						—
四、餐饮业	—	—	—	—	—	—	—
按法人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13						—
减：本省法人在外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14						—
加：外省法人在本省的产业活动单位合计	15						—
按产业活动单位经营所在地的汇总合计	16						—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说明：本表根据 E676 表与 E684 表、E677 表与 E685 表及 602 表和 602-1 表的有关指标按在地口径加工汇总。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
商品销售情况综合表**

表号：E 6 8 4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产业活动单位数(个)	年末从业人数(人)	销售总额	批发额	零售额
甲	乙	2	3	4	5	6
总计						
一、批发业		说明：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1. 本表根据 602 表 602-1 表的有关指标加工汇总。				
2. 按批发行业小类分组		2. 本表分别按限额以上批发和零售业产业活动单位、限额以下批发和零售业产业活动单位				
3. 按商品销售类值分组		汇总。				
二、零售业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零售行业小类分组						
3. 按商品销售类值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产业活动单位基本情况附表
住宿餐饮经营状况综合表**

表号：E 6 8 5 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产业活动单位数(个)	年末从业人数(人)	营业额	客房收入	餐费收入	商品销售收入
甲	乙	1	2	3	4	5	6
总计							
一、住宿业		说明：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1. 本表根据 602 表 602-1 表的有关指标加工汇总。					
2. 按住宿行业中类分组		2. 本表分别按限额以上住宿和餐饮业产业活动单位、限额以下住宿和餐饮业产业活动单位汇					
二、餐饮业		总。					
1. 按登记注册类型分组							
2. 按餐饮行业中类分组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2005 年 月 日

服务业企业财务状况综合表

表号: G 6 8 6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企业数	企业化管理的事业	年末从业	固定资产	本年	资产	负债	实收
		(个)	单位	人员数	原价	折旧	总计	合计	资本
甲	乙	1	2	3	4	5	6	7	8
总 计									
其中: 国有及国有控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国民经济行业分组(中类)									

续表

营业收入	主营业务	主营业务	主营业务	费用合计	营业利润	利润总额	从业人员	劳动、失业	全部从业人员
合计	收入	成本	税金及附加				劳动报酬	保险费	年平均人数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行政事业单位财务状况综合表

表号: G 6 8 7 表
制表机关: 国家统计局
国务院经济普查办公室
文号: 国统字(2004)69号
金额单位: 千元

综合机关名称:

指标名称	代码	行政事业			年末从业	年末资产		上年结余
		单位合计	机关	事业单位		人员数	固定资产	
甲	乙	1	2	3	4	5	6	7
总 计								
一、按登记注册类型分组								
二、按国民经济行业分组(中类)								

本年收入	财政拨款	上级补助	事业收入	经营收入	本年	人员支出	公用支出	对个人和	收支结余	经营税金	全部从业
合计		收入				支出	支出	支出			人员年平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均人数
											(人)

单位负责人:

填表人:

报出日期: 2005 年 月 日

个体经营户经营情况综合表

2004年

表号：628表
 制表机关：国家统计局
 国务院经普查办公室
 文号：国统字(2004)69号
 有效期至：2005年12月

综合机关：

指标名称	代码	户数(户)			从业 人员数 (人)	营业 收入 (万元)	营业 支出 (万元)			固定 资产 原价 (万元)
		合计	有营业 执照	无营业 执照				雇员 报酬	缴纳 税费	
甲	乙	1	2	3	4	5	6	7	8	9
总 计	01									
1. 工业	02									
2. 建筑业	03									
3. 交通运输业	04									
4. 批发业	05									
5. 零售业	06									
6. 住宿业	07									
7. 餐饮业	08									
8. 房地产业	09									
9. 租赁和商务服务业	10									
10. 教育	11									
11. 卫生和福利业	12									
12. 居民服务业	13									
13. 文化、体育和娱乐业	14									
14. 其他服务业	15									